

#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정은희

신재동·우선희·하은솔·김지원·박나영·김현규·이지혜·정해식·홍성운·손창균  
이봉주·강상경·박정민·정원오·김화선·임은정·김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신재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전문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하은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박나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김현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홍성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손창균	동국대학교 교수
연구책임자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진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정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화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임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김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24

###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정인애드

## 이용자를 위하여

이 보고서는 2022년 한국복지패널 17차 조사 자료의 세부 문항별 기술통계를 분석한 것입니다. ‘한국복지패널’은 국가승인 통계(제331009호)로 조사는 3~7월에 수행했으며 학술대회는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는 조사 결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의성 높은 패널 데이터를 제공하고 학술적·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7차 조사는 원표본과 탈락률에 따른 분포를 고려하여 1~16차 패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표본을 구축하였습니다. 17차 조사 자료에는 추가된 신규 표본 2,012 가구를 포함하여 총 7,865가구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 수치는 횡단면 표준 가중치(가구 데이터 변수명: h17\_ws\_all, 가구원 데이터 변수명: p17\_ws\_c\_all)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항목별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 등 저소득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분야가 아닌 경우 모든 기술통계표에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구의 구분 기준은 당해 연도 가구의 경상소득(공공부조 소득 제외)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의 중위 60%입니다. 중위 60% 미만인 경우는 저소득 가구로, 그 이상인 가구는 일반 가구로 구분하였습니다. 1~16차 조사 자료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별 기초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자료 및 관련 보고서 등은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s://www.koweps.re.kr:442>)에서 조사 차수별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원자료는 최종 수정된 자료이므로 이로부터 산출되는 기술 통계는 연도별 기초분석 보고서의 통계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조사 항목 중 문항의 정의나 세부 항목의 변경으로 연도별 차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문항의 통계 분석 시 변경 내용을 각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 수치 및 원자료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연구진(044-287-8138, 8174, 8124, 8317, 8294, 8215, 8256) 또는 한국복지패널 전용 수신자 부담 전화(080-380-3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간|사

2006년 출범한 ‘한국복지패널’은 2022년 제17차 조사를 완료했다. 사회정책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 수급, 그리고 국민의 태도 등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변화에 대한 이해는 과거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예측 기반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와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 등 방대한 정보를 포괄하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성장은 자못 의의가 크다.

국민의 복지 실태 및 복지 욕구를 정태적, 동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복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적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한국의 대표적 패널로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가정학·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훌륭한 학제 간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이 동 자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기초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발간해 왔으나 내용을 더욱 폭넓게 포괄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 연구원에서는 정은희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정해식 연구위원, 우선희, 하은솔 전문 연구원, 김지원, 홍성운, 이지혜 연구원, 신재동 선임전문원, 박나영, 김현규 전문원이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이봉주 교수의 책임하에 강상경, 박정민, 정원오 교수, 김화선, 임은정, 김건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신규 표본 추출과 가중치 조정을 위해 동국대학교 손창균 교수가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조사 설계부터 조사 수행, 데이터 정리 및 분석 과정에서 보여준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패널 조사를 수행하여 주신 조사원과 조사 지도원, 무엇보다도 매년 조사에 참여해 주고 계신 복지패널 가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보고서를 검토하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본원 이원진 부연구위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연구위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 .....	1
요 약 .....	3
<b>제1장 서론 .....</b>	<b>11</b>
제1절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 .....	13
제2절 한국복지패널 조사 개요 .....	20
제3절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23
<b>제2장 표본 특성 및 가중치 조정 .....</b>	<b>29</b>
제1절 조사 개요 및 표본 규모 .....	31
제2절 2022년 추가 패널 표본 설계 .....	36
제3절 17차 조사 표본 특성 및 가중치 조정 .....	47
<b>제3장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b>	<b>63</b>
제1절 조사 내용 .....	65
제2절 조사 방법 .....	78
<b>제4장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b>	<b>83</b>
제1절 일반적 특성 .....	85
제2절 경제활동 상태 .....	93
<b>제5장 가구 경제 .....</b>	<b>105</b>
제1절 소득 .....	107
제2절 지출 .....	110
제3절 재산 및 부채 .....	112

---

<b>제6장 주거 및 건강</b> .....	<b>117</b>
제1절 주거 .....	119
제2절 건강 .....	125
<b>제7장 가족</b> .....	<b>131</b>
제1절 가족 관계 .....	133
제2절 가족 문제 .....	134
<b>제8장 생활실태 및 자원 활동</b> .....	<b>145</b>
제1절 가구 구성원의 생활만족도 .....	147
제2절 가구의 생활 여건 .....	151
제3절 가구 구성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	155
<b>제9장 사회보장</b> .....	<b>157</b>
제1절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연금) .....	159
제2절 공공부조 .....	168
제3절 사회복지 서비스 .....	177
<b>제10장 복지 인식 부가조사</b> .....	<b>187</b>
제1절 응답자 특성 .....	189
제2절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	191
제3절 복지 자원 부담에 대한 의견 .....	200





참고문헌 .....	205
<b>부록 .....</b>	<b>207</b>
[부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	207
[부록 2] 가구 경제 .....	224
[부록 3] 주거 및 건강 .....	241
[부록 4] 가족 .....	251
[부록 5] 생활실태 및 자원 활동 .....	259
[부록 6] 사회보장 .....	261
[부록 7] 복지 인식 부가조사 .....	279
[부록 8] 2022년 신규 표본 설계 .....	297
[부록 9]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표 .....	311

# 표 목차

〈요약표 1〉 2022년 17차 조사 수행 결과 및 1~17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 변화 추이	10
〈표 1-2-1〉 한국복지패널 조사표 구성 및 조사대상	22
〈표 1-3-1〉 2022년 17차 조사 수행 결과 및 1~17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 변화 추이	26
〈표 2-1-1〉 KOWEPS 표본의 개요	31
〈표 2-1-2〉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분류 기준	33
〈표 2-1-3〉 KOWEPS 1차 조사의 지역별 조사구와 가구 분포 현황	34
〈표 2-1-4〉 KOWEPS 7차 조사 신규 패널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36
〈표 2-2-1〉 1단계, 2단계 표본 규모	37
〈표 2-2-2〉 층별 표본 배분(방안1)	40
〈표 2-2-3〉 층별 표본 배분(방안2)	41
〈표 2-2-4〉 층별 표본 조사구 배분 결과	42
〈표 2-2-5〉 추가 1차 표본 가구의 분포	43
〈표 2-2-6〉 1차 표본 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44
〈표 2-2-7〉 1차 표본 가구의 소득 계층별 분포	45
〈표 2-2-8〉 2차 표본 가구의 소득 유형별 지역 배분 결과 및 조사 결과	46
〈표 2-3-1〉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47
〈표 2-3-2〉 201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48
〈표 2-3-3〉 1차 조사 대비 17차 조사에서의 조사 완료 패널 가구 및 가구원 수	49
〈표 2-3-4〉 17차 조사의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50
〈표 2-3-5〉 17차 조사의 201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51
〈표 2-3-6〉 17차 조사의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55
〈표 2-3-7〉 17차 조사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57
〈표 2-3-8〉 17차 조사의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59
〈표 2-3-9〉 17차 조사의 지역별 가구 통합 가중치 분포	61
〈표 2-3-10〉 17차 조사의 지역별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 분포	62
〈표 3-1-1〉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	66
〈표 3-1-2〉 17차 연도 조사표 유형별 조사대상 및 조사 기준 시점	67
〈표 3-1-3〉 17차 연도 조사 영역	68
〈표 3-1-4〉 조사 주제별 구성	69
〈표 3-1-5〉 가구용(유형1, 유형2) 설문 주요 항목	70
〈표 3-1-6〉 가구원용(유형3, 유형4) 설문 주요 항목	75



〈표 3-1-7〉 부가 조사표(복지 인식) 주요 항목 .....	78
〈표 4-1-1〉 가구 형태 .....	85
〈표 4-1-2〉 가구 규모 .....	86
〈표 4-1-3〉 소득집단별 평균 가구원 수 .....	86
〈표 4-1-4〉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87
〈표 4-1-5〉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91
〈표 4-2-1〉 가구원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 사유 .....	93
〈표 4-2-2〉 가구원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	94
〈표 4-2-3〉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 .....	94
〈표 4-2-4〉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 .....	95
〈표 4-2-5〉 취업 가구의 사업장 규모 .....	97
〈표 4-2-6〉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	97
〈표 4-2-7〉 노동 환경 유해 여부 .....	98
〈표 4-2-8〉 가구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 사유 .....	99
〈표 4-2-9〉 가구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	99
〈표 4-2-10〉 가구의 비경제활동 사유 .....	100
〈표 4-2-11〉 취업 가구의 업종 및 직종 .....	101
〈표 4-2-12〉 취업 가구의 사업장 규모 .....	102
〈표 4-2-13〉 가구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	103
〈표 4-2-14〉 노동 환경 유해 여부 .....	103
〈표 5-1-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평균 .....	107
〈표 5-1-2〉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	108
〈표 5-1-3〉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평균 .....	109
〈표 5-2-1〉 월간 총가계지출 .....	110
〈표 5-2-2〉 지출 항목별 구성 비율 .....	111
〈표 5-3-1〉 총재산가액 평균 .....	113
〈표 5-3-2〉 순재산가액 평균 .....	113
〈표 5-3-3〉 소유 부동산 평균 .....	114
〈표 5-3-4〉 금융재산 평균 .....	114
〈표 5-3-5〉 총부채 평균 .....	115
〈표 5-3-6〉 총이자액과 기타 이자액 .....	115

〈표 5-3-7〉 부채의 용도 .....	116
〈표 6-1-1〉 주택 유형 .....	119
〈표 6-1-2〉 주거 점유 형태 .....	120
〈표 6-1-3〉 임차 가구의 임대 유형 .....	120
〈표 6-1-4〉 주택 면적 .....	121
〈표 6-1-5〉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 .....	121
〈표 6-1-6〉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	122
〈표 6-1-7〉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 오염으로 인한 불만 여부 .....	122
〈표 6-1-8〉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	123
〈표 6-1-9〉 주택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성 여부 .....	123
〈표 6-1-10〉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 .....	124
〈표 6-1-11〉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평균 .....	124
〈표 6-1-12〉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 .....	125
〈표 6-1-13〉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평균 .....	125
〈표 6-2-1〉 전체 가구원의 건강 상태 .....	126
〈표 6-2-2〉 가구주의 건강 상태 .....	126
〈표 6-2-3〉 전체 가구원의 만성질환 .....	127
〈표 6-2-4〉 가구주의 만성질환 .....	128
〈표 6-2-5〉 건강검진 횟수 .....	128
〈표 6-2-6〉 외래진료 횟수 .....	129
〈표 6-2-7〉 입원 횟수 .....	129
〈표 6-2-8〉 입원 일수 .....	129
〈표 6-2-9〉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가구 기준) .....	130
〈표 6-2-10〉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가구 기준) .....	130
〈표 7-1-1〉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	133
〈표 7-1-2〉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 정도 .....	134
〈표 7-1-3〉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 연락 정도 .....	134
〈표 7-2-1〉 가족 갈등 원인(1순위, 2순위) .....	135
〈표 7-2-2〉 가족 갈등 대처 방법 .....	136
〈표 7-2-3〉 현재 흡연 여부 .....	137
〈표 7-2-4〉 하루 이상 금연 시도 여부 .....	137



〈표 7-2-5〉 하루 동안 실내에서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 .....	138
〈표 7-2-6〉 음주 횟수 .....	138
〈표 7-2-7〉 과음 횟수 .....	139
〈표 7-2-8〉 음주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 .....	139
〈표 7-2-9〉 주변 사람들이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경험 .....	140
〈표 7-2-10〉 출산 경험 .....	140
〈표 7-2-11〉 우울에 대한 인식 .....	141
〈표 7-2-12〉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	141
〈표 7-2-13〉 남성이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	142
〈표 7-2-14〉 여성이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	142
〈표 7-2-15〉 지금까지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 .....	143
〈표 7-2-16〉 지난 한 해 동안의 자살 생각(기존 가구원) .....	143
〈표 7-2-17〉 행복지수(캔트릴 사다리-주관적 행복감) .....	144
〈표 8-1-1〉 건강에 대한 만족도 .....	147
〈표 8-1-2〉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	148
〈표 8-1-3〉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	148
〈표 8-1-4〉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	149
〈표 8-1-5〉 직업에 대한 만족도 .....	149
〈표 8-1-6〉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 .....	150
〈표 8-1-7〉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	150
〈표 8-1-8〉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	151
〈표 8-2-1〉 두 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	152
〈표 8-2-2〉 공과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 .....	152
〈표 8-2-3〉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	152
〈표 8-2-4〉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 .....	153
〈표 8-2-5〉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	153
〈표 8-2-6〉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 .....	154
〈표 8-2-7〉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	154
〈표 8-2-8〉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급여 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	154
〈표 8-3-1〉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	155
〈표 8-3-2〉 연간 기부 액수 .....	155

〈표 8-3-3〉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	156
〈표 9-1-1〉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	159
〈표 9-1-2〉 공적연금 제도별 가입 실태 .....	160
〈표 9-1-3〉 공적연금 수급 실태 .....	161
〈표 9-1-4〉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	161
〈표 9-1-5〉 건강보험 가입 실태(가구 단위) .....	162
〈표 9-1-6〉 건강보험 가입 실태(개인 단위) .....	163
〈표 9-1-7〉 고용보험 가입 실태 .....	164
〈표 9-1-8〉 고용보험 급여 수급 경험 .....	164
〈표 9-1-9〉 산재보험 가입 실태 .....	165
〈표 9-1-10〉 산재보험 급여 수급 경험 .....	165
〈표 9-1-11〉 퇴직(연)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 .....	166
〈표 9-1-12〉 퇴직(연)금 가입 실태 .....	166
〈표 9-1-13〉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 여부 .....	167
〈표 9-1-14〉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가입 실태 .....	167
〈표 9-1-15〉 개인연금 급여 수급 경험 .....	168
〈표 9-2-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	169
〈표 9-2-2〉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	169
〈표 9-2-3〉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	170
〈표 9-2-4〉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	170
〈표 9-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여부 및 사유 .....	171
〈표 9-2-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후 선정 여부 및 신청 탈락 사유 .....	172
〈표 9-2-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탈락 후 생계 문제 해결 방법 .....	173
〈표 9-2-8〉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인지 여부 .....	175
〈표 9-2-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경험 및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여부 .....	176
〈표 9-2-10〉 근로(자녀)장려금 사용 용도 .....	176
〈표 9-3-1〉 가구의 복지 서비스 지원 경험 여부 .....	177
〈표 9-3-2〉 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178
〈표 9-3-3〉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179
〈표 9-3-4〉 노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지원 경험 여부 .....	180
〈표 9-3-5〉 장애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181



〈표 9-3-6〉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182
〈표 9-3-7〉 추가된 아동의 출생 시 체중 정도 .....	182
〈표 9-3-8〉 추가된 아동의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	183
〈표 9-3-9〉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183
〈표 9-3-10〉 사교육·보육 이용 기관 수 .....	184
〈표 9-3-11〉 사교육·보육기관의 종류 .....	185
〈표 9-3-12〉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186
〈표 9-3-13〉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1인당 월평균 보육비 .....	186
〈표 10-1-1〉 응답자 특성 .....	190
〈표 10-2-1〉 사회복지를 늘리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 .....	191
〈표 10-2-2〉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 .....	192
〈표 10-2-3〉 경제를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193
〈표 10-2-4〉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193
〈표 10-2-5〉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194
〈표 10-2-6〉 기초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게으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195
〈표 10-2-7〉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195
〈표 10-2-8〉 노동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196
〈표 10-2-9〉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197
〈표 10-2-10〉 국가 건강보험 축소, 민간의료보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197
〈표 10-2-11〉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198
〈표 10-2-12〉 유치원, 보육 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199
〈표 10-2-13〉 복지의 대상에 대한 의견 .....	199
〈표 10-3-1〉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	200
〈표 10-3-2〉 중간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	201
〈표 10-3-3〉 저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	201
〈표 10-3-4〉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202
〈표 10-3-5〉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자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의견 .....	203

# 그림 목차

---

[요약 그림 1]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사유별 가구 현황 .....	9
[그림 1-1-1] 한국복지패널(KOWEPS) 관리 및 운영 체계 .....	18
[그림 1-3-1]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사유별 가구 현황 .....	25
[그림 2-3-1] 1~17차 조사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변화 추이 .....	48
[그림 2-3-2] 2012년 신규 표본의 1~11차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변화 추이 .....	49
[그림 2-3-3] KOWEPS의 가중치 부여 체계 .....	52
[그림 2-3-4] 17차 조사의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	55
[그림 2-3-5] 17차 조사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	57
[그림 2-3-6] 17차 조사의 지역별 가구 가중치 상자 그림 .....	59
[그림 3-1-1] 조사 설문 구성 .....	65
[그림 3-1-2] 가구용(유형1, 유형2) 설문의 조사 영역 흐름도 .....	70
[그림 3-1-3] 가구용 조사표 III. 경제활동 상태 영역 논리도 .....	73
[그림 3-1-4] 가구용 조사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 논리도 .....	74
[그림 3-1-5] 가구용 조사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 논리도 .....	74
[그림 3-1-6] 가구원용 조사표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영역 논리도 .....	77
[그림 3-1-7] 가구원용 조사표 B. 근로 영역 논리도 .....	77



# 부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1-1-1〉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생계) 수급 가구 구분 .....	207
〈부표 1-1-2〉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생계) 수급 형태 .....	207
〈부표 1-1-3〉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의료) 수급 가구 구분 .....	207
〈부표 1-1-4〉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의료) 수급 형태 .....	208
〈부표 1-1-5〉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주거) 수급 가구 구분 .....	208
〈부표 1-1-6〉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교육) 수급 가구 구분 .....	208
〈부표 1-1-7〉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교육) 평균 수급자 수 .....	208
〈부표 1-1-8〉 가구원의 최종 학력 .....	208
〈부표 1-1-9〉 가구원의 고등학교 유형 .....	209
〈부표 1-1-10〉 가구원의 고등학교 소재지 .....	209
〈부표 1-1-11〉 가구원의 대학 전공계열 .....	210
〈부표 1-1-12〉 가구원의 대학교 소재지 .....	210
〈부표 1-1-13〉 가구주의 최종 학력 .....	211
〈부표 1-1-14〉 가구주의 고등학교 유형 .....	211
〈부표 1-1-15〉 가구주의 고등학교 소재지 .....	212
〈부표 1-1-16〉 가구주의 대학 전공계열 .....	212
〈부표 1-1-17〉 가구주의 대학교 소재지 .....	213
〈부표 1-2-1〉 임금근로자 가구원의 고용 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 계약의 형태 .....	213
〈부표 1-2-2〉 임금근로자 가구원의 근로 지속 불가능 사유 .....	214
〈부표 1-2-3〉 임금근로자 가구원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	214
〈부표 1-2-4〉 취업 가구원의 사직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유 .....	215
〈부표 1-2-5〉 가구원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 기간 .....	215
〈부표 1-2-6〉 가구원의 구직상 어려움 .....	216
〈부표 1-2-7〉 가구원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 소득 .....	216
〈부표 1-2-8〉 비경제활동 가구원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근로 가능 여부 .....	217
〈부표 1-2-9〉 가구원이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217
〈부표 1-2-10〉 가구원이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	217
〈부표 1-2-11〉 가구원이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	218
〈부표 1-2-12〉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고용 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 계약의 형태 .....	219
〈부표 1-2-13〉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근로 지속 불가능 사유 .....	219
〈부표 1-2-14〉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	219



---

〈부표 1-2-15〉 취업 가구주의 사직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유 .....	220
〈부표 1-2-16〉 가구주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기간 .....	220
〈부표 1-2-17〉 가구주의 구직상 어려움 .....	221
〈부표 1-2-18〉 가구주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 소득 .....	221
〈부표 1-2-19〉 비경제활동 가구주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근로 가능 여부 .....	222
〈부표 1-2-20〉 가구주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222
〈부표 1-2-21〉 가구주가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	222
〈부표 1-2-22〉 가구주가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	223
〈부표 2-1-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분포 .....	224
〈부표 2-1-2〉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보유 여부 .....	224
〈부표 2-1-3〉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분포 .....	225
〈부표 2-1-4〉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보유 여부 .....	226
〈부표 2-1-5〉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 여부 .....	226
〈부표 2-1-6〉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평균 .....	229
〈부표 2-1-7〉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분포 .....	232
〈부표 2-2-1〉 월간 총가계지출 규모별 분포 .....	233
〈부표 2-2-2〉 지출 항목별 생활비 평균 .....	234
〈부표 2-3-1〉 소유 부동산 유형별 평균 .....	237
〈부표 2-3-2〉 점유 부동산 평균 .....	237
〈부표 2-3-3〉 점유 부동산 유형별 평균 .....	237
〈부표 2-3-4〉 금융재산 유형별 평균 .....	238
〈부표 2-3-5〉 농기계 평균 .....	238
〈부표 2-3-6〉 농기계 유형별 평균 .....	238
〈부표 2-3-7〉 농축산물 평균 .....	239
〈부표 2-3-8〉 농축산물 유형별 평균 .....	239
〈부표 2-3-9〉 자동차 가액 평균 .....	239
〈부표 2-3-10〉 기타 동산·부동산 재산 평균 .....	239
〈부표 2-3-11〉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 유형별 평균 .....	240
〈부표 2-4-1〉 부채 유형별 평균 .....	240
〈부표 3-1-1〉 2021년 1년 동안의 이사 경험 여부 .....	241
〈부표 3-1-2〉 주거 위치 .....	241



〈부표 3-1-3〉 방의 수 .....	241
〈부표 3-1-4〉 상하수도 사용 형태 .....	242
〈부표 3-1-5〉 부엌 사용 형태 .....	242
〈부표 3-1-6〉 화장실 사용 형태 .....	242
〈부표 3-1-7〉 목욕시설 사용 형태 .....	242
〈부표 3-1-8〉 난방시설 사용 형태 .....	243
〈부표 3-1-9〉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가격 분포 .....	243
〈부표 3-1-10〉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분포 .....	243
〈부표 3-1-11〉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분포 .....	244
〈부표 3-1-12〉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분포 .....	244
〈부표 3-1-13〉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지역별) .....	244
〈부표 3-1-14〉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평균(지역별) .....	245
〈부표 3-1-15〉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지역별) .....	245
〈부표 3-1-16〉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평균(지역별) .....	245
〈부표 3-1-17〉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	246
〈부표 3-1-18〉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1순위 .....	246
〈부표 3-1-19〉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2순위 .....	246
〈부표 3-1-20〉 총원금 상환액 평균 .....	246
〈부표 3-1-21〉 상환 후 남은 용자액 또는 부채 평균 .....	247
〈부표 3-1-22〉 주거 관련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평균 .....	247
〈부표 3-1-23〉 대출 상환액 연체 횟수 .....	247
〈부표 3-1-24〉 (돈이 없어서)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 경험 여부 .....	247
〈부표 3-1-25〉 영구임대아파트 이용 경험 .....	248
〈부표 3-1-26〉 공공(국민)임대아파트 이용 경험 .....	248
〈부표 3-1-27〉 전세자금(용자) 지원의 이용 경험 .....	248
〈부표 3-1-28〉 저소득층 월세 지원의 이용 경험 .....	248
〈부표 3-1-29〉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의 이용 경험 .....	248
〈부표 3-1-30〉 전세 임대 또는 매입 임대 이용 경험 .....	249
〈부표 3-1-31〉 기타 주거복지 관련 사업의 이용 경험 .....	249
〈부표 3-2-1〉 병원에 입원한 이유 .....	249
〈부표 3-2-2〉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형태 .....	250

〈부표 3-2-3〉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가구 기준) .....	250
〈부표 4-2-1〉 생애 동안 피운 담배의 총량 .....	251
〈부표 4-2-2〉 흡연 경험 시기 .....	251
〈부표 4-2-3〉 총흡연 기간 .....	252
〈부표 4-2-4〉 하루 평균 흡연량 .....	252
〈부표 4-2-5〉 향후 금연 계획 .....	252
〈부표 4-2-6〉 담배 연기에 노출된 시간 .....	253
〈부표 4-2-7〉 음주량 .....	253
〈부표 4-2-8〉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 .....	253
〈부표 4-2-9〉 과음한 다음 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경험 .....	254
〈부표 4-2-10〉 음주 후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경험 .....	254
〈부표 4-2-11〉 음주 후 필름이 끊겼던 경험 .....	254
〈부표 4-2-12〉 음주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험 .....	255
〈부표 4-2-13〉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	255
〈부표 4-2-14〉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	255
〈부표 4-2-15〉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	256
〈부표 4-2-16〉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	256
〈부표 4-2-17〉 가족생활 만족도 .....	256
〈부표 4-2-18〉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	257
〈부표 4-2-19〉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257
〈부표 4-2-20〉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	258
〈부표 5-1-1〉 인터넷 사용 여부 .....	259
〈부표 5-2-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	259
〈부표 5-2-2〉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	259
〈부표 5-2-3〉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	260
〈부표 5-2-4〉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빈도) .....	260
〈부표 5-2-5〉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경험 .....	260
〈부표 5-2-6〉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한 경험 .....	260
〈부표 6-1-1〉 국민연금 종별 가입 실태 .....	261
〈부표 6-1-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	261
〈부표 6-1-3〉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유형 .....	261



〈부표 6-1-4〉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	261
〈부표 6-1-5〉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	262
〈부표 6-1-6〉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미납 사유 .....	262
〈부표 6-1-7〉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기간 .....	262
〈부표 6-1-8〉 공적연금 미가입 사유 .....	262
〈부표 6-1-9〉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자 현황 .....	263
〈부표 6-1-10〉 국민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	263
〈부표 6-1-11〉 국민연금 연간 평균 연금-일시금 수급액 .....	263
〈부표 6-1-12〉 특수직역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	263
〈부표 6-1-13〉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	264
〈부표 6-1-14〉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	264
〈부표 6-1-15〉 보훈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	264
〈부표 6-1-16〉 보훈연금 연간 수급액 .....	264
〈부표 6-1-17〉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	265
〈부표 6-1-18〉 건강보험료 미납 사유 .....	265
〈부표 6-1-19〉 건강보험료 미납 기간 .....	265
〈부표 6-1-20〉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	266
〈부표 6-1-21〉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	266
〈부표 6-1-22〉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	266
〈부표 6-1-23〉 고용보험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	267
〈부표 6-1-24〉 고용보험 연간 수급액 .....	267
〈부표 6-1-25〉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	267
〈부표 6-1-26〉 산재보험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	268
〈부표 6-1-27〉 산재보험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	268
〈부표 6-1-28〉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	268
〈부표 6-1-29〉 개인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	268
〈부표 6-1-30〉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급액 .....	269
〈부표 6-2-1〉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개월 수 .....	269
〈부표 6-2-2〉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 수급 여부 .....	270
〈부표 6-2-3〉 의료급여 수급 시 문제점 .....	270
〈부표 6-2-4〉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사유 .....	270



〈부표 6-2-5〉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절성 평가 .....	272
〈부표 6-2-6〉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예상 소요 기간 .....	273
〈부표 6-2-7〉 탈수급의 주된 사유 .....	274
〈부표 6-2-8〉 탈수급하게 될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 .....	275
〈부표 6-2-9〉 근로(자녀)장려금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	275
〈부표 6-2-10〉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이 근로 의욕 변화에 미친 영향 .....	275
〈부표 6-2-1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 .....	275
〈부표 6-3-1〉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	276
〈부표 6-3-2〉 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 .....	276
〈부표 6-3-3〉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금액 .....	276
〈부표 6-3-4〉 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별 이용 경험 비율 .....	277
〈부표 6-3-5〉 노인 가구의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	277
〈부표 6-3-6〉 장애인 가구의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	277
〈부표 6-3-7〉 아동 가구의 기타 아동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	278
〈부표 6-3-8〉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여부 .....	278
〈부표 6-3-9〉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	278
〈부표 6-3-10〉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 .....	278
〈부표 7-1-1〉 현재의 사회 계층 구조 .....	279
〈부표 7-1-2〉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 계층 구조 .....	279
〈부표 7-1-3〉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의 평등 정도 .....	280
〈부표 7-1-4〉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280
〈부표 7-1-5〉 소득 격차 축소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	280
〈부표 7-1-6〉 정부가 실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281
〈부표 7-1-7〉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281
〈부표 7-1-8〉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 관리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	281
〈부표 7-1-9〉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	282
〈부표 7-1-10〉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	282
〈부표 7-1-11〉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 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때문이라는 인식 .....	282
〈부표 7-1-12〉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때문이라는 인식 .....	283
〈부표 7-1-13〉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학력 수준의 미흡 때문이라는 인식 .....	283
〈부표 7-1-14〉 빈곤의 원인이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인식 .....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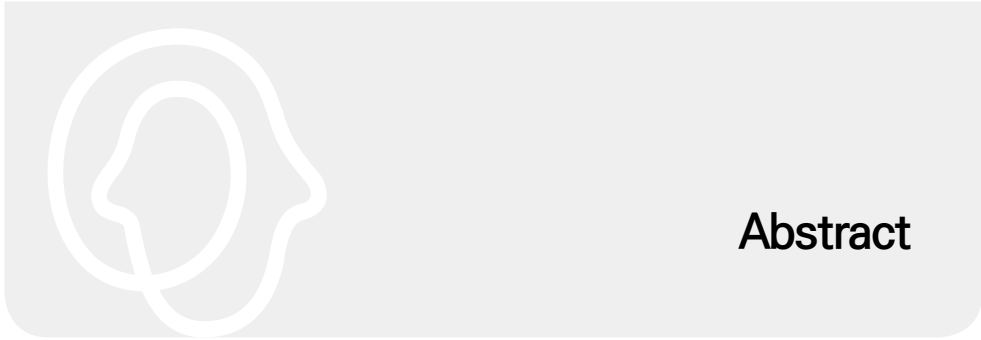
〈부표 7-1-15〉 빈곤의 원인이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	284
〈부표 7-1-16〉 빈곤의 원인이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때문이라는 인식 .....	284
〈부표 7-1-17〉 빈곤의 원인이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는 인식 .....	284
〈부표 7-1-18〉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 배경 등) 때문이라는 인식 .....	285
〈부표 7-1-19〉 환경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85
〈부표 7-1-20〉 건강보험 및 보건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85
〈부표 7-1-21〉 국민연금(기초연금)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86
〈부표 7-1-22〉 교육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86
〈부표 7-1-23〉 주거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86
〈부표 7-1-24〉 국방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87
〈부표 7-1-25〉 치안 및 사회 질서 유지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87
〈부표 7-1-26〉 빈곤층 생활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87
〈부표 7-1-27〉 노인 생활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88
〈부표 7-1-28〉 장애인 생활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88
〈부표 7-1-29〉 아이를 키우는 가족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88
〈부표 7-1-30〉 청년 사회활동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89
〈부표 7-1-31〉 외국인 주민의 권리보장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89
〈부표 7-1-32〉 실업 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89
〈부표 7-1-33〉 문화와 예술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90
〈부표 7-1-34〉 정부 행정 업무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90
〈부표 7-1-35〉 양성평등정책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290
〈부표 7-1-36〉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291
〈부표 7-1-37〉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	291
〈부표 7-1-38〉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	291
〈부표 7-1-39〉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 .....	292
〈부표 7-1-40〉 질 높고 충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292
〈부표 7-1-41〉 빈곤 예방 및 감소 .....	292
〈부표 7-1-42〉 실업에 대한 대응 .....	293
〈부표 7-1-43〉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	293
〈부표 7-1-44〉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293
〈부표 7-1-45〉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교육 .....	294



---

〈부표 7-1-46〉 외국인 주민의 노동권 및 시민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것 .....	294
〈부표 7-2-1〉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한 의견 .....	294
〈부표 7-2-2〉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 문제 1순위 .....	295
〈부표 7-2-3〉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 문제 2순위 .....	295
〈부표 7-3-1〉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	296
〈부표 7-3-2〉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 .....	296
〈부표 7-3-3〉 자신의 정치 성향 .....	296
〈부표 8-1-1〉 2020년 기준 모집단 가구 및 인구 분포 .....	297
〈부표 8-1-2〉 2020년 기준 모집단 거주 분포 .....	298
〈부표 8-1-3〉 2020년 기준 지역별 연령별 인구 수 .....	299
〈부표 8-1-4〉 2020년 기준 지역별 연령별 1인 가구 분포 .....	300
〈부표 8-1-5〉 2020년 기준 지역별 1인 가구의 거주 유형별 분포 .....	301
〈부표 8-2-1〉 주요 차수별 원패널 표본 가구 비교 .....	302
〈부표 8-2-2〉 주요 차수별 패널 가구 탈락률 비교(이주 가구 제외) .....	303
〈부표 8-2-3〉 7차 조사 대비 16차 조사 가구의 탈락률 .....	303
〈부표 8-2-4〉 조사 차수별 지역별 가구 구성 비율 비교(비가중) .....	304
〈부표 8-2-5〉 조사 차수별 가구원 수 구성 비율 비교(비가중) .....	304
〈부표 8-2-6〉 조사 차수별 지역별 가구주 성별 구성 비율 비교(비가중) .....	305
〈부표 8-2-7〉 조사 차수별 가구주 연령대별 구성 비율 비교(비가중) .....	305
〈부표 8-2-8〉 조사 차수별 지역별 인구의 성별 구성 비율 비교(비가중) .....	306
〈부표 8-2-9〉 조사 차수별 인구 기준 연령대별 구성 비율 비교(비가중) .....	306
〈부표 8-2-10〉 1차 표본 가구(7,000가구)의 가구주 성별 분포 .....	307
〈부표 8-2-11〉 1차 표본 가구(7,000가구)의 가구원 수 분포 .....	308
〈부표 8-3-1〉 17차 신규 표본 가구의 가구 가중치 분포 .....	309
〈부표 8-3-2〉 17차 신규 표본 가구의 개인 가중치 분포 .....	310





## Abstract

### **The 2022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Descriptive Report

Project Head: Joung, Eun Hee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cope flexibly with the changes in the people's economic status, consumption expenditures, value judgments, and the status of the economy-wide income distribution, poverty and inequality. However, existing cross-sectional survey data are insufficient for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dynamics because the age and cohort effects are not identifiable.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organized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in 2006.

In 2022, the 17th wave of KOWEPS was carried out. There were three types of questionnaires for the survey: the first was for the households, the second for the household members aged 15 and over, and the third for the particular topics (supplements). The content of KOWEPS is composed of socioeconomic information, welfare status, and attitude toward the welfare or something for individuals and households. The particular topic for this wave is 'Awareness on Welfare'. In this 17th wave, we completed about 7,865 household samples including both the original and the added new households.

---

Co-Researchers: Shin, Jae-Dong · Woo, Sun-Hee · Ha, Eun-Sol · Kim, Ji-Won · Park, Na-Young · Kim, Hyeongyu · Lee, jihye · Jung, Haesik · Hong, Sungwoon · Son, changkyun · Lee, Bongjoo · Kang, Sangkyoung · Park, Jung Min · Joung, Won Oh · Kim, Hwasun · Lim, Eunjeong · Kim, Gun

## 2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This descriptive report provides a wide variety of content about the general features, the economic conditions, the employment status, social security, welfare needs and the special topics for the 17th-year surveys. The results could be reference data for the researchers who would use KOWEPS.

Keyword : KOWEPS, welfare needs, awareness of welfare



## 1.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

### □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국민의 삶의 영역에서 복지 욕구에 대한 중요성 증가에 따라 정부의 정책 영역 중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풍부한 지식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동안 국민의 소득이나 소비 실태를 보여주고 복지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여러 종류의 횡단면 자료가 생산되어 정책 연구에 활용되어 옴.
  - 그러나 횡단면 조사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특성 및 연령 변화에 기인하는 다양한 복지 욕구의 변화 등을 추적하여 이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지출 및 노동시장 등의 복지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패널 조사 자료가 생산 및 구축되기 시작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2003년부터 저소득 가구 근로 능력자를 중심으로 자활패널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 가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패널을 구축함. 한편 이와 별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문제 및 빈곤의 역동성 분석에 초점을 두어 차상위·빈곤 패널을 2005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함.

- 그러나 이러한 3개의 패널 조사는 유사한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 목적만 달리 설정하고 있어 '비효율적 예산집행'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예산의 제약으로 대표성 있는 패널 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는 '비효과적 사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3개의 패널 조사를 각각 수행하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 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KOWEPS)'을 2006년도부터 구축함.

□ 한국복지패널 구축 목적

○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연령, 소득집단,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구체적인 조사 및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표본 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표본의 특성 측면에서도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 조사로 전국 지역별 가구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함.

□ 표본 추출 시 중위소득 60% 미만 저소득층 과대 표집으로 국내 패널 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빈곤 연구 등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 2. 한국복지패널 조사 개요

### □ 표본 추출

-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조사임.
- 최초 원표본 가구의 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대상은 표본 가구와 표본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 가구원, 그리고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됨.
  - 최초의 원표본 가구(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한 것임.
  - 표본의 배분은 복지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하였음. 즉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중위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음.
- 7차(2012년) 연도 신규 표본 1,800가구
  -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전체 조사구에서 완료 목표인 1,800가구의 3배수인 5,400가구를 추출하였음.
  -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 조사와 동일한 비율로 잡아 저소득 가구를 과대 표집하였고, 지역별 표본 배분 또한 1차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구 비율과 유사하게 하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음.
- 17차(2022년) 연도 신규 표본 2,012가구
  -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로 2021년에 통계청 조사구 리스트를 사용하여 7,000가구를 유치하였고, 2022년에 파악된 소득을 기반으로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전체 조사구에서 완료 목표인 2,000가구의 2배수인 4,000가구를 추출하였음.
  -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 조사와 동일한 비율(50:50)로 설계하였고, 원표본과 지역별 탈락률에 따른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존 패널과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음.

○ 복지 인식 부가조사 표본

- 2차 연도 복지 인식 부가조사는 1차 연도 패널 가구 중 지역별 층화 단순 임의 추출에 따라 총 1,259가구(일반 가구 689가구, 저소득 가구 57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가구주와 배우자 총 1,694명을 조사하였음. 이는 전체 표본 수를 기준으로 95% 신뢰 수준에서 허용 오차  $\pm 2.8\%$ 를 만족하는 표본 규모였음.
- 5차 연도에는 2차 연도 부가조사에 응답했던 가구를 중심으로 4차 연도 패널 표본 가구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총 1,444가구(일반 가구 828가구, 저소득 가구 616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 2,366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 8차 연도 복지 인식 부가조사는 7차 전체 표본 가구 중 지역별, 계층별로 확률 비례 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 가구(2,399가구)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5,05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 11차 연도 복지 인식 부가조사는 8차 연도 복지 인식 부가조사 대상자 중 11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2,121가구)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3,634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 14차 연도 복지 인식 부가조사는 11차 연도 복지 인식 부가조사 대상자 중 13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원(2,001명)과 추가로 13차 기준 만 18~21세에 속하는 가구원(387명)을 포함한 2,388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 17차 연도 복지 인식 부가조사는 11차 연도 및 14차 연도 복지 인식 부가조사 대상자 중 16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원 3,13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표 구성

- 조사표는 크게 가구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함.
- 가구용 조사표는 가구원 공통 항목에 대한 설문이 중심이고, 가구원용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중고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으로 구성함.
- 부가조사의 경우에는 아동, 복지 인식,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주기에 따라 2022년 17차 조사에서는 복지 인식에 대한 여섯 번째 부가조사를 수행함.

#### □ 조사 방법

-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기준 시점은 2021년이며, 조사 항목 중 유량(flow)의 경우 2021년 1~12월(1년)을, 저장(stock)의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조사대상 패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 대상 가구원을 만나 조사 대상이 응답한 내용을 현장에서 CAPI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타계식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컴퓨터를 이용한 CAPI 시스템에 따른 조사 방식은 2010년 5차 조사부터 도입 하였음.

### 3.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 조사 기간

- 본조사는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7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본조사 종료 후 바로 신규 추가 패널 조사는 7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함.

##### ○ 조사대상 가구

- 2021년 16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완료 가구 기준으로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예정 가구는 5,996가구이며, 이 중 원표본 가구는 3,816가구, 2~16차 조사 기간 중 분가로 발생한 분가 가구는 838가구, 2012년 추가 패널(7차) 조사대상 가구는 1,342가구(원표본: 1,239, 분가: 103)임.
- 15차 복지패널 조사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거부하였던 가구에 대한 복원을 17차 조사에서 시도하여 14가구[1차 원표본: 5, 분가 생성: 2, 2012년 추가 패널(7차) 원표본: 4, 2012년 추가 패널 분가 생성: 3]를 복원하였음.

- 17차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분가 가구는 147가구이고, 17차 부터 신규 표본으로 들어간 가구는 2,012가구임.
- 그 결과 17차 한국복지패널 전체 조사대상 가구는 8,169가구임.

○ 조사 완료 가구

- 16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대상 원표본 3,816가구 중 3,664가구에 대해 17차 패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원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은 97.85%로 높은 수준임.

□ 또한 최초의 원표본 7,072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51.81%이며, 전년도(53.96%)와 비교한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 감소폭은 2.15%p임.

- 17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3,664가구에 더해 기존의 분가 가구와 올해 발생한 추가 분가 가구를 포함한 888가구, 2012년 추가 패널 가구인 1,342가구 중에서 조사가 완료된 1,301가구, 2022년 추가 패널 가구인 2,012가구까지 총 7,865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조사대상이었던 8,169가구 중 7,865가구가 조사 완료(96.28%) 가구임.

○ 복지 인식 부가조사 조사대상 및 조사 완료 가구원

- 17차 연도 복지 인식 부가조사는 11차 연도 및 14차 연도 복지 인식 부가 조사대상자 중 16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원 3,130명을 조사대상으로 함.
- 17차 연도에 복지 인식 부가조사가 완료된 가구원은 총 2,829명(90.38%)임.

○ 조사 미완료 가구

- 17차 조사 미완료 가구는 총 304가구(+ 합가로 인한 탈락 18가구)로, 이 가운데 원표본 가구가 157가구, 분가 가구가 147가구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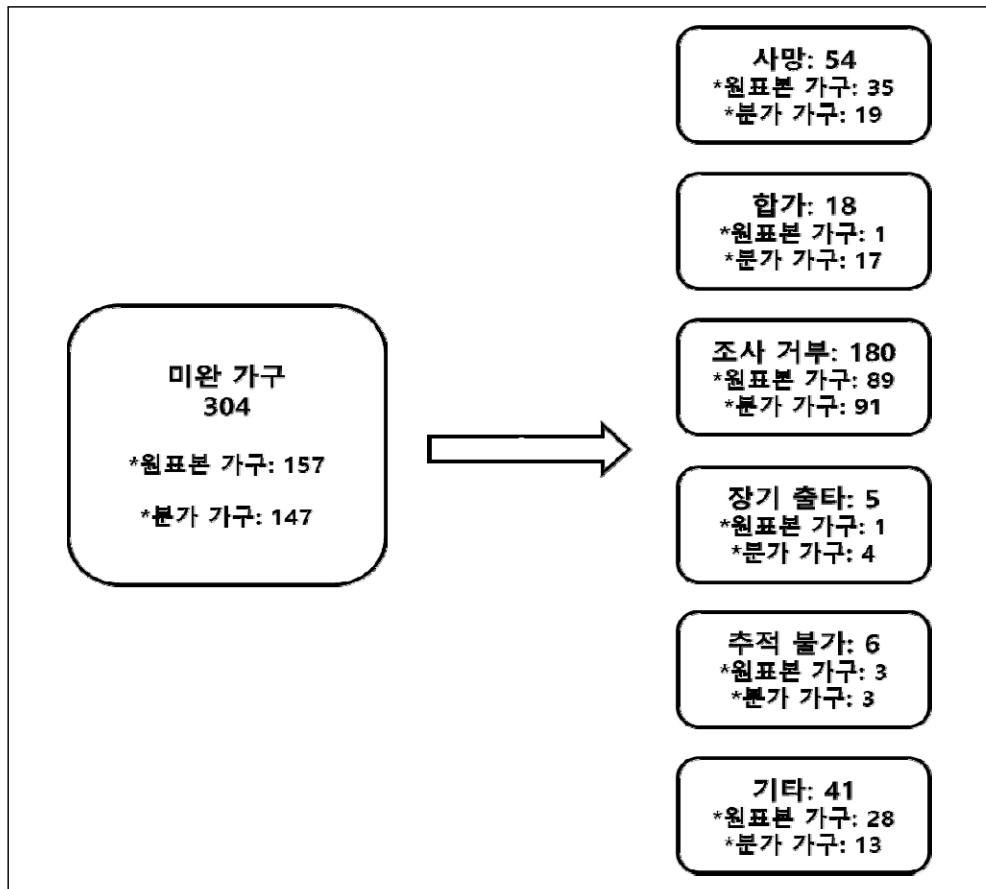
□ 여기에서 원표본은 기존 패널의 원표본을 의미하며, 분가 가구는 원표본의 신규 (2~17차 생성) 가구와 2012년 추가패널을 포함함.

- 조사 미완료 가구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체 미완료 가구(304가구) 중 조사



거부가 180가구(원표본 89, 분가 91)로 가장 높은 비중(59.21%)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연적인 탈락으로 볼 수 있는 사망 가구는 54가구(원표본 35, 분가 19)로 17.76%를 차지함. 또한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가구 중 기타(요양소 입소, 이민 등)가 41가구(원표본 28, 분가 13)로 13.49%인 것으로 분석되고, 합가 가구는 18가구(원표본 1, 분가 17)로 5.92%임. 그 밖에 이사 후 주소 부재로 인한 추적 불가 가구가 6가구(원표본 3, 분가 3), 장기 출타 가구가 5가구(원표본 1, 분가 4)로 나타남.

[요약 그림 1]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사유별 가구 현황



주: 합가의 경우 A가구에 B가구가 합가하여 B가구가 탈락됨(단, A가구에 B가구의 가구원이 포함되어 조사됨).

10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요약표 1> 2022년 17차 조사 수행 결과 및 1~17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p)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총 조사대상	17차 조사 완료	
기 존 패 널	원표본 가구 수	7,072	6,511	6,128	5,935	5,675	5,335	5,271	5,104	4,896	4,760	4,560 (13) <sup>1)</sup>	4,398 (11) <sup>2)</sup>	4,266 (10) <sup>3)</sup>	4,124 (15) <sup>4)</sup>	3,865	3,816 (51) <sup>5)</sup>	17차 총 조사대상 8,169가구 ↑ 16차 조사 완료 기준 조사대상 5,996가구 (기존 4,654가구) 신규 <sup>6)</sup> 1,342가구 + 복원 14가구 + 17차 분가 가구 조사대상 147가구 + 17차 신규 패널 조사대상 <sup>7)</sup> 2,012가구	3,664 (5) <sup>5)</sup>
	원표본 유지율	100.0%	92.07%	86.65%	83.92%	80.25%	75.44%	74.53%	72.17%	69.23%	67.31%	64.48%	62.19%	60.32%	58.31%	54.65%	53.96%		51.81%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 가구	-	561	383	193	260	340	64	167	208	136	200	162	132	142	259	49		152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폭	-	7.93%p	5.42%p	2.73%p	3.67%p	4.81%p	0.91%p	2.36%p	2.94%p	1.92%p	2.83%p	2.29%p	1.87%p	2.01%p	3.66%p	0.69%p		2.15%p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율	-	7.93%	5.88%	3.15%	4.38%	5.99%	1.21%	3.17%	4.08%	2.78%	4.20%	3.55%	3.00%	3.33%	6.28%	1.27%		3.98%
	기존 분가 가구 (2차~전년 도)	-	-	60	167	249	328	383	433	481	517	556	596	662	703(1) <sup>4)</sup>	713(1) <sup>5)</sup>	761(9) <sup>5)</sup>		785(2) <sup>5)</sup>
	추가 분가 가구 (당해 연도)	-	69	126	105	110	72	78	82	61	66	73	87	69	65	76	77		103
	전체 분가 가구	-	69	186	272	359	400	461	515	542	583	629	683	731	768	789	838		888
	전 체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5,619	5,438	5,343	5,189	5,081	4,997	4,892	4,654	4,654		4,552
	2012년 추가 패널	원표본 가구 수	-	-	-	-	-	1,800	1,690	1,594	1,534	1,478	1,426 (1) <sup>2)</sup>	1,392 (2) <sup>3)</sup>	1,343 (3) <sup>4)</sup>	1,281	1,239 (6) <sup>5)</sup>		84(2) <sup>5)</sup>
2022년 추가 패널	분 가 가 구	기존 분가 가구	-	-	-	-	-	-	3	16	34	55	70	78	85	84(2) <sup>5)</sup>	104(3) <sup>5)</sup>		
		추가 분가 가구	-	-	-	-	-	-	3	13	21	22	19	18	9	19	9		
		전체 분가 가구	-	-	-	-	-	-	-	3	16	37	56	74	85	94	103	113	
		전 체	-	-	-	-	-	1,800	1,693	1,610	1,571	1,534	1,500	1,477	1,439	1,375	1,342	1,301	
2022년 추가 패널	원표본 가구 수																	2,012 <sup>7)</sup>	
조사 완료 총 표본 가구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7,312	7,048	6,914	6,723	6,581	6,474	6,331	6,029	5,996		7,865	

주: 1) 8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2) 9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3) 10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4) 11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5) 15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사 거부 가구를 복원함.  
 6) 추가는 2012년 추가패널을 의미함. 7) 추가는 2022년 추가패널을 의미함.

주요 용어 : 한국복지패널(KOWEPS) 복지 욕구, 복지 인식



# 제1장

## 서론

제1절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

제2절 한국복지패널 조사 개요

제3절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제 1 장 서론

## 제1절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sup>1)</sup>

### 1.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국민의 삶의 영역에서 복지 욕구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 영역 중에서도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각종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대, 이에 따른 복지 재정의 증가와 복지 인력의 확충 등 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증대되는 경향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풍부한 지식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

그동안 국민의 소득이나 소비 실태를 보여주고 복지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여러 종류의 횡단면 자료가 생산되어 정책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국민이 어떠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떠한 복지 욕구가 있으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즉 횡단면 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특성 및 연령 변화에 기인하는 다양한 복지 욕구의 변화 등을 적절히 추적하여 보여주지 못하고, 따라서 이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횡단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종단적 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의 PSID, 일본의 KHPS/JHPS,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유럽의 ECHP, 캐나다의 SLID, 호주의 HILDA 등과 같이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 조사 자료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패널 데이터의 분석

1) '제1절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을 포함한 서론은 김태완 외(2018),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포함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

결과는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지출, 노동시장 등의 복지 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패널 조사 자료가 생산 및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대우경제 연구소의 대우패널,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을 시작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형식으로 2003년부터 저소득 가구 근로 능력자를 중심으로 자활패널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형식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 가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패널(1차 조사 표본 3,855가구)을 구축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문제와 빈곤의 역동성 분석에 초점을 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 패널(1차 조사 표본 1,142가구)이 2005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 복지정책 영역에서 수행된 3개의 패널 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즉 분석의 목적이나 초점이 다소 다를 뿐 유사한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각각의 패널 조사가 예산의 제약으로 충분한 유효 표본 수를 확보하지 못해 대표성 있는 패널 데이터를 생산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3개의 패널 조사를 각각 수행하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 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확대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을 2006년도부터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활패널과 복지패널 구축을 위한 예산을 재정 당국에 개별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해당 예산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대사업 예산으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기존의 복지패널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한국복지패널(KOWEPS)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에 참여함으로써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복지패널 연구를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2. 한국복지패널 구축 목적 및 기대 효과

한국복지패널(KOWEPS)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20여년간

소득보장제도의 지속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 등의 소득 수준, 취업 상태의 질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연령, 소득집단,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조사 및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과정을 거쳤다. 이는 여타 패널 자료보다 한국복지패널이 가지는 우수한 장점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로 조사의 생명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통계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는 선진국일수록 통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후진국일수록 통계가 빈약하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은 여러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가능한데, 무엇보다도 적절한 표본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한국복지패널(KOWEPS)은 국내 가구 단위의 패널 중 가장 큰 표본 수를 확보하였다. 1차 조사 당시 대규모의 원표본(7,072가구 및 동 가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을 추출하여 구축하였고,<sup>2)</sup> 1차 조사 후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원표본 가구 유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조사 수행 과정 및 패널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3)</sup> 그 결과 한국복지패널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2차 조사의 92.07%를 시작으로, 3차 조사 86.65%, 4차 조사 83.92%, 5차 조사 80.25%, 6차 조사 75.44%, 7차 조사 73.53%, 8차 조사 72.17%, 9차 조사 69.23%, 10차 조사 67.31%, 11차 조사 64.48%, 12차 조사 62.19%, 13차 조사 60.32%, 14차 조사 58.31%, 15차 조사 54.65%, 16차 조사 53.96%, 17차 조사에서 51.81%를 유지하였다. 최초 원표본 7,072가구 기준

2) 한국복지패널은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 단위의 패널 조사 중 한국의료패널 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 조사다. 한국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패널 조사로 2008년부터 조사를 실시해 왔다.

3) 한국복지패널은 정부 승인 지정 통계 조사(승인번호 제331009호)로, 표본 관리를 위하여 패널 가구원 수에 따른 조사 답례품, 연하장, 명절 선물 2회(설·추석), 이사 선물 등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표본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전년도(53.96%)에 비교하여 2.15%p 감소폭을 보였다.

원표본 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표본을 100% 지켜 내는 일은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패널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원표본 탈락이 누적되고 표본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2012년 7차 조사에서 1,800가구, 2022년 17차 조사에서 2,012가구를 신규 표본으로 추가하여 조사대상 가구를 확충하였다. 그 결과 올해 17차 조사 완료 가구는 7,865가구(기존 패널 3,664가구, 분가 가구 888가구, 7차 신규 패널 1,301가구, 17차 신규 패널 2,012가구)에 이를 정도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조사에서 표본 수가 많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오차가 작아지고, 현실적으로는 세부 단위까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일정 기간 신규 표본으로 추가된 가구에 대해 종단적 분석을 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한국복지패널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해당 표본의 활용상 장애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표본의 규모뿐만 아니라 표본의 특성 측면에서 볼 때도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 조사이다. 최초의 원표본 가구 추출 시 전국의 3만 가구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소득)를 바탕으로 층화 이중 추출(stratified double sampling)을 함으로써 한국복지패널은 전국 지역별 가구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은 지역적으로는 ‘제주도’까지, 가구 유형으로는 ‘농어가’까지를 조사대상 가구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

또한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표본 추출 시 중위 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여 국내 패널 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 표본 가구를 확보하고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높다고 해서 훌륭한 패널 데이터로서 충분조건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 결과의 질적인 측면이 담보되어야만 충분조건이 달성된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패널 연구진, 패널 조사팀, 조사원, 표본 가구’ 간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고, 조사 수행 과정에서 모든 참여 주체의 책임감과 체감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한국복지패널 조사 원표본 가구 유지율 관리, 조사 효율성 및 조사 결과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사전 조사표 검토 및 의견 공유, 철저한 조사원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연구진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은 조사표를 개발한 연구진과 연계하여 즉각적으로 해소 및 처리하였다. 조사 수행 과정에서 조사팀은 3인 1조(조사 지도원 1인, 조사원 2인) 14개 팀<sup>4)</sup> (전국 조사에는 5개 팀과 지역 조사에는 9개 팀으로 광주·전남, 전주·전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울산권으로 구성)과 1인 체계 5인(수도권 2인, 전국 3인)으로 운영하였다. 조사 지도원의 사전 계획과 지도에 따라 조사원이 조사한 결과를 조사 지도원이 현장에서 에디팅하여 의문점이나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보완 조사 및 재조사를 하였다.

특히 2010년 5차 조사부터는 면접 조사 수행 및 자료의 처리 과정에서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을 새로 도입하였고, 올해 17차 조사까지도 지속적으로 조사 내용을 반영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API 방식은 조사원이 조사 내용을 조사표에 기입하던 기존의 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조사원이 면접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을 현장에서 컴퓨터에 입력하여 조사 지도원에게 전송하면 조사 지도원이 조사 자료에 대한 에디팅을 엄격하게 실시한 뒤 결과를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 방식의 변화가 조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원을 대상으로 매해 컴퓨터와 CAPI 시스템 활용 설명회를 열고 있다. CAPI 방식은 패널 조사 결과의 에디팅 및 취합, 그리고 자료 내검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조사 수행 시점을 앞당겼다. 2011년 6차 조사까지는 조사 수행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5월) 무렵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전년도의 생활실태 등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2012년 7차 한국복지패널에서는 2월부터 조사를 착수하여 상반기에 추적 조사까지 완료하였고, 2014년 9차 한국복지패널부터는 3월에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 기간을 변경하면서 자료 제공 시점도 조정하였다. 기초분석

4) 5개 팀: 전국팀(지도원 1인+조사원 2인) - 전국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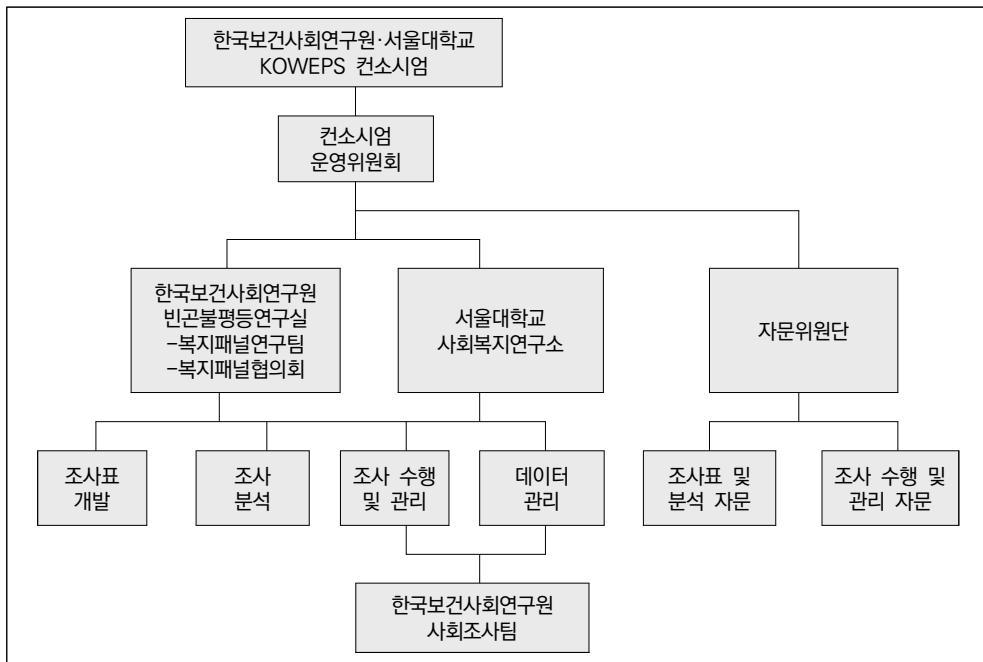
9개 팀: 지역팀(지도원 1인+조사원 2인) - 광주·전남, 전주·전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울산권

1인 체계: 전국 조사(1인 체계 5인) - 수도권 2인, 전국 3인

보고서에서 발견된 문제를 확인하고 수정해 다음 해 초에 지난해 조사된 자료를 제공하여 자료의 시의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2022년 17차 조사에서 생산된 2021년 기준 자료는 2023년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복지패널(KOWEPS)에서는 조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뿐만 아니라 조사 내용의 전문성 및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여타 기관에서 생산 및 구축한 패널과 달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연구 및 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분야별 전문성 및 연구 능력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1-1] 한국복지패널(KOWEPS) 관리 및 운영 체계



두 번째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사회과학 영역의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조사 내용을 포함한 조사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복지정책은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진은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 다양한 복지 지표, 복지정책 등에 대한 이론 및 현실을 검토하여 조사표를 개발·보완하고 있으며, 패널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문항을 조사하여 수요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조사 결과는 매년 개최하는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학술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정책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 과제에 활용되는 등 한국복지패널을 기초로 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패널 자료를 구축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국가 간 복지정책의 수렴 현상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국가 간 빈곤 및 불평등 실태와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 연구는 그 나라의 복지 수준과 국민의 복지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패널 자료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복지패널 연구진은 외국의 복지 관련 패널 조사 문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조사표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목적에 따라 한국복지패널(KOWEPS)은 올해 17차 조사까지 지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복지패널은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패널 데이터가 구축됨으로써 빈곤층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와 실태, 사회보장, 경제활동 상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국민의 경제·사회적 행태 변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규모와 실태 변화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관련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상당수의 사회복지 관련 통계 조사는 관련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사회복지와 관련한 통계 인프라 정비, 사회복지 관련 기초 자료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조사 원자료 및 기초분석 보고서, 설문지 등 패널

조사와 관련한 기초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s://www.koweps.re.kr:442>)를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쳐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적 통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 분야별 연구 활성화 및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는 연구의 특성상 상당 부분 데이터에 의존하는 계량적 연구가 필수적임에도 그동안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 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분석 및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학술대회에서 공유함으로써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절 한국복지패널 조사 개요

### 1. 표본 추출

한국복지패널(KOWEPS)은 제주도, 농어가 및 읍·면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구체적인 표본 추출은 2장에서 설명하므로 여기에서는 최초 원표본 가구 추출 및 신규 표본 추출, 그리고 부가조사인 ‘복지 인식 부가조사’의 표본 추출과 관련된 개요를 서술한다.

최초의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의 규모는 7,072가구<sup>5)</sup>이며 조사대상은 표본 가구, 표본 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그리고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된다. 최초의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경우 ‘2005년 인구총조사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하였다. 표본 배분은 복지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하였다. 즉 중위소득 60%(OECD 상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중위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다.<sup>6)</sup>

5) 목표 원표본 가구 수는 7,000가구였으나 1차 조사 결과 7,072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6)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비율이 50:50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조사 결과 저소득 가구 비율이 약

2012년 신규 패널 표본으로는 사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전체 조사구에서 완료 목표 1,800가구의 3배수인 5,400가구를 추출하였다. 2022년 신규 패널 표본으로는 사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전체 조사구에서 완료 목표 2,000가구<sup>7)</sup>의 2배수인 4,000가구를 추출하였다. 2012년 및 2022년 신규 패널 표본은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 연도와 동일하게 저소득 가구를 과대 표집하였다. 2012년 신규 패널 표본의 지역별 표본 배분은 1차 연도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구 비율과 유사하게 표본 가구를 배분하였고, 2022년 신규 패널 표본은 원표본과 탈락률에 따른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여 1~16차 패널을 보완되도록 추출하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각종 통계 분석 결과표는 신규 표본을 포함한 분석 결과다. 단 종단분석의 경우에는 분석 목적에 따라 신규 표본 가구의 포함 여부가 다르다.

부가조사인 ‘복지 인식 부가조사’의 경우, 11차 연도 및 14차 연도 복지 인식 부가조사 대상자 중 16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원 3,13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2,829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다.

## 2. 조사표 구성

한국복지패널(KOWEPS)의 조사표는 가구용 조사표, 가구원(개인)용 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된다. 가구용 조사표는 가구 여건 및 가구원 공통 항목에 대한 설문이 중심이고, 가구원용 조사표의 경우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45%. 일반 가구 비율이 약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7) 목표 가구 수는 2,000가구였으나 조사 결과 2,012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표 1-2-1〉 한국복지패널 조사표 구성 및 조사대상

가구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표	부가 조사표(복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li> <li>• 조사 방법: 가구 방문을 통한 직접 면접 조사</li> <li>• 기준 시점: 전년도 12월 31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li> <li>• 조사 방법: 가구 방문을 통한 직접 면접 조사</li> <li>• 기준 시점: 전년도 12월 31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5, 8, 11, 14차 복지 인식 부가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응답한 만 19세 이상 가구원</li> <li>• 조사 방법: 가구 방문을 통한 직접 면접 조사</li> <li>• 기준 시점: 조사일 현재</li> </ul>

### 3. 조사원 및 조사 방법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기준 시점은 2021년이며, 조사 항목 중 유량(flow)의 경우는 2021년 1~12월(1년)을 기준으로, 저장(stock)의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이번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원 47명이 수행하였다. 47명의 조사원은 조사 지도원 1인, 조사원 2인으로 팀을 조직하였다.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광주·전남, 전주·전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울산 지역은 지도원 9인, 조사원 18인으로 9개 팀을 구성하였고, 전국 조사 5개 팀, 지역 조사 9개 팀, 1인체제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조사 지도원은 조사대상 패널 가구가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를 사전에 방문하여 조사에 협조를 구하고, 조사원은 조사대상 패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 대상 가구원을 만나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조사대상이 응답한 내용을 현장에서 입력하는 타계식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심야 귀가나 장기 출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 기간에 조사원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 거주, 여행이나 출장, 병원 입소, 군대 입대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가구원이 가구에 없는 경우에는 유치·전화 조사나 대리 응답 조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병행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 1~4차 조사와 달리 2010년 5차 조사 이후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종이 조사표를 이용한 기존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이용한 CAPI 시스템 조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의 전환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CAPI 시스템 등

컴퓨터 활용 교육이 조사표 내용에 대한 교육 이전에 이루어졌다. 조사 방식의 변화에 따라 발전된 사항은 조사한 내용을 1차적으로 현장에서 조사 지도원이 에디팅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각 보완 조사를 할 수 있고, 재검토를 통해 완성된 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조사 내용을 별도로 입력하고 오류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CAPI 시스템에 탑재된 기본적 로직을 통해 조사 및 입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었다.

### 제3절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1.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개선 사항

최초 원표본 7,072가구로 시작한 한국복지패널은 1~2차 패널 조사 수행 중 561가구(전년 대비 7.93%)의 원표본 가구가 탈락된 이래 유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6차 패널 조사 시 표본 유지율은 75.44%였다. 이로 인해 표본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논의되어 2012년에 1,800가구를 신규 표본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패널의 특성상 패널 노후화, 응답자 피로 증가 등으로 표본 탈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2019년도 이후 추가 표본의 필요성이 다시 검토되었다. 2020년도에 탈락된 표본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추가 표본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였다.

2022년도 한국복지패널 추가 표본은 1~16차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마모되는 패널 표본의 통계 분석 유의성을 확보하고, 복지패널로부터 산출되는 통계의 신뢰성 보장 및 복지정책 대상자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적절히 분석하고자 17차 조사에서 신규 패널 2,012가구를 추가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조사가 16년간 지속되어 온 만큼 앞으로도 표본 탈락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표본 가구 유지와 관리를 위해 기존에 지속해 오던 조사 답례품, 명절 선물, 이사 선물 등의 감사 답례품 전달 및 조사 활용 결과에 대한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sup>8)</sup>

## 2.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반기 중 17차 패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말부터 조사 사전 준비에 착수하여 2022년 3월 28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7월 2일까지 총 97일 동안 모든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번 17차 한국복지패널의 조사대상 표본 가구는 17개 시·도, 243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어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이와 같이 2022년에 완료된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2021년 16차 조사 완료 가구 기준으로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예정 가구 규모는 5,996가구이다. 이 중 원표본은 3,816가구, 2~16차 조사 기간 중 분가로 발생한 신규 가구는 838가구, 7차부터 추가 표본으로 들어간 가구는 1,342가구(2012년 추가 패널 원표본: 1,239가구, 8~15차 조사 기간 중 분가로 발생한 신규 가구: 103가구)이다. 17차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분가 가구는 147가구이다. 16차 복지패널 조사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조사 거부를 했던 가구에 대한 복원을 17차 조사에서 시도하여 14가구를 복원하였다. 이를 포함한 17차 한국복지패널 전체 조사대상 가구는 8,169가구이다.

다음으로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완료 가구를 살펴보면, 16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대상 원표본 3,816가구 중 탈락된 원표본 152가구를 제외한 3,664가구에 대해 17차 패널 조사가 완료됐는데, 원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이 97.8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최초 원표본 7,072가구 기준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51.81%이며 전년도(53.96%)와 비교한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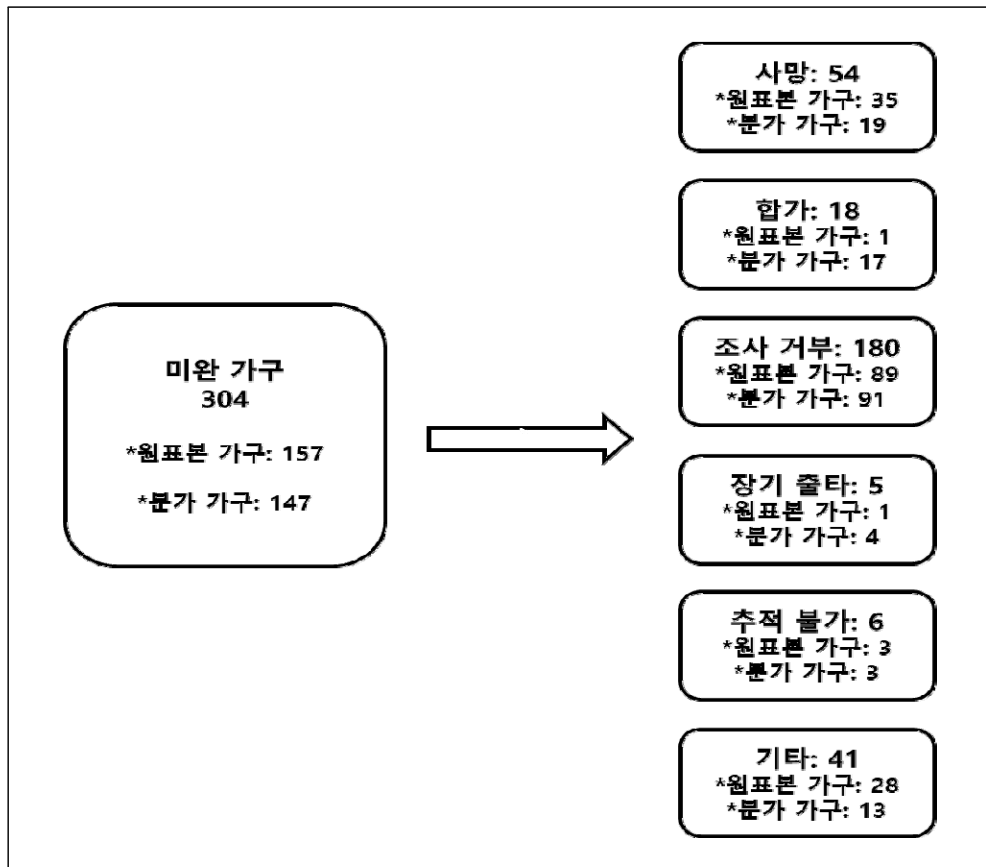
8) 실제로 수행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명절 패널 가구에 조사 협조 및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패널조사 10주년 기념 의미로 설 선물 및 추석 선물 단가를 일시 상향 조정하여 선물을 보냈다. 2) 패널 가구의 주소지 변경을 연구원에 알려주면 소정의 이사 선물을 수시로 보내며, 표본 유지와 관리 차원으로 분가 생성된 가구에도 선물을 발송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발간된 기초분석 연구보고서를 특별판으로 제작하여 패널 가구에 지급하고(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조사 일정이 지연되어 매년 방문하는 시기에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선 방역 세트를 구매하여 지급하였다(2015년). 최근에는 복지패널 자료가 활용된 연구를 인용한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리플릿을 패널 가구에 배포함으로써 가구의 응답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어떠한 사회적 파급력을 갖는지 알고고자 하였다(2016년). 또 조사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사 답례품의 단가 인상과 조사원 수당 인상을 검토하였고, 외부 자문 회의로 조사원 수당 인상의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수당을 인상하였다(2016년). 조사 사례비 비용을 2배 인상하여 난이도 있는 조사 응답에 대한 사례비를 현실화하였으며(2022), 태풍(힌남노)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패널 가구에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여 복지패널 가구 유지에 힘썼다(2022).



감소폭은 2.15%p이다. 마지막으로 17차 조사 미완료 가구는 총 304가구로, 이 가운데 원표본 가구가 157가구, 분가 가구가 147가구이다.

조사 미완료 가구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조사 거부가 180가구(원표본 89, 분가 91)로 가장 큰 비중(59.21%)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연적인 탈락으로 볼 수 있는 사망 가구가 17.76%(54가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가구 중 기타는 13.49%(41가구)로 분석되었고, 합가 가구도 18가구(원표본 1, 분가 17)인 5.92%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이사 후 주소 부재로 인한 추적 불가 가구가 6가구(원표본 3, 분가 3), 장기 출타 가구가 5가구(원표본 1, 분가 4)였다([그림 1-3-1] 참조).

[그림 1-3-1]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사유별 가구 현황



주: 합가의 경우 A가구에 B가구가 합가하여 B가구가 탈락됨(단 A가구에 B가구의 가구원이 포함되어 조사됨).

이상에서 살펴본 2022년 17차 조사 수행 결과 및 1~17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 추이는 <표 1-3-1>과 같다.

<표 1-3-1> 2022년 17차 조사 수행 결과 및 1~17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p)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총 조사대상	17차 조사 완료		
기 존 패 널	원표본 가구 수	7,072	6,511	6,128	5,935	5,675	5,335	5,271	5,104	4,896	4,760	4,560 (13) <sup>1)</sup>	4,398 (11) <sup>2)</sup>	4,266 (10) <sup>3)</sup>	4,124 (15) <sup>4)</sup>	3,865	3,816 (51) <sup>5)</sup>		3,664 (5) <sup>6)</sup>	
	원표본 유지율	100.0%	92.07%p	86.65%p	83.92%p	80.25%p	75.44%p	74.53%p	72.17%p	69.23%p	67.31%p	64.48%p	62.19%p	60.32%p	58.31%p	54.65%p	53.96%p		51.81%p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 가구	-	561	383	193	260	340	64	167	208	136	200	162	132	142	259	49		152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폭	-	7.93%p	5.42%p	2.73%p	3.67%p	4.81%p	0.91%p	2.36%p	2.94%p	1.92%p	2.83%p	2.29%p	1.87%p	2.01%p	3.66%p	0.69%p		2.15%p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율	-	7.93%	5.88%	3.15%	4.38%	5.99%	1.21%	3.17%	4.08%	2.78%	4.20%	3.55%	3.00%	3.33%	6.28%	1.27%		3.98%	
	기존 분가 가구 (2차~전년 도)	-	-	60	167	249	328	383	433	481	517	556	596	662	703(1) <sup>7)</sup>	713(1) <sup>7)</sup>	761(9) <sup>7)</sup>		17차 분가 가구 포함 총 조사대상 8,169가구 ↑	785(2) <sup>5)</sup>
	추가 분가 가구 (당해 연도)	-	69	126	105	110	72	78	82	61	66	73	87	69	65	76	77		16차 조사 완료 기준 조사대상 5,996가구 (기존 4,654가구) (신규 <sup>6)</sup> 1,342가구)	103
	전체 분가 가구	-	69	186	272	359	400	461	515	542	583	629	683	731	768	789	838		888	
	전 체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5,619	5,438	5,343	5,189	5,081	4,997	4,892	4,654	4,654		4,552	
	2012년 추가 패널	원표본 가구 수	-	-	-	-	-	1,800	1,690	1,594	1,534	1,478	1,426 (1) <sup>3)</sup>	1,392 (2) <sup>3)</sup>	1,343 (3) <sup>3)</sup>	1,281	1,239 (6) <sup>3)</sup>		복원 14가구 +	1,188(4) <sup>3)</sup>
분가 가구	기존 분가 가구	-	-	-	-	-	-	-	3	16	34	55	70	78	85	84(2) <sup>5)</sup>		17차 분가 가구 조사대상 147가구	104(3) <sup>5)</sup>	
추가 분가 가구	추가 분가 가구	-	-	-	-	-	-	3	13	21	22	19	15	18	9	19		+	9	
전체 분가 가구	전체 분가 가구	-	-	-	-	-	-	3	16	37	56	74	85	96	94	103		17차 신규 패널 조사대상 <sup>7)</sup> 2,012가구	113	
전 체	-	-	-	-	-	-	1,800	1,693	1,610	1,571	1,534	1,500	1,477	1,439	1,375	1,342		1,301		
2022년 추가 패널	원표본 가구 수																		2,012 <sup>7)</sup>	
조사 완료 총 표본 가구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7,312	7,048	6,914	6,723	6,581	6,474	6,331	6,029	5,996		7,865		

주: 1) 8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2) 9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3) 10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4) 11차에서 탈락한 가구를 복원함. 5) 15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사 거부 가구를 복원함.  
 6) 추가는 2012년 추가 패널을 의미함. 7) 추가는 2022년 추가 패널을 의미함.

### 3. 한국복지패널 2022년 신규 표본 구축 결과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실태와 빈곤에 관한 연구 및 복지정책의 효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 활용도와 관심도가 높은 패널 조사이다.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표본 가구 소멸과 탈락으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표본 유지와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및 조사원 교육 관리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동일인(가구)을 매년 반복 조사하는 데서 오는 응답자의 피로감 누적과 응답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표본의 자연적 탈락, 이사로 인한 응답자 추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원표본 유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복지패널은 2012년도에 한 차례에 이어, 2022년도에 두 번째 신규 표본을 추가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하는 특성상 소득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 표본을 위해 필요한 가구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2021년에 신규패널 추가를 위한 7,000가구 표본을 구축했다.

2021년도 7,000가구 표본 조사는 10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7,000여 가구의 주소지에 조사원이 방문하는 타계식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내용은 가구 구성 및 응답자 일반사항(응답자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출생연도 등)과 가구 소득(경상소득)이다. 7,000가구 조사 완료 후 패널 탈락 및 저소득 가구 과대 표집 등을 고려하여 2차 표본 2,000가구를 배분하였다. 최종적으로 2022년 신규 표본 2,012가구를 구축했다.





## 제2장

### 표본 특성 및 가중치 조정

제1절 조사 개요 및 표본 규모

제2절 2022년 추가 패널 표본 설계

제3절 17차 조사 표본 특성 및 가중치 조정



## 제 2 장 표본 특성 및 가중치 조정

### 제1절 조사 개요 및 표본 규모<sup>9)</sup>

#### 1. 조사 개요

한국복지패널(KOWEPS) 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또는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취업 상태 등의 급격한 변화를 파악하고자 이들의 규모와 상태 변화를 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소득집단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 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표 2-1-1〉 KOWEPS 표본의 개요

조 사 명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90%)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2021년 표본조사
조사구	23만여 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구 수	1,400만여 가구	3만 가구	7,000가구
추출 방법	-	2단계 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표성	-	전국	전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소득층의 복지 수요 및 욕구를 적절히 조사하기 위해 2006년도에 조사대상 가구로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50%씩 추출하여 패널 표본 가구를 구축하였다.

2006년도의 패널 구축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소득집단에 따라 패널을 구축하기 위해 표본 대상 가구의 소득 자료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 복지패널 조사의 표본 특성과 가중치 조정에 관한 내용은 정은희 외(2021). 202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17차 가중치 조정 결과를 포함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

90% 자료'에서 확률 비례 추출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최종 조사 완료 가구인 2만 4,711가구의 소득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구분하여 두 층에서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최종 패널로 구축된 표본 가구는 7,072가구였다. 표본 추출 과정에서 저소득층 가구는 향후 패널 탈락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과대표집하였다.

2011년 6차 조사 이후에는 원표본 탈락에 따른 표본 가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7차 패널 조사에서 신규 표본 가구를 조사하였다. 이때 신규 표본 가구 추가 시 필요한 구체적인 표본 추출 및 조사 수행 방안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조사 수행을 위한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전 준비 작업을 마쳤고 신규 표본 가구 1,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2020년 15차 조사 이후에도 원표본 탈락에 따른 표본 가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1년에 신규 표본 가구 추가 시 필요한 구체적인 표본 추출 및 조사 수행 방안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조사 수행을 위한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전 준비 작업을 마쳤다. 2021년 하반기에 7,000가구 표본을 구축했으며, 2022년 17차 패널조사에서 신규 표본 가구 2,01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 2. 표본 규모

### 가. 패널 원표본 가구 구축 과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 필요한 표본 가구 약 3만 가구를 조사하기 위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인 23만여 개의 조사구 중 517개를 지역별 조사구의 규모에 따라 층화 확률 비례 추출하였다.

전체 517개 표본 조사구 중 수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한 487개 조사구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섬을 제외한 전국의 각 시·도이며, 제주도를 포함한다.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2만 4,711가구의 소득을 기준



으로 7,000가구를 2단계 표본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7,072가구를 패널로 구축하였다.

1단계 표집 자료인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가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 이상인 일반 가구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이때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표 2-1-2>와 같으며, 최종적으로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였다.

<표 2-1-2>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분류 기준

(단위: 가구, %)

중위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	
	가구 수	백분율	가구 수	백분율	가구 수	백분율
< 40%	2,481	10.00	2,489	10.09	3,477	13.96
< 50%	4,016	16.12	3,880	15.62	4,757	19.04
< 60%	5,227	22.56	5,473	22.25	6,128	24.76

소득 규모별로 구분된 2개의 층에서 지역별, 조사구별로 확률 비례 계통 추출에 따라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는 추출률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3,500가구를 표본 가구로 선정하였다.

KOWEPS의 1차 조사에서 구축된 패널 가구를 소득 기준별로 살펴보면 <표 2-1-3>과 같다.

패널로 구축된 표본 가구를 당초 층별로 3,500가구씩 배분하였으나 조사 거절, 패널 참여 거부 등의 사유로 저소득층에서는 표본 설계 당시의 3,500가구를 약간 밑도는 3,283가구가 패널로 구축되었다.

일반 가구는 평균 100% 이상의 완료율을 보인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약 94%의 완료율을 보여 저소득층 가구의 조사 거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 가구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목표 오차는 약 2.7~11.1%로 지역별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가구의 탈락률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단면 조사인 패널 조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패널 자료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패널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널 대상 가구의 탈락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고려해 1차 조사 당시 패널 가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거부율과 비협조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표본 가구를 선정하였다. 이때 조사구별 표본 가구는 계통 추출을 하여 선정하였으며, 만일 조사대상 표본 가구가 조사를 거절하면 순서상 다음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1-3〉 KOWEPS 1차 조사의 지역별 조사구와 가구 분포 현황

(단위: 가구)

지역	조사구 수		일반 가구		저소득 가구		합계	
	표본 조사구 수	완료 조사구	표본 배분 가구 수	완료 가구 수	표본 배분 가구 수	완료 가구 수	표본 배분 가구 수	완료 가구 수
서울	93	93	811	886	506	449	1,317	1,335
부산	33	33	254	277	272	251	526	528
대구	25	25	187	204	227	218	414	422
인천	28	28	228	247	193	190	421	437
광주	15	15	114	123	130	121	244	244
대전	14	14	118	132	89	76	207	208
울산	14	14	120	124	82	79	202	203
경기	76	76	644	706	471	426	1,115	1,130
강원	14	14	102	118	131	118	233	236
충북	14	14	108	113	113	107	221	221
충남	20	20	153	161	168	160	321	321
전북	20	20	138	140	209	207	347	347
전남	19	19	104	109	273	268	377	377
경북	26	26	152	164	339	329	491	494
경남	30	30	229	240	254	248	483	488
제주	5	5	38	45	43	36	81	81
합계	446	446	3,500	3,789	3,500	3,283	7,000	7,072

#### 나. 2012년 추가 패널 가구 구축 과정

한국복지패널의 6차 연도 조사 이후에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 표본 가구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저소득층 가구와 가구원의 분포가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지역별 표본 규모는 잦은 이주와 탈락 등의 사유로

변동이 생겼다. 따라서 7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패널 표본 규모를 유지하고자 약 1,800가구를 추가하여 신규 패널을 구축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표본을 직접 추출하지 않고,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에서 이중 추출(double sampling) 방식으로 7,072가구를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신규 표본 추가를 위한 표본 추출 방법도 1차 조사와 동일한 방식을 고려하였다.

1차 조사 당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패널로 구축하여 6차까지 조사를 수행하였고, 1차 조사의 1단계 표본은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로 2만 4,000여 가구의 대규모 표본에서 2단계로 추출한 표본이기 때문에 패널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저소득 및 일반 가구 표본을 기존 패널의 특성별 응답률(또는 탈락률), 패널 유지 기간 동안의 예상 응답률, 전통적인 표본 규모 산출 방법을 고려하여 1단계 표본 규모를 7,000가구로 결정하였다. 표본 배분은 1단계로 시도별 동부와 읍면부별로 유지율 또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표본 가구를 배분하였다. 2단계에서는 모집단의 거처 유형별(일반, 아파트)로 비례 배분하였으며, 원표본과 신규 패널 전체 탈락률을 표본 비율로 고려한 표본 배분을 모집단의 거처 유형별에 따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 경우 활용 가능한 표본은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1만 5,000여 가구 자료)'를 통한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 및 일반 가구를 1단계 표본으로 파악하였기에 동일한 속성의 패널 자료 구축이 용이하며, 현재 패널 가구의 가중치 조정에 맞추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 비율도 1차 조사와 동일하게 저소득 가구를 과대 표집하였다. 지역별 표본 또한 1차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구 비율과 유사하게 표본 가구를 배분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2-1-4〉는 7차 조사 당시 신규 패널의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를 나타낸다.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에서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로 구분하여 지역별 가구 분포에 따라 1,800가구를 비례 배분하였다. 서울과 경기도는 표본 가구가 가장 많이 배분된 지역이며,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었다.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었다.

〈표 2-1-4〉 KOWEPS 7차 조사 신규 패널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단위: 가구)

지역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 표본			표본 배분		
	일반	저소득	계	일반	저소득	계
전국	10,745	4,298	15,043	900	900	1,800
서울	1,494	343	1,837	125	72	197
부산	821	330	1,151	69	69	138
대구	616	313	929	52	66	118
인천	706	243	949	59	51	110
광주	504	200	704	42	42	84
대전	535	172	707	45	36	81
울산	457	142	599	38	30	68
경기	1,510	342	1,852	126	72	198
강원	443	286	729	37	60	97
충북	490	235	725	41	49	90
충남	482	344	826	40	72	112
전북	524	278	802	44	58	102
전남	501	300	801	42	63	105
경북	600	351	951	50	73	123
경남	751	303	1,054	63	63	126
제주	311	116	427	27	24	51

## 제2절 2022년 추가 패널 표본 설계

### 1. 2022년 추가 패널 가구 구축 과정

2022년도 한국복지패널 추가 표본은 1~16차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마모되는 패널 표본의 통계 분석 유의성을 확보하고, 복지패널로부터 산출되는 통계의 신뢰성 보장 및 복지정책 대상자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적절히 분석하고자 17차 조사에서 기존 패널에 대한 신규 패널 가구를 추가하였다.

특히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패널 가구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일반 소득층으로 구분하여 패널을 구축하고 있어서 사전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층 추출 방법으로 패널을 구축하기 위한 1단계 조사가 필요하다. 즉 1단계에서는 2020년 통계청 조사구 리스트를 사용하여 2021년도에 대규모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 가구로부터 소득을 파악한 후 2022년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파악된 소득을

기반으로 패널 가구를 선정하여 최종 패널 가구를 구축하는 과정을 따랐다.

한국복지패널의 2022년 신규 패널 추가를 위한 표본 규모 산정은 기본적으로 기존 패널의 특성별 응답률(또는 탈락률), 패널의 유지 기간 동안의 예상 응답률, 전통적인 표본 규모 산출 방법을 고려하였다.<sup>10)</sup> 이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2022년 신규 패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2022년 신규 패널의 특성과 패널 유지율을 고려하여 1단계 표본 규모를 결정하였다.

이중추출에서 1단계 표본과 2단계 표본의 추출률 최적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frac{n}{n'} = \sqrt{\frac{c'}{c''} \frac{S_w}{S_b}}$$

여기서  $n'$ 은 1단계 표본이며,  $n$ 은 2단계 표본,  $c'$ 은 1단계 표본의 조사비용,  $c''$ 은 2단계 표본의 조사비용,  $S_w^2 = \sum_h W_h S_h^2$ ,  $S_b^2 = \sum_h W_h (\mu_h - \mu)^2$ 이다.

다음은 위의 식을 기반으로 1단계 표본과 2단계 표본 규모를 근사적으로 결정 한 내용으로 7차 조사의 가구 경상소득을 이용하여 추정된 표본 규모이다.

〈표 2-2-1〉 1단계, 2단계 표본 규모

(단위 :가구)

비용비( $c'/c''$ )	추출률( $\lambda$ )	1단계 표본( $n'$ )	2단계 표본( $n$ )
0.010	0.511	6,000	3,064
0.007	0.417	6,000	2,501
<b>0.005</b>	<b>0.361</b>	<b>6,000</b>	<b>2,166</b>
0.010	0.511	7,000	3,574
<b>0.007</b>	<b>0.417</b>	<b>7,000</b>	<b>2,918</b>
0.005	0.361	7,000	2,527

〈표 2-2-1〉의 결과로부터 주어진 조사비용 하에서 분산을 최소로 하는 추출률을 결정한 것이며, 구해진 추출률을 이용하여 1단계와 2단계 표본 규모를 각 7,000 가구, 2,000가구로 결정하였다.

10) 해당 통계 결과표는 [부록 8] 2022년 신규 표본 설계에 부표로 제시함.

## 2. 1차 7,000가구의 층화 및 표본 배분

층별 표본 배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층별 탈락률을 고려하여 탈락이 심한 층에 많은 표본을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층별 표본 배분 과정에서는 먼저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가구당 10가구를 1개 조사구로 고려하여 표본 조사구를 배분하였고, 층별 탈락률이 높은 층은 표본 가구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하였다. 이때 적용한 표본 배분 방법은 네이만 배분과 멱등 배분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층별로 표본을 배분하였다.

1단계로는 시도별 동부와 읍면부별로 유지율 또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표본 가구를 배분하였다(단, 세종시는 탈락률을 0.5(50%)로 가정하여 표본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지역별 이주를 통해 특정 지역의 이전 차수 대비 탈락률이 1 이상인 경우<sup>11)</sup> 0.5로 가정하여 산출함).

2단계에서는 모집단의 거처 유형별(일반, 아파트)로 비례 배분하였다.<sup>12)</sup>

$$\text{- 네이만 배분: } n_h = n \times \frac{N_h S_h}{\sum_h N_h S_h}$$

$$\text{- 멱등 배분: } n_h = n \times \frac{(N_h S_h)^p}{\sum_h (N_h S_h)^p}$$

여기서 모집단 분산은  $S_h^2 = P_h Q_h$ 이며, 층별 탈락률( $p_h$ )을 모비율  $P_h$ 의 추정값으로 대체하였다.

(방안1) 7차 조사의 신규 패널의 탈락률을 표본 비율( $p_h$ )로 고려한 표본 배분

(방안2) 원표본과 신규 패널 전체의 탈락률을 표본 비율( $p_h$ )로 고려한 표본 배분

11) 이전 차수 대비 탈락률이 100% 이상의 경우는 표본 가구의 탈락과 이주로 인한 경우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되었음.

12) 네이만 배분은 층별 변동과 규모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이고, 멱등 배분은 층별 변동과 규모의 영향을 멱등 상수로 조정하려 배분하는 방법으로 층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멱등 배분이 효과적임.

〈표 2-2-2〉와 〈표 2-2-3〉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먹등 배분의  $p=0.3$ 과  $p=0.4$ 의 층별 표본 규모를 비교해 보면 동부와 읍면부의 표본 규모의 차이가 적은 경우가  $p=0.4$ 이다. 실제적으로 동부와 읍면부 추정치의 상대오차를 작게 하는 경우에는  $p=0.3$ , 동부와 읍면부 추정치의 상대오차별 비교보다는 지역별 상대오차의 관리에 초점이 있다면  $p=0.4$ 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별로 고르게 표본을 배분하여 지역별 상대표준오차를 관리할 경우  $p=0.3$ 이 타당하지만, 이 경우 지역별 탈락률 영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역별 탈락률을 고려하고, 동시에 지역별 상대표준오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p=0.4$  방안을 선택하였다.<sup>13)</sup>

방안1과 방안2는 신규 패널만을 고려하는 것보다 전체 패널 가구의 지역별 탈락률을 고려한 방안2가 패널 유지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방안2에 대해  $p=0.4$ 인 경우로 표본 배분 방법이 적절하며, 이에 따라 조사구 유형에 비례배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

13) 지역별로 배분된 표본 규모는 지역적 안정성과 실제 지역별 탈락률 변동이 큰 지역에 더 많은 표본이 배분 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여  $p=0.3$ 은 지역별로 배분되는 표본 규모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지역별 탈락률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p=0.4$ 인 방안을 채택하였다.

〈표 2-2-2〉 층별 표본 배분(방안1)

(단위 : 가구, %)

시도	동부 및 읍면부	모집단 가구 수	네이만 배분		역등 배분			
			표본 수	상대 표준오차	p=0.3		p=0.4	
					표본 수	상대 표준오차	표본 수	상대 표준오차
서울	동부	3,982,290	1,500	2.6	459	4.7	567	4.2
부산	동부	1,338,453	431	4.8	316	5.6	344	5.4
	읍면부	66,584	24	20.4	133	8.7	109	9.6
대구	동부	886,446	305	5.7	285	5.9	299	5.8
	읍면부	99,370	38	16.2	153	8.1	131	8.7
인천	동부	1,110,623	400	5.0	309	5.7	334	5.5
	읍면부	36,577	14	26.7	113	9.4	88	10.7
광주	동부	599,217	154	8.1	232	6.6	228	6.6
대전	동부	631,208	222	6.7	259	6.2	264	6.2
울산	동부	357,251	130	8.8	221	6.7	213	6.9
	읍면부	86,836	32	17.7	145	8.3	122	9.1
세종	동부	92,950	36	16.7	150	8.2	127	8.9
	읍면부	46,156	18	23.6	122	9.1	96	10.2
경기	동부	4,235,667	1,357	2.7	446	4.7	544	4.3
	읍면부	862,764	300	5.8	284	5.9	298	5.8
강원	동부	394,450	133	8.7	222	6.7	215	6.8
	읍면부	266,589	51	14.0	165	7.8	145	8.3
충북	동부	388,460	138	8.5%	225	6.7	218	6.8
	읍면부	290,462	94	10.3	200	7.1	187	7.3
충남	동부	410,692	54	13.6	169	7.7	150	8.2
	읍면부	481,530	134	8.6	223	6.7	216	6.8
전북	동부	527,886	182	7.4	244	6.4	244	6.4
	읍면부	227,689	57	13.2	172	7.6	153	8.1
전남	동부	319,852	107	9.7	208	6.9	197	7.1
	읍면부	441,666	159	7.9	234	6.5	231	6.6
경북	동부	582,631	212	6.9	256	6.2	259	6.2
	읍면부	549,188	181	7.4	244	6.4	243	6.4
경남	동부	850,609	307	5.7	285	5.9	300	5.8
	읍면부	499,546	157	8.0	233	6.6	229	6.6
제주	동부	188,016	54	13.6	169	7.7	150	8.2
	읍면부	75,052	19	22.9	124	9.0	99	10.1
계		20,926,710	7,000		7,000		7,000	



〈표 2-2-3〉 층별 표본 배분(방안2)

(단위 : 가구, %)

시도	동부 및 읍면부	모집단 가구 수	네이만 배분		역등 배분			
			표본 수	상대 표준오차	p=0.3		p=0.4	
					표본 수	상대 표준오차	표본 수	상대 표준오차
서울	동부	3,982,290	1,535	2.6	459	4.7	567	4.2
부산	동부	1,338,453	452	4.7	318	5.6	347	5.4
	읍면부	66,584	25	20.0	133	8.7	109	9.6
대구	동부	886,446	295	5.8	280	6.0	293	5.8
	읍면부	99,370	28	18.9	139	8.5	115	9.3
인천	동부	1,110,623	385	5.1	303	5.7	326	5.5
	읍면부	36,577	15	25.8	113	9.4	88	10.7
광주	동부	599,217	171	7.6	238	6.5	236	6.5
대전	동부	631,208	238	6.5	262	6.2	269	6.1
울산	동부	357,251	132	8.7	220	6.7	212	6.9
	읍면부	86,836	30	18.3	141	8.4	118	9.2
세종	동부	92,950	39	16.0	153	8.1	130	8.8
	읍면부	46,156	19	22.9	124	9.0	99	10.1
경기	동부	4,235,667	1,276	2.8	432	4.8	527	4.4
	읍면부	862,764	263	6.2	270	6.1	280	6.0
강원	동부	394,450	131	8.7	219	6.8	212	6.9
	읍면부	266,589	67	12.2	179	7.5	162	7.9
충북	동부	388,460	130	8.8	219	6.8	210	6.9
	읍면부	290,462	72	11.8	183	7.4	166	7.8
충남	동부	410,692	103	9.9	204	7.0	192	7.2
	읍면부	481,530	187	7.3	244	6.4	244	6.4
전북	동부	527,886	181	7.4	242	6.4	240	6.5
	읍면부	227,689	81	11.1	189	7.3	174	7.6
전남	동부	319,852	106	9.7	206	7.0	195	7.2
	읍면부	441,666	138	8.5	223	6.7	216	6.8
경북	동부	582,631	226	6.7	258	6.2	263	6.2
	읍면부	549,188	197	7.1	248	6.3	249	6.3
경남	동부	850,609	216	6.8	255	6.3	259	6.2
	읍면부	499,546	182	7.4	242	6.4	241	6.4
제주	동부	188,016	54	13.6	168	7.7	149	8.2
	읍면부	75,052	26	19.6	136	8.6	112	9.4
계		20,926,710	7,000		7,000		7,000	

〈표 2-2-4〉 층별 표본 조사구 배분 결과

(단위 : 개)

구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전국	133	329	462	143	95	238
서울	23	34	57	-	-	-
부산	12	23	35	2	9	11
대구	8	21	29	2	9	11
인천	11	22	33	8	1	9
광주	5	18	23	-	-	-
대전	7	20	27	-	-	-
울산	5	16	21	4	8	12
세종	-	13	13	5	5	10
경기	13	39	52	14	14	28
강원	6	15	21	11	5	16
충북	5	16	21	10	7	17
충남	4	15	19	15	10	25
전북	6	18	24	14	3	17
전남	5	15	20	17	5	22
경북	8	18	26	17	8	25
경남	6	20	26	14	10	24
제주	9	6	15	10	1	11

〈표 2-2-4〉는 조사구당 평균 10가구를 조사할 경우 최종 700개 조사구를 가구 규모에 따라 층별로 할당한 결과이다.

### 3. 2차 2,000가구의 층화 및 표본 배분

1차 표본 가구로 추출한 7,000가구에 대해 가구 특성을 분석해 한국복지패널의 원표본과 탈락률에 따른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여 1~16차 패널이 보완되도록 2차 표본 가구를 추출하였다.

2021년 10~12월까지 1단계로 조사된 가구의 조사구 분포는 앞의 〈표 2-2-4〉와 같이 표본 설계를 따르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구의 분포 또한 기본적인 설계를 반영하고 있다.

〈표 2-2-5〉 추가 1차 표본 가구의 분포

(단위: 가구)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국	1,330	3,290	1,430	950	7,000
서울	230	340	-	-	570
부산	120	230	20	90	460
대구	80	210	20	90	400
인천	110	220	80	10	420
광주	50	180	-	-	230
대전	70	200	-	-	270
울산	50	160	40	80	330
세종	-	130	50	50	230
경기	130	390	140	140	800
강원	60	150	110	50	370
충북	50	160	100	70	380
충남	40	150	150	100	440
전북	60	180	140	30	410
전남	50	150	170	50	420
경북	80	180	170	80	510
경남	60	200	140	100	500
제주	90	60	100	10	260

1차 표본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주 연령대, 가구의 소득 구분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2-6〉 1차 표본 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단위: 명)

구분	가구주 연령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서울	14	66	79	125	146	98	42	570
부산	12	48	69	81	106	102	42	460
대구	10	33	52	75	67	97	66	400
인천	10	37	50	81	120	75	47	420
광주	3	16	27	42	51	50	41	230
대전	22	23	40	59	50	48	28	270
울산	8	52	71	69	72	38	20	330
세종	8	32	38	36	43	43	30	230
경기	17	95	109	198	201	122	58	800
강원	8	39	44	55	85	81	58	370
충북	14	33	36	69	119	67	42	380
충남	17	45	62	85	84	87	60	440
전북	8	17	61	64	103	94	63	410
전남	16	38	50	63	94	96	63	420
경북	16	59	87	75	121	86	66	510
경남	17	41	79	83	112	109	59	500
제주	12	19	44	52	68	38	27	260
합계	212	693	998	1,312	1,642	1,331	812	7,000

〈표 2-2-6〉으로부터 1차 표본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는 60대가 23.4%, 70대 19%, 50대 18.7%의 순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30, 40대는 9%와 14.3%로 낮았다. 한편 80대 이상(11%) 고령 가구주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2-2-7〉로부터 1차 표본 가구의 경상소득 기준으로 저소득 및 일반 가구로 분류하여 지역별 분포를 파악한 결과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규모가 24%로 낮았으며, 읍면부 지역은 39%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과 아파트로 분류하여 저소득과 일반 가구 비중을 비교해 보면 일반 주택에서는 저소득 가구 비율이 39.4%, 아파트 가구는 23.9%로 일반 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저소득 가구는 2,050가구, 일반 가구는 4,950 가구로서 저소득 가구는 29.3%, 일반 가구는 70.7%로 나타나 1차 표본 가구에서는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1:2.5배 정도였다. 따라서 2차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가구의 과대 표본이 요구된다.

〈표 2-2-7〉 1차 표본 가구의 소득 계층별 분포

(단위: 가구)

구분	저소득					일반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국	405	711	731	203	2,050	925	2,579	699	747	4,950
서울	42	57	-	-	99	188	283	-	-	471
부산	49	65	9	18	141	71	165	11	72	319
대구	39	80	11	25	155	41	130	9	65	245
인천	27	53	36	2	118	83	167	44	8	302
광주	7	53	-	-	60	43	127	-	-	170
대전	36	34	-	-	70	34	166	-	-	200
울산	9	25	21	10	65	41	135	19	70	265
세종	-	22	23	32	77	-	108	27	18	153
경기	32	62	57	25	176	98	328	83	115	624
강원	35	39	59	10	143	25	111	51	40	227
충북	19	27	46	10	102	31	133	54	60	278
충남	7	20	57	26	110	33	130	93	74	330
전북	22	59	69	11	161	38	121	71	19	249
전남	25	30	113	5	173	25	120	57	45	247
경북	19	23	109	13	164	61	157	61	67	346
경남	19	54	91	16	180	41	146	49	84	320
제주	18	8	30	0	56	72	52	70	10	204

2차 표본 가구는 소득 기준별로 동일한 규모로 배분하였으며, 이때 17개 시도 및 동부와 읍면부별로 1차 표본 규모에 따라 1단계에서 소득 수준별로 배분하고, 2단계에서는 지역별로 비례 배분하였다. 저소득 및 일반 가구의 규모는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작아 소득 규모에 따라 비례 배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표본이 배분될 수 있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규모로 배분하였고, 조사 응답률을 고려하여 저소득 및 일반 가구에 대해 2배수로 추출하여 일정 규모의 표본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최종 표본은 저소득 및 일반 가구의 할당표에 따라 〈표 2-2-8〉로 나타났다.

〈표 2-2-8〉 2차 표본 가구의 소득 유형별 지역 배분 결과 및 조사 결과

(단위: 가구)

구분	저소득						일반					
	동부		읍면부		계	조사 결과	동부		읍면부		계	조사 결과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국	200	355	345	100	1,000	1,025	200	355	345	100	1,000	987
서울	21	28	-	-	49	54	41	38	-	-	79	74
부산	24	33	4	9	70	70	15	23	5	10	53	53
대구	19	40	5	12	76	77	9	18	4	9	40	40
인천	13	26	17	2	58	57	18	23	22	4	67	66
광주	3	26	-	-	29	32	9	17	-	-	26	25
대전	18	17	-	-	35	36	7	23	-	-	30	32
울산	4	13	10	5	32	38	9	19	9	9	46	40
세종	-	11	11	16	38	38	-	15	13	2	30	30
경기	16	31	27	12	86	88	21	45	42	10	118	117
강원	17	20	28	5	70	66	5	15	25	5	50	53
충북	10	14	22	5	51	48	7	18	27	8	60	64
충남	3	10	27	13	53	54	7	18	46	10	81	80
전북	11	28	33	5	77	81	8	17	35	3	63	61
전남	12	15	53	2	82	83	5	17	28	6	56	56
경북	10	12	51	6	79	84	13	22	30	9	74	68
경남	10	27	43	8	88	93	10	20	24	10	64	64
제주	9	4	14	0	27	26	16	7	35	5	63	64

### 제3절 17차 조사 표본 특성 및 가중치 조정

#### 1. 17차 조사 표본 특성

KOWEPS 17차 조사(2022년)에서는 먼저 16차 조사(2021년) 때 조사한 가구와 가구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15차 조사 당시 응답하지 않았던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을 파악하면 <표 2-2-1>과 같다. 17차 조사에서 1차 조사 표본인 원표본 유지율은 가구의 경우 51.81%, 가구원은 52.22%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우 전년 대비 2.15%p 떨어졌으며, 가구원은 1.85%p 떨어져 원표본 패널의 17차 조사 탈락률이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그림 2-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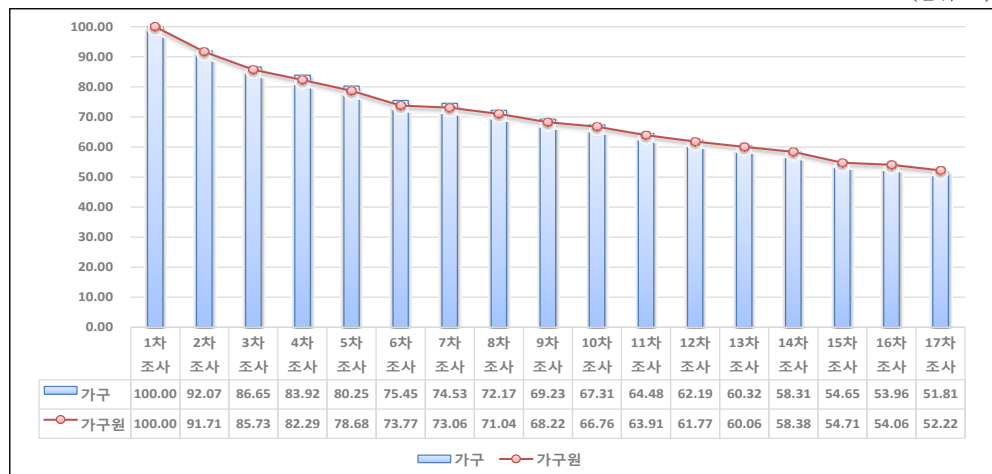
<표 2-3-1>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단위: 가구, 명, %)

조사	가구		가구원	
	표본 수	유지율	표본 수	유지율
1차 조사	7,072	100.00	14,463	100.00
2차 조사	6,511	92.07	13,264	91.71
3차 조사	6,128	86.65	12,399	85.73
4차 조사	5,935	83.92	11,902	82.29
5차 조사	5,675	80.25	11,379	78.68
6차 조사	5,336	75.45	10,670	73.77
7차 조사	5,271	74.53	10,566	73.06
8차 조사	5,104	72.17	10,274	71.04
9차 조사	4,896	69.23	9,867	68.22
10차 조사	4,760	67.31	9,656	66.76
11차 조사	4,560	64.48	9,244	63.91
12차 조사	4,398	62.19	8,934	61.77
13차 조사	4,266	60.32	8,686	60.06
14차 조사	4,124	58.31	8,444	58.38
15차 조사	3,865	54.65	7,913	54.71
16차 조사	3,816	53.96	7,819	54.06
17차 조사	3,664	51.81	7,552	52.22

[그림 2-3-1] 1~17차 조사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변화 추이

(단위: %)



KOWEPS 17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가구 외에 2012년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표본 1,800가구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였는데, 201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은 <표 2-3-2>와 같다. 신규 표본 가구 유지율은 66%이고, 가구원 유지율은 61.63%로 11차 조사의 원표본 유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2-3-2> 201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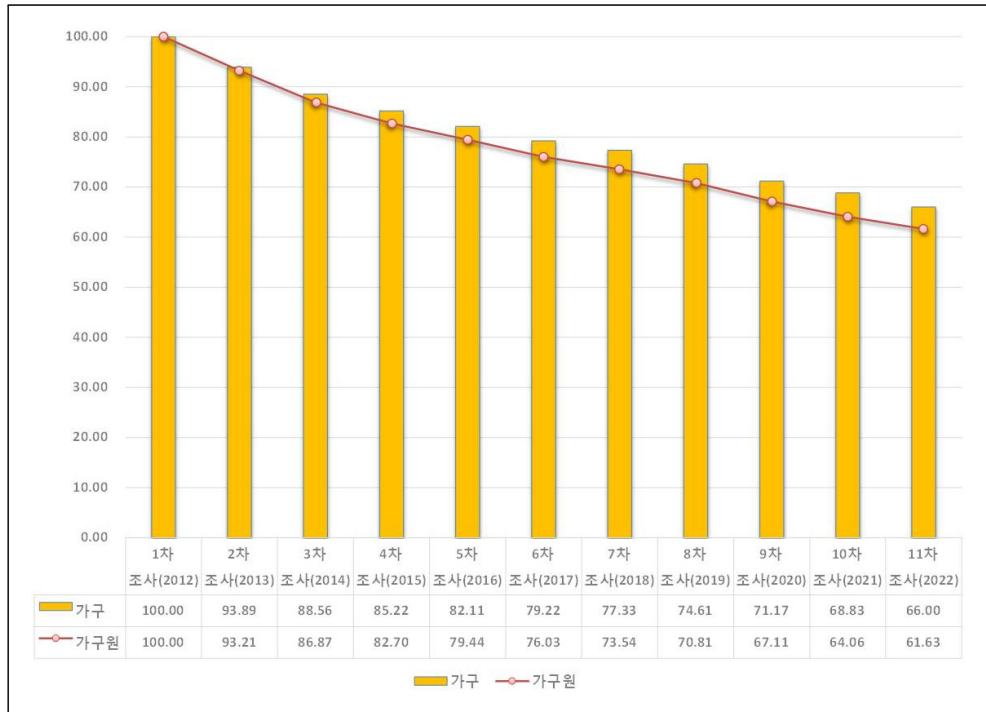
(단위: 가구, 명, %)

조사	가구		가구원	
	표본 수	유지율	표본 수	유지율
1차 조사(2012)	1,800	100.00	3,375	100.00
2차 조사(2013)	1,690	93.89	3,146	93.21
3차 조사(2014)	1,594	88.56	2,932	86.87
4차 조사(2015)	1,534	85.22	2,791	82.70
5차 조사(2016)	1,478	82.11	2,681	79.44
6차 조사(2017)	1,426	79.22	2,566	76.03
7차 조사(2018)	1,392	77.33	2,482	73.54
8차 조사(2019)	1,343	74.61	2,390	70.81
9차 조사(2020)	1,281	71.17	2,265	67.11
10차 조사(2021)	1,239	68.83	2,162	64.06
11차 조사(2022)	1,188	66.00	2,080	61.63



[그림 2-3-2] 2012년 신규 표본의 1~11차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변화 추이

(단위: %)



1차 조사 대비 17차 조사에서의 조사 완료 패널 가구 및 가구원 수를 원표본, 신규 표본, 신규(17차 조사에 새롭게 진입한 가구 또는 가구원)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3〉 1차 조사 대비 17차 조사에서의 조사 완료 패널 가구 및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

구분	가구		가구원	
	표본 수	비율	표본 수	비율
원표본	3,664	51.81	7,552	52.22
2012년 신규 표본	1,188	16.80	2,080	14.38
신규 가구	112	1.58	83	0.57
계	4,964	70.19	9,715	67.17

〈표 2-3-4〉의 1차 조사 대비 17차 조사의 원표본 패널 가구 탈락률(attrition rate)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구의 경우 48.19%, 가구원의 경우 47.78%의 탈락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2-3-4〉 17차 조사의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단위: 가구, 명, %)

지역	가구			가구원		
	1차 조사	17차 조사	탈락률	1차 조사	17차 조사	탈락률
전국	7,072	3,664	48.19	14,463	7,552	47.78
서울	1,335	514	61.50	2,847	1,154	59.47
부산	528	249	52.84	1,090	517	52.57
대구	422	219	48.10	873	445	49.03
인천	437	221	49.43	914	452	50.55
광주	244	147	39.75	519	317	38.92
대전	208	99	52.40	435	222	48.97
울산	203	95	53.20	424	204	51.89
경기	1,130	578	48.85	2,324	1,343	42.21
강원	236	138	41.53	465	267	42.58
충북	221	140	36.65	457	286	37.42
충남	321	218	32.09	662	433	34.59
전북	347	199	42.65	655	361	44.89
전남	377	236	37.40	709	453	36.11
경북	494	280	43.32	942	465	50.64
경남	488	285	41.60	975	540	44.62
제주	81	46	43.21	172	93	45.93

지역별 가구 탈락률은 서울 지역이 61.50%로 가장 높고, 울산이 53.20%로 두 번째로 탈락률이 높다. 반면 충남 지역의 탈락률이 32.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가구원 탈락률은 서울이 59.47%로 가장 높고, 부산이 52.57%로 두 번째로 높다. 지역별 가구원 탈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34.59%이다.

〈표 2-3-5〉 17차 조사의 201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단위: 가구, 명, %)

지역	가구			가구원		
	1차 조사 (2012)	11차 조사 (2022)	탈락률	1차 조사 (2012)	11차 조사 (2022)	탈락률
전국	1,800	1,188	34.00	3,375	2,080	38.37
서울	194	100	48.45	397	195	50.88
부산	133	92	30.83	239	166	30.54
대구	126	80	36.51	223	139	37.67
인천	109	68	37.61	199	118	40.70
광주	87	63	27.59	159	124	22.01
대전	89	59	33.71	166	98	40.96
울산	77	47	38.96	164	90	45.12
경기	180	118	34.44	370	225	39.19
강원	95	66	30.53	174	111	36.21
충북	90	60	33.33	176	100	43.18
충남	106	86	18.87	196	147	25.00
전북	104	74	28.85	190	126	33.68
전남	102	64	37.25	178	106	40.45
경북	130	88	32.31	229	131	42.79
경남	127	83	34.65	218	127	41.74
제주	51	40	21.57	97	77	2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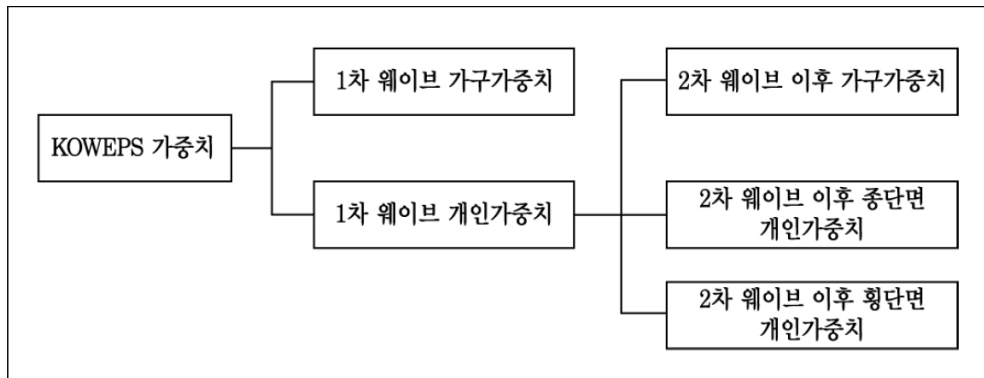
〈표 2-3-5〉에서 1차 조사 대비 11차 조사의 2012년 추가 표본 패널 가구 탈락률(attrition rate)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구의 경우 34.00%의 탈락률을, 가구원의 경우 38.37%의 탈락률을 보였다. 지역별 가구 탈락률은 서울이 48.45%로 가장 높으며, 울산이 38.96%로 두 번째로 높다. 반면 충남 탈락률은 18.87%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왔다. 지역별 가구원 탈락률은 서울이 50.88%로 가장 높고, 울산이 45.1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 2. 가중치 조정 과정

KOWEPS의 17차 조사 가중치 산정은 기본적으로 16차 조사에 부여된 개인 가중치를 기준으로 가구 가중치와 개인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기존의 KOWEPS 가중치 부여 체계는 [그림 2-3-3]과 같다. 가구 가중치는 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원의 변동으로 가구의 개념이 1차 조사 때의 정의와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2차 조사 이후의 가중치는 개인 가중치를 중심으로 산정한다. 또한 가구는 개인과 달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성과 소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단면과 횡단면의 구분이 모호해져 이를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가구 가중치는 개인 가중치를 기준으로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림 2-3-3] KOWEPS의 가중치 부여 체계



한국복지패널 7차 조사의 경우 기존의 1~6차 조사에서 구축된 패널 표본과 7차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신규 표본 패널을 병합하여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7차 조사의 가중치 조정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조사 이후 7차 조사까지 구축된 기존의 패널 표본은 6차 조사의 응답률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적용해 응답 확률을 추정하고, 6차 조사의 종단면 가중치에 기초하여 7차 조사에서 조사된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7차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패널은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의 최종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고려하였으며, 1,800가구에 대한 추출 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설계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이처럼 각각 독립적으로 조정된 가중치에서 신규 패널의 7차 조사 종단면 가중치는 2012년 진입한 신규 가구이므로 모두 '0'으로 부여하였고, 7차 조사 횡단면 가중치의 경우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을 병합하여 새롭게 부여하였다.

8차 조사의 개인 가중치는 7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단 7차 조사에 새로 추가된 신규 패널 1,800가구의 가구원은 개인 종단면 가중치가 0이므로 7차 조사의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원표본 패널 가중치와 병합하여 8차 조사의 종단면 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9차 조사의 개인 가중치는 8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고, 10차 조사의 개인 가중치는 9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17차 조사의 개인 가중치 산출 역시 16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17차 조사의 개인 가중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가. 개인 종단면 가중치 산출 과정

17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16차 조사의 종단면 기본 가중치에 무응답 보정과 개인별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한 뒤 사후 조정으로 계산된다.

17차 조사의 종단면 기본 가중치는 16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한다. 17차 조사의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 크기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17차 조사에서 조사가 완료된 개인의 가중치는 17차 조사의 종단면 응답 여부 변수와 16차 조사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을 보정하여 응답 확률을 추정하였다. 로지스틱 모형의 설명 변수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변수를 사용하였고, 17차 조사의 종단면 응답 여부 변수는 17차와 16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갖는다.

다음으로 17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기본 가중치에 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된 응답 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17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한다. 17차 조사의 기본 가중치를  $w_{\text{기본}17\text{차}}$ ,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예측된 예측 응답 확률을  $\hat{p}_{17\text{차}}$ 라고 하면 무응답 보정으로 얻어지는 가중치는

$$w_{17차} = w_{기본17차} \times \hat{p}_{17차-1}$$

로 표현된다.

그리고 개인별 변동 상황에 따라 17차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한 뒤, 지역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2021년 인구 추계값을 이용하여 사후 조정을 하였다.

개인별 변동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1차 조사 패널 가구원 중 군대 입대 및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조사 당시 응답하지 않았던 가구원은 가구의 평균 가중치를 적용받고, 결혼 등의 사유로 원패널 가구에 진입한 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또 17차 조사에서 원패널 가구에서 분가한 가구원의 경우 원래의 가구원 가중치를 부여받지만, 분가한 후 결혼 등의 사유로 신규로 진입한 신규 가구의 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16차 조사에서 탈락했던 가구원이 17차 조사에 재진입한 경우에는 지역별 평균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지나치게 큰 가중치 값들은 추정량의 분산을 크게 만들어 추정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중치의 과도한 변동을 줄이고자 17차 조사에서는 사후 조정 후 극단 가중치 조정을 하였다.

레이킹(raking)을 통한 사후 조정 후 지나치게 큰 가중치들(상위 1%)을 찾아서 절단(trimming)한 뒤 절단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지역·성별·연령 내의 관측치에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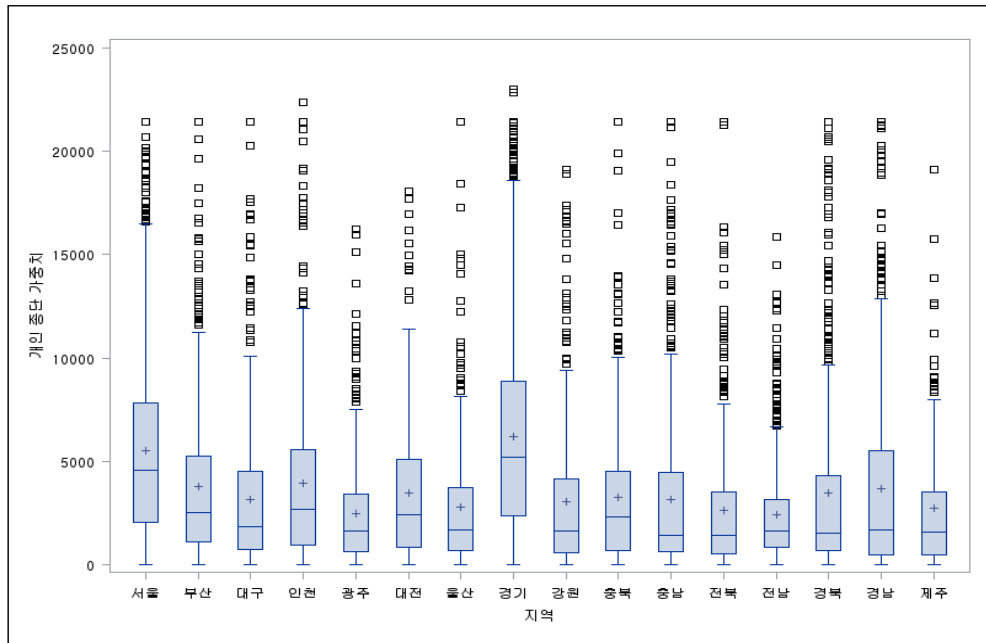
〈표 2-3-6〉에서 17차 조사의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 지역의 가중치 표준오차가 가장 작고, 제주 지역의 표준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위값으로 비교하면 경기 지역의 가중치 중위값이 가장 높고, 충남 지역의 가중치 중위값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3-6〉 17차 조사의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값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10,932	4,030.2	40.3	2,593.2	906.0	5,779.0	1.0
서울	1,511	5,519.2	110.7	4,572.9	2,049.6	7,824.4	0.8
부산	764	3,764.6	133.5	2,530.9	1,116.4	5,275.3	1.0
대구	650	3,137.6	133.5	1,832.2	734.6	4,510.6	1.1
인천	631	3,944.8	164.5	2,704.9	962.4	5,590.7	1.0
광주	500	2,446.1	115.3	1,608.9	635.3	3,425.7	1.1
대전	354	3,469.5	179.9	2,417.4	858.9	5,086.1	1.0
울산	338	2,768.0	170.5	1,706.5	701.5	3,718.5	1.1
경기	1,842	6,217.7	117.0	5,225.2	2,344.9	8,885.0	0.8
강원	430	3,041.9	174.4	1,653.5	606.6	4,126.9	1.2
충북	424	3,269.9	167.9	2,296.7	675.1	4,494.7	1.1
충남	671	3,160.0	149.7	1,398.5	611.4	4,478.1	1.2
전북	577	2,637.4	138.0	1,407.1	555.3	3,501.8	1.3
전남	630	2,424.4	94.7	1,640.3	838.5	3,173.0	1.0
경북	649	3,477.6	177.8	1,505.3	690.8	4,320.4	1.3
경남	756	3,700.2	161.2	1,666.0	463.9	5,489.0	1.2
제주	205	2,709.3	223.8	1,562.5	476.3	3,543.6	1.2

[그림 2-3-4] 17차 조사의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 나. 개인 횡단면 가중치 산출 과정

17차 조사의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17차 조사의 종단면 기본 가중치에 무응답 보정과 개인별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한 뒤 17차 조사의 종단면 가중치 값이 0인 가중치에 대해 가구별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고 사후 조정으로 계산된다.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17차 조사의 종단면 응답 여부 변수와 16차 조사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을 보정하여 응답 확률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17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기본 가중치에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추정된 응답 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17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한다.

그리고 개인별 변동 상황에 따라 17차 조사의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한 뒤 17차 조사의 종단면 가중치 값이 0인 가중치에 대해 가구별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고, 지역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2021년 인구 추계값을 이용하여 사후 조정을 하였다.

17차 조사의 횡단면 가중치에서는 레이킹(raking)을 통한 사후 조정 후 17차 조사의 종단면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큰 가중치들(상위 1%)을 찾아서 절단한 뒤 절단값을 제외한 나머지의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지역·성별·연령 내의 관측치에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표 2-3-7〉에서 17차 조사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 지역의 가중치 표준오차가 가장 작고 제주 지역이 가장 크다. 중위값으로 비교하면 경기 지역의 가중치 중위값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지역이 높았고, 전북 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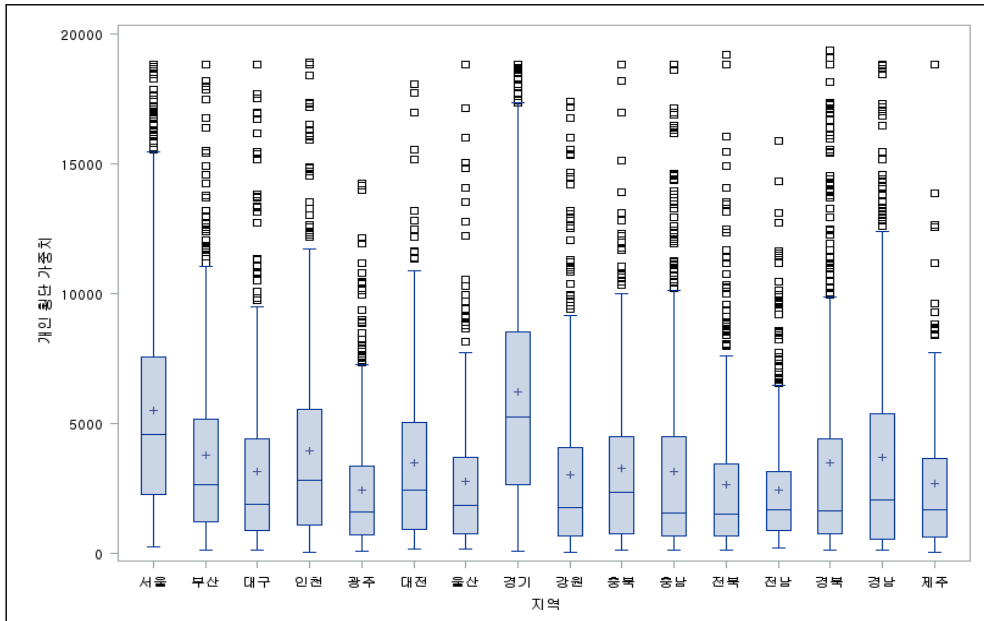


〈표 2-3-7〉 17차 조사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값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10,932	4,021.0	37.3	2,722.8	1,080.9	5,683.3	1.0
서울	1,511	5,484.7	102.6	4,560.5	2,277.6	7,548.7	0.7
부산	764	3,762.4	124.1	2,653.0	1,220.0	5,157.6	0.9
대구	650	3,137.6	125.7	1,899.3	886.8	4,395.1	1.0
인천	631	3,944.8	152.5	2,815.1	1,116.0	5,534.1	1.0
광주	500	2,445.7	107.4	1,617.5	719.2	3,358.3	1.0
대전	354	3,469.5	170.1	2,453.3	920.3	5,024.1	0.9
울산	338	2,768.0	160.0	1,840.5	777.4	3,718.5	1.1
경기	1,842	6,199.6	102.9	5,249.0	2,665.8	8,535.6	0.7
강원	430	3,041.8	164.9	1,773.5	660.3	4,094.4	1.1
충북	424	3,269.3	160.2	2,361.0	754.9	4,483.4	1.0
충남	671	3,159.9	140.8	1,546.9	685.6	4,488.8	1.2
전북	577	2,638.1	128.1	1,509.1	662.9	3,443.9	1.2
전남	630	2,424.2	90.0	1,682.3	894.1	3,149.1	0.9
경북	649	3,477.6	169.0	1,650.4	742.7	4,396.7	1.2
경남	756	3,683.4	148.2	2,048.2	561.9	5,357.2	1.1
제주	205	2,709.3	205.6	1,703.6	622.9	3,668.5	1.1

〔그림 2-3-5〕 17차 조사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상자 그림



## 다. 가구 가중치 산출 과정

17차 조사의 가구 가중치는 먼저 가구의 패널 진입 차수에 따라 17차 조사 개인 종단면 가중치의 가구 내 평균값을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17차 조사에서 새롭게 진입한 신규 가구는 신규 가구 내에 원표본(또는 신규 표본) 가구원들의 가중치 평균을 적용하였고, 원표본(또는 신규 표본)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이들의 평균으로 가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계산된 가구 가중치를 2021년 추계 가구 수에 따라 지역별로 사후 조정하고, 극단값 조정으로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극단값 조정은 레이킹(raking)을 통한 사후 조정 후 지나치게 큰 가중치들(상위 1%)을 찾아서 절단한 뒤 절단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지역·가구원 수 내의 관측치에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지역별 가구 가중치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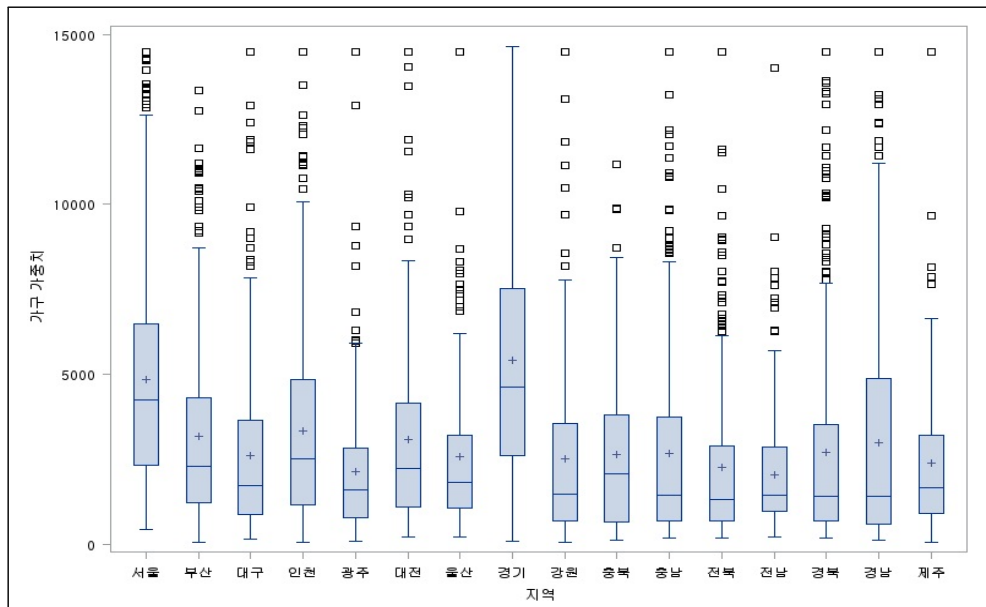
17차 조사의 지역별 가구 가중치 평균값은 경기 지역이 가장 높고, 전남 지역이 가장 낮다. 이에 대한 지역별 표준오차는 전남 지역의 가중치 표준오차가 가장 작고, 제주 지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위값으로 비교하면, 경기 지역의 가중치 중위값이 가장 높고, 전북 지역이 가장 낮다. 제1사분위 수를 비교해 보면 경기 지역의 가중치 제1사분위 값이 가장 높으며 경남 지역이 가장 낮다. 제3사분위 수는 광주 지역의 가중치 제3사분위 값이 가장 낮다. 지역별 상대 표준오차는 경기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3-8〉 17차 조사의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값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5,853	3,515.0	41.4	2,482.4	1,088.2	5,022.9	0.9
서울	775	4,983.1	118.1	4,456.8	2,373.4	6,806.2	0.7
부산	412	3,324.0	135.2	2,438.0	1,217.9	4,537.7	0.8
대구	357	2,709.8	133.3	1,829.5	836.0	3,760.2	0.9
인천	329	3,436.8	172.3	2,453.5	1,144.9	4,828.2	0.9
광주	265	2,243.5	128.4	1,609.5	833.9	2,869.7	0.9
대전	191	3,213.4	212.6	2,357.4	1,122.3	4,376.4	0.9
울산	169	2,581.8	182.9	1,829.9	879.7	3,325.6	0.9
경기	914	5,525.7	115.0	4,881.7	2,632.5	7,738.3	0.6
강원	236	2,740.4	186.6	1,530.4	753.0	3,742.7	1.0
충북	247	2,707.8	155.6	2,019.5	667.0	4,070.9	0.9
충남	367	2,805.3	154.6	1,571.5	715.0	4,046.5	1.1
전북	320	2,310.8	134.4	1,412.8	734.5	2,880.7	1.0
전남	340	2,188.6	88.7	1,633.5	1,010.4	2,983.6	0.7
경북	392	2,842.3	162.6	1,438.8	746.1	3,783.1	1.1
경남	434	3,090.9	161.2	1,504.1	562.9	4,948.7	1.1
제주	105	2,516.2	252.7	1,622.5	961.9	3,133.5	1.0

[그림 2-3-6] 17차 조사의 지역별 가구 가중치 상자 그림



### 3. 2022년 추가 표본을 포함한 통합 횡단 가중치 조정 과정

#### 가. 가구 통합 가중치 산출 과정

17차 조사의 가구 통합 가중치는 기존 패널(원표본 + 2012년 신규 표본)의 가구 가중치와 2022년 신규 표본의 가구 가중치를 결합한 새로운 통합 가중치를 산출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가중치 계산식을 통해 구한다.

$$w_{hik}^{CBH} = \begin{cases} \lambda_h w_{ahik} & hik \in s_a \\ (1 - \lambda_h) w_{bhik} & hik \in s_b \end{cases}$$

여기서  $w_{ahik}$ 는 기존 패널의 가구 가중치를,  $w_{bhik}$ 는 신규 표본의 가구 가중치를 나타내는데,  $\lambda_h$  ( $0 < \lambda_h < 1$ )는 가구 통합 가중치를 정의하게 되며, 이는 기존 패널과 2022년 신규 표본의 추정량을 선형 형태로 결합하게 된다.

최적의 혼합계수  $\lambda_h$ 는 혼합 추정량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비율 추정을 기준으로  $\sigma_{ah}^2$ 와  $\sigma_{bh}^2$ 이 기존 패널과 2022년 신규 표본에서의 비율 추정량의 분산이라면, 혼합계수  $\lambda_h$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ambda_h = \frac{\sigma_{bh}^2}{\sigma_{ah}^2 + \sigma_{bh}^2} \approx \frac{n_{bh}}{n_{ah} + n_{bh}}$$

최종적으로 가구 통합 가중치는 두 가중치를 선형 결합한 형태의 가중치  $w_{hik}^{CBH}$ 에 대해 2021년 추계 가구 수에 따라 지역별, 가구원 수별 레이킹 비(raking ratio) 조정을 통해 구한다.

기존 패널(원표본 + 2012년 신규 표본)과 2022년 신규 표본에 대한 가구 통합 가중치 조정 작업을 통한 결과는 <표 2-3-9>와 같다.

〈표 2-3-9〉 17차 조사의 지역별 가구 통합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시도	표본 가구 수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Q1	Q3	최댓값	deff
전체	7,865	20,573,057	2,616	3,014	16	707	3,399	17,668	2.33
서울	903	3,861,863	4,277	4,120	293	1,582	5,008	17,668	1.93
부산	535	1,369,481	2,560	2,988	44	724	2,781	17,650	2.36
대구	474	967,379	2,041	2,495	78	499	2,336	17,650	2.49
인천	452	1,130,717	2,502	3,133	30	560	2,910	17,225	2.57
광주	322	594,516	1,846	2,410	71	454	2,143	17,650	2.70
대전	259	613,753	2,370	2,405	167	843	3,256	17,650	2.03
울산	247	436,324	1,767	1,672	125	587	2,199	10,498	1.90
경기	1119	5,050,524	4,513	3,704	163	2,051	5,485	17,650	1.67
강원	355	646,731	1,822	1,770	17	557	2,409	12,251	1.94
충북	359	668,831	1,863	1,962	63	536	2,321	11,662	2.11
충남	569	1,029,559	1,809	2,141	91	354	2,274	11,485	2.40
전북	462	739,458	1,601	2,088	58	359	1,805	13,097	2.70
전남	479	744,113	1,553	1,459	134	592	1,833	10,755	1.88
경북	544	1,114,170	2,048	2,181	110	505	2,588	12,667	2.13
경남	591	1,341,432	2,270	2,639	58	374	2,847	14,818	2.35
제주	195	264,205	1,355	1,392	16	564	1,718	9,915	2.05

#### 나.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 산출 과정

17차 조사의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는 기존 패널(원표본 + 2012년 신규 표본)의 개인 횡단 가중치와 2022년 신규 표본의 개인 횡단 가중치를 결합한 새로운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를 산출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가중치 계산식을 통해 구한다.

$$w_{hik}^{CBP} = \begin{cases} \lambda_h w_{ahik} & hik \in s_a \\ (1 - \lambda_h)w_{bhik} & hik \in s_b \end{cases}$$

여기서  $w_{ahik}$ 는 기존 패널의 개인 횡단 가중치,  $w_{bhik}$ 는 2022년 신규 표본의 개인 횡단 가중치를 나타내는데,  $\lambda_h$  ( $0 < \lambda_h < 1$ )는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를 정의하게 되며, 이는 기존 패널과 2022년 신규 표본의 추정량을 선형 형태로 결합하게 된다.

최종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는  $w_{hik}^{CBP}$ 의 값을 2021년 인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에 따라 레이킹 비(raking ratio) 조정을 통해 구한다.

〈표 2-3-10〉은 17차 조사의 기존 패널(원표본 + 2012년 신규 표본)과 2022년 신규 표본에 대한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 조정 작업을 통한 결과다.

〈표 2-3-10〉 17차 조사의 지역별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 분포

(단위: 개인)

시도	표본 가구 수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Q1	Q3	최댓값	deff
전체	14,458	43,828,380	3,031	3,691	21	711	3,906	27,862	2.48
서울	1,741	8,276,506	4,754	5,028	142	1,472	5,752	27,602	2.12
부산	967	2,866,541	2,964	3,666	28	756	3,461	25,590	2.53
대구	843	2,014,751	2,390	3,185	51	488	2,716	21,988	2.78
인천	844	2,486,696	2,946	3,655	21	600	3,600	21,023	2.54
광주	592	1,217,872	2,057	3,236	32	383	2,234	23,839	3.47
대전	485	1,249,898	2,577	2,667	117	797	3,300	14,443	2.07
울산	478	927,207	1,940	2,075	101	521	2,500	13,464	2.14
경기	2,214	11,360,688	5,131	4,423	55	2,249	6,105	27,862	1.74
강원	651	1,317,102	2,023	2,203	24	570	2,807	14,077	2.19
충북	628	1,393,031	2,218	2,759	59	583	2,540	20,067	2.55
충남	1,033	2,114,032	2,047	2,506	79	354	2,616	16,076	2.50
전북	799	1,523,541	1,907	2,591	61	411	2,170	20,838	2.85
전남	867	1,519,726	1,753	2,082	78	549	1,929	16,723	2.41
경북	933	2,250,242	2,412	2,825	67	514	2,972	19,120	2.37
경남	1,010	2,753,578	2,726	3,304	51	414	3,547	18,800	2.47
제주	373	556,970	1,493	1,491	21	504	1,808	9,496	2.00



## 제3장

###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제1절 조사 내용

제2절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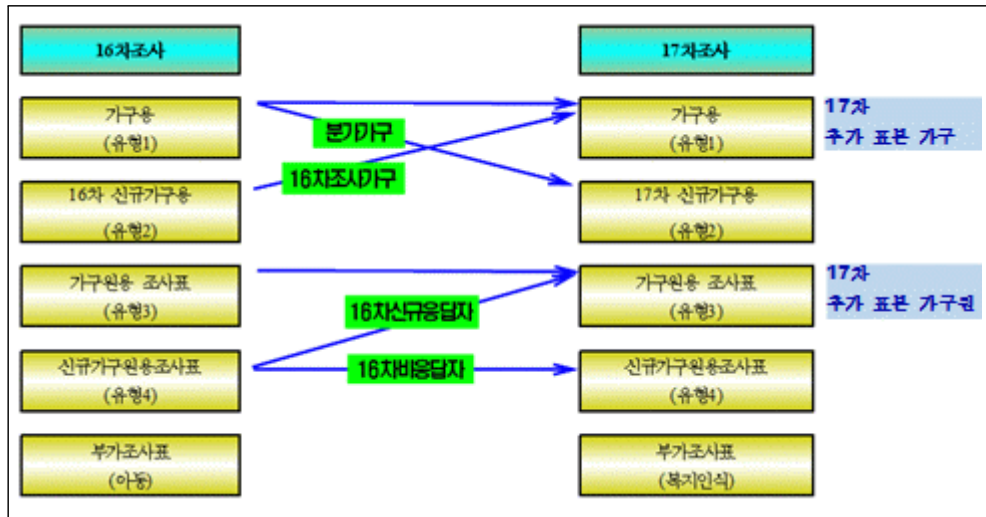
# 제 3 장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 제1절 조사 내용<sup>14)</sup>

### 1. 조사 설문의 구성

한국복지패널의 조사표는 크게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2차 이후에는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 및 가구원은 각각 원가구, 신규 가구로 구분되기 때문에 원가구용(유형1), 신규 가구용(유형2), 원가구원용(유형3), 신규 가구원용(유형4), 부가조사 5종의 조사표로 구성하였다<sup>15)</sup>.

[그림 3-1-1] 조사 설문의 구성



14) 한국복지패널의 조사 내용과 방법은 정은희 외(2021). 202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16차 조사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되었음.  
 15) 2022년 추가 표본 가구의 설문은 기존과 모두 동일하나 패널로 최초 진입한 해이기 때문에 조사 부담이 높아 응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사 문항 중 변하지 않는 특성을 묻는 문항이거나 응답 부담이 높은 문항 등에 대해 검토하였음. 이에 교육 및 개인사의 일부 항목은 17차에서 조사하지 않고, 패널 2년 차인 18차에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17차 User Guide를 참조 바람(2023년 4월 초 17차 조사데이터와 함께 공개 예정).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용 설문에는 원가구용 설문과 더불어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 및 결혼 등의 이유로 원가구(가구주 중심)에서 분리된 가구를 조사하기 위한 17차 신규 가구용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가구원용 설문도 마찬가지로 16차 연도에 가구원용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을 조사하기 위한 17차 신규 가구원용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

구분		내용
가구	원가구 (유형1)	- 16차 연도에 조사 완료된 패널 가구 - 2022년 17차 신규 표본 가구
	17차 신규 가구 (유형2)	-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 결혼, 직장, 학업, 위탁,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원가구(유형1: 1~15차 연도 조사 완료 가구)에서 분리된 가구 ※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분리된 가구원은 원가구에 속하는 가구원(9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한 가구원)이므로 17차 신규 가구(유형2)로 조사하지 않고 원가구(유형1)로 조사
가구원	원가구원 (유형3)	- 16차 연도 조사에서 가구원 설문에 응답한 가구원 - 만 15세 이상(2007년 출생자 및 그 이전 출생자)이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사람 ※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하여 17차 신규 가구용(유형2) 설문으로 조사하더라도 2021년(16차 연도) 가구원 설문에 응답한 가구원이면 원가구원용(유형3)으로 조사 - 2022년 17차 신규 표본 가구의 가구원 ※ 패널 최초 진입에 따른 조사 부담으로 일부 문항 제외하고 조사 (누락 문항은 18차 조사 예정)
	17차 신규 가구원 (유형4)	- 16차 연도 가구원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 1) 2021년도에 만 15세가 된 가구원이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사람 2) 2021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가구원 3) 16차 연도에 출생, 결혼, 합가 등으로 원가구 혹은 신규 가구에 새로 진입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 ※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진입한 가구원은 2021년 1년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이 아니므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7차 신규 가구원용 설문 대상이 아님.

부가조사 설문은 각 연도마다 별도의 주제(special issue)를 개발하여 일회성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 몇 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부가조사는 아동, 복지 인식, 장애인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3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주기에 따라 2022년 17차 조사에서는 복지 인식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4차·7차·10차·13차·16차 연도에는 아동 부가조사, 2차·5차·8차·11차·14·17차 연도에는 복지 인식 부가조사, 3차·6차·9차·12차·15차 연도에는 장애인 부가조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17차 연도 패널 조사의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을 살펴보면(〈표 3-1-2〉 참조), 먼저 가구용 설문은 표본 대상 가구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에게 응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 방법은 면접 조사이며 조사 기준 연도는 2021년, 조사 기준 시점은 12월 31일이다. 가구원용 설문은 경제활동인구인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만 15세 이상 여부의 판단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하되 신규 진입자와 2021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원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원용 설문의 조사 기준 연도와 시점은 가구용 설문과 동일하다.

17차 연도 부가조사로 실시한 복지 인식 부가조사는 이전 차수(5, 8, 11, 14차) 복지 인식 부가조사에 응답한 가구원(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복지 인식 부가조사는 사회, 정부 역할, 복지제도 및 운영·재원 부담 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롯하여 조세 부담 및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인식, 정치 참여 수준과 성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기준 시점은 가구용과 가구원용 설문과 달리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표 3-1-2〉 17차 연도 조사표 유형별 조사대상 및 조사 기준 시점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복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li> <li>• 조사 기준 연도: 2021. 1. 1.~12. 31.</li> <li>• 조사 기준 시점: 2021. 12. 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li> <li>- 2021. 2.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원</li> </ul> </li> <li>• 조사 기준 연도: 2021. 1. 1.~12. 31.</li> <li>• 조사 기준 시점: 2021. 12. 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8, 11, 14차 복지 인식 부가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응답한 만 19세 이상 가구원</li> </ul> </li> <li>• 조사 방법: 가구 방문을 통한 직접 면접 조사</li> <li>• 기준 시점: 조사일 현재</li> </ul>

## 2. 조사 문항

가구용(유형1, 유형2), 가구원용(유형3, 유형4), 부가조사용(복지 인식) 각 설문의 조사 영역은 〈표 3-1-3〉과 같다. 가구용 설문은 가장 많은 영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구 일반사항, 가계 수지 및 생활실태, 경제활동 상태, 건강 및

의료 실태, 사회보장 제도 및 복지 서비스 등과 관련된 총 1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용 설문은 가구의 대표 응답자가 답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들로, 해당하는 가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는 총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단 ‘교육’과 ‘개인사’의 경우 유형4 신규 가구원용에만 포함됨). 부가조사 설문(복지 인식)은 전반적인 사회·정치적 인식과 태도, 복지 재원 및 대상 범위, 정치 참여와 성향 등에 대한 조사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3〉 17차 연도 조사 영역

조사표 유형	조사 영역	
가구용 (원·신규)	I. 가구 일반 사항 II. 건강 및 의료 A III. 경제활동 상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V. 의료 B VI. 주거 VII. 생활비 VIII. 소득 IX. 부채, 이자	X. 재산 XI. 생활 여건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장려세제 XIII.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IV. 노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V.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VII. 가족
가구원용 (원·신규)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B. 근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 습관,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F. 교육(신규 가구원용에만 포함됨) G. 개인사(신규 가구원용에만 포함됨)
복지 인식 부가조사	I.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II. 복지 재원 및 대상 범위 III. 정치 참여와 성향

이상 큰 틀에서 살펴본 3개 조사표의 조사 영역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표 3-1-4〉와 같다.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개인사와 관련한 문항은 그 성격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설문에 나누어 놓았다. 근로 관련 문항은 주로 개개인의 일자리 특성 및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주요 문항은 가구원용 설문에 배치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근로 능력 정도 및 경제활동 상태와 관련한 문항들은 가구용 설문에 삽입되어 있다. 가구의 경제 상황은 가구 단위의 소득과 지출 및 재산과 관련된 문항으로 가구용 설문에 들어 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 외의 가구 여건 관련 문항은 주로 가구용 조사 설문의 해당 영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다만 가족 관계 및 가족생활 등에 대한 인식 문항은 가구원용 설문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별 가입 및 수급 현황은 응답 대상자에 따라 가구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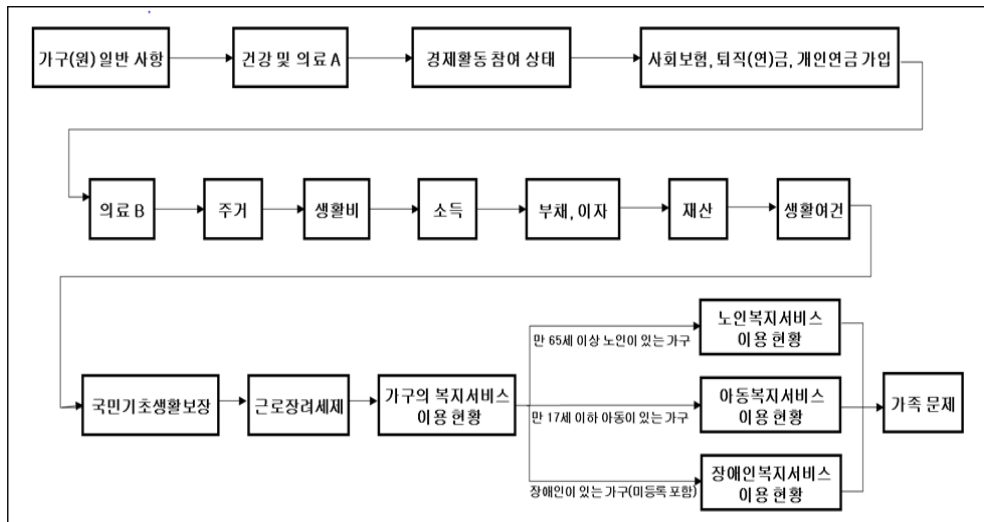
가구원용 설문으로 구분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각 영역에 배치되어 있다. 그 밖에 개인의 의식 및 인식과 관련된 문항이나 생활 습관 및 정신건강 관련 문항들은 가구원용 설문에 포함되어 있다.

〈표 3-1-4〉 조사 주제별 구성

주제	세부 주제	항목 포함 영역
1. 가구원 배경 및 개인사	1) 가구원 일반 사항	가구용 I. 가구 일반 사항 가구원용 F. 교육
	2) 부모 세대	가구원용 G. 개인사
	3) 개인사	가구원용 G. 개인사
2. 근로활동	1) 직업 이력	가구원용 G. 개인사
	2) 경제활동 상태	가구용 III. 경제활동 상태 가구원용 B. 근로
	3) 고용지원 프로그램	가구원용 B. 근로
3. 경제 상황	1) 소득	가구용 VIII. 소득
	2) 지출 및 저축	가구용 VII. 생활비, X. 재산
	3) 재산 및 부채	가구용 IX. 부채 및 이자, X. 재산
	4) 기초생활	가구용 XI. 생활 여건
4. 가구 여건 (복지 욕구)	1) 보육, 교육	가구용 XV.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2) 건강 및 의료	가구용 II. 건강 및 의료 A, V. 의료 B
	3) 주거	가구용 VI. 주거
	4) 가족 관계	가구용 XVII. 가족 가구원용 E. 생활 습관,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5) 기타 가구 여건	부가조사. 아동 부가조사(1·4·7·10·13·16차) 장애인 부가조사(3·6·9·12·15차)
5. 사회보장 가입 및 수급 현황	1) 사회보험	가구용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가구원용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2) 공공부조	가구용 I. 가구 일반 사항(기초보장수급 형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1~6월) XII-1. 국민기초생활보장(7~12월) XII-2. 근로(자녀)장려세제
	3) 사회복지 서비스	가구용 XIII.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IV. 노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V.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부가조사. 장애인 부가조사(3·6·9·12·15차)
6. 기타	1) 기타 생활 여건 및 사회적 관계망	가구원용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2) 생활 습관 및 정신건강	가구원용 E. 생활 습관,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3) 복지·사회·정치 문제 인식	부가조사. 복지 인식 부가조사(2·5·8·11·14·17차) 가구원용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성역할)

앞에서는 크게 조사표의 구성과 조사 영역을 살펴보았고, 아래에서는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가구용(유형1, 유형2) 설문에서는 가구원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 의료 이용 현황, 경제활동 상태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의료, 주거, 지출, 소득, 재산, 생활 여건 등 욕구 영역별 가구 여건을 파악하고 더불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 가구의 사회보장 가입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가구용 설문의 전체적인 조사 영역 흐름은 [그림 3-1-2]와 같으며, 영역별 세부 조사 내용은 <표 3-1-5>와 같다.

[그림 3-1-2] 가구용(유형1, 유형2) 설문의 조사 영역 흐름도



<표 3-1-5> 가구용(유형1, 유형2) 설문 주요 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 가구일반 사항	1) 가구원 수(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의 수)	2021년 1년간
	2) 가구원 일반 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장애 종류 및 등급, 혼인 상태, 종교, 동거 여부	전체 가구원 대상
	3) 가구 일반 사항 - 가구 형태: 단독 가구, 모자·부자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기타 - 기초보장 수급 형태: 일반 수급, 조건부 수급, 특례 가구 등	2021. 12. 31. 기준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 의료급여 수급 형태: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국가유공자 ※ 기초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 형태 세분화: 가구원 전부 수급, 가구원 중 일부 수급	
II. 건강 및 의료 A	1) 건강 상태	2021. 12. 31. 기준 전체 가구원 대상
	2) 의료기관 이용 및 주요 병명 - 외래진료 횟수, 입원 횟수 및 입원 일수, 병원에 입원한 주요 이유,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형태, 건강검진 횟수, 만성질환, 주요 병명, 12월 31일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	2021년 1년간 전체 가구원 대상 2021. 12. 31. 기준
III. 경제활동상태	1) 근로 능력 정도 - 근로 능력 정도, 근로 무능력 사유	2021. 12. 31. 기준 만 15세 이상 가구원
	2) 경제활동 참여 상태 - 2021년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 2021. 12. 31. 기준 경제활동 참여 상태	
	3) 취업자 일자리 특성 - 고용 관계, 근로시간 형태, 근로 계약 기간 설정 여부, 근로 지속 가능성 및 불가능 사유,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4) 미취업자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1) 공적연금 가입 - 가입 형태, 가입한 연금제도, 가입 종별, 국민연금 납부 여부, 미납 유형, 납부 예외 사유 및 기간, 미납 이유 및 기간, 미가입 이유	전체 가구원 대상 (다만 만 15세 미만 가구원 등 해당 제도의 적용 제외 대상은 '비해당'으로 기입)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3) 퇴직(연)금 가입 - 퇴직금 적용 여부, 퇴직연금 가입 여부	
	4) 개인연금 가입 여부	
	5)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의 가입 여부	
V. 의료 B	1) 건강보험 - 공적 건강보험 가입 여부, 직장·지역 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미납 사유, 미납 기간, 건강보험 이용 시 문제점	2021. 12. 31. 기준 2021년 1년간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 여부 및 종류, 의료급여 이용 시 문제점	
	3) 민간의료보험 12월 보험료	
VI. 주거	1) 이사 경험 여부	2021년 1년간
	2)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주거 점유 형태	2021.12.31. 기준
	3) 주택 구입 - 주택 가격(보증금), 주택 비용 마련 방법, 지난 1년간 주택 관련 총 부채 원금 상환액, 12월 31일 기준 주거 관련 부채액, 연체 횟수	2021. 12. 31. 기준 2021년 1년간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4) 주택 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 주택 재질, 방음, 난방, 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여부 등 - 방 개수, 주거면적, 상하수도·부엌·화장실 등 주거시설의 종류 및 사용 형태	2021. 12. 31. 기준
	5)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융자 지원, 저소득층 월세 지원, 주택 구입 자금 지원, 기타 주거복지 관련 사업 이용 경험	2021년 1년간
VII. 생활비	1) 비목별 생활비 -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2021년 1년간 월평균액
	2) 사적이전지출 - 비동거 가구원에게 보낸 현금과 현물(현금 환산액) - 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 등에게 제공한 현금과 현물(현금 환산)	
	3)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4) 총생활비: 월평균 생활비	
VIII. 소득	1)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 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2021년 1년간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총급여액, 임시·일용근로자 총급여액, 고용주·자영자 순소득 및 전입소득, 농림축산업 경영주 경지 규모, 자가소비액, 판매수입, 이전소비액, 잡수입, 총비용, 순소득, 어업 경영주 수산물 자가소비액, 판매수입, 이전소비액, 잡수입, 총비용, 순소득, 기타근로소득	2021년 1년간 총액
	2) 원천별 가구 소득(근로소득 제외) -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기타정부보조금, 기타소득, 환급금, 사적이전소득(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에게 받은 현금과 현물, 9개월 미만 동거 가구원의 현금과 현물 소득, 그 밖에 민간부문에서 받은 현금과 현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개월 수 및 급여액	
IX. 부채, 이자	1) 부채 - 부채 형태(금융기관 대출, 일반 사채, 카드 빚, 전세 보증금, 외상 및 미리 탄 켄돈 등)별 금액	2021. 12. 31. 기준
	2) 이자 -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 연간 총액(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주거이자 제외한 기타 이자)	2021년 1년간 총액
	3) 부채 용도 - 항목별 부채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생활비, 주택 관련 자금, 교육비, 의료비, 빚 갚음, 기타)	2021. 12. 31. 기준
X. 재산	1) 부동산 - 소유 부동산(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별 금액 - 점유 부동산(전세 보증금 준 것, 그 밖의 권리금 등)별 금액	2021. 12. 31. 기준
	2) 동산 - 보유 농기계 종류 및 가격, 사육 농축산물 종류 및 가격	
	3) 금융재산 - 금융재산별(예금, 적금, 주식·채권·펀드, 타기 전 부은 켄돈, 기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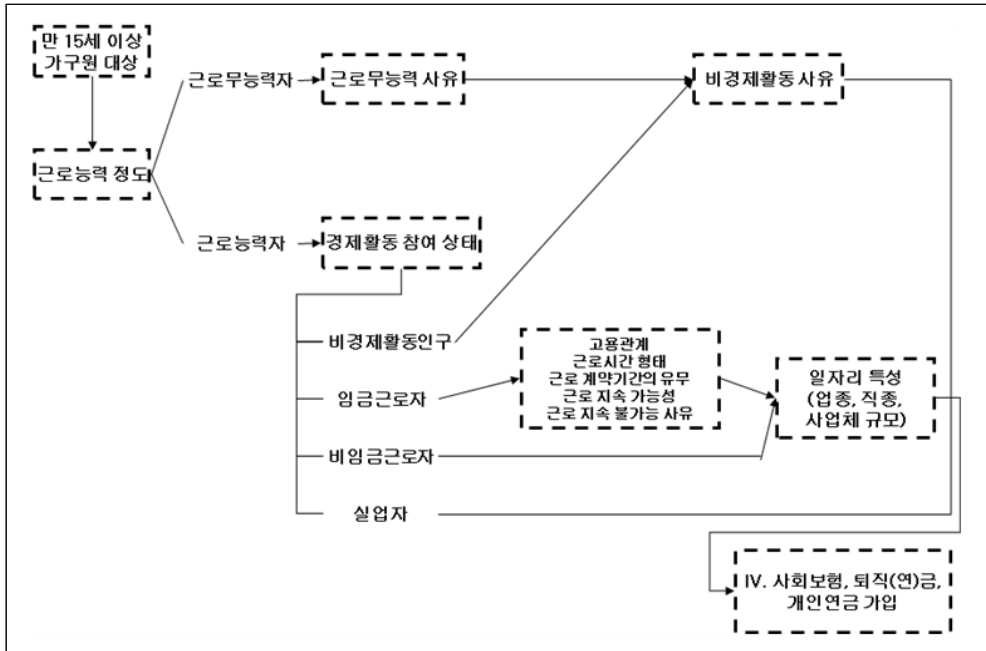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4) 기타 재산 - 비영업용 자동차 보유 대수 및 가격 - 기타 재산(회원권, 영업용 자동차 등 운송·생계 수단, 귀금속 등)별 총액	
XI. 생활 여건	1) 박탈 지표 - 집세 미납, 공과금 미납, 세금 미납, 공교육비 미납, 난방 못함, 의 료서비스 이용 못함, 신용불량 경험 여부,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급여 자격 정지 여부	2021년 1년간
	2) 식생활 보장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료품 미구입 및 균형 잡힌 식사 불가 빈 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식 및 결식 경험 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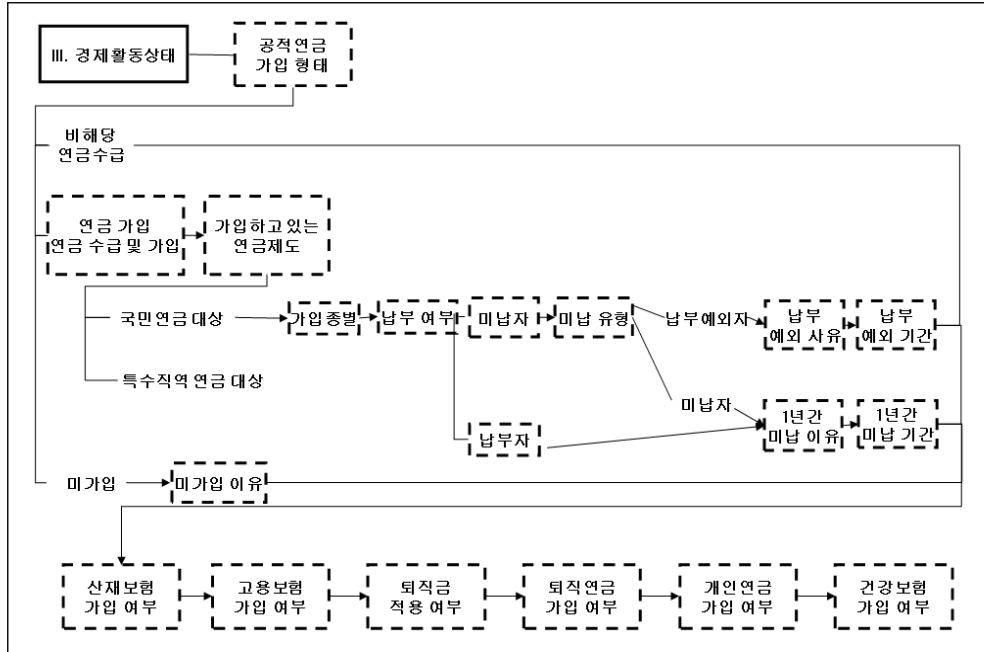
주: 구체적인 조사 문항의 수정, 신규 문항의 추가, 삭제, 3년 주기 문항 등에 관해서는 매년 4월 초 공개되는 User Guide를 참고(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s://www.koweps.re.kr>)

가구용 설문 영역 중 일련의 논리를 가지고 구성한 경제활동 상태 영역,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구체적인 논리도는 각각 [그림 3-1-3], [그림 3-1-4], [그림 3-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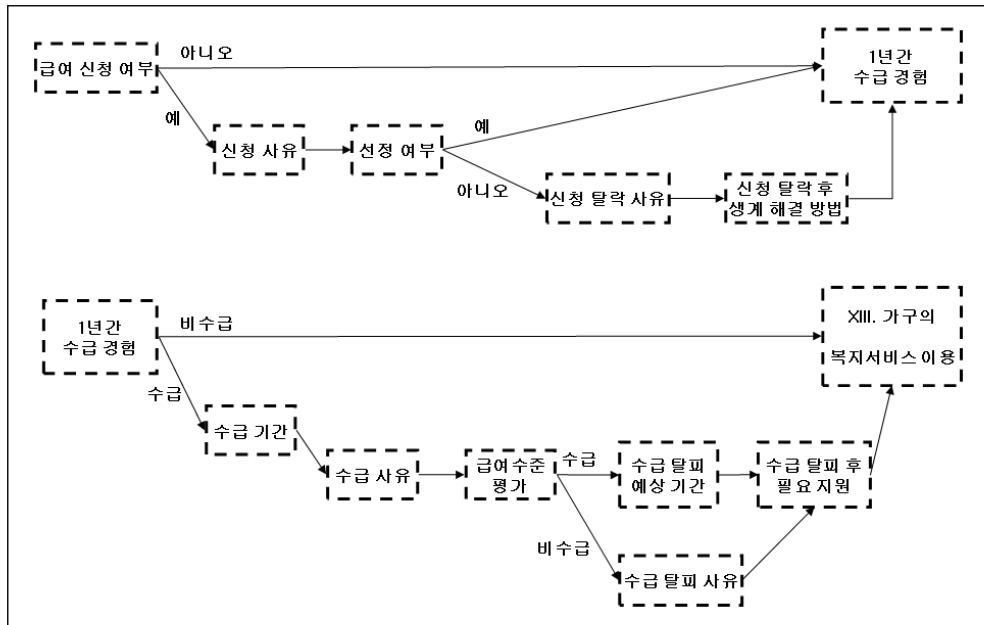
[그림 3-1-3] 가구용 조사표 III. 경제활동 상태 영역 논리도



[그림 3-1-4] 가구용 조사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 논리도



[그림 3-1-5] 가구용 조사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 논리도



다음은 가구원용(유형3, 유형4) 조사표에 해당하는 설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원용 설문은 중·고등학생이 아닌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퇴직금·개인연금 수급, 근로,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생활 습관과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교육, 개인사 영역으로 구성된다. 가구원용(원·신규) 설문의 영역별 세부 문항 구성은 <표 3-1-6>과 같다.

<표 3-1-6> 가구원용(유형3, 유형4) 설문 주요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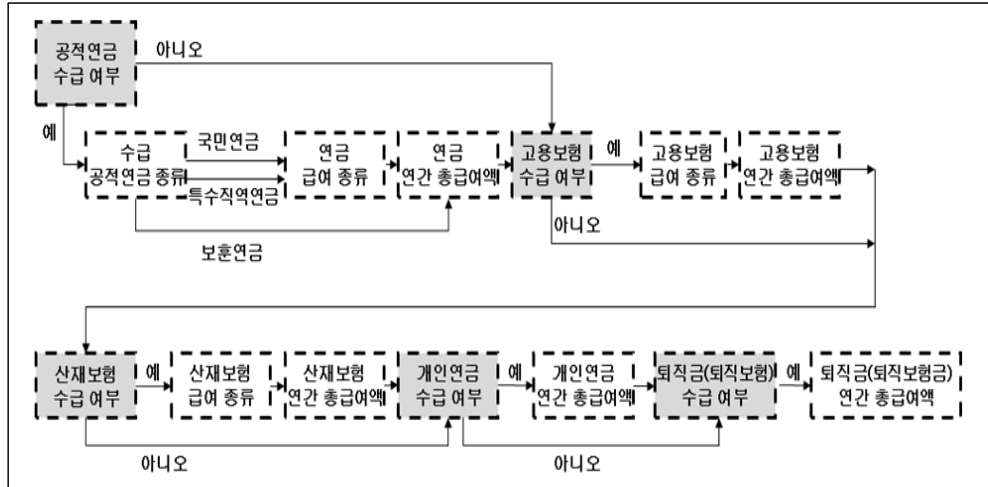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1) 공적연금 - 공적연금 수급 여부·종류, 국민연금 급여 종류, 일시금, 연금 수급 기간 및 금액, 특수지역연금 급여 종류, 일시금, 연금 수급기간 및 금액, 보훈연금, 기타연금 일시금, 연금 수급기간 및 금액	2021년 1년간
	2)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 여부, 급여 종류, 수급 개월 수 및 총현금급여액	
	3) 산재보험 - 산재보험 수급 여부, 급여 종류, 일시금 총액, 연금 수급 개월 수 및 총현금급여액	
	4) 개인연금 - 개인연금 수급 여부, 일시금 총액, 연금 수급 개월 수 및 총급여액	
	5) 퇴직금 및 퇴직보험 - 퇴직금 수급 여부, 일시금 총액, 보험금 수급 개월 수 및 총급여액	
B. 근로	1) 근로 유형	2021. 12. 31. 기준
	2) 취업자 - 실직 경험 여부, 실직 사유, 현 직장 근무 연수,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 및 시간당 임금, 노조 가입 여부, 정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2021. 12. 31. 기준 2021년 1년간
	3) 미취업자 -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총 구직 기간, 구직상의 어려움, 희망 임금,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 지난주 알맞은 일자리 유무,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정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4) 직업기술 -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의 종류 및 해당 직종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1) 생활실태 - 인터넷 사용 여부, 유해 환경 근로 경험 여부	2021년 1년간
	2) 생활 만족 - 건강 상태,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 생활 만족도 등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1)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 활동 - 신뢰, 지역사회 이웃에 대한 도움 의사, 비선호 시설 수용 정도(3년 주기) - 기부 혹은 자원봉사활동 여부, 연간 기부액, 자원봉사활동 연간 횟수	2021년 1년간
	2) 부모님과과의 접촉 정도 - 비동거 부모님의 유무, 왕래 횟수, 전화 통화 횟수	
	3) 성역할에 대한 인식 - 여성전일제와 가족 일상생활 양립,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노동과 가족 관계, 전업주부 역할과 소득 활동 역할 간의 중요성,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녀 소득 기여,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책임, 가족 돌봄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2021년 조사일 현재
E. 생활 습관, 가족 관계, 정신건강	1) 생활 습관 및 출산 경험 여부 - 흡연, 음주, 음주로 인한 문제, 출산 경험 여부	2021년 조사일 현재 2021년 1년간
	2) 정신건강 - 우울감, 자아 존중감	2021년 조사일 현재
	3) 가족 관계 - 부부 폭력 경험, 부부 폭력 가해 경험, 가족생활,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021년 1년간, 2021년 조사일 현재
	4) 자살 관련 -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2021년 조사일 현재
	5) 행복 지수	2021년 조사일 현재
F. 교육(신규 가구원용)	1) 최종 학력	
	2)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 및 소재지 - 일반계(일반) 등 열일곱 가지 유형, 소재지(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3) 출신 대학의 전공계열 및 소재지 - 인문계열 등 열두 가지 유형, 소재지(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G. 개인사 (신규가구원용)	1) 아동기 - 성장 지역, 경제생활 상태, 조실부모·부모 이혼·학업 중단·친척집 성장 경험 여부 및 연령	
	2) 부모님 - 교육 수준, 직업, 부모로부터의 상속·증여 경험 및 경제적 도움 정도	
	3) 직업 이력 - 만 15세 이후 첫 직장, 이후 가장 최근까지 6개 주요 직장의 근무 기간 및 고용 형태	
	4) 직업기술 - 보유 직업기술(1~3순위), 보유 직업기술 직종	
	5) 다문화 가정 여부 -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왔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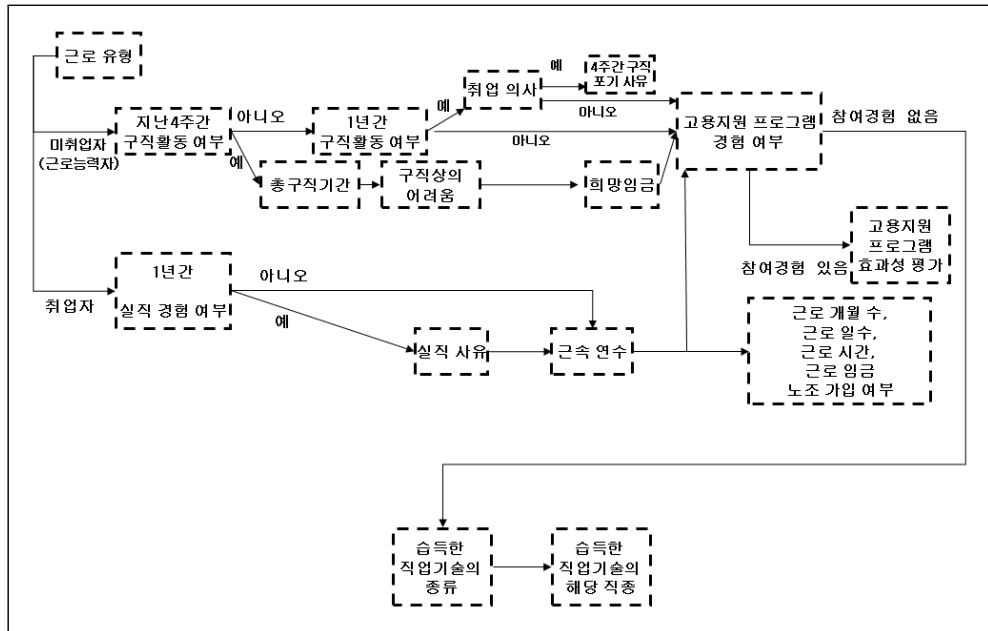
주: 구체적인 조사 문항의 수정, 신규 문항의 추가, 삭제, 3년 주기 문항 등에 관해서는 매년 4월 초 공개되는 User Guide를 참고(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s://www.koweps.re.kr>)

가구원용 설문에서도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영역과 근로 영역의 경우 각각의 논리에 따라 [그림 3-1-6], [그림 3-1-7]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3-1-6] 가구원용 조사표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영역 논리도



[그림 3-1-7] 가구원용 조사표 B. 근로 영역 논리도



마지막으로 복지 인식 부가 조사의 조사 내용은 사회 계층 구조 및 소득 격차, 정책 영역별 정부 역할, 복지 제도 및 운영·재원 부담 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롯하여 조세 부담 및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인식, 정치 참여 수준과 성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표 3-1-7>과 같다.

<표 3-1-7> 부가 조사표(복지 인식) 주요 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 사회 계층 구조 및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 제도 영역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한 인식 - 복지 영역별 운영 및 재정 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2022년 조사일 현재
II. 복지 재원 및 대상 범위	- 세금 수준 및 부담에 대한 인식 - 세금 사용 영역 및 방식에 대한 인식	2022년 조사일 현재
III. 정치 참여와 성향	- 정치 참여 정도 및 정치 성향에 대한 인식	2022년 조사일 현재

## 제2절 조사 방법

### 1. 현지 조사 방법

#### 가. 조사 준비

##### 1) CAPI 시스템 개선

2010년의 5차 조사부터는 최신 조사 시스템, 즉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방식을 탈피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을 위한 CAPI 시스템은 4차 조사에서 추적 조사 시 개발된 블레즈(Blaise) 기반의 CAPI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이고 진일보한 조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와 개발 계약을 체결해 만든 C언어를 이용한

시스템이다.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CAPI 매니저(Manager), CAPI 인터뷰어(Interviewer), CAPI 리뷰어(Reviewer), 데이터베이스(DB) 및 전송 프로토콜 등을 개발하였으며, 그 후 약 15일간 개발된 시스템 테스트를 하였다.

2021년 2월에는 지난 차수의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테스트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매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의 시스템 오류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테스트하고 있다.

## 2) 조사 안내문 발송

한국복지패널 17차 조사에서는 현지 실사에 앞서 2021년 16차 조사에서 구축한 5,990가구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조사 안내문은 두 번, 즉 연초에 설 선물과 함께 17차 조사 협조가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사가 종료된 시점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조사 응답에 대한 감사 인사와 내년 조사 협조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과 추석 선물을 발송하였다. 본조사 종료 후 실시된 신규유치조사 가구에는 복지패널가구로 선정된 이유, 복지패널조사 조사 협조와 안내, 언론에 보도된 한국복지패널 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하여 사전에 발송하였다.

패널 조사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가구에 협조를 구하는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표본 가구들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사를 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는 이사 가구 파악을 위하여 이사한 사실을 연구원에 통지하는 경우 이사 선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가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원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사대상 가구의 이사 여부를 재확인한다.

## 3) 조사원 모집 및 교육·훈련

2022년도 17차 본조사에는 패널 조사 및 대규모의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평가 성적이 우수한 조사원을 선발, 투입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은 조사 지도원 14명과 조사원 28명, 1인 체제 5명으로 총 47명이다.

2022년 17차 조사에서도 16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료 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한 CAPI 조사를 하였다. 조사원들의 교육은 총 4일 실시했다. CAPI 시스템과 조사표 내용에 대한 적응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컴퓨터 활용 교육과 조사표 내용 교육을 합쳐 3일, 업무계약 관련 내용, CAPI 시스템 개발 업체인 한국리서치의 자료수집 및 전송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조사표 및 조사 답례품 수령 등을 위해 1일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계약, 조사표 내용, CAPI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마친 후 마지막 4일차 오후에는 20년 이상의 조사 경력을 가진 전문 지도원이 조사 현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과 조사 방법, 조사표 내 필수 에디팅 등에 대한 실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 방식은 기존 오프라인 교육에서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하였다. 1일차에 진행한 업무계약 관련 내용 및 구비서류 작성, 조사표 및 조사 답례품 수령일에는 전원(47인)이 오프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하였고, 2~4일차에는 신규 조사원과 각 팀 조사 지도원(16인)을 제외하고는 전원(31인)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오프라인 참석자를 최소화하였다. 세종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진이 각각 자신들의 조사표 개발 파트에 따라 진행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① 조사 취지와 주요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 ② 조사표 종류별 작성 지침서 설명, ③ 조사에 따른 기타 주의 사항, 즉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연령 조건표, 사회복지제도 참고 자료, 시세 및 소득 참고 자료, 조사 안내문 및 팸플릿 배포, 가구 방문 시 인사말 등이다.

신규유치조사는 본조사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바로 조사원 교육을 수행하였다. 본조사에 참여한 조사원들로 구성하여 투입했으며,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은 조사 지도원 14명, 조사원 23명, 1인 체제 3명으로 총 40명이다.

신규 조사원이 투입된 것이 아닌 17차 본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이 추가패널 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조사표 내용, CAPI 사용법에 대한 조사원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계약 관련 내용 및 구비서류 작성, 조사표 및 조사 답례품 수령, 현장조사 안전 매뉴얼 안내 및 배포 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사회교육장에서 1일간 진행하였다.



## 나. 현지 조사의 운영

### 1) 조사 기간 및 현지 조사 운영

본조사는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7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본조사 종료 후 신규 조사는 7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초기 단계에는 CAPI 시스템에 대한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조사 지역당 가구 수를 일부 조정하여 할당하였다.

지도원들은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 패널 가구에 대한 조사 협조를 부탁하면서 진행하였다. 조사팀은 3인 1조로 조사 지도원 1인이 2인의 조사원을 통솔하는 체계로 운영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 지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조사 지도원은 조사원의 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에디팅하고 미흡한 경우 재조사를 한다. 또 조사표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상의 문제점이나 조사표 작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연구원과 소통함으로써 통일된 추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패널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 대상 가구원을 만나 응답자가 답한 내용을 CAPI 시스템으로 구현된 노트북의 조사표에 기록하는 타계식 직접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 귀가나 장기 출타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조사 기간에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 거주, 여행 및 출장, 병원 입원, 군대 입대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가구원이 집에 없으면 유치·전화 조사나 대리 응답 조사를 제한적으로 병행하였다. 단 이 경우에도 에디팅 단계에서 전화 면접 및 추가 검증으로 응답 정보를 보충함으로써 설문문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2. 조사 자료 처리

조사가 완료된 자료는 CAPI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저장된다. 저장된 자료에 대한 현지 오류 검증 과정을 1차적으로 수행한 후 지도원 및 조사원이 모두 참여하는 오류 수정(에디팅) 과정을 거쳐 조사표 수정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오류 수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작성상의 오류(미기입 또는 오기입)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지도원이 최종 점검 작업에서 오류를 수정하였다.

1차부터 4차 조사까지는 종이 조사표(PAPI)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조사 완료 후 별도의 코딩 및 입력 절차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5차 조사 이후부터 CAPI 시스템을 도입하여 별도의 입력 절차는 필요 없었으며,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소프트 에디팅(soft editing) 과정에서 오류를 검증하도록 하였다. 최종 에디팅이 완료된 자료는 SAS, SPSS, STATA 데이터 포맷으로 한국복지패널 조사 DB에 저장되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무 분장에 따라 SAS, SPSS, STATA 등의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분석 보고서에 필요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 제4장

###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제1절 일반적 특성

제2절 경제활동 상태



## 제 4 장

#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 제1절 일반적 특성

본 보고서에서는 전체 대상 가구뿐만 아니라 소득집단별 2개의 계층(균등화된 소득<sup>16)</sup>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이 60% 이상인 일반 가구와 그 미만인 저소득 가구)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1-1〉에서 알 수 있듯 전체적으로 기타 가구(68.17%)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단독 가구(30.74%)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모자 가구는 0.69%, 부자 가구는 0.23%였고, 소년·소녀가장 가구(조손 가구 포함)는 0.17%로 나타났다.

〈표 4-1-1〉 가구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 가구	30.74	57.69	20.79
모자 가구	0.69	1.26	0.49
부자 가구	0.23	0.46	0.14
소년·소녀가장 가구	0.17	0.30	0.13
기타 가구	68.17	40.29	78.45
계	100.00	100.00	100.00

소득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 가구에서는 기타 가구가 78.45%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에서 기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40.29%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비해 단독 가구와 모자·부자 가구의 비중은 저소득 가구(각각 57.69%, 1.72%)에서 일반 가구(각각 20.79%, 0.63%)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16) 균등화된 소득이란 '균등화된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균등화된 소득} = (\text{경상 소득} - \text{공공부조소득}) / \sqrt{\text{가구원 수}}$$

경우 저소득 가구의 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구에서는 0.13%에 불과하였다.

다음의 <표 4-1-2>는 가구 규모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규모는 1인 가구로 전체 가구의 30.77%, 그 다음은 2인(28.46%), 3인(20.98%), 4인(15.19%)의 순이었다. 그리고 5인 이상 가구는 4.60%를 차지하였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각 57.69%, 30.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일반 가구에서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이 각 20.83%, 27.64%로 저소득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2> 가구 규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인	30.77	57.69	20.83
2인	28.46	30.70	27.64
3인	20.98	7.58	25.92
4인	15.19	3.03	19.67
5인	3.59	0.46	4.75
6인	0.85	0.32	1.04
7인 이상	0.16	0.22	0.14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의 <표 4-1-3>은 평균 가구원 수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것이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전체 가구가 2.4명이며, 일반 가구 2.6명, 저소득 가구 1.6명으로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평균 1명 정도 가구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소득집단별 평균 가구원 수

(단위: 명)

구분	평균 가구원 수	표준오차
전체	2.4	0.01
저소득	1.6	0.01
일반	2.6	0.02

## 1.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의 <표 4-1-4>는 복지패널 조사대상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소득 집단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먼저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원 가운데 가구주가 39.33%, 가구주의 배우자가 24.58%, 가구주 및 배우자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1.15%, 가구주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주 등 직계비속이 33.12%를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직계존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1.12%로 일반 가구의 1.15%보다 약간 낮았으며, 직계비속 비율은 19.36%로 일반 가구의 35.78%보다 낮았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남성(49.97%)과 여성(50.03%)의 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 가구원의 남녀 성비는 44.30:55.70으로 여성 가구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 가구 가구원의 남녀 성비는 51.07:48.93으로 남성 가구원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서는 20세 미만인 17.5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50대(16.47%), 40대(15.94%), 30대(13.87%), 20대(13.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 근로활동이 미약한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58.21%로 일반 가구의 15.70%에 비해 약 3.7배나 높았다.

<표 4-1-4>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39.33	58.31	35.66
	가구주의 배우자	24.58	18.10	25.84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15	1.12	1.15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3.12	19.36	35.78
	기타 친·인척(형제자매 포함)	1.82	3.11	1.57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0.00	0.01	-
성별	남성	49.97	44.30	51.07
	여성	50.03	55.70	48.93
연령	20세 미만	17.51	8.15	19.32
	20~30세 미만	13.61	7.48	14.80
	30~40세 미만	13.87	5.55	15.48
	40~50세 미만	15.94	8.87	17.31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50~60세 미만	16.47	11.75	17.38
	60~70세 미만	12.37	20.28	10.83
	70~80세 미만	7.09	24.68	3.68
	80세 이상	3.14	13.25	1.19
학력	초등학교 졸 이하	20.53	39.96	16.77
	중학교 졸 이하	7.97	14.57	6.70
	고등학교 졸 이하	27.28	25.71	27.58
	전문대 졸 이하	12.95	6.03	14.29
	대학교 졸 이하	27.75	12.74	30.66
	대학원 졸 이상	3.51	0.98	4.00
장애	비장애인	93.79	82.02	96.07
	장애인	6.21	17.98	3.9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82	8.66	1.68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17	9.12	2.02
	비등록 장애인	0.22	0.20	0.23
만성질환	비해당	57.67	29.22	63.18
	있음	42.33	70.77	36.82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4.81	2.80	5.20
	3~6개월 미만 투병, 투약	1.95	1.51	2.03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35.57	66.46	29.59
혼인 상태	비해당	14.29	6.40	15.82
	유배우	50.13	37.14	52.65
	사별	6.01	22.21	2.87
	이혼	4.52	11.21	3.22
	별거	0.39	0.75	0.31
	미혼	24.57	22.05	25.06
	기타(사망 등)	0.09	0.24	0.06
종교	있음	41.86	45.25	41.20
	없음	58.14	54.75	58.80
동거 여부	동거(같이 살고 있다)	96.30	99.03	95.77
	비동거	3.69	0.97	4.22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1.29	0.08	1.52
	해외 근무 중	0.05	-	0.06
	학업(해외 유학 포함)	1.79	0.30	2.08
	입원, 요양	0.06	0.12	0.05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0.03	0.12	0.01
	가출	0.00	-	0.00
	분가	0.17	0.03	0.20
	사망	0.10	0.25	0.07
	기타(군 복무 등)	0.20	0.07	0.23
	계	100.00	100.00	100.00

주: 학력에서 항목의 이하는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을 다 포함한 값임.



전체 가구원의 학력 분포는 대졸(27.7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졸 이하(27.28%), 초졸(20.53%), 전문대 졸(12.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의 경우 대졸(30.66%), 고졸(27.58%), 전문대 졸(14.29%)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자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저소득 가구는 초졸 이하가 39.9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졸(25.71%), 중졸(14.57%), 대졸(12.74%)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연령은 높고 학력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가구원에서 장애를 가진 가구원은 6.21%였으며 이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2.8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록 장애인의 비율도 0.22% 정도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장애 가구원 비율이 17.98%로 나타나 일반 가구의 3.93%에 비해 약 4.6배 높았다. 또 저소득 가구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원 비율은 8.66%로 일반 가구의 1.68%에 비해 약 5.2배나 높았다. 저소득 가구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원의 비율도 9.12%로 일반 가구의 2.02%에 비해 약 4.5배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원 중 42.33%는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 만성질환을 앓는 가구원이 70.77%로 일반 가구(36.82%)에 비해 약 1.9배 많았다. 이들 만성질환 가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5.57%가 6개월 이상 투병 혹은 투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가구는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66.46%를 차지하였다.

가구원의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원 중 50.13%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많은 저소득 가구에서는 사별 22.21%, 이혼 11.21%로서 일반 가구(2.87%, 3.2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30~50대 연령층이 많은 일반 가구에서는 52.65%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종교가 있는 사람은 41.86%, 종교가 없는 사람은 58.14%였다. 일반 가구의 경우 종교가 없는 가구원의 비율(58.80%)이 종교가 있는 가구원의 비율(41.20%)보다 높았다. 저소득 가구에서도 종교가 없는 가구원의 비율(54.75%)이 종교가 있는 가구원 비율(45.25%)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원 가운데 다른 가구원들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3.69% 정도였다. 가구원의 1.79%는 학업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다른

지방 근무, 분가, 해외 근무, 입원 혹은 요양 등으로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가구 원도 있었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 학업으로 인한 비동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2.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으로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4-1-5>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남성 가구주(76.47%)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남성 가구주가 49.55%, 여성 가구주가 50.45%, 일반 가구는 남성 가구주가 85.00%, 여성 가구주가 15.00%로 저소득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이 일반 가구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0대 가구주가 23.88%, 40대 가구주가 20.20%이며,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도 37.9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의 경우 50대 가구주가 27.26%, 40대 가구주가 24.20%, 30대 가구주가 15.09%로 나타나 근로활동이 활발한 30~50대 가구주의 비율(66.55%)이 높은 반면, 저소득 가구는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의 비율(73.80%)이 높았다.

가구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졸 이하가 29.8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졸 28.61%, 초졸 15.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초졸의 비율이 4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 24.2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 가구는 대졸 비율이 34.36%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31.67%, 전문대 졸 이하 14.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장애를 가진 가구는 9.02%였다. 이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3.03%,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5.47%로 나타났고, 비등록 장애인의 비율도 0.52% 정도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장애 가구주 비율이 19.54%로 일반 가구의 5.68%에 비해 약 3.4배 높게 나타났다.

〈표 4-1-5〉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성별	남성	76.47	49.55	85.00
	여성	23.53	50.45	15.00
연령	20세 미만	0.16	0.06	0.19
	20~30세 미만	5.70	2.53	6.70
	30~40세 미만	12.15	2.85	15.09
	40~50세 미만	20.20	7.57	24.20
	50~60세 미만	23.88	13.19	27.26
	60~70세 미만	20.30	24.74	18.89
	70~80세 미만	12.14	30.71	6.25
	80세 이상	5.48	18.35	1.4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5.30	44.02	6.21
	중학교 졸업 이하	8.77	15.56	6.62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88	24.24	31.67
	전문대 졸업 이하	12.08	5.00	14.32
	대학교 졸업 이하	28.61	10.44	34.36
	대학원 졸업 이상	5.36	0.75	6.82
장애	비장애인	90.99	80.46	94.32
	장애인	9.02	19.54	5.68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3	8.00	1.45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47	11.22	3.64
	비등록 장애인	0.52	0.32	0.59
만성질환	비해당	41.34	18.50	48.58
	있음	58.65	81.50	51.42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3.85	1.93	4.46
	3~6개월 미만 투병, 투약	1.97	1.56	2.10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52.83	78.01	44.86
혼인 상태	비해당	-	-	-
	유배우	63.40	32.60	73.15
	사별	12.90	36.41	5.46
	이혼	9.70	16.84	7.44
	별거	0.91	1.29	0.79
	미혼	13.02	12.78	13.10
	기타	0.07	0.08	0.07
종교	있음	42.60	47.15	41.15
	없음	57.40	52.85	58.85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동거 여부	동거(같이 살고 있다)	97.24	99.62	96.49
	비동거	2.75	0.38	3.50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2.41	0.14	3.12
	해외 근무 중	0.12	-	0.15
	학업	0.01	-	0.01
	입원, 요양	0.02	0.07	0.01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0.04	0.08	0.03
	분가	0.08	-	0.11
	사망	0.07	0.08	0.07
	기타(군복무 등)	0.00	0.01	-
계		100.00	100.00	100.00

주: 학력에서 항목의 이하는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을 다 포함한 값임.

전체 가구 중 58.65%에서 가구주가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 만성질환을 앓는 가구주가 81.50%로 일반 가구(51.42%)보다 약 1.6배 많았다. 이들 만성질환 가구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2.83%가 6개월 이상 투병 혹은 투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가구는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78.01%를 차지하였다.

전체 가구주의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63.40%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60대 이상 가구주가 많은 저소득 가구는 사별(36.41%)과 이혼(16.84%) 비율이 일반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30~50대 가구주가 많은 일반 가구에서는 73.15%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주 가운데 종교가 있는 가구주는 42.60%, 종교가 없는 가구주는 57.40%였다. 일반 가구의 경우 종교가 없는 가구주 비율(58.85%)이 종교가 있는 가구주 비율(41.15%)보다 높았으며, 저소득 가구에서도 종교가 없는 가구주 비율(52.85%)이 종교가 있는 가구주 비율(47.15%)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주 가운데 다른 가구원들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75% 정도였다. 가구주의 2.41%는 타지방 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근무, 입원 혹은 요양, 학업 등으로 가구원과 같이 살지 않는 가구주도 있었다. 특히 일반 가구에서 가구주가 다른 지방에 근무하는 경우가 3.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제2절 경제활동 상태

### 1.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만 15세 이상인 가구원 전체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근로 가능 가구원은 91.35%, 단순근로 가능자는 4.42%, 단순근로 미약자는 3.63%,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은 0.60%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 가구는 96.31%, 저소득 가구는 68%에서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무능력 사유는 중증 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질병 및 부상,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의 56.31%가 중증 장애로 근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병 또는 부상은 30.94%였다. 반면 저소득 가구는 중증 장애가 47.40%, 질병 또는 부상이 40.46%로 분석되었다.

〈표 4-2-1〉 가구원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 능력 정도	근로 가능	91.35	68.00	96.31
	단순근로 가능	4.42	15.75	2.02
	단순근로 미약자	3.63	14.74	1.27
	근로 능력 없음	0.60	1.51	0.41
계		100.00	100.00	100.00
근로 무능력 사유	중증 장애	47.40	36.09	56.31
	질병 또는 부상	40.46	52.55	30.94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10.67	8.03	12.75
	기타	1.47	3.33	0.00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원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는 근로 능력 정도에서 근로 가능, 단순근로 가능, 단순근로 미약자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35.84%로 가장 많았으며, 상용직 임금근로자(27.78%), 임시직 임금근로자(16.19%), 자영업자(7.73%)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3명 중 2명이 비경제활동인구였으나, 일반 가구는 3명 중 1명 이하만 비경제활동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가구원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용직 임금근로자	27.78	2.05	33.25
임시직 임금근로자	16.19	8.14	17.90
일용직 임금근로자	4.20	4.62	4.11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1.90	7.69	0.67
고용주	2.13	0.65	2.45
자영업자	7.73	7.88	7.70
무급가족 종사자	2.22	2.63	2.13
실업자	2.02	3.21	1.76
비경제활동인구	35.84	63.13	30.04
계	100.00	100.00	100.00

한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비경제활동 사유를 조사한 결과,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가 38.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 20.29%, 가사 18.21%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는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69.52%)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반 가구는 학업(26.66%), 근로 의사 없음(25.16%), 가사(22.84%) 순으로 많았다.

〈표 4-2-3〉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 무능력	1.68	2.40	1.36
군 복무	1.28	0.12	1.81
학업	20.28	6.00	26.66
진학 준비	1.14	0.34	1.50
취업 준비	6.86	3.66	8.29
가사	18.21	7.84	22.84
양육	5.09	0.35	7.21
간병	0.50	1.06	0.25
구직활동 포기	5.26	7.87	4.09
근로 의사 없음	38.86	69.52	25.18
기타	0.83	0.83	0.83
계	100.00	100.00	100.00

취업한 가구원의 업종은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17.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11.4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31%, 건설업 7.34%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이 18.34%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가구는 제조업 비율이 18.25%로 가장 높았다.

직종을 살펴보면 가구원 전체적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90%, 사무 종사자 17.58%, 단순노무 종사자 17.32%로 확인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40.43%,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가 17.7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일반 가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01%, 사무 종사자 18.97%, 단순노무 종사자가 14.4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2-4〉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5.71	18.34	4.39	
	광업	0.21	0.00	0.24	
	제조업	17.25	7.71	18.25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0.68	0.46	0.7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0.72	0.32	0.76	
	건설업	7.34	4.16	7.68	
	도매 및 소매업	11.45	11.70	11.43	
	운수업	4.85	2.43	5.10	
	숙박 및 음식점업	6.07	5.56	6.13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3.91	1.19	4.19	
	금융 및 보험업	3.02	0.14	3.32	
	부동산 및 임대업	1.12	0.47	1.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8	1.96	2.6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18	3.67	4.2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02	14.23	6.26	
	교육 서비스업	6.99	2.96	7.4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31	10.65	9.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63	2.49	1.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4	9.66	4.56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기소비 생산 활동	0.85	1.91	0.74	
	국제 및 외국기관	0.06	0.00	0.07	
	계		100.00	100.00	100.00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종	관리자	4.83	2.46	5.0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90	7.37	19.01
	사무 종사자	17.58	4.32	18.97
	서비스 종사자	10.94	10.81	10.95
	판매 종사자	8.67	8.10	8.73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5.63	17.75	4.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62	4.35	9.0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2	4.41	8.51
	단순노무 종사자	17.32	40.43	14.89
	군인	0.39	0.00	0.43
계		100.00	100.00	100.00

취업한 가구원의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31.05%로 가장 많았다. 10~29명 사업장이 14.75%, 5~9명 사업장이 11.63%로 전체 가구원의 약 57%가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구원은 13.82%에 그쳤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48.33%로 월등히 높았으나,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4.01%로 낮았다. 반면, 일반 가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29.24%,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4.84%로 소득집단별 차이가 극명했다.



〈표 4-2-5〉 취업 가구원의 사업장 규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4명	31.05	48.33	29.24
5~9명	11.63	10.16	11.79
10~29명	14.75	13.64	14.86
30~49명	6.03	4.44	6.20
50~69명	5.18	5.23	5.17
70~99명	3.23	4.27	3.12
100~299명	9.24	6.60	9.51
300~499명	2.57	1.55	2.68
500~999명	2.25	1.07	2.37
1,000명 이상	13.82	4.01	14.84
잘 모름	0.26	0.70	0.21
계	100.00	100.00	100.00

전체 가구원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는 11.28개월,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 수는 20.28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9.78시간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약 29시간, 일반 가구의 가구원은 약 4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일반 가구의 가구원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6〉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단위: 월, 일, 시간)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	11.28	10.45	11.36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20.28	17.83	20.53
주당 평균 근로시간	39.78	29.00	40.69

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함.

한편 안전 설비가 미비하거나 오염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원의 7.24%가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1년간 경제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가구원 중 9.94%가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은 12.63%로 일반 가구의 가구원(9.60%)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7〉 노동 환경 유해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27.17		53.91		21.5	
해당	72.84		46.08		78.51	
		100.00		100.00		100.00
	그렇다	7.24	9.94	5.82	12.63	7.54
아니다	65.60	90.06	40.26	87.37	70.97	90.40
계	100.00		100.00		100.00	

주: 비해당은 2021년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구원임.

## 2.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이번에는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주의 경우 전체적으로 88.6%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는 64.89%만이 근로가 가능했지만,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약 96.11%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 무능력 사유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질병 또는 부상이 66.62%로 가장 높았으나, 일반 가구는 중증 장애가 6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8〉 가구주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 능력 정도	근로 가능	88.60	64.89	96.11
	단순근로 가능	6.07	17.62	2.41
	단순근로 미약자	5.00	16.75	1.28
	근로 능력 없음	0.33	0.74	0.20
계		100.00	100.00	100.00
근로 무능력 사유	중증 장애	42.64	22.40	66.43
	질병 또는 부상	50.35	65.62	32.40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3.38	5.25	1.17
	기타	3.64	6.73	0.00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35.97%, 임시직 임금근로자 13.95%, 자영업자 13.24%로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도 23.16%로 확인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가 60.40%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10.76%), 자활 및 공공근로(10.03%) 순이었다. 일반 가구는 46.68%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직 임금근로자(15.91%), 자영업자(14.02%) 순으로 많았다.

〈표 4-2-9〉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용직 임금근로자	35.97	2.16	46.68
임시직 임금근로자	13.95	7.76	15.91
일용직 임금근로자	4.93	4.56	5.05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3.18	10.03	1.01
고용주	3.30	0.83	4.09
자영업자	13.24	10.76	14.02
무급가족 종사자	0.39	0.33	0.41
실업자	1.88	3.18	1.47
비경제활동인구	23.16	60.40	11.37
계	100.00	100.00	100.00

한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비경제활동 사유를 조사한 결과, 4명중 3명 이상(80.65%)이 근로 의사가 없고, 8.56%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표 4-2-10〉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 무능력	1.41	1.22	1.75
군 복무	0.23	0.10	0.46
학업	0.49	0.78	0.00
진학 준비	0.25	0.21	0.32
취업 준비	2.20	1.26	3.77
가사	3.85	2.25	6.54
양육	0.32	0.02	0.84
간병	0.90	0.91	0.88
구직활동 포기	8.57	7.37	10.58
근로 의사 없음	80.64	85.29	72.82
기타	1.14	0.59	2.05
계	100.00	100.00	100.00

취업한 가구주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이 20.6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10.50%), 건설업(10.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32%), 운수업(7.07%)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17.56%, 농업, 임업 및 어업이 17.0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0.80%였다. 일반 가구는 제조업이 22.34%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10.77%, 도매 및 소매업 10.47%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16.2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4.52%), 사무 종사자(14.05%),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2.69%)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반 가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높았다.

〈표 4-2-11〉 취업 가구주의 업종 및 직종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6.22	17.07	4.78
	광업	0.28	0.00	0.32
	제조업	20.61	7.59	22.3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96	0.37	1.0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0.92	0.06	1.04
	건설업	10.15	5.51	10.77
	도매 및 소매업	10.50	10.72	10.47
	운수업	7.07	2.91	7.62
	숙박 및 음식점업	4.17	4.56	4.12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4.40	1.58	4.77
	금융 및 보험업	1.91	0.12	2.15
	부동산 및 임대업	1.15	0.53	1.2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6	0.97	2.6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68	4.45	4.7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32	17.56	7.10
	교육 서비스업	4.20	1.57	4.5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25	9.90	4.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23	1.83	1.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93	10.80	4.16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 활동	0.56	1.88	0.39
	국제 및 외국기관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직종	관리자	7.00	2.86	7.5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52	6.80	15.55
	사무 종사자	14.05	3.93	15.39
	서비스 종사자	8.49	9.30	8.38
	판매 종사자	7.63	7.15	7.69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6.15	16.55	4.7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55	4.69	13.59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69	4.64	13.75
	단순노무 종사자	16.27	44.09	12.59
	군인	0.65	0.00	0.74
	계	100.00	100.00	100.00

취업한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31.21%로 가장 많았으며, 1,000명 이상 사업장 15.29%, 10~29명 사업장 13.90%, 5~9명 사업장이 10.46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46.58%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 가구는 5인 미만 사업장 29.18%,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이 16.76%로 소득집단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2-12〉 취업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4명	31.21	46.58	29.18
5~9명	10.46	9.44	10.60
10~29명	13.90	14.10	13.88
30~49명	5.70	3.82	5.94
50~69명	5.07	6.35	4.90
70~99명	2.78	4.93	2.49
100~299명	9.66	6.91	10.02
300~499명	3.05	1.79	3.21
500~999명	2.58	1.45	2.73
1,000명 이상	15.29	4.19	16.76
잘 모름	0.30	0.44	0.28
계	100.00	100.00	100.00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주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는 11.53개월,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20.56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72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약 28시간인 반면,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약 4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보다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2-13〉 가구주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단위: 월, 일, 시간)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	11.53	10.55	11.66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20.56	17.42	20.98
주당 평균 근로시간	41.72	28.31	43.19

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근로하는 가구주 중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가구주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가구주 13.49%,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와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각각 14.50%, 13.34%로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가 더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4〉 노동 환경 유해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19.00		52.20		8.53		
해당	81.00	100.00	47.80	100.00	91.47	100.00	
	그렇다	10.93	13.49	6.93	14.50	12.20	13.34
	아니다	70.07	86.51	40.87	85.50	79.27	86.66
계	100.00		100.00		100.00		







# 제5장

## 가구 경제

- 제1절 소득
- 제2절 지출
- 제3절 재산 및 부채



# 제 5 장      가 구 경 제

## 제1절 소득

### 1. 경상소득

〈표 5-1-1〉을 보면 전체 가구의 연간 평균 경상소득은 5,957만 원이며, 중위 경상소득은 4,896만 원으로 나타난다. 이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1,614만 원, 일반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7,559만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5-1-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4,896	5,957	55.64
저소득	1,494	1,614	17.06
일반	6,551	7,559	72.94

### 2. 근로소득

〈표 5-1-2〉는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에 대한 기초통계이다.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과 임시·일용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파악하였고 그 외에 사업소득, 농림축산 어업소득, 부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5-1-2〉를 보면 상시 근로소득 평균은 2,715만 원, 임시·일용 근로소득 평균은 1,135만 원, 사업소득 평균은 681만 원, 농림축산어업소득 평균은 110만 원, 부업소득 평균은 6만 원이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평균 상시 근로소득은 각각 62만 원, 3,695만 원, 임시·일용 근로소득은 각각 333만

원, 1,432만 원, 사업소득은 각각 13만 원, 927만 원, 농림축산어업소득은 각각 5만 원, 148만 원, 부업소득은 각각 4만 원, 7만 원으로 모든 근로소득 항목에서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평균 소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1-2〉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상시 근로소득	전체	0	2,715	45.94
	저소득	0	62	6.20
	일반	2,927	3,695	65.89
임시·일용 근로소득	전체	0	1,135	26.05
	저소득	0	333	10.29
	일반	0	1,432	39.43
사업소득	전체	0	681	27.82
	저소득	0	13	8.41
	일반	0	927	42.68
농림축산어업소득	전체	0	110	13.95
	저소득	0	5	9.23
	일반	0	148	21.21
부업소득	전체	0	6	0.70
	저소득	0	4	0.73
	일반	0	7	1.03

주: 해당 소득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3. 재산소득 및 공적·사적 이전 소득

〈표 5-1-3〉은 가구의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재산소득, 사회보험소득, 민간보험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항목에서는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같은 정부보조금 형태의 소득은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았다. 가구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항목별로 보면 기타소득이 평균 751만 원으로 가장 높고, 사회보험이

평균 351만 원, 기타정부보조금이 평균 350만 원,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이 평균 299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의 평균은 각각 236만 원, 48만 원이며, 민간보험은 평균 25만 원으로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3〉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재산소득	전체	0	236	10.12
	저소득	0	67	4.19
	일반	0	298	15.56
사회보험	전체	0	351	9.56
	저소득	0	214	6.63
	일반	0	402	14.44
민간보험	전체	0	25	1.97
	저소득	0	9	1.30
	일반	0	31	3.00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전체	133	299	5.52
	저소득	201	325	6.03
	일반	120	290	8.00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전체	0	48	2.21
	저소득	0	152	5.66
	일반	0	9	1.20
기타정부보조금	전체	215	350	4.71
	저소득	410	430	5.10
	일반	145	320	6.78
기타소득	전체	8	751	57.03
	저소득	7	498	73.27
	일반	8	844	79.93

주: 2006년 1차 기초 보고서에서는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007년 2차 조사 이후부터 기초 보고서에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제2절 지출

### 1. 총가계지출

지출 부문은 식료품비(가정 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주택 구입비를 제외한 주거비(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가구집기·가사용품비·보육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교통비, 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송금보조(사적 이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생활비 항목과 농림축산업 혹은 어업 종사 가구인 경우 자가소비액, 가구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까지도 지출 항목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든 항목을 포괄하여 총가계지출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지출액은 농림축산여가의 자가소비액과 이자 지출을 제외하고 모두 월평균 지출로 조사하였으며, 연간 지출로 조사된 자가소비액과 이자 지출은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로 통일하여 분석하였다.

월평균 총가계지출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5-2-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가구의 총가계지출 중위값은 349만 원, 평균은 429만 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중위값이 130만 원이고 평균이 162만 원인 반면, 일반 가구는 중위값 453만 원, 평균 528만 원으로 평균으로만 비교하였을 때 일반 가구의 총가계지출이 저소득 가구보다 약 3.26배 높게 나타나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총가계지출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1> 월간 총가계지출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349	429	12.48
저소득	130	162	2.25
일반	453	528	19.27

## 2. 항목별 총가계지출

총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지출 비율은 <표 5-2-2>와 같다. 전체 가구의 총가계지출 평균 429만 원에서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비로 전체의 21.11%이며 지출 규모는 91만 원 정도이다.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타소비지출로 전체 지출의 19.60%이고 지출 규모는 84만 원 정도이다. 또 교통·통신비는 12.58%, 사회보장부담금은 6.67%, 세금은 6.41%, 보건의료비는 5.44%, 송금보조는 5.24%, 교육비는 4.01%, 주거비는 3.52%, 가구·가사용품비는 3.52%, 교양오락비는 3.03%, 이자 지출은 2.96%, 광열수도비는 2.91%, 의류·신발비는 2.86%, 자가소비액(농축산)은 0.15%의 비율을 보였다. 어업 종사 가구의 자가소비액은 비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지출 항목별 구성 비율

(단위: 만 원, %)

지출 항목	전체		저소득		일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식료품비	91	21.11	50	30.98	106	19.99
주거비	15	3.52	11	6.94	17	3.13
광열수도비	12	2.91	10	6.42	13	2.51
가구·가사용품비	15	3.52	5	3.26	19	3.55
의류·신발비	12	2.86	3	2.05	16	2.96
보건의료비	23	5.44	17	10.30	26	4.89
교육비	17	4.01	3	1.59	23	4.28
교양오락비	13	3.03	3	2.01	17	3.14
교통·통신비	54	12.58	17	10.41	68	12.83
기타소비지출	84	19.60	24	14.70	106	20.15
송금보조	22	5.24	7	4.16	28	5.36
세금	28	6.41	5	3.02	36	6.79
사회보장부담금	29	6.67	4	2.18	38	7.18
자가소비액(농축산)	1	0.15	1	0.31	1	0.13
자가소비액(어업)	0	0.00	-	-	0	0.00
이자 지출	13	2.96	3	1.66	16	3.10
총가계지출	429	100.00	162	100.00	528	100.00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sup>17)</sup>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비는 30.98%에 달하였고,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소비지출은 14.70%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 식료품비는 19.99%, 기타소비지출은 20.1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지출 구성비 차이를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보건의료비가 10.30%로 일반 가구(4.89%)에 비해 2.11배, 주거비, 광열수도비가 일반 가구보다 각각 2.22배, 2.56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 가구는 사회보장부담금, 세금, 교육비의 지출 비중이 저소득 가구보다 각각 3.29배, 2.25배, 2.69배 높게 나타났다. 자가소비액은 소득집단별 지출 비중의 차이가 미미하였다.

### 제3절 재산 및 부채

#### 1. 재산

가구의 총재산은 모든 가구원 명의의 전체 재산(가구원 명의의 사업장도 포함)을 합한 값이며, 여기에는 소유 부동산, 점유 부동산, 금융재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가격, 기타(동산 및 부동산) 재산 외에 주택 가격을 포함하였다. 순재산은 총재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이며, 구성 항목은 조사 기준 시점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명의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 가. 총재산 및 순재산

총재산에는 현재 가구가 소유한 소유 부동산, 점유 부동산, 금융재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가격, 기타(동산 및 부동산) 재산 외에 가구원 명의의 주택 가격이 포함된다. 주택 가격은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자가인 경우 주택 가격을,

17) 기타소비지출에는 이·미용용품 및 서비스,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제 비용, 친목 비용, 종교 관련(십일조 등) 비용, 보장성 보험(저축성 보험 제외), 관혼상제 비용, 용돈, 비영리단체 이전 비용(기부금, 직장노조비, 친목회비 등) 등이 포함된다.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포함했다. 전체 가구의 총재산 평균값은 5억 1,325만 원이며, 중위값은 2억 7,926만 원이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평균값은 2억 543만 원이고 일반 가구의 평균은 6억 2,686만 원으로 약 2.5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3-1〉 총재산가액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7,926	51,325	860.51
저소득	6,874	20,543	653.76
일반	37,652	62,686	1,256.16

다음으로 순재산은 현재 가구가 소유한 총재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이다. 총부채에는 금융기관 대출, 일반 사채, 카드 빚, 전세 보증금(받은 돈), 외상, 미리 탄 껌돈 등이 포함된다. 순재산은 전체 가구 평균이 4억 4,597만 원이고, 중위값은 2억 2,800만 원이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평균은 1억 8,878만 원이며, 일반 가구의 평균은 5억 4,089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5-3-2〉 순재산가액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2,800	44,597	779.07
저소득	6,120	18,878	595.59
일반	31,000	54,089	1,142.52

## 나. 소유 부동산

소유 부동산에는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이 포함된다. 전체 가구의 소유 부동산 평균 가격은 1억 4,714만 원이며, 저소득 가구는 평균 5,307만 원, 일반 가구는 1억 8,186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5-3-3〉 소유 부동산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14,714	542.00
저소득	0	5,307	427.00
일반	0	18,186	810.00

## 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채권·펀드, 불입한 켄돈 등이 포함되며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합산하였다. 먼저 전체 가구의 금융재산 평균은 8,451만 원이고, 중위값은 3,340만 원이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평균 2,819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는 반면, 일반 가구는 평균 10,530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3-4〉 금융재산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3,340	8,451	203.00
저소득	500	2,819	116.00
일반	5,000	10,530	306.00

## 2. 부채

이번에는 가구의 부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구의 부채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일반 사채, 카드 빚, 전세(임대) 보증금(받은 돈), 외상 등이 포함된다. 전체 가구의 총부채 평균은 6,728만 원이며, 중위값은 300만 원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평균적으로 1,664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일반 가구는 평균적으로 8,597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 총부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300	6,728	183.00
저소득	0	1,664	135.00
일반	1,900	8,597	271.00

총이자액은 주거 관련 부채에 대한 이자와 주거 관련 이자를 제외한 기타 이자로 나뉜다. 총이자액과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를 제외한 기타 이자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전체 가구의 총이자액 평균은 152만 원이고, 이 중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를 제외한 기타 이자액의 전체 가구 평균은 72만 원이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총이자액이 평균 32만 원이며, 일반 가구는 평균 197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이자액은 저소득 가구는 평균 20만 원, 일반 가구는 평균 91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5-3-6〉 총이자액과 기타 이자액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총이자액	전체	0	152	8.00
	저소득	0	32	2.00
	일반	0	197	12.00
기타 이자액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제외)	전체	0	72	6.00
	저소득	0	20	2.00
	일반	0	91	10.00

마지막으로 부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의 항목별 부채 금액이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가구 부채 중 주택과 관련한 부채가 5.20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가 30.24%, 생활비(생계비) 마련이 14.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주택 관련 자금의 비중이 36.63%로,

18)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는 제6장 주거 부분에서 다루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일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생활비는 33.34%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부채의 용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생활비(생계비)	14.56	33.34	11.24
주택 관련 자금 (전세 보증금 포함)	52.08	36.63	54.82
교육(학자금 마련 포함)	1.16	0.97	1.19
의료비	0.85	2.77	0.51
빚 갚음	1.11	2.19	0.92
기타	30.24	24.10	31.33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6장

## 주거 및 건강

제1절 주거

제2절 건강



## 제 6 장 주거 및 건강

### 제1절 주거

#### 1. 주거 실태 및 주거 환경

〈표 6-1-1〉은 한국복지패널 가구의 주택 유형을 파악한 결과이다. 전체 패널 가구 중 일반 아파트가 44.5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일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먼저 저소득 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저소득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주택 유형은 일반 단독주택이었으나 2021년 기준 일반 아파트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 일반 아파트 비율은 26.74%로 일반 가구의 일반 아파트 비율 51.1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표 6-1-1〉 주택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 단독주택	13.51	23.56	9.80
다가구용 단독주택	15.02	19.40	13.41
다세대주택	12.07	11.94	12.11
연립주택(빌라)	3.50	2.20	3.98
일반 아파트	44.55	26.74	51.13
영구임대아파트	1.75	5.18	0.48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2.50	3.00	2.3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0.48	0.40	0.51
오피스텔	1.52	0.88	1.76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0.11	0.03	0.13
임시 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 단지 포함)	0.10	0.22	0.05
기타	0.55	0.36	0.62
국민·공공임대아파트	4.34	6.08	3.70
계	100	100	100

다음으로 주거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에서 자가 비율(57.4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증부)월세(20.65%), 전세(13.47%)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 주거 점유 형태를 비교하면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 자가 비율이 각각 46.12%, 61.68%로 가장 높았으나, 저소득 가구의 경우 매월 주거비 부담이 발생하는 (보증부) 월세 비율이 30.65%로 전세 비율(8.85%)보다 상당히 높았다. 일반 가구는 전세와 보증부 월세의 비율이 각각 15.17%, 16.97%로 유사한 수준이다.

〈표 6-1-2〉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가	57.49	46.12	61.68
전세	13.47	8.85	15.17
보증부 월세	19.23	28.26	15.90
월세	1.42	2.39	1.07
비가구원 명의 주택	6.72	12.17	4.70
기타	1.67	2.20	1.48
계	100.00	100.00	100.00

임차 가구(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의 주택 임대 유형을 보면, 전체 임차 가구의 72.79%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임차 가구 중에는 56.94%가 민간임대, 42.38%가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반면, 일반 임차 가구의 대부분(79.97%)은 민간임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표 6-1-3〉 임차 가구의 임대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민간임대주택	72.79	56.94	79.97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장기전세 등)	25.19	42.38	17.39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0.52	0.43	0.57
기타 임대주택 (사원주택, 뉴스테이 등)	1.50	0.25	2.07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주택 면적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36.23%가 66~99㎡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99~132㎡ 미만(27.33%), 33~66㎡ 미만(24.68%)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는 48.00%가 66㎡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는 반면, 일반 가구는 그 비율이 24.85%였다. 일반 가구의 75.14%는 66㎡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4〉 주택 면적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33㎡ 미만	6.42	9.23	5.38
33~66㎡ 미만	24.68	38.77	19.47
66~99㎡ 미만	36.23	36.71	36.05
99~132㎡ 미만	27.33	13.95	32.26
132~165㎡ 미만	4.10	1.06	5.23
165㎡ 이상	1.25	0.29	1.60
계	100.00	100.00	100.00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 및 성능과 관련하여 주택의 견고성과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약 11.14%가 양호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17.48%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구(8.80%)에 비해 안전하지 못한 구조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파악되었다.

〈표 6-1-5〉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88.86	82.52	91.2
아니요	11.14	17.48	8.80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 전체 가구의 9.88%가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는 일반 가구(8.25%)보다 약 1.7배 높은 비율(14.30%)의 가구에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가 적절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

〈표 6-1-6〉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90.12	85.70	91.75
아니요	9.88	14.30	8.25
계	100.00	100.00	100.0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 오염으로 인한 불만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7.64%였다. 소득별로는 저소득 가구 중 9.79%, 일반 가구 중 6.84%가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 오염과 관련된 주택 환경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소득집단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6-1-7〉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 오염으로 인한 불만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7.64	9.79	6.84
아니요	92.36	90.21	93.16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은 주택의 외부 환경에 대한 문항으로, 자연재해와 관련된 주택의 안전성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의 97.46%가 주택이 자연재해에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일반 가구는 1.98%에 불과하지만 저소득 가구는 4.06%로 나타나 일반 가구보다 약 2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8〉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97.46	95.94	98.02
아니요	2.54	4.06	1.98
계	100.00	100.00	100.00

마지막으로 주택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성 문항으로,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및 안전한 전기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응답한 결과는 전체 가구 중 12.91%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저소득 가구는 19.01%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여 일반 가구(10.66%)보다 구조 및 설비 측면에서 안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1-9〉 주택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성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87.09	80.99	89.34
아니요	12.91	19.01	10.66
계	100.00	100.00	100.00

## 2. 주택 가격

앞서 제시한 주거 실태 및 주거 환경에 이어 주거 점유 형태[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반전세), 월세]별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월세 부담에 대해 중위 및 평균 금액, 그리고 표준오차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sup>19)</sup>

먼저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현재 거주 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전체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은 4억 42만 원, 중위값은 2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은 소득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저소득 가구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 3,781만 원인 반면 일반 가구는 평균 4억 4,530만 원으로 약 1.9배 높은

19) 주거 점유 형태에 따른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월세 부담에 대한 구간별 분포는 '부록 3. 주거 및 건강' 참조.

수준이다. 자가 주택의 중위 가격도 저소득 가구의 경우 1억 5,000만 원인 반면, 일반 가구의 중위 가격은 3억 원으로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6-1-10〉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8,000	40,042	630.63
저소득	15,000	23,781	631.43
일반	30,000	44,530	845.83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은 주거 점유 형태에 따라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평균 전세금은 1억 6,55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하면 일반 가구의 평균 전세금은 1억 8,567만 원, 저소득 가구는 7,225만 원 수준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전세금은 일반 가구의 약 39%에 불과하였다. 전세금의 중위 가격 또한 평균 가격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일반 가구의 전세금 중위값은 1억 4,000만 원 정도인 데 반해 저소득 가구의 전세금 중위값은 5,500만 원으로 39%에 불과한 수준이다.

〈표 6-1-11〉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12,000	16,558	600.19
저소득	5,500	7,225	416.14
일반	14,000	18,567	743.80

다음으로 보증부 월세 가구의 보증금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보증금은 평균 2,640만 원이다. 일반 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3,478만 원으로 저소득 가구(1,362만 원)보다 약 2.6배 높은 수준이었다. 또 저소득 가구의 보증부 월세 보증금 중위값은 500만 원으로 일반 가구 중위값(1,500만 원)의 30%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 6-1-12〉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1,000	2,640	143.81
저소득	500	1,362	109.26
일반	1,500	3,478	249.46

마지막으로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월세액 평균을 통해 월세 부담 수준을 살펴보았다. 전체 가구의 월세액 평균은 25만 원이었으며, 일반 가구의 평균 월세액은 29만 원, 저소득 가구의 평균 월세액은 17만 원으로 밝혀졌다. 저소득 가구의 월세액 평균은 일반 가구의 약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1-13〉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0	25	0.49
저소득	14	17	0.45
일반	25	29	0.79

## 제2절 건강

### 1. 건강 상태

다음은 복지패널 조사대상자들의 2021년 12월 31일 기준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6-2-1〉은 전체 복지패널 조사대상자를 분석한 결과이며, 〈표 6-2-2〉는 가구주만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72.53%가 건강하다(아주 건강+건강한 편)고 응답하였으며, 10.70%는 건강하지 않다(건강이 아주 안 좋다+건강하지 않은 편)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를 양호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소득집단별로 비교

하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저소득 가구는 34.73%, 일반 가구는 6.06%로 나타났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 가구에서 39.06%, 일반 가구에서 79.01%로 나타나 일반 가구 조사대상자들이 저소득 가구 조사대상자들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6-2-1〉 전체 가구원의 건강 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주 건강하다	11.57	5.36	12.77
건강한 편이다	60.96	33.7	66.24
보통이다	16.77	26.21	14.9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9.62	30.57	5.57
건강이 아주 안 좋다	1.08	4.16	0.49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기준으로 건강하다(아주 건강+건강한 편)고 응답한 가구주는 61.54%, 건강하지 않다(건강이 아주 안 좋다+건강하지 않은 편)고 응답한 가구주는 16.06%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구주가 40.05%로 일반 가구(8.47%)보다 약 5배 높았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 가구(30.01%)보다 일반 가구(71.51%)에서 높게 나타나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구주의 건강 상태는 일반 가구에서 더 양호하였다.

〈표 6-2-2〉 가구주의 건강 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주 건강하다	8.26	3.34	9.81
건강한 편이다	53.28	26.67	61.70
보통이다	22.40	29.94	20.0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4.39	35.40	7.74
건강이 아주 안 좋다	1.67	4.65	0.73
계	100.00	100.00	100.00

전체 가구원의 42.3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70.77%의 가구원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일반 가구(36.82%)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환 기간을 살펴보면, 일반 가구 가구원의 29.59%가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한 것에 비해 저소득 가구는 66.46%가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가구 만성질환자의 대부분이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2-3〉 전체 가구원의 만성질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없음	57.67	29.22	63.18
있음	42.33	70.77	36.82
3개월 미만 투병·투약	4.81	2.80	5.20
3~6개월 미만 투병·투약	1.95	1.51	2.03
6개월 이상 투병·투약	35.57	66.46	29.59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주의 만성질환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가구주의 58.6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만성질환을 앓는 가구주 비율이 81.50%로 일반 가구(51.42%)보다 약 1.6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환 기간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 중 78.01%가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저소득 가구주 만성질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 가구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주의 44.86% 정도가 6개월 이상의 이환 기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가구주의 만성질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없음	41.34	18.50	48.58
있음	58.65	81.50	51.42
3개월 미만 투병·투약	3.85	1.93	4.46
3~6개월 미만 투병·투약	1.97	1.56	2.10
6개월 이상 투병·투약	52.83	78.01	44.86
계	100.00	100.00	100.00

## 2. 의료 이용 현황

다음에서는 패널 가구원들의 건강검진 횟수, 외래진료 횟수, 입원 횟수 등 의료 기관 이용 현황을 제시한다.

먼저 건강검진 횟수를 살펴보면 2021년 1년간 전체 가구원 1인당 평균 0.49회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평균 0.41회로 일반 가구의 0.51회보다 다소 낮았다. 저소득과 일반 가구 모두 건강검진 횟수 중위값이 0회로 나타나 2021년에 패널 가구 절반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5〉 건강검진 횟수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0.49	0.00
저소득	0	0.41	0.01
일반	0	0.51	0.01

다음으로 외래진료 횟수를 보면 2021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평균 12.16회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 평균 21.01회로 일반 가구(평균 10.45회)보다 더 자주 진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나타난 만성질환자의 비율 및 이환 기간과 연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6-2-6〉 외래진료 횟수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7.00	12.16	0.14
저소득	14.00	21.01	0.39
일반	6.00	10.45	0.15

외래진료 횟수에 이어 입원 횟수를 살펴보면 2021년 1년 동안의 전체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 횟수는 0.11회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 횟수는 0.18회, 일반 가구는 0.09회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입원 횟수가 일반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없다.

〈표 6-2-7〉 입원 횟수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0	0.11	0.00
저소득	0.00	0.18	0.01
일반	0.00	0.09	0.00

2021년 1년간 입원 경험이 있는 대상의 평균 입원 일수는 1인당 평균 16.28일이었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가 1인당 평균 25.85일, 일반 가구가 1인당 13.07일로 나타났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보면 저소득 가구는 12일, 일반 가구는 7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2-8〉 입원 일수

(단위: 일)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7.00	16.28	0.73
저소득	12.00	25.85	1.48
일반	7.00	13.07	0.80

주: 입원 경험이 있는 1,7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가구원 중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가 1건 이상이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구 기준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을 보면, 한국복지패널 전체 가구의 2021년 1년간 민간의료보험<sup>20)</sup> 가입률은 80.75%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가입률이 49.22%로 일반 가구 가입률(92.38%)의 약 절반(53%) 수준이다.

〈표 6-2-9〉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가구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80.75	49.22	92.38
미가입	19.25	50.78	7.62
계	100.00	100.00	100.00

주: 가구원 중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가 1건 이상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처리함.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평균 가입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년간 가구당 평균 가입 건수는 4.88건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는 가구당 평균 가입 건수가 2.55건으로 일반 가구의 평균 5.34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가구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제도적 완충 장치가 매우 미흡함을 보여준다. 특히 앞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일반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 구성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외래진료 횟수가 많으며 입원일 수도 길게 분석된 결과를 고려하면 그 위험성은 더 크다.

〈표 6-2-10〉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가구 기준)

(단위: 건)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4.00	4.88	0.05
저소득	2.00	2.55	0.05
일반	5.00	5.34	0.06

주: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는 민간의료보험 중 연금 성격이 아닌 순수 질병 보장 성격의 민간의료보험 전용 상품 [암 보험, CI(Critical Illness) 보험, 어린이 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 보험, 일반 질병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 건수를 조사함. 한편 주계약자가 남편, 종계약자로 아내, 자녀들까지 보장받는 가족 의료보험은 가구원 각각의 가입 건수로 기재하도록 함. 또 납입 기한이 끝났으나 보장받는 보험은 가입 건수에 포함함.

20)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가입 건수, 월평균 보험료는 표본 가구 전체를 100으로 하여 분석함.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7장

## 가족

제1절 가족 관계

제2절 가족 문제



# 제 7 장 가족

## 제1절 가족 관계

### 1. 가족 관계

부모와 접촉하는 정도는 가족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다. 따라서 부모와 왕래 또는 전화 연락 빈도를 소득 수준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가족 관계의 단면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먼저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의 45.00%가 따로 사는 부모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의 경우 21.41%로 일반 가구(50.00%)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1〉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5.00	21.41	50.00
없다	55.00	78.59	50.00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지난 1년간 따로 사는 부모와 왕래한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1년에 평균 40회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평균 39회) 보다는 일반 가구(평균 40회)에서 약간 더 횟수가 많았으나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다만 중위 횟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보다 일반 가구의 왕래 횟수가 많았다(각각 5회, 12회).

〈표 7-1-2〉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 정도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2	40	1.14
저소득	5	39	3.76
일반	12	40	1.19

왕래와 더불어 따로 사는 부모와 접촉하는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의 전화 연락 빈도를 살펴보았다. 전체 가구에서 평균 112회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왕래 정도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가구의 연락 횟수가 평균 91회로 일반 가구의 횟수(평균 113회)보다 적었다. 떨어져 사는 부모와의 왕래 및 전화 연락 빈도는 전반적으로 저소득 가구보다 일반 가구에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1-3〉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 연락 정도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52	112	1.66
저소득	52	91	4.96
일반	52	113	1.76

## 제2절 가족 문제

### 1. 가족 문제 및 가족 갈등 대처 방법

〈표 7-2-1〉은 2021년 1년 동안 가족 내에서 발생한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들을 2순위까지 조사한 것이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54.58%)를 제외하고 가족 문제 1순위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의 건강’이 50.44%로 가장 큰 가족 갈등의 원인으로 꼽혔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20.41%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원의 건강’ 문제는 특히 저소득 가구의 55.71%가 가족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아 일반 가구(47.30%)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갈등의 원인이라는 응답 역시 저소득 가구에서는 27.91%를 차지하는데 비해 일반 가구에서는 15.95%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이 가구 문제라고 응답한 경우는 12.06%였다. 이는 저소득 가구(8.68%)와 일반 가구(14.07%) 모두에서 ‘가구원의 건강’, ‘경제적 어려움’ 다음 순위로 가족 갈등의 원인이었다.

이어 가족 내 어려움(1순위)에 응답한 가구 중 두 번째로 큰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61.98%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응답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 내 갈등을 일으키는 2순위 원인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35.88%는 ‘경제적 어려움’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어 27.58%가 ‘가구원의 건강’을 꼽았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4.69%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족 갈등의 두 번째 원인으로 보았다. 일반 가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28.28%)’, ‘가구원의 건강(25.45%)’,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13.19%)’, ‘자녀 교육 혹은 행동(12.93%)’ 순으로 저소득 가구에 비해 가족 갈등(2순위)의 원인을 비교적 고르게 지목했다.

〈표 7-2-1〉 가족 갈등 원인(1순위, 2순위)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20.41	27.91	15.95	35.88	44.69	28.28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12.06	8.68	14.07	11.24	8.99	13.19
자녀 교육 혹은 행동	5.75	2.16	7.88	10.22	7.08	12.93
가구원의 건강	50.44	55.71	47.30	27.58	30.04	25.45
가구원의 알코올	0.58	0.47	0.64	0.71	0.77	0.66
가족 내 폭력	0.07	0.00	0.12	0.43	0.86	0.07
가구원 간 관계	2.11	1.23	2.64	3.45	2.60	4.19
가구원의 가출	0.03	0.00	0.04	0.13	0.00	0.24
주거 관련 문제	3.44	1.03	4.88	5.68	3.14	7.88
기타	2.43	1.31	3.09	0.89	0.47	1.26
자녀의 결혼 문제	2.68	1.50	3.39	3.78	1.36	5.86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순위 응답 비율은 전체 가구 중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가족 내 갈등 요인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1순위에만 답하고 2순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함. 따라서 2순위 응답 비율은 1순위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뿐 아니라 2순위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다음으로 <표 7-2-2>는 2021년 1년 동안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다. 가정 내 의견 충돌의 빈도, 가족 갈등 대처 방법과 관련된 하위 5개 문항에 각각 1~5점을 부여한 후 평균을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갈등에 대한 대처 방법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의 가족 갈등 대처 방법의 중위값은 4.6점이었고,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중위값은 각각 4.8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표 7-2-2> 가족 갈등 대처 방법

(단위: 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4.6	4.5	0.01
저소득	4.8	4.6	0.01
일반	4.8	4.6	0.00

주: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을 중심으로 파악하며,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까지만 포함하여 질문함. 독신 가구이면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없으면 제외함

## 2. 가족의 생활 습관,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 가. 흡연에 관한 생활 습관

7차 조사부터는 기존 가구원과 신규 가구원에게 각기 다르게 질문하였다.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흡연 경험, 금연 계획, 간접 흡연 등에 관해 질문하였고, 신규 가구원에게만 생애 동안의 흡연 경험(총량, 시기, 기간)을 질문하였다. <표 7-2-3>은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지를 질문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 중 18.60%가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16.38%,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19.07%가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3〉 현재 흡연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피움	18.60	16.38	19.07
피우지 않음	81.40	83.62	80.93
계	100.00	100.00	100.00

〈표 7-2-4〉는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 이상 금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17.99%가 하루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20.56%,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17.53%가 하루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4〉 하루 이상 금연 시도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음	17.99	20.56	17.53
없음	82.01	79.44	82.47
계	100.00	100.00	100.00

주: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표 7-2-5〉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이 하루 몇 시간인지를 물어 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 중 85.25%는 '0시간(없음)', 7.81%는 '1시간 미만', 0.89%는 '1시간 이상'이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이 88.44%, 일반 가구원이 84.58%로 나타났다.

〈표 7-2-5〉 하루 동안 실내에서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0시간(없음)	85.25	88.44	84.58
1시간 미만	7.81	5.27	8.35
1시간 이상	0.89	0.87	0.89
모름/무응답	6.05	5.42	6.18
계	100.00	100.00	100.00

## 나. 음주에 관한 생활 습관

〈표 7-2-6〉은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평소에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 물어 그 대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 중 12.57%는 '월 1회 이하', 21.42%는 '월 2~4회', 14.33%는 '주 2~3회', 6.48%는 '주 4회 이상', 45.20%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0.67%,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39.80%로 나타났다.

〈표 7-2-6〉 음주 횟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월 1회 이하	12.57	7.00	13.75
월 2~4회	21.42	11.21	23.58
주 2~3회	14.33	6.47	16.00
주 4회 이상	6.48	4.65	6.87
전혀 마시지 않는다	45.20	70.67	39.8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표 7-2-7〉은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번에 여섯 잔 이상 마시는 과음 횟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36.26%는 과음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18.15%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20.34%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8.93%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6.32%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전혀 과음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2.66%,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35.60%로 나타났다. 또 '거의 매일 과음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에서는 9.67%, 일반 가구원에서는 5.98%로 조사되었다.

〈표 7-2-7〉 과음 횟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36.26	42.66	35.60
몇 달에 한 번 정도	18.15	15.29	18.44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0.34	18.87	20.49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18.93	13.51	19.49
거의 매일	6.32	9.67	5.98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표 7-2-8〉은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음주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76.15%가 '전혀 없다'고 하였고, 8.50%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3.09%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38%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0.35%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1.84%,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76.63%를 보였다.

〈표 7-2-8〉 음주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76.15	71.84	76.63
몇 달에 한 번 정도	8.50	6.17	8.76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3.09	3.09	3.09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1.38	1.73	1.34
거의 매일	0.35	0.81	0.29
모름/무응답	10.53	16.36	9.8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표 7-2-9〉는 술을 마신다고 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친척, 친구나 의사와 같은 주변 사람들이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80.74%가 ‘전혀 없다’고 하였고, 3.01%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었다’고 답하였으며, 5.70%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9〉 주변 사람들이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0.74	75.53	81.33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었다	3.01	2.98	3.02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다	5.70	5.12	5.76
모름/무응답	10.55	16.37	9.8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 다. 정신건강 등 기타

〈표 7-2-10〉은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1년 1년 동안의 출산 경험 여부를 물어 그 대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의 0.96%가 ‘출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0.32%,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1.10%가 ‘출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10〉 출산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96	0.32	1.10
없다	49.45	57.11	47.82
비해당(남성)	49.59	42.57	51.08
계	100.00	100.00	100.00

〈표 7-2-11〉은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일 직전 일주일간의 우울 정도를 11개 문항(CESD-11)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의 우울 정도는 평균 5.58점, 저소득 가구원은 9.99점, 일반 가구원은 4.63점으로 나타났다.

〈표 7-2-11〉 우울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3.64	5.58	0.07
저소득	7.27	9.99	0.15
일반	1.82	4.63	0.07

주: 기존의 '1. 극히 드물다', '2. 가끔 있었다', '3. 종종 있었다', '4. 대부분 그랬다'로 되어 있던 각 하위 문항의 응답을 0, 1, 2, 3으로 재점수화하고, 하위 문항 ④, ⑤는 역점수 처리하여 우울 총점을 계산함. 이 우울 총점에 11분의 20을 곱함(만점은 60점임). 이렇게 계산한 변수의 중위값,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으며, 계산된 값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표 7-2-12〉는 모든 가구원에게 조사일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10개의 문항(Rosenberg Self-Esteem Scales)으로 나누어 질문하여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의 자아 존중감은 평균 3.16점, 저소득 가구원은 2.89점, 일반 가구원은 3.21점으로 나타났다.

〈표 7-2-12〉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3.20	3.16	0.00
저소득	2.90	2.89	0.01
일반	3.30	3.21	0.00

주: 각 하위 문항의 응답을 점수화(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항상 그렇다)하고 평균을 계산한 변수의 중위값,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 하위 문항 ④, ⑤, ⑥, ⑦, ⑧는 역점수 처리를 하였음.

〈표 7-2-13〉은 남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1년 1년 동안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남성 응답자의 56.03%가 '전혀 없다'고 답하였고, 0.21%가 '1~2번'이라고 응답하였다.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 남성 가구원에서 44.36%, 일반 남성 가구원에서 58.10%로 나타났다.

〈표 7-2-13〉 남성이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56.03	44.36	58.10
1~2번	0.21	0.41	0.17
3~5번	0.07	0.00	0.08
6번 이상	0.06	0.04	0.07
비해당(배우자 없음)	35.09	46.59	33.06
모름/무응답	8.54	8.60	8.52
계	100.00	100.00	100.00

〈표 7-2-14〉는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1년 1년 동안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여성 응답자의 57.87%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0.29%가 '1~2번', 0.07%가 '3~5번'이라고 답하였다. 저소득 여성 가구원 중에서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3.11%였고, 일반 여성 가구원 중에서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4.03%로 나타났다.

〈표 7-2-14〉 여성이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57.87	33.11	64.03
1~2번	0.29	0.40	0.26
3~5번	0.07	0.00	0.09
6번 이상	0.09	0.41	0.01
비해당(배우자 없음)	38.08	63.02	31.87
모름/무응답	3.60	3.06	3.74
계	100.00	100.00	100.00

## 라. 자살

7차 조사부터 신규 가구원과 기존 가구원에 대한 질문 방식이 달라졌다. 신규 가구원에게만 생애 동안의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에 대해 질문하였고, 기존 가구원에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7-2-15〉는 신규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신규 가구원 중 3.7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원의 6.63%, 일반 가구원의 3.03%가 ‘있다’고 밝혔다.

〈표 7-2-15〉 지금까지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73	6.63	3.03
없다	82.95	86.37	82.14
모름/무응답	13.32	7.00	14.83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응답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7-2-16〉은 기존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기존 가구원 중에서 1.55%가 ‘있다’고 하였고, 저소득 가구원은 3.42%, 일반 가구원은 1.1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16〉 지난 한 해 동안의 자살 생각(기존 가구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55	3.42	1.17
없다	94.60	91.70	95.19
모름/무응답	3.85	4.88	3.64
계	100.00	100.00	100.00

주: 기존 가구원만 응답함.

〈표 7-2-17〉은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일 현재의 행복지수를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문항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의 행복 정도는 평균 6.72점으로 나타났고, 저소득 가구원은 5.70점, 일반 가구원은 6.94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7-2-17〉 행복지수(캔트릴 사다리-주관적 행복감)

(단위: 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7.00	6.72	0.01
저소득	6.00	5.70	0.03
일반	7.00	6.94	0.02

주: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게 함. 맨 꼭대기(10)는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는지를 확인함.





## 제8장

### 생활실태 및 자원 활동

제1절 가구 구성원의 생활만족도

제2절 가구의 생활 여건

제3절 가구 구성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 제 8 장 생활실태 및 자원 활동

### 제1절 가구 구성원의 생활만족도

여기에서 살펴볼 내용은 가구 구성원의 생활만족도, 즉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 환경,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여가생활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2021년 1년 동안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57.45%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만족하고 있었다.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건강에 대해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39.63%로 만족하는 경우(31.53%)보다 높아 일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저소득 가구에서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고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1-1〉 건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2.52	7.30	1.49
대체로 불만족	14.03	32.33	10.12
그저 그렇다	26.00	28.84	25.39
대체로 만족	52.07	28.41	57.12
매우 만족	5.38	3.12	5.87
계	100.00	100.00	100.00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고 응답한 가구원이 전체의 23.15%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가 33.87%,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가 42.98%를 보여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약간 높았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에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53%로 일반 가구 (18.5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예상 가능한 결과로 저소득 가구에서 가족의 수입에 대해 불만족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1-2〉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2.56	7.55	1.50
대체로 불만족	20.59	36.98	17.09
그저 그렇다	33.87	36.41	33.32
대체로 만족	40.76	18.21	45.57
매우 만족	2.22	0.85	2.52
계	100.00	100.00	100.00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한 가구원의 비율이 전체의 70.53%로 나타나 대체로 주거 환경에 만족하고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저소득 가구의 60.29%에 비해 일반 가구는 72.71%로 약 12%p 더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불만족한다는 12.88%로 일반 가구의 응답 비율(6.83%)보다 높았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일반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8-1-3〉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71	1.52	0.53
대체로 불만족	7.19	11.36	6.3
그저 그렇다	21.58	26.82	20.46
대체로 만족	63.26	55.74	64.86
매우 만족	7.27	4.55	7.85
계	100.00	100.00	100.00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84.35%)이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고 답하였으며,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는 응답은 3.01%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70.22%로 일반 가구(87.37%)보다 다소 낮았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83%로 일반 가구(2.20%)보다 높았다.

〈표 8-1-4〉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30	0.93	0.17
대체로 불만족	2.71	5.90	2.03
그저 그렇다	12.63	22.95	10.43
대체로 만족	69.00	63.10	70.26
매우 만족	15.35	7.12	17.11
계	100.00	100.00	100.00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본인의 직업에 만족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9.18%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46.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일반 가구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35.74%로 일반 가구 64.19%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표 8-1-5〉 직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1.20	2.31	0.97
대체로 불만족	8.84	14.98	7.53
그저 그렇다	30.77	46.98	27.31
대체로 만족	54.36	34.07	58.70
매우 만족	4.82	1.67	5.49
계	100.00	100.00	100.00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73.28%가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는 응답은 4.1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원이 55.54%로 일반 가구(77.07%)보다는 낮지만 저소득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9.67%로 일반 가구(2.9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1-6〉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31	0.82	0.20
대체로 불만족	3.79	8.85	2.71
그저 그렇다	22.62	34.80	20.02
대체로 만족	66.43	51.65	69.58
매우 만족	6.85	3.89	7.49
계	100.00	100.00	100.00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7.30%,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4.50%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6.63%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한다(31.66%)가 불만족한다(21.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 가구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50.64%로 절반을 넘었다.

〈표 8-1-7〉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1.36	2.24	1.18
대체로 불만족	13.14	19.46	11.79
그저 그렇다	38.19	46.63	36.39
대체로 만족	43.86	30.03	46.81
매우 만족	3.44	1.63	3.83
계	100.00	100.00	100.00

앞선 분석 결과에서 가구 구성원의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 환경,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여가생활 등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가구원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 현재 생활의 전반적인 상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5.98%로 10명 중 6명 정도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7.96%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 41.10%, 불만족 10.9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는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71.30%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는 응답은 2.65%로 저소득 가구 10.94%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가구 응답자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일반 가구 응답자에 비해 낮은 것을 말해 준다.

〈표 8-1-8〉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19	0.84	0.06
대체로 불만족	3.91	10.10	2.59
그저 그렇다	29.91	47.96	26.06
대체로 만족	63.28	40.34	68.18
매우 만족	2.70	0.76	3.12
계	100.00	100.00	100.00

## 제2절 가구의 생활 여건

다음으로 조사대상 가구가 경제적인 여건으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생계 부문에서 어느 정도 박탈되어 있는지 등의 생활 여건을 조사했다. 먼저 ‘두 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비 해당(자가 및 무상)에 속하는 가구를 제외한 가구 중 0.56%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일반 가구(0.15%)보다 저소득 가구(1.48%)에서 급전적인 사정으로 이사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8-2-1〉 두 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당	35.74	100.00	40.46	100.00	33.99	100.00
있다	0.20	0.56	0.60	1.48	0.05	0.15
없다	35.54	99.44	39.86	98.52	33.94	99.85
비해당	64.26		59.54		66.01	
계	100.00		100.00		100.00	

주: 2021년 1년 내내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는 비해당에 속함.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인 '공과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0.92%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 중 2.14%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지만 일반 가구(0.48%)보다 약 4배 이상 많았다.

〈표 8-2-2〉 공과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92	2.14	0.48
없다	99.08	97.86	99.52
계	100.00	100.00	100.00

앞선 질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0.06%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경험 비율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일반 가구 중에서 0.02%, 저소득 가구 중에서 0.16%가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8-2-3〉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06	0.16	0.02
없다	99.94	99.84	99.98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박탈 경험으로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을 살펴보면, 자녀가 없어 비해당에 속하는 가구를 제외한 가구 중 1.11%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가구는 0.92%가 자녀의 공교육비 문제를 경험했지만, 저소득 가구는 3.30%로 경험률이 높았다.

〈표 8-2-4〉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해당		21.63	100.00	6.98	100.00	27.05	100.00
	있다	0.24	1.11	0.23	3.30	0.25	0.92
	없다	21.39	98.89	6.75	96.70	26.8	99.08
비해당 <sup>1)</sup>	78.37		93.02		72.96		
계	100.00		100.00		100.00		

주: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사·박사)'인 경우임.

주거 관련 박탈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 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 중 0.39%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하면 저소득 가구는 1.44%, 일반 가구는 0.01%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인다.

〈표 8-2-5〉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9	1.44	0.01
없다	99.61	98.56	99.99
계	100.00	100.00	100.00

의료 관련 박탈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0.62% 정도가 경험이 있었다. 저소득 가구는 2.06%로 나타나 일반 가구(0.08%)의 경험률보다 높았다.

〈표 8-2-6〉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62	2.06	0.08
없다	99.38	97.94	99.92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1년간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1.86%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2.55%가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일반 가구(1.6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8-2-7〉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86	2.55	1.60
없다	98.14	97.45	98.4
계	100.00	100.00	100.00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급여 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 가구가 아닌 비해당 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0.18%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 중에서는 0.45%, 일반 가구 중에서는 0.1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8-2-8〉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급여 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해당		94.83	100.00	82.37	100.00	99.44	100.00
	있다	0.17	0.18	0.37	0.45	0.10	0.10
	없다	94.66	99.82	82	99.55	99.34	99.90
비해당 <sup>1)</sup>	5.16		17.63		0.56		
계	100.00		100.00		100.00		

주: 비해당은 2021년 1년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만 받은 가구를 의미함.

### 제3절 가구 구성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다음에서는 가구 구성원들의 생활실태 중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정도에서 소득 집단별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가구원들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구성원의 11.59%가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는 일반 가구에서 13.25% 비율을 보여 저소득 가구(3.74%)보다 약 4배 높았다.

〈표 8-3-1〉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11.59	3.74	13.25
아니다	88.41	96.26	86.75
계	100.00	100.00	100.00

기부 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연간 기부 액수를 보면 전체 가구원 기준으로 평균 55.41만 원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는 평균 56.58만 원, 저소득 가구는 평균 30.60만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부금액의 중위값은 일반 가구는 24만 원, 저소득 가구는 12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부액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가구의 규모가 저소득 가구에서 적게 나타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표 8-3-1〉 참조).

〈표 8-3-2〉 연간 기부 액수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4.00	55.41	4.41
저소득	12.00	30.60	4.43
일반	24.00	56.58	4.71

주: 연간 기부 액수가 있는 경우만 분석함.

다음으로 연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가구만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19.60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는 평균 54.17로 일반 가구(10.16회)보다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가구의 규모가 일반 가구보다 적었으나, 자원봉사활동 횟수가 많은 것은 흥미로운 결과다.

〈표 8-3-3〉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0.00	19.60	1.89
저소득	20.00	54.17	10.16
일반	8.00	16.48	1.52



# 제9장

## 사회보장

제1절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연)금

제2절 공공부조

제3절 사회복지 서비스



# 제 9 장 사회보장

## 제1절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연)금

### 1.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표 9-1-1〉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 중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9-1-1〉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39.15	53.99	36.27
수급	11.38	23.74	8.99
가입	47.06	20.8	52.15
수급하면서 가입	0.2	0.03	0.23
미가입	2.21	1.44	2.36
계	100.00	100.00	100.00

전체 가구 중 비해당<sup>21)</sup>이 39.15%, 가입이 47.06%, 수급이 11.38%, 수급하면서 가입이 0.20%, 미가입<sup>22)</sup>이 2.21%로 나타났다. 여기서 비해당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자(만 18세 미만, 만 60세 이상 등) 중 연금을 수급하거나 가입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면서 가입한 경우, 또는 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1)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 혹은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아닌 만 18세 미만 혹은 만 60세 이상인 자,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등을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22) 공적연금 제도 가입 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 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10차 조사부터는 가입자였던 자가 만 60세에 도달하였는데도 수급과 가입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으로 응답하고, '문항 8) 미가입 이유'에 '⑥ 만 60세 경과'로 기재하게 하였다. 201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출생 연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연령(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지났지만 급여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하게 된다. 즉 2021년 12월 31일 기준 1961년생인 경우 만 60세임에도 수급도 가입도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비해당 비율은 53.99%로 일반 가구(36.27%)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저소득 가구의 가입률(20.80%)은 일반 가구(52.15%)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수급률은 저소득 가구 23.74%, 일반 가구 8.99%로 저소득 가구의 수급률이 더 높았다.

앞의 <표 9-1-1>에서 공적연금 가입자(가입자 혹은 수급하면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해 있는 연금제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9-1-2>와 같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92.97%)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그 외에 공무원연금(5.66%), 사학연금(0.88%), 군인연금(0.48%) 등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국민연금 가입률은 일반 가구가 92.45%로 전체 가구보다 약간 낮지만 전체 가구와 거의 유사한 반면, 저소득 가구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가입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9-1-2> 공적연금 제도별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민연금	92.97	99.79	92.45
공무원연금	5.66	0.13	6.08
사학연금	0.88	0.08	0.94
군인연금	0.48	0.00	0.52
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2021년 1년간의 공적연금 수급 실태를 살펴보면(<표 9-1-3> 참조) 전체 수급자는 13.86%로 나타났다.<sup>23)</sup>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수급 비율(26.29%)이 전체 가구(13.86%)나 일반 가구(11.22%)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 공적연금 수급

23) <표 9-1-3>의 공적연금 수급률 13.86%는 <표 9-1-1>의 11.58%(수급 11.38%, 수급하면서 가입 0.2%)와 차이가 난다. 이는 <표 9-1-1>의 수치는 가구용 설문용, <표 9-1-3> 수치는 가구원용 설문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조사표의 차이는 가구용 설문은 모든 가구원이 응답하는 반면, 가구원용 설문은 중·고등학생이 아닌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만 응답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용 조사표의 해당 문항은 보훈연금을 제외하고 있지만, 가구원용 조사표에서는 보훈연금을 포함하여 수급 현황을 조사했다. 그 외에도 가구용 조사표는 대표 가구원(주로 가구주)이 주로 응답한 반면, 가구원용 조사표는 당사자가 직접 응답하므로 수치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구원용 조사표의 경우 일련의 사유로 미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수치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9-1-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83.0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공무원연금 10.34%, 보훈연금 2.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 78.24%, 공무원연금 13.90%, 보훈연금 3.14%, 군인연금 1.37%, 사립학교 교원연금 1.22%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저소득 가구는 국민연금이 92.7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무원연금과 보훈연금이 각각 3.17%, 2.00%로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 수급률은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높은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급률은 일반 가구가 훨씬 높았다.

<표 9-1-3> 공적연금 수급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수급	13.86	26.29	11.22
비수급	86.14	73.71	88.78
계	100.00	100.00	100.00

<표 9-1-4>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민연금	83.07	92.76	78.24
공무원연금	10.34	3.17	13.90
사립학교 교원연금	0.97	0.49	1.22
군인연금	1.02	0.33	1.37
별정직 우체국연금	0.02	0.00	0.03
보훈연금	2.76	2.00	3.14
기타	0.00	0.00	0.00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0.25	0.05	0.35
국민연금, 군인연금	0.25	0.00	0.38
국민연금, 보훈연금	1.17	1.20	1.16
공무원연금, 보훈연금	0.15	0.01	0.22
계	100.00	100.01	100.01

## 2. 건강보험 가입 실태

다음으로 건강보험 가입 실태를 가구와 개인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94.29%, 미가입자가 5.71%로 밝혀졌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률(80.46%)이 일반 가구(99.4%)보다 낮았다. 건강보험 가입 종류별로 보면 전체 가구의 71.45%는 직장 가입자, 28.55%는 지역 가입자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각각 62.92%, 37.08%, 일반 가구는 각각 74.00%, 26.00%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지역 가입자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의 대부분은 의료급여 1종(80.39%)과 의료급여 2종(18.41%)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는 의료급여 1종(81.90%)이 2종(17.46%)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보였고, 일반 가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료급여 1종(62.27%)이 2종(29.86%)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9-1-5〉 건강보험 가입 실태(가구 단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94.29	80.46	99.4
	직장	71.45	62.92	74.00
	지역	28.55	37.08	26.00
	소계	100.00	100.00	100.00
미가입		5.71	19.54	0.6
	의료급여 1종	80.39	81.90	62.27
	의료급여 2종	18.41	17.46	29.86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1.20	0.64	7.87
	미가입	0.00	0.00	0.00
	소계	100.00	100.00	100.00
계		100.00	100.00	100.00

〈표 9-1-6〉은 개인 단위인 가구원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sup>24)</sup> 결과를 보면 앞서 가구 단위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개인 단위의 가입 실태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sup>25)</sup> 및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까지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체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38.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득집단별로도 저소득 가구는 40.04%, 일반 가구는 37.80%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저소득 가구는 의료급여 1종이 13.79%, 지역 가입자가 19.07%,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이 14.60%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반 가구는 직장 가입자가 39.64%로 저소득 가구의 직장 가입자 비율보다 약 6배 높았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하면 지역 가입자가 11.22%,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이 10.61% 순으로 높았다.

〈표 9-1-6〉 건강보험 가입 실태(개인 단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장 가입자	34.26	6.48	39.64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38.16	40.04	37.80
지역 가입자	12.49	19.07	11.22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	11.26	14.60	10.61
의료급여 1종	2.6	13.79	0.43
의료급여 2종	1.2	5.94	0.28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0.03	0.07	0.02
미가입	0.00	0.00	0.00
계	100.00	99.99	100.00

### 3.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실태

다음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률은 29.62%, 미가입률은 8.79%로 나타났다.<sup>26)</sup> 소득집단별로

- 24) 가구 단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입 실태조사 문항에서는 예컨대 한 가구에서 1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분류했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가구주의 가입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25)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 26) 15세 이상 응답자 중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종사하거나 적용에서 제외되는 고용주·자영자(단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자 및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가입 가능), 비경제활동인구,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등은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가입률(7.01%)이 일반 가구의 가입률(33.99%)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9-1-7〉 고용보험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61.60	87.06	56.67
가입	29.62	7.01	33.99
미가입	8.79	5.93	9.34
계	100.01	100.0	100.0

2021년 1년간의 고용보험 급여 수급 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표 9-1-8〉과 같다. 고용보험 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3.60%로 나타났으며,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층이 2.87%, 일반이 3.76%로 수급 경험 또한 저소득층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급한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와 급여액은 부록 〈부표 6-1-22〉, 〈부표 6-1-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9-1-8〉 고용보험 급여 수급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60	2.87	3.76
없다	96.40	97.13	96.24
계	100.00	100.00	100.00

#### 4.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 실태

다음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산재보험 가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sup>27)</sup> 가입 (31.21%)이 미가입(9.68%)을 2배 이상 상회하며, 소득집단별로 볼 때 일반 가구원은

27) 15세 이상 응답자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 및 농어민, 비경제활동인구,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등은 산재보험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전체보다 약 4%p 높은 비율(35.83%)로 조사된 반면, 저소득 가구원은 가입률이 7.37%로 매우 낮다. 이 결과는 고용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일수록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1-9〉 산재보험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59.11	85.07	54.09
가입	31.21	7.37	35.83
미가입	9.68	7.56	10.09
계	100.00	100.00	100.01

다음의 〈표 9-1-10〉은 2021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수급한 경험을 설문한 결과이다. ‘수급 경험이 없다’가 99.6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수급 경험이 매우 적다는 특징은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구분 없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9-1-10〉 산재보험 급여 수급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3	0.26	0.35
없다	99.67	99.74	99.65
계	100.00	100.00	100.00

## 5. 퇴직(연금) 적용 및 수급 실태

퇴직(연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의 적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경우 21.27%의 가구원이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7.94%는 적용받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불과 4.86%만이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 가구에서는 24.45%가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퇴직(연금) 적용에서도 소득집단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10.20%, 일반 가구의 19.43%는 퇴직(연)금제도에 해당은 되지만 미적용자이며, 동시에 저소득 가구의 대다수(84.94%)는 퇴직(연)금제도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11〉 퇴직(연)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60.79	84.94	56.11
적용	21.27	4.86	24.45
미적용	17.94	10.20	19.43
모름	0.01	0.01	0.01
계	100.01	100.01	100.00

한편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실태를 보면 전체 가구 기준 10.75%만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 가구원의 가입률(0.80%)이 일반 가구원의 가입률(12.68%)에 비해 훨씬 낮았다.

〈표 9-1-12〉 퇴직(연)금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60.58	84.71	55.91
가입	10.75	0.80	12.68
미가입	28.65	14.49	31.40
모름	0.01	0.00	0.01
계	99.99	100.00	100.00

2021년 1년간 퇴직(연)금(퇴직보험금) 수급 여부에 대해서는 96.36%가 수급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퇴직(연)금을 받은 비율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원의 2.09%에 비해 일반 가구원은 3.96%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9-1-13〉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64	2.09	3.96
없다	96.36	97.91	96.04
계	100.00	100.00	100.00

## 6. 개인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표 9-1-14〉는 개인연금 가입 실태(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대해 설문한 결과이다. 시중 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종신보험은 개인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신보험 가입 여부도 본 문항에서 같이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어느 것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8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미가입률이 95.92%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일반 가구의 가구원은 78.27%로 소득집단에 따라 비율의 차이를 보인다. 즉 일반 가구는 개인연금과 종신보험 둘 중 하나라도 가입한 경우가 약 22%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5%에도 미치지 못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1-14〉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개인연금만 가입	5.62	0.94	6.53
종신보험만 가입	10.16	3.03	11.55
개인연금, 종신보험 둘 다 가입	3.08	0.10	3.66
미가입	81.13	95.92	78.27
모름	0.00	0.01	0.00
계	99.99	100.0	100.01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급여 수급 경험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97.94%) 응답자가 수급 경험이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득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표 9-1-15〉 개인연금 급여 수급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06	1.59	2.15
없다	97.94	98.41	97.85
계	100.00	100.00	100.00

## 제2절 공공부조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중위 소득(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결과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나누어 제시한다.

먼저 생계급여는 한국복지패널 전체 가구 중 6.87%가 수급 가구였는데, 수급 가구 중 92.06%는 일반 수급 가구, 7.51%는 조건부 수급 가구, 0.43%는 특례 가구로 조사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을 받는 가구 중에서는 79.57%는 가구원이 전부 수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20.43%는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2-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단위: %)

구분		비율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1	비수급 가구	93.13	
	수급 가구	6.87	100.00
	일반 수급 가구	6.33	92.06
	조건 부수급 가구	0.52	7.51
	특례 가구	0.03	0.43
계		100.00	
수급 형태 2	비수급 가구	93.13	
	수급 가구	6.87	100.00
	가구원 전부 수급	5.47	79.57
	가구원 중 일부 수급	1.40	20.43
	계	100.00	

의료급여는 한국복지패널 전체 가구 중 7.25%가 수급 가구였다. 수급 가구 중 79.40%는 의료급여 1종, 19.28%는 의료급여 2종이고, 국가유공자 무료진료에 해당하는 가구는 1.32%로 조사되었다. 생계급여와 유사하게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78.27%는 가구원이 전부 수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21.73%는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9-2-2〉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단위: %)

구분		비율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1	비수급 가구	92.75	
	수급 가구	7.25	100.00
	의료급여 1종	5.75	79.40
	의료급여 2종	1.40	19.28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0.10	1.32
계		100.00	
수급 형태 2	비수급 가구	92.75	
	수급 가구	7.25	100.00
	가구원 전부 의료급여	5.67	78.27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1.57	21.73
	계	100.00	

주거급여는 한국복지패널 전체 가구 중 8.28%가 수급하고 있으며, 수급 가구 중 임차급여(특례 포함)에 해당하는 가구는 91.01%, 수선유지급여(특례 포함)에 해당하는 가구는 8.99%였다. 교육급여는 전체 가구 중 0.60%만 수급하고 있는데, 1명 수급인 가구는 47.59%, 2명 수급은 52.41%, 3명 이상 수급하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2-3〉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단위: %)

구분		비율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1	비수급 가구	91.72	
	수급 가구	8.28	100.00
	임차급여(특례 포함)	7.54	91.01
	수선유지급여(특례 포함)	0.74	8.99
	계	100.00	

〈표 9-2-4〉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단위: %)

구분		비율	
수급 가구 및 수급자 수	비수급 가구	99.40	
	수급 가구	0.60	100.00
	1명 수급	0.29	47.59
	2명 수급	0.31	52.41
	3명 수급	0.00	0.00
	계	100.00	

2021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분석한 결과, 패널 가구 전체의 1.44%가 신청한 경험이 있었다. 신청 사유는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77.7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가 14.29%,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가 7.97% 비율을 차지하였다. 즉 대다수의 신청자들이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여부 및 사유

(단위: %)

구분		비율
수급 신청 여부	있다	1.44
	없다	98.56
	계	100.00
신청 사유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7.73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14.29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7.97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0.00
	계	100.00

2021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가구 중 약 0.35%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았다. 68.14%는 4개 급여 중 일부만 받았으며, 31.51%는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별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먼저 생계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탈락했다'고 답한 경우가 41.94%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이 기준보다 많다'고 응답한 가구가 26.65%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 탈락 사유의 비중은 생계급여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는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53.10%,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14.92%였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35.44%로 가장 높았고,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29.89%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교육급여는 '기타'가 88.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5.95%로 나타났다 (〈표 9-2-6〉 참조).

〈표 9-2-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후 선정 여부 및 신청 탈락 사유

(단위: %)

구분		비율
수급자 선정 여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다	0.35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	68.14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31.51
	계	100.00
(생계) 신청 탈락 사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26.65
	자동차가 있어서	0.00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3.38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14.13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41.94
	기타	9.95
	모르겠다	3.94
계	100.00	
(의료) 신청 탈락 사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14.92
	자동차가 있어서	0.51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2.13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9.95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53.10
	기타	8.15
	모르겠다	11.24
계	100.00	
(주거) 신청 탈락 사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23.61
	자동차가 있어서	0.00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7.04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29.89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35.44
	기타	1.85
	모르겠다	2.17
계	100.00	
(교육) 신청 탈락 사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0.00
	자동차가 있어서	0.00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0.00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5.4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5.95
	기타	88.65
	모르겠다	0.00
계	100.00	

2021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후 생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문항을 살펴본 결과 급여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나 친지 및 이웃의 도움’이 35.18%,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이 24.83%이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나 친지 및 이웃의 도움’이 38.20%,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이 25.69%였다. 주거급여는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이 32.61%,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가 28.08%로 조사되었다. 교육급여는 ‘기타’ 해결 방법이 88.65%,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이 5.40%를 차지하였다(〈표 9-2-7〉 참조).

〈표 9-2-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탈락 후 생계 문제 해결 방법

(단위: %)		
급여	구분	비율
생계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35.18
	빚을 내어서 생활	0.33
	민간단체의 도움	0.00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24.83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7.33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11.27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21.00
	기준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 수급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08
	기타	0.00
	계	100.00
의료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38.20
	빚을 내어서 생활	0.74
	민간단체의 도움	1.53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25.69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10.64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4.76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18.45
	기준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 수급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00
	기타	0.00
	계	100.00
주거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20.66
	빚을 내어서 생활	0.68
	민간단체의 도움	0.00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32.61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16.70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1.26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28.08
	기준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 수급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00
	기타	0.00
	계	100.00

급여	구분	비율
교육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0.00
	빚을 내어서 생활	3.25
	민간단체의 도움	0.00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5.40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2.70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0.00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0.00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 수급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00
	기타	88.65
	계	100.00

## 2. 근로(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부양 자녀 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본 제도는 2008년 도입되어 2009년 최초로 신청을 받고 급여를 제공하였다.

자녀장려세제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인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세제는 2015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11차 조사부터 항목이 추가되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각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신청 및 수급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인지 여부와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한 가구의 35.00%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34.78%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하였다. 16.21%는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14.01%만이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답했다.

자녀장려세제의 인지 여부도 근로장려세제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응답한 가구의 38.06%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 27.88%는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0.65%는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하였다. 13.41%는 ‘들어본 적도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응답자 중 약 20% 미만이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을 뿐,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여전히 두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표 9-2-8〉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근로 장려 세제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14.01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	34.78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5.00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16.21
	계	100.00
자녀 장려 세제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20.65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	38.06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7.88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13.41
	계	100.0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경험과 수급 여부를 살펴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는 2.13%,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는 10.11%, 자녀장려금만 신청한 가구는 0.61%로 나타났다. 이 중 10.13%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았고, 69.87%는 근로장려금만, 6.26%는 자녀장려금만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다 받지 못한 가구는 13.75%로 조사되었다(〈표 9-2-9〉 참조).

〈표 9-2-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경험 및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경험	둘 다 신청했다	2.13
	근로장려금만 신청했다	10.11
	자녀장려금만 신청했다	0.61
	둘 다 신청한 적 없다	87.14
	계	100.00
신청 가구 중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여부	둘 다 받았다	10.13
	근로장려금만 받았다	69.87
	자녀장려금만 받았다	6.26
	둘 다 받지 못했다	13.75
	계	100.00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 용도를 조사한 결과, 91.17%가 일상 생활비로, 그 다음으로는 자녀 교육비(1.69%)나 저축(2.23%)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9-2-10〉 참조).

〈표 9-2-10〉 근로(자녀)장려금 사용 용도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자녀 교육비	1.69	문화·오락비	0.91
일상 생활비	91.17	저축	2.23
의료비	3.59	기타	0.42
계	100.00	계	100.00



### 제3절 사회복지 서비스

#### 1.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2021년 1년간 가구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련하여 생계비 등 주요 사회복지 서비스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택 관련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표 6-3-1>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9-3-1>을 보면, 전체 가구 중 44.99%가 생계비 혹은 생계 보조 수당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가구 중에서는 79.38%, 일반 가구 중에서는 32.29%가 생계비 혹은 생계 보조 수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47.65% (저소득 가구 중 78.60%, 일반 가구 중 36.22%)가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의료비 지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의료, 가구 등 물품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 중 9.42%, 저소득 가구 중 26.24%, 일반 가구 중 3.22%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의 5.08%, 저소득 가구의 13.35%, 일반 가구의 2.02%가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식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의 1.25%, 저소득 가구의 4.38%, 일반 가구의 0.09%가 이용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직업 훈련, 취업 상담, 취업 알선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 중 12.01%, 저소득 가구 중 19.20%, 일반 가구 중 9.35%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9-3-1> 가구의 복지 서비스 지원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생계비	44.99	79.38	32.29
의료비	47.65	78.60	36.22
물품 지원(식료품, 의료, 가구 등)	9.42	26.24	3.22
가사 지원 서비스	5.08	13.35	2.02
식사 배달 서비스	1.25	4.38	0.09
취업 지원 서비스	12.01	19.20	9.35

〈표 9-3-2〉는 2021년 1년간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2021년 1년간 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전체 가구의 18.45%)만을 대상으로 이용한 바우처 서비스 유형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 중 이용 경험 비중이 높은 서비스는 통합문화이용권, 에너지 바우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순이었다.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40.98%가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였으며, 이 중에서 저소득 가구의 81.28%와 일반 가구의 12.19%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경험이 있었다.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40.15%(저소득 가구의 72.16%, 일반 가구의 17.28%)가 에너지 바우처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38.82%(저소득 가구의 4.19%, 일반 가구의 63.56%)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표 9-3-2〉 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89	2.12	5.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09	0.05	1.83
가사간병 방문관리지원사업	1.13	0.77	1.39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40.98	81.28	12.19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6.54	0.00	11.22
아이돌봄지원	0.27	0.00	0.47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38.82	4.19	63.56
장애아동가족지원	1.57	0.13	2.60
발달장애인지원	0.81	0.77	0.84
에너지 바우처	40.15	72.16	17.28
기타 바우처 서비스	10.27	7.48	12.27

주: 1년간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다음으로 2021년 1년간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9-3-3〉에 정리하였다. 전체 가구의 3.06%가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 중에서는 7.81%, 일반 가구 중에서는 1.31%

가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금액과 급여 유형별 경험률은 <부표 6-3-3>과 <부표 6-3-4>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표 9-3-3>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06	7.81	1.31
없다	96.94	92.19	98.69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표 9-3-4>는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36.55%)만을 대상으로 2021년 1년간의 주요 노인복지 서비스 경험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노인 무료 급식, 물품 지원, 가사 지원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식사 배달 서비스 등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표 6-3-5>를 참조하기 바란다.

전체 노인 가구에서 가장 이용 경험 비중이 높은 서비스는 의료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순이었다. 전체 노인 가구의 93.12%가 의료비 지원을 경험하였고, 저소득 가구 중에서는 95.14%, 일반 가구 중에서는 91.01%가 의료비 지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가구의 74.06%가 이 서비스를 받았고, 저소득 가구에서는 89.29%, 일반 가구에서는 58.11%가 기초연금을 받았다. 전체 노인 가구의 13.26%(저소득 가구의 18.56%, 일반 가구의 7.71%)는 노인 일자리사업 서비스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동편의 서비스와 사회참여 서비스의 경험 비율은 전반적으로 미미하였다. 전체 노인 가구의 1.63%가 이동편의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저소득 가구는 2.50%, 일반 가구는 0.71%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노인 가구의 0.52%는 한글 교실, 생활 요가, 노래 교실 등 사회참여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저소득 가구는 0.66%, 일반 가구는 0.37%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표 9-3-4〉 노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지원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초연금	74.06	89.29	58.11
의료비 지원	93.12	95.14	91.01
이동편의 서비스	1.63	2.50	0.71
노인일자리사업	13.26	18.56	7.71
사회참여 서비스	0.52	0.66	0.37

- 주: 1)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이동편의 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 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등이 이동에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교통 수단,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 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3) 2020년부터 기존의 '사회교육 서비스'를 '사회참여 서비스'로 대체함. '사회참여 서비스'는 기존의 '사회교육 서비스'에 이용자의 자발성이 확대된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임.

다음으로 〈표 9-3-5〉는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14.78%)만을 대상으로 2021년 1년간의 주요 장애인복지 서비스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장애아동수당, 가정봉사 서비스, 방문 간호, 주택 관련 서비스, 가족상담 및 심리 재활 서비스, 장애아동 및 장애인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자동차 관련 지원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표 6-3-6〉을 참조하기 바란다.

전체 장애인 가구의 14.32%가 장애인연금(중증 장애인 대상)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저소득 가구는 16.78%, 일반 가구는 12.17%가 장애인 연금 지원을 받았다. 전체 장애인 가구의 20.35%가 장애수당(경증 장애인 대상)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고, 저소득 가구는 37.62%, 일반 가구는 5.31%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가구의 9.75%가 이용한 의료재활 서비스는 일반 가구(11.97%)가 저소득 가구(7.21%)에 비해서 이용 경험률이 높았다. 이동편의 서비스의 경험 여부는 역시 일반 가구(7.32%)가 저소득 가구(4.89%)에 비해서 이용 경험률이 높았다. 이와 반면에, 사회 적응 및 취업 관련 서비스의 경험 여부는 저소득 가구(4.87%)가 일반 가구(2.65%) 보다 이용 경험률이 높았다.

〈표 9-3-5〉 장애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14.32	16.78	12.17
장애수당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20.35	37.62	5.31
의료재활 서비스	9.75	7.21	11.97
이동편의 서비스	6.19	4.89	7.32
사회 적응 및 취업 관련 서비스	3.69	4.87	2.65

주: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다음으로 〈표 9-3-6〉은 17세 이하의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20.19%)만을 대상으로 2021년 1년간의 주요 아동복지 서비스(아동수당, 공공 어린이집, 무료 급식, 양육비 보조 등)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무료 급식, 학비 지원, 문화활동, 예체능 교실 등 기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표 6-3-7〉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중 가장 경험률이 높은 서비스는 무료 급식(93.01%) 이었고, 양육, 보육료,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와 아동수당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46.31%, 45.46%로 그 뒤를 이었다.

무료 급식(저소득 가구 94.70%, 일반 가구 92.89%)과 양육, 보육료, 유치원비 보조(저소득 가구 48.50%, 일반 가구 46.14%)는 소득집단별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큰 차이가 없었다. 아동수당(저소득 가구 39.18%, 일반 가구 45.93%), 공공 어린이집 이용 경험(저소득 가구 3.39%, 일반 가구 10.81%)은 일반 가구의 경험이 저소득 가구의 경험 비중보다 약간 높았다. 반면에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저소득 가구 7.98%, 일반 가구 0.71%), 방과후 돌봄 서비스(저소득 가구 3.24%, 일반 가구 1.31%)는 저소득 가구의 경험 비중이 일반 가구보다 약간 높았다.

〈표 9-3-6〉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동수당	45.46	39.18	45.93
공공 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10.30	3.39	10.81
양육, 보육료,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46.31	48.50	46.14
무료 급식(급식 지원 포함)	93.01	94.70	92.89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1.21	7.98	0.71
방과후돌봄 서비스	1.44	3.24	1.31

주: 17세 이하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2. 아동의 건강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새로 추가된 아동에 대하여 출생 시 체중과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유무를 조사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가구원 규정 기준은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미하는 ‘추가된 아동’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추가되어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아동이다. 즉 신생아를 비롯하여 입양 아동, 친척 아동 등 같이 살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아동 가구 중 28.04%의 가구에 아동이 추가되었는데, 저소득 아동 가구는 38.92%, 일반 아동 가구에는 27.24%의 가구에 아동이 추가되었다.

〈표 9-3-7〉은 추가된 아동의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전체 추가된 아동 중에서 1.02%가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이었으며, 그 비율은 저소득 가구 2.81%, 일반 가구 0.82%로 나타났다.

〈표 9-3-7〉 추가된 아동의 출생 시 체중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2.5kg 이상	98.98	97.19	99.18
2.5kg 미만	1.02	2.81	0.82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표 9-3-8>은 추가된 아동에게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추가된 아동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는 1.45%로 드러났다. 소득집단별로 구체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5.71%)의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여부가 일반 가구(0.9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9-3-8> 추가된 아동의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45	5.72	0.99
없다	98.55	94.28	99.01
계	100.00	100.00	100.00

### 3. 아동 가구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

#### 가.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 실태

<표 9-3-9>는 아동 가구<sup>28)</sup>를 대상으로 2021년 1년간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체 아동 가구 중에서 아동 중 한 명이라도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 비율은 89.97%다. 저소득 가구는 78.19%, 일반 가구는 90.83%가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했다.

<표 9-3-9>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함	89.97	78.19	90.83
이용하지 않음	10.03	21.81	9.17
계	100.00	100.00	100.00

28) 아동 가구는 17세 이하의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 기관의 종류를 아동별로 최대 3개까지 조사하였다(〈표 9-3-10〉 참조). 평균 사교육 및 보육 이용 기관의 수는 2.2개이며, 저소득 가구는 평균 1.7개, 일반 가구는 평균 2.3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10〉 사교육·보육 이용 기관 수

(단위: 개)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0	2.2	0.04
저소득	2.0	1.7	0.12
일반	2.0	2.3	0.04

다음으로 〈표 9-3-11〉은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 기관의 종류를 분석한 것이다. 전체 아동 가구의 66.00%는 학원(44.28%), 과외(4.78%), 학습지(16.94%) 등 민간 학원 및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전체 아동 가구의 8.52%는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7.56%), 방과후교실(0.96%) 등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민간 시설인 학원 이용 비중은 전체 가구의 44.28%로 가장 그 비율이 높았는데, 저소득 아동 가구의 39.49%, 일반 아동 가구의 44.51%가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아동 가구의 16.94%, 4.78%가 각각 학습지(저소득 가구의 12.57%, 일반 가구의 17.15%가 이용함), 개인 그룹 과외(저소득 가구의 2.59%, 일반 가구의 4.89%가 이용함)를 학원 다음 순위로 이용하고 있었다.



〈표 9-3-11〉 사교육·보육기관의 종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3.79	0.75	3.93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38	1.27	0.34
	민간 어린이집	8.84	14.95	8.55
	가정 어린이집	2.14	0.08	2.24
	직장 어린이집	0.72	0.00	0.76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 주는 유치원	2.75	4.60	2.66
	정규시간만 담당하는 유치원	2.62	1.16	2.70
민간 학원 및 사교육	학원	44.28	39.49	44.51
	개인·그룹 과외	4.78	2.59	4.89
	학습지	16.94	12.57	17.15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7.56	17.20	7.09
	방과후교실	0.96	4.40	0.80
기타	친·인척	1.52	0.00	1.59
	이웃	0.08	0.00	0.0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0.42	0.00	0.44
	민간 아이돌보미	0.16	0.00	0.17
	기타	0.49	0.00	0.52
	그 외 보육시설	1.55	0.93	1.58
계		100.00	100.00	100.00

## 나. 가구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지출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 사교육비와 보육비 지출을 질문하였는데, 사교육비와 보육비에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포함된다. 가구 전체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가구의 아동 수로 나누어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계산하였다.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부표 6-3-9〉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1,200원, 저소득 가구는 19만 7,500원, 일반 가구는 33만 9,700원으로 나타났다(〈표 9-3-12〉 참조).

〈표 9-3-12〉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5.0	33.12	1.05
저소득	10.5	19.75	3.98
일반	26.0	33.97	1.09

가구 전체의 월평균 보육비를 가구의 아동 수로 나누어 ‘아동 1인당 월평균 보육비’를 계산하였다.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는 〈부표 6-3-10〉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1인당 월평균 보육비’는 5만 2,0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소득 가구는 1만 2,900원, 일반 가구는 5만 4,400원으로 나타났다(〈표 9-3-13〉 참조).

〈표 9-3-13〉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1인당 월평균 보육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	5.20	0.57
저소득	0.0	1.29	0.36
일반	0.0	5.44	0.60



# 제 10 장

## 복지 인식 부가조사

제1절 응답자 특성

제2절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제3절 복지 자원 부담에 대한 의견



## 제 10 장 복지 인식 부가조사

### 제1절 응답자 특성

17차 연도 복지패널 부가조사에 응답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1-1>을 보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46.11%, 여성이 53.89%로 여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 가구원의 남녀 성비는 38.27:61.73으로 여성 가구원의 비중이 높았으나, 일반 가구 가구원의 남녀 성비는 47.44:52.56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은 50대가 25.8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40대(22.33%), 65세 이상(19.17%), 30대(12.41%), 60~65세 미만(1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 근로활동이 미약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55.69%로 일반 가구의 12.98%에 비해 크게 높았다.

가구원의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원 중 68.66%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많은 저소득 가구에서는 사별이 17.80%, 이혼이 12.53%로 나타나 일반 가구(5.51%, 5.8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가구에서는 72.51%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원의 학력 분포는 대졸(31.7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졸(30.67%), 전문대 졸(16.02%), 초졸(8.15%)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의 경우 대졸(35.20%), 고졸(31.54%), 전문대 졸(17.02%)로 상대적으로 대졸자 비중이 높다. 이에 비해 저소득 가구는 초졸이 28.52%, 고졸이 25.50%, 중졸이 18.09% 순이었다. 이와 같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 일반 가구의 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은 높고 학력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0-1-1〉 응답자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성별	남성	46.11	38.27	47.44
	여성	53.89	61.73	52.56
	계	100.00	100.00	100.00
연령	20세 미만	0.00	0.00	0.00
	20~30세 미만	8.06	4.32	8.69
	30~40세 미만	12.41	6.19	13.46
	40~50세 미만	22.33	9.52	24.50
	50~60세 미만	25.87	14.67	27.77
	60~65세 미만	12.17	9.62	12.60
	65세 이상	19.17	55.69	12.98
	계	100.00	100.00	100.00
혼인 상태	비해당	0.00	0.00	0.00
	유배우	68.66	45.96	72.51
	사별	5.51	17.80	3.43
	이혼	5.82	12.53	4.68
	별거	0.66	1.74	0.47
	미혼	19.35	21.97	18.90
	기타(사망, 무응답 등)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학력	무학	0.89	4.27	0.32
	초등학교	8.15	28.52	4.69
	중학교	8.06	18.09	6.37
	고등학교	30.67	25.50	31.54
	전문대학	16.02	10.10	17.02
	대학교	31.72	11.22	35.20
	대학원(석사)	3.89	2.30	4.15
	대학원(박사)	0.61	0.00	0.71
	계	100.00	100.00	100.00

## 제2절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에 대해 13개 영역에 걸쳐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7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그렇다’(‘매우 그렇다’부터 ‘대체로 그렇다’까지의 응답값 합산),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응답값 합산)로 재범주화하였다

‘그렇다’라는 응답이 42.05%,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5.77%,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18%로 사회복지가 근로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과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유사하였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그렇다’가 47.35%, ‘보통이다’가 17.01%, ‘그렇지 않다’는 35.63%로,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각각 41.14%, 15.56%, 43.28%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원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3.28%가 사회복지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저소득 가구원(35.63%)보다 좀 더 높은 비율이다(〈표 10-2-1〉 참조).

〈표 10-2-1〉 사회복지를 늘리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그렇다	6.81	5.89	6.96
그렇다	17.16	20.83	16.53
대체로 그렇다	18.08	20.63	17.65
보통이다	15.77	17.01	15.56
대체로 그렇지 않다	21.66	22.32	21.55
그렇지 않다	13.89	7.68	14.94
전혀 그렇지 않다	6.63	5.63	6.7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① 성장만이 중요하다’부터 ‘④ 분배만이 중요하다’까지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이를 ‘성장이 중요(①, ②의 응답값 합산)’, ‘분배가 중요(③, ④의 응답값 합산)’로 재범주화하였다.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52.35%, ‘분배가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47.64%로 근소한 차이로 ‘성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성장:분배의 비율이 저소득 가구원은 46.9:53.1, 일반 가구원은 53.28:46.72로, 저소득 가구원은 분배가 중요하다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일반 가구원은 성장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10-2-2〉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① 성장만이 중요하다	4.79	6.37	4.53
② 분배도 중요하나, 성장이 보다 중요하다	47.56	40.53	48.75
③ 성장도 중요하나, 분배가 보다 중요하다	44.86	50.62	43.89
④ 분배만이 중요하다	2.78	2.48	2.83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부터 ‘매우 반대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이를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의 응답값 합산),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의 응답값 합산)로 재범주화하였다.

응답을 보면 ‘동의한다’ 35.0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39.34%, ‘반대한다’ 25.63%로 나타났다. 경제를 위한 세금 감소 지지가 세금 증가 지지보다 9.4%p 높았다.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경제를 위한 세금 감소를 지지하는 비율이 35.5%로 일반 가구원의 34.94%와 유사하였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경제를 위한 감세 반대 비중(20.95%)은 일반 가구원(26.42%)보다 근소하게 낮았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저소득 가구원의 39.34%, 일반 가구원의 38.63%)는 소득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표 10-2-3〉 참조).



〈표 10-2-3〉 경제를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5.45	5.51	5.44
동의한다	29.58	29.99	29.50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39.34	43.54	38.63
반대한다	23.61	20.27	24.17
매우 반대한다	2.02	0.68	2.25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부터 ‘매우 반대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이를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의 응답값 합산),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의 응답값 합산)로 재범주화하였다.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 증가 지지(31.46%)는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 증가 반대(31.18%)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비율은 37.37%였다.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원은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에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비율(41.00%)이 가장 높았고, 찬성(29.76%)과 반대(29.24%)가 유사하였다. 일반 가구에서는 전체 의견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에 ‘찬성’(31.75%)과 ‘반대’(31.5%) 비율은 유사하였으며,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36.75%)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10-2-4〉 참조).

〈표 10-2-4〉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3.20	1.91	3.42
동의한다	28.26	27.85	28.3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37.37	41.00	36.75
반대한다	28.15	27.83	28.20
매우 반대한다	3.03	1.41	3.3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부터 ‘매우 반대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이를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의 응답값 합산),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의 응답값 합산)로 재범주화하였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39.6%로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29.18%)는 응답, ‘반대한다’(31.22%)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 보육의 가족 책임에 대해 저소득 가구원에서 찬성(49.29%)이 일반 가구원의 찬성(37.96%) 비율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표 10-2-5〉 참조).

〈표 10-2-5〉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6.77	7.54	6.64
동의한다	32.83	41.75	31.32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29.18	27.57	29.45
반대한다	24.73	20.18	25.50
매우 반대한다	6.49	2.96	7.08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부터 ‘매우 반대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이를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의 응답값 합산),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의 응답값 합산)로 재범주화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기초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이 게으르다(27.74%)는 응답보다는 이에 반대하는 비중(41.18%)이 더 높았다. 이는 저소득 가구도 기초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이 게으르다고 보기보다는(36.81%) 이에 반대하는(40.34%) 응답의 비중이 근소하게 더 높았다. 일반 가구에서는 기초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이 게으르다는 의견 비중이 더욱 낮고, 이에 반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26.2:41.33) (〈표 10-2-6〉 참조).

〈표 10-2-6〉 기초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게으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5.49	5.41	5.51
동의한다	22.25	31.40	20.69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31.08	22.86	32.48
반대한다	33.56	32.72	33.71
매우 반대한다	7.62	7.62	7.6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부터 ‘매우 반대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이를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의 응답값 합산),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의 응답값 합산)로 재범주화하였다(〈표 10-2-7〉 참조).

선별적 복지에 대한 찬성(34.82%)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찬성(41.93%)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양상은 소득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원은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는 비율(49.86%)이 반대하는 비율(30.63%)보다 높았으며, 일반 가구원에서는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는 비율(32.28%)이 반대하는 비율(43.83%)보다 낮았다.

〈표 10-2-7〉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6.07	9.02	5.57
동의한다	28.75	40.84	26.71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23.26	19.52	23.89
반대한다	35.15	27.32	36.47
매우 반대한다	6.78	3.31	7.36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노동 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부터 ‘매우 반대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이를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의 응답값 합산),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의 응답값 합산)로 재범주화하였다(〈표 10-2-8〉 참조).

노동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최소 생계보장에 대해서 찬성 비율(45.6%)이 반대 비율(31.55%)이 더 높았다. 이는 저소득 가구원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저소득 가구원은 노동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최소 생계보장에 대한 찬성률(58.59%)은 일반 가구원의 찬성률(43.4%)보다 더 높았고, 일반 가구원의 반대 비율(32.53%)은 저소득 가구(25.74%)보다 더 높았다.

〈표 10-2-8〉 노동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4.93	7.34	4.52
동의한다	40.67	51.25	38.88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22.85	15.66	24.06
반대한다	24.59	21.03	25.19
매우 반대한다	6.96	4.71	7.3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부터 ‘매우 반대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이를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의 응답값 합산),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의 응답값 합산)로 재범주화하였다.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서는 반대 비율(49.14)이 찬성 비율(21.39%)보다 높았다. 이는 소득 유형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한 찬성/반대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20.6%, 50.74%)과 일반 가구원(21.53%, 48.87%)은 전체 가구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표 10-2-9〉 참조).

〈표 10-2-9〉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3.12	3.42	3.07
동의한다	18.27	17.18	18.46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29.47	28.66	29.61
반대한다	41.86	46.41	41.09
매우 반대한다	7.28	4.33	7.78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 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부터 ‘매우 반대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이를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의 응답값 합산),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의 응답값 합산)로 재범주화하였다.

국가 건강보험 축소 및 민간의료보험 확대에 대한 반대 비율(71.35%)은 찬성 비율(10.76%)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소득 유형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국가 건강보험 축소 및 민간의료보험 확대에 대한 찬성/반대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10.03%, 71.15%)과 일반 가구원(10.88%, 71.38%)은 전체 가구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표 10-2-10〉 참조).

〈표 10-2-10〉 국가 건강보험 축소, 민간의료보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1.43	0.71	1.55
동의한다	9.33	9.32	9.3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17.89	18.83	17.73
반대한다	41.26	46.11	40.43
매우 반대한다	30.09	25.04	30.95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대학 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부터 ‘매우 반대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이를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의 응답값 합산),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의 응답값 합산)로 재범주화하였다.

대학 교육 무상 제공 의견에 대한 반대 비율(44.52%)이 찬성 비율(32.64%)보다 더 높았다. 이는 저소득 가구에서 약간 더 두드러졌다. 저소득 가구원은 모든 교육의 국가책임에 대해 찬성/반대 비율이 29.02%/46.91%로 일반 가구원(33.27%, 44.11%)보다 찬성 비율은 낮고, 반대 비율은 높았다(〈표 10-2-11〉 참조).

〈표 10-2-11〉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구분	(단위: %)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9.21	6.02	9.76
동의한다	23.43	23.00	23.51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22.84	24.07	22.63
반대한다	36.96	39.30	36.56
매우 반대한다	7.56	7.61	7.55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부터 ‘매우 반대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이를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의 응답값 합산),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의 응답값 합산)로 재범주화하였다.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 무상 제공은 찬성 비율(74.25%)이 반대 비율(10.19%)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소득 유형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 무상 제공에 대한 찬성/반대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73.08%, 8.88%)과 일반 가구원(74.45%, 10.41%) 모두 전체 가구의 찬반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표 10-2-12〉 참조).

〈표 10-2-12〉 유치원, 보육 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24.22	18.39	25.21
동의한다	50.03	54.69	49.24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15.56	18.04	15.14
반대한다	8.26	7.15	8.45
매우 반대한다	1.93	1.73	1.96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험이나 육아 및 양로와 같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면 ①,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면 ⑤로 설정한 후 자신의 생각을 숫자로 응답하게 한 결과, 모든 국민 대상(30.03%), 소득 하위 50%의 국민 대상(24.89%), 소득 하위 70%의 국민 대상(18.67%), 소득 하위 30%의 국민 대상(17.68%)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원과 일반 가구원은 ‘모든 국민 대상’, ‘소득 하위 50% 국민 대상’ 응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 가구원은 16.55%만이 ‘모든 국민 대상’이라 응답한 반면, 일반 가구원은 32.31%가 ‘모든 국민 대상’이라 답하였다. 또 저소득 가구원의 34.03%가 ‘소득 하위 50%의 국민’에 응답한 반면, 일반 가구원은 23.34%만이 ‘소득 하위 50%의 국민’에 응답하였다(〈표 10-2-13〉 참조).

〈표 10-2-13〉 복지의 대상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① 모든 국민 대상	30.03	16.55	32.31
② 소득하위 70%의 국민	18.67	17.38	18.89
③ 소득하위 50%의 국민	24.89	34.03	23.34
④ 소득하위 30%의 국민	17.68	19.33	17.39
⑤ 가난한 사람들 대상	8.73	12.71	8.06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제3절 복지 자원 부담에 대한 의견

#### 1. 세금 부담에 대한 의견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에서는 ‘꽤 낮다(40.43%)’, ‘적절한 편(22.58%)’, ‘너무 지나치게 낮다(17.71%)’, ‘꽤 높다(12.44%)’, ‘지나치게 높다(3.05%)’ 순으로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의 경향은 저소득 가구원과 일반 가구원 모두 유사하였으나, 고소득층 세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일반 가구에서 약간 더 높았다. 일반 가구원의 3.41%는 ‘지나치게 높다’ 12.86%는 ‘꽤 높다’라고 응답한 반면, 저소득 가구원은 0.96%가 ‘지나치게 높다’ 9.95%가 ‘꽤 높다’라고 응답하였다(〈표 10-3-1〉 참조).

〈표 10-3-1〉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지나치게 높다	3.05	0.96	3.41
꽤 높다	12.44	9.95	12.86
적절한 편이다	22.58	22.97	22.51
꽤 낮다	40.43	44.21	39.79
너무 지나치게 낮다	17.71	17.17	17.80
모르겠다	3.74	4.74	3.57
무응답	0.05	0.00	0.06
계	100.00	100.00	100.00

중간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10-3-2〉와 같다. 적절한 편이다(53.96%)가 절반 이상 차지했고, 꽤 높다(31.18%), 꽤 낮다(8.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가구원과 일반 가구원의 응답 순위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중간층의 세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일반 가구에서 저소득 가구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일반 가구원의 3.98%가 ‘지나치게 높다’, 32.10%가 ‘꽤 높다’라고 응답한 반면, 저소득 가구원의 2.64%가 ‘지나치게 높다’,



25.74%가 '꽤 높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중간층의 현재 세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10-3-2〉 참조).

〈표 10-3-2〉 중간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지나치게 높다	3.78	2.64	3.98
꽤 높다	31.18	25.74	32.10
적절한 편이다	53.96	55.85	53.64
꽤 낮다	8.32	10.10	8.02
너무 지나치게 낮다	0.68	2.52	0.37
모르겠다	2.02	3.15	1.83
무응답	0.05	0.00	0.06
계	100.00	100.00	100.00

저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절한 편이다(50.87%)', '꽤 높다(27.54%)'의 순으로 높았다. 이는 저소득 가구원과 일반 가구원의 응답 순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저소득층의 현재 세금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었다(〈표 10-3-3〉 참조).

〈표 10-3-3〉 저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지나치게 높다	3.71	3.19	3.79
꽤 높다	27.54	28.02	27.46
적절한 편이다	50.87	53.33	50.46
꽤 낮다	11.71	9.91	12.02
너무 지나치게 낮다	2.41	2.07	2.47
모르겠다	3.70	3.47	3.74
무응답	0.05	0.00	0.06
계	100.00	100.00	100.00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10-3-4>와 같다. 이를 ‘매우 찬성한다’부터 ‘매우 반대한다’까지 7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이를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의 응답값 합산), ‘보통이다’,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대체로 반대한다’의 응답값 합산)로 재범주화하였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에 찬성 비율(40.63%)이 반대 비율(35.06%)보다 다소 높았다.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43.14%)이 일반 가구원의 증세 찬성 비율(40.21%)보다 약간 더 높았고, 일반 가구원의 반대 비율(35.59%)이 저소득 가구원의 반대 비율(31.9%)보다 약간 높았다(<표 10-3-4> 참조).

<표 10-3-4>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찬성한다	5.23	3.51	5.52
찬성한다	19.31	23.93	18.53
대체로 찬성한다	16.09	15.70	16.16
보통이다	24.31	24.96	24.20
대체로 반대한다	18.62	15.37	19.17
반대한다	11.95	10.47	12.20
매우 반대한다	4.49	6.06	4.2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국가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10-3-5>와 같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34.13%)’,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31.79%)’,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23.23%)’ 순이었다. 이 순위는 소득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응답은 저소득 가구원 40.71%, 일반 가구원 33.01%로 저소득 가구원에서 더 높았다. 또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응답은 일반 가구원 32.62%, 저소득 가구원 26.89%로, 일반 가구원에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10-3-5〉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자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내서	5.82	4.35	6.07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31.79	26.89	32.62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34.13	40.71	33.01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23.23	23.60	23.17
종교 단체 등이 기부금 등을 내서	4.31	4.31	4.31
기타	0.72	0.13	0.8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정은희, 신재동, 한겨레, 우선희, 하은솔, 김지원, ...임은정. (2021). 202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신재동, 이병재, 우선희, 한겨레, 정다운, ...임은정. (2020). 202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오미애, 이주미, 이병재, 최준영, 김근혜, ...김정옥. (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오미애, 이주미, 신재동, 정희선, 이병재, ...김정옥. (2018).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오미애, 박형준, 이주미, 신재동, 정희선, ...신유미. (2017).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태완, 오미애, 박형준, 신재동, 정희선, ...함선유. (2016).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 1. 일반적 특성

〈부표 1-1-1〉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생계) 수급 가구 구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 가구	93.13	77.58	98.87
수급 가구	6.88	22.41	1.13
일반 수급 가구	6.33	20.75	1.00
조건부 수급 가구	0.52	1.55	0.13
특례 가구	0.03	0.11	-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1-2〉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생계) 수급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 가구	93.13	77.58	98.87
수급 가구	6.87	22.42	1.14
가구원 전부 수급	5.47	19.04	0.46
가구원 중 일부 수급	1.40	3.38	0.6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1-3〉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의료) 수급 가구 구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 가구	92.75	77.24	98.48
수급 가구	7.25	22.76	1.52
의료급여 1종	5.75	18.44	1.07
의료급여 2종	1.40	4.24	0.35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0.10	0.08	0.1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1-4〉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의료) 수급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 가구	92.75	77.24	98.48
수급 가구	7.24	22.76	1.52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5.67	19.49	0.57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1.57	3.27	0.9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1-5〉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주거) 수급 가구 구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 가구	91.72	73.75	98.35
수급 가구	8.28	26.26	1.65
임차급여(특례 포함)	7.54	23.72	1.57
수선유지급여(특례 포함)	0.74	2.54	0.0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1-6〉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교육) 수급 가구 구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 가구	99.40	98.25	99.83
수급 가구	0.60	1.75	0.1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1-7〉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교육) 평균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평균 수급자 수	표준오차
전체	1.5	0.08
저소득	1.5	0.09
일반	1.5	0.17

〈부표 1-1-8〉 가구원의 최종 학력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중학교 졸업 이하	19.77	53.59	11.69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85	22.91	32.75
전문대 졸업 이하	11.07	4.00	12.76
대학교 졸업 이하	34.50	17.82	38.48
대학원 졸업 이상	3.81	1.68	4.32
계	100.00	100.00	100.00

주: 17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0명과 17차 추가 패널 가구원 3,468명을 포함한 3,67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9〉 가구원의 고등학교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계(일반)	66.03	43.62	68.70
일반계(특목:외국어고)	1.71	-	1.91
기타(자립형사립고, 국제고)	0.75	-	0.84
일반계(특목:체육고)	1.29	-	1.45
실업계(농업)	2.25	11.39	1.16
실업계(공업)	7.39	20.25	5.86
실업계(상업)	4.62	13.29	3.59
실업계(종합)	1.48	7.58	0.75
특성화고	11.54	3.88	12.46
대안학교	1.04	-	1.17
검정고시	1.71	-	1.91
자율고(자율형고, 기숙형고)	0.18	-	0.20
계	100.00	100.00	100.00

주: 17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0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2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17차 추가 패널 가구원 3,468명은 18차 조사 예정임).

〈부표 1-1-10〉 가구원의 고등학교 소재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14.86	16.88	14.62
부산광역시	5.92	23.00	3.89
대구광역시	5.71	1.22	6.24
인천광역시	4.30	-	4.81
광주광역시	4.68	9.53	4.10
대전광역시	1.43	7.84	0.66
울산광역시	0.29	-	0.33
경기도	29.61	3.88	32.67
강원도	3.24	1.80	3.41
충청북도	1.87	5.58	1.43
충청남도	5.54	3.02	5.84
전라북도	5.71	7.58	5.49
전라남도	5.60	13.45	4.67
경상북도	2.35	-	2.63
경상남도	4.43	-	4.96
제주도	1.40	-	1.56
검정고시	1.71	-	1.91
외국	1.34	6.22	0.76
계	100.00	100.00	100.00

주: 17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0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2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17차 추가 패널 가구원 3,468명은 18차 조사 예정임).

〈부표 1-1-11〉 가구원의 대학 전공계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인문계열	18.94	11.82	19.50
사회계열(경상계열)	9.84	22.85	8.82
사회계열(법학계열)	2.00	-	2.15
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6.46	38.31	3.95
교육계열	3.05	-	3.29
공학계열	22.98	-	24.79
자연계열	4.96	-	5.35
의약계열(의학)	3.56	-	3.84
의약계열(약학)	0.21	-	0.22
의약계열(간호, 치료보건)	10.72	-	11.56
예체능계열	14.80	16.34	14.68
기타	2.48	10.68	1.83
계	100.00	100.00	100.00

주: 17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0명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13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17차 추가 패널 가구원 3,468명은 18차 조사 예정임).

〈부표 1-1-12〉 가구원의 대학교 소재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15.77	-	17.01
부산광역시	7.88	50.13	4.56
대구광역시	5.54	-	5.98
인천광역시	4.56	-	4.92
광주광역시	3.85	4.01	3.84
대전광역시	1.79	5.47	1.50
울산광역시	0.21	-	0.23
경기도	15.77	27.30	14.86
강원도	5.24	2.22	5.47
충청북도	3.37	-	3.63
충청남도	11.47	-	12.38
전라북도	6.52	-	7.03
전라남도	3.30	10.87	2.71
경상북도	4.57	-	4.93
경상남도	4.55	-	4.90
제주도	2.41	-	2.60
외국	3.19	-	3.45
계	100.00	100.00	100.00

주: 17차 연도 신규 가구원 210명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13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17차 추가 패널 가구원 3,468명은 18차 조사 예정임).

〈부표 1-1-13〉 가구주의 최종 학력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중학교 졸업 이하	25.38	60.18	12.53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52	21.83	36.47
전문대 졸업 이하	9.40	2.41	11.98
대학교 졸업 이하	29.08	14.51	34.46
대학원 졸업 이상	3.62	1.08	4.56
계	100.00	100.00	100.00

주: 17차 연도 신규 가구주 27명과 17차 추가 패널 가구주인 2,001명을 포함한 2,0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14〉 가구주의 고등학교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계(일반)	40.12	5.63	47.88
실업계(공업)	23.63	47.64	18.23
실업계(상업)	19.30	46.73	13.13
특성화고	1.53	-	1.87
검정고시	13.17	-	16.13
자율고(자율형고, 기숙형고)	2.24	-	2.75
계	100.00	100.00	100.00

주: 17차 연도 신규 가구원 27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가구주 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17차 추가 패널 가구주 2,001명은 18차 조사 예정임).

〈부표 1-1-15〉 가구주의 고등학교 소재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7.10	-	8.69
대구광역시	8.75	-	10.72
인천광역시	1.53	-	1.87
광주광역시	8.50	-	10.41
대전광역시	8.58	46.73	-
울산광역시	1.04	-	1.27
경기도	16.72	-	20.48
강원도	1.03	5.63	-
충청북도	2.98	-	3.65
충청남도	7.53	-	9.23
전라남도	11.68	47.64	3.59
경상북도	6.57	-	8.05
경상남도	4.81	-	5.90
검정고시	13.17	-	16.13
계	100.00	100.00	100.00

주: 17차 연도 신규 가구원 27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가구주 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17차 추가 패널 가구주 2,001명은 18차 조사 예정임).

〈부표 1-1-16〉 가구주의 대학 전공계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인문계열	5.87	-	5.87
사회계열(경상계열)	3.98	-	3.98
사회계열(법학계열)	8.72	-	8.72
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10.91	-	10.91
공학계열	64.52	-	64.52
자연계열	1.90	-	1.90
의약계열(간호, 치료보건)	4.10	-	4.10
계	100.00	100.00	100.00

주: 17차 연도 신규 가구원 27명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가구주 1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17차 추가 패널 가구주 2,001명은 18차 조사 예정임).

〈부표 1-1-17〉 가구주의 대학교 소재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9.53	-	9.53
대구광역시	16.02	-	16.02
광주광역시	10.91	-	10.91
경기도	29.19	-	29.19
강원도	13.31	-	13.31
충청북도	5.46	-	5.46
충청남도	4.87	-	4.87
경상북도	1.90	-	1.90
경상남도	8.81	-	8.81
계	100.00	100.00	100.00

주: 17차 연도 신규 가구원 27명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가구주 1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17차 추가 패널 가구주 2,001명은 18차 조사 예정임).

## 2. 경제활동 상태

〈부표 1-2-1〉 임금근로자 가구원의 고용 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 계약의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고용 형태	직접고용	90.44	82.31	91.13
	간접고용	5.85	12.33	5.29
	특수고용	3.71	5.36	3.57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	14.81	58.55	11.07
	전일제	85.19	41.45	88.93
근로 계약 기간 설정 여부	계약 기간 정해짐	36.22	75.59	32.85
	계약 기간 정해지지 않음	63.78	24.41	67.15
근로 지속 가능성	계속 근로 가능	60.29	13.83	64.27
	계속 근로 불가능	39.71	86.17	35.73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2〉 임금근로자 가구원의 근로 지속 불가능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정해진 고용 계약 기간의 만료	45.38	61.37	42.08
목시적·관행적인 계약 종료	10.25	7.31	10.86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2.29	28.96	45.04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의 종료	1.96	2.28	1.90
현재의 일자리에선 이전에 일하던 사람 복귀	0.01	0.00	0.01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0.11	0.08	0.1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3〉 임금근로자 가구원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동조합 없음	74.03	75.24	73.92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 대상이 안 됨	8.12	22.27	6.92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 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8.16	1.64	8.71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9.69	0.84	10.4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4〉 취업 가구원의 사직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직, 폐업 경험 여부	있다	9.76	25.65	8.10
	없다	90.24	74.35	91.90
사직, 폐업 사유	파산, 폐업, 휴업 등	7.94	6.80	8.32
	정리 해고	0.31	0.85	0.13
	권고사직/명예퇴직	0.69	0.34	0.81
	정년퇴직	0.36	0.00	0.48
	계약 기간 만료	35.02	66.75	24.51
	소득/보수 적음	9.33	4.73	10.85
	일거리 부족	6.73	7.77	6.38
	일의 장래성 없음	3.59	2.00	4.12
	적성/지식/기능 안 맞음	4.35	1.08	5.43
	근로시간/근로 환경 열악	7.23	4.03	8.28
	자기(가족) 사업 시작	4.22	0.00	5.62
	가사 문제	0.68	1.59	0.38
	건강/고령 등	2.57	2.46	2.61
	거리가 멀어서	1.49	0.00	1.98
	학업/군 입대 등	1.07	0.13	1.38
	좀 더 좋은 일자리	12.09	0.92	15.78
	출산/육아	0.23	0.00	0.30
	기타	2.11	0.55	2.63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5〉 가구원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 기간

(단위: %, 개월)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직활동 여부	그렇다	6.18	5.29	6.61
	아니다	93.82	94.71	93.39
구직 기간	1년 미만	77.90	79.95	77.10
	1년 이상 3년 미만	19.53	16.80	20.59
	3년 이상 5년 미만	2.57	3.25	2.31
계		100.00	100.00	100.00
평균 구직 개월 수		9.41	7.30	10.23

〈부표 1-2-6〉 가구원의 구직상 어려움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나이 때문에	25.40	22.54	26.51	9.18	10.53	8.62
성차별 때문에	0.16	0.00	0.22	0.19	0.00	0.27
외모 때문에	-	-	-	-	-	-
학력이 낮기 때문에	1.53	0.00	2.12	1.20	1.03	1.28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9.65	17.38	6.67	23.08	28.34	20.92
경력이 부족해서	19.69	5.66	25.10	14.38	12.84	15.02
건강 문제로	5.74	11.41	3.56	5.18	4.71	5.36
일자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서	8.01	11.33	6.73	14.90	3.18	19.72
신용불량자라서	1.18	0.00	1.64	-	-	-
가사일 때문에	-	-	-	-	-	-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1.11	3.54	0.17	0.48	0.00	0.68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	-	-	-	-	-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19.18	17.70	19.75	14.29	19.63	12.09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1.53	0.00	2.12	3.82	4.91	3.37
근로 조건이나 근로 환경이 열악해서	3.79	5.15	3.27	7.30	12.58	5.13
임금 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2.56	3.87	2.06	4.97	2.10	6.15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0.46	1.42	0.08	0.95	0.14	1.28
기타	-	-	-	0.08	0.00	0.11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부표 1-2-7〉 가구원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50	250	4.74
저소득	230	223	8.32
일반	250	260	5.53



〈부표 1-2-8〉 비경제활동 가구원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근로 가능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직활동 여부	그렇다	12.01	9.41	13.27
	아니다	87.99	90.59	86.73
근로 가능 여부	그렇다	33.96	44.69	30.24
	아니다	66.04	55.31	69.7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9〉 가구원이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5.98	0.86	8.60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5.52	40.04	48.32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9.83	17.19	6.05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18	0.00	7.83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2.19	1.70	2.44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31.32	40.20	26.76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10〉 가구원이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단위:%)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술사	4.56	0.00	5.23
기능장	3.78	0.00	4.35
기사	7.50	23.44	5.12
산업 기사	3.58	3.00	3.67
기능사	16.86	16.72	16.88
기타 공인 면허 자격증	59.37	56.84	59.75
자격증 없는 기능자	4.35	0.00	5.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 해당 사례는 26케이스이며, 일반 해당 사례는 136케이스임.

〈부표 1-2-11〉 가구원이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계·금속	8.26	14.06	7.39
화공·세라믹	0.99	0.00	1.13
전기·전자	3.60	3.00	3.69
통신	3.24	5.87	2.85
조선	0.04	0.00	0.04
항공	-	-	-
섬유	-	-	-
토목·건축	0.75	0.00	0.86
광업 자원	-	-	-
정보처리	9.11	0.00	10.47
국토 개발	-	-	-
농림	-	-	-
해양	1.07	0.00	1.23
산업디자인	1.52	0.00	1.74
에너지	-	-	-
환경	2.94	0.00	3.38
안전관리	7.11	17.57	5.55
산업 응용	1.93	0.00	2.22
교통	0.62	0.76	0.60
공예	-	-	-
사무 관리	7.95	7.01	8.09
음표품·식료품	9.48	12.70	9.00
위생	3.25	18.52	0.98
보건·의료·사회	28.03	19.87	29.25
금융·무역·유통	2.70	0.00	3.10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5.91	0.00	6.79
외국어·관광	-	-	-
기타	1.51	0.63	1.64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 해당 사례는 26케이스이며, 일반 해당 사례는 136케이스임.

〈부표 1-2-12〉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고용 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 계약의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고용 형태	직접고용	89.98	81.83	90.90
	간접고용	6.66	13.24	5.92
	특수고용	3.36	4.93	3.18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	10.67	59.39	5.16
	전일제	89.33	40.61	94.84
근로 계약 기간 설정 여부	계약 기간 정해짐	32.06	76.82	27.00
	계약 기간 정해지지 않음	67.94	23.18	73.00
근로 지속 가능성	계속 근로 가능	65.88	12.83	71.88
	계속 근로 불가능	34.12	87.17	28.1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13〉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근로 지속 불가능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정해진 고용 계약 기간의 만료	47.64	63.35	42.14
목시적·관행적인 계약 종료	11.13	8.15	12.17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37.89	26.60	41.84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의 종료	3.31	1.78	3.84
현재의 일자리에서 이전에 일하던 사람 복귀	-	-	-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0.03	0.12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14〉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동조합 없음	70.21	72.02	70.01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 대상이 안 됨	9.56	25.06	7.81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 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7.82	2.04	8.48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12.40	0.88	13.7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15〉 취업 가구주의 사직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직, 폐업 경험 여부	있다	10.11	28.99	7.61
	없다	89.89	71.01	92.39
사직, 폐업 사유	파산, 폐업, 휴업 등	7.28	7.11	7.36
	정리 해고	0.18	0.00	0.27
	권고사직/명예퇴직	1.02	0.46	1.30
	정년퇴직	0.65	0.00	0.98
	계약 기간 만료	42.55	69.61	28.90
	소득/보수 적음	8.79	3.71	11.35
	일거리 부족	6.92	7.81	6.47
	일의 장래성 없음	3.01	1.07	3.99
	적성/지식/기능 안 맞음	3.06	0.00	4.60
	근로시간/근로 환경 열악	7.15	5.36	8.06
	자기(가족) 사업 시작	5.63	0.00	8.47
	가사 문제	0.71	2.11	0.00
	건강/고령 등	1.01	1.25	0.89
	거리가 멀어서	2.15	0.00	3.24
	학업/군 입대 등	-	-	-
	좀 더 좋은 일자리	8.34	1.23	11.93
	출산/육아	-	-	-
기타	1.56	0.29	2.19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16〉 가구주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기간

(단위: %, 개월)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직활동 여부	그렇다	7.70	5.10	11.81
	아니다	92.30	94.90	88.19
구직기간	1년 미만	90.55	86.35	93.41
	1년 이상 3년 미만	9.45	13.65	6.59
	3년 이상 5년 미만	-	-	-
계		100.00	100.00	100.00
평균 구직 개월 수		5.30	5.47	5.19

〈부표 1-2-17〉 가구주의 구직상 어려움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나이 때문에	42.91	34.00	48.98	11.18	16.27	7.32
성차별 때문에	0.39	0.00	0.65	0.47	0.00	0.83
외모 때문에	-	-	-	-	-	-
학력이 낮기 때문에	-	-	-	2.16	1.70	2.50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15.92	19.68	13.35	21.02	22.82	19.67
경력이 부족해서	2.59	4.02	1.62	17.06	18.27	16.15
건강 문제로	8.24	5.15	10.35	11.15	6.08	14.99
일자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서	5.88	6.99	5.12	13.24	0.81	22.65
신용불량자라서	0.33	0.00	0.55	-	-	-
가사일 때문에	-	-	-	-	-	-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	-	-	-	-	-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	-	-	-	-	-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13.54	19.34	9.59	12.83	15.91	10.49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2.12	0.00	3.56	2.15	4.44	0.41
근로 조건이나 근로 환경이 열악해서	6.70	8.47	5.49	7.08	13.45	2.25
임금 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0.44	0.00	0.75	1.35	0.00	2.37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0.95	2.34	0.00	0.10	0.24	0.00
기타	-	-	-	0.20	0.00	0.35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부표 1-2-18〉 가구주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50	253	7.97
저소득	200	218	12.14
일반	270	277	9.48

〈부표 1-2-19〉 비경제활동 가구주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근로 가능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직활동 여부	그렇다	11.20	8.03	16.60
	아니다	88.80	91.97	83.40
근로 가능 여부	그렇다	37.74	39.58	36.22
	아니다	62.26	60.42	63.7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20〉 가구주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19	1.80	6.34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5.44	41.00	49.43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5.05	21.50	9.25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	-	-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2.01	3.56	0.61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33.32	32.13	34.38
기타	-	-	-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21〉 가구주가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술사	2.30	0.00	3.15
기능장	3.96	0.00	5.43
기사	13.62	29.01	7.94
산업 기사	3.70	3.72	3.69
기능사	15.44	11.52	16.88
기타 공인 면허 자격증	58.06	55.76	58.92
자격증 없는 기능자	2.92	0.00	3.99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2-22〉 가구주가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계·금속	14.57	9.42	16.48
화공·세라믹	0.21	0.00	0.28
전기·전자	6.51	3.72	7.54
통신	2.98	7.26	1.40
조선	0.09	0.00	0.13
항공	-	-	-
섬유	-	-	-
토목·건축	1.65	0.00	2.26
광업 자원	-	-	-
정보처리	6.33	0.00	8.66
국토 개발	-	-	-
농림	-	-	-
해양	-	-	-
산업디자인	-	-	-
에너지	-	-	-
환경	0.23	0.00	0.32
안전관리	14.09	21.74	11.27
산업 응용	1.89	0.00	2.59
교통	1.60	0.95	1.84
공예	-	-	-
사무 관리	5.81	0.00	7.95
음료품·식품	6.96	15.71	3.73
위생	6.18	22.92	0.00
보건·의료·사회	23.41	17.51	25.59
금융·무역·유통	5.62	0.00	7.69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1.53	0.00	2.10
외국어·관광	-	-	-
기타	0.34	0.77	0.18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 해당 사례는 18케이스이며, 일반 해당 사례는 57케이스임.

## [부록 2] 가구 경제

### 1. 소득

〈부표 2-1-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00만 원 미만	5.34	19.81	-
1,000만~2,000만 원 미만	14.82	54.98	-
2,000만~3,000만 원 미만	10.34	18.99	7.14
3,000만~4,000만 원 미만	11.08	5.39	13.18
4,000만~5,000만 원 미만	9.24	0.59	12.43
5,000만 원 이상	49.18	0.24	67.25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에서 3,000만~5,000만 원 구간의 경상소득이 나타난 것은 근로소득은 적으나 규모가 큰 가구의 공공 부조 소득이 높기 때문임.

〈부표 2-1-2〉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시 근로소득	없다	56.18	96.12	41.43
	있다	43.82	3.88	58.57
임시·일용 근로소득	없다	52.97	60.27	50.28
	있다	47.03	39.73	49.72
사업소득	없다	83.07	92.14	79.73
	있다	16.93	7.86	20.27
농림축산어업소득	없다	93.91	93.71	93.98
	있다	6.09	6.29	6.02
부업소득	없다	95.76	94.17	96.35
	있다	4.24	5.83	3.65
계	100.00	100.00	100.00	

주: 부업소득의 비율이 3차 조사의 7.5%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은 4차 조사부터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을 각각 조사하였기 때문임.



〈부표 2-1-3〉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시 근로소득	500만 원 미만	56.66	96.60	41.92
	500만~1,000만 원 미만	0.68	0.75	0.66
	1,000만~1,500만 원 미만	0.95	0.65	1.07
	1,500만~2,000만 원 미만	0.73	0.73	0.74
	2,000만~2,500만 원 미만	1.56	0.51	1.95
	2,500만~3,000만 원 미만	3.20	0.32	4.27
	3,000만 원 이상	36.20	0.44	49.40
	계	100.00	100.00	100.00
임시·일용 근로소득	500만 원 미만	61.50	78.44	55.25
	500만~1,000만 원 미만	5.87	8.49	4.91
	1,000만~1,500만 원 미만	5.43	5.40	5.44
	1,500만~2,000만 원 미만	4.21	4.15	4.24
	2,000만~2,500만 원 미만	5.40	2.07	6.62
	2,500만~3,000만 원 미만	3.76	1.25	4.69
	3,000만 원 이상	13.82	0.20	18.85
	계	100.00	100.00	100.00
사업소득 (자영업 포함)	500만 원 미만	85.03	96.26	80.88
	500만~1,000만 원 미만	1.31	1.70	1.17
	1,000만~1,500만 원 미만	1.54	1.28	1.64
	1,500만~2,000만 원 미만	1.05	0.58	1.23
	2,000만~2,500만 원 미만	1.54	0.12	2.07
	2,500만~3,000만 원 미만	0.81	0.06	1.09
	3,000만 원 이상	8.72	-	11.93
	계	100.00	100.00	100.00
농림축산어업소득	500만 원 미만	96.43	97.52	96.02
	500만~1,000만 원 미만	1.28	1.74	1.10
	1,000만~1,500만 원 미만	0.69	0.52	0.75
	1,500만~2,000만 원 미만	0.24	0.08	0.30
	2,000만~2,500만 원 미만	0.21	0.13	0.24
	2,500만~3,000만 원 미만	0.17	-	0.23
	3,000만 원 이상	0.99	-	1.35
	계	100.00	100.00	100.00
부업소득	500만 원 미만	99.53	99.82	99.42
	500만~1,000만 원 미만	0.38	0.05	0.50
	1,000만~1,500만 원 미만	0.09	0.13	0.08
	1,500만~2,000만 원 미만	-	-	-
	2,000만~2,500만 원 미만	-	-	-
	2,500만~3,000만 원 미만	-	-	-
	3,000만 원 이상	0.00	-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1-4〉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없다	61.00	76.17	55.40
	있다	39.00	23.83	44.60
사회보험	없다	64.59	57.74	67.11
	있다	35.41	42.26	32.89
민간보험	없다	95.68	97.59	94.97
	있다	4.32	2.41	5.03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없다	13.48	8.82	15.21
	있다	86.52	91.18	84.79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없다	91.51	73.54	98.14
	있다	8.49	26.46	1.86
기타 정부보조금	없다	3.55	0.23	4.77
	있다	96.45	99.77	95.23
기타소득 <sup>1)</sup>	없다	13.90	17.71	12.49
	있다	86.10	82.29	87.51
계		100.00	100.00	100.00

주: 1) 기타소득의 경우 조사 답례품으로 인하여 보유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부표 2-1-5〉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없다	68.39	81.19	63.67
		있다	31.61	18.81	36.33
	임대료	없다	85.37	91.60	83.06
		있다	14.63	8.40	16.94
기타	없다	99.69	99.82	99.64	
	있다	0.31	0.18	0.36	
사회보험	공적연금	없다	69.66	59.85	73.28
		있다	30.34	40.15	26.72
	고용보험	없다	93.96	97.12	92.79
		있다	6.04	2.88	7.21
	산재보험	없다	99.25	99.61	99.12
		있다	0.75	0.39	0.88

〈부표 2-1-5〉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 여부(계속)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민간보험	개인연금	없다	95.71	97.62	95.00
		있다	4.29	2.38	5.00
	퇴직연금	없다	99.84	99.95	99.80
		있다	0.16	0.05	0.20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없다	29.78	26.19	31.11
		있다	70.22	73.81	68.89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민간보조금	없다	45.17	49.54	43.55
		있다	54.83	50.46	56.45
		맞춤형급여(생계)	없다	93.12	77.82
	맞춤형급여(주거)	있다	6.88	22.18	1.24
		없다	92.50	76.81	98.29
		있다	7.50	23.19	1.71
	맞춤형급여(교육)	없다	99.40	98.25	99.83
		있다	0.60	1.75	0.17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없다	94.97	86.45
기타 정부보조금		있다	5.03	13.55	1.89
		기초연금	없다	73.03	38.30
		있다	26.97	61.70	14.15
		한부모가족 지원	없다	99.71	99.35
		있다	0.29	0.65	0.16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없다	99.99	99.97
		있다	0.01	0.03	-
		양육수당	없다	97.68	99.68
		있다	2.32	0.32	3.05
		보육료 지원	없다	92.84	98.80
		있다	7.16	1.20	9.37
		아동수당	없다	90.78	97.99
		있다	9.22	2.01	11.88
		학비 지원	없다	96.40	97.54
		있다	3.60	2.46	4.0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없다	98.33	97.54	98.62
	있다	1.67	2.46	1.38	
	농어업 정부보조금	없다	95.10	94.05	95.49
	있다	4.90	5.95	4.51	
	긴급복지 지원금	없다	99.82	99.48	99.95
	있다	0.18	0.52	0.05	

〈부표 2-1-5〉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 여부(계속)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타 정부보조금	바우처 지원금	없다	89.46	75.97	94.44
		있다	10.54	24.03	5.56
	근로장려세제	없다	89.71	83.91	91.85
		있다	10.29	16.09	8.15
	자녀장려세제	없다	97.89	98.21	97.77
		있다	2.11	1.79	2.23
	급식비 지원	없다	99.70	99.03	99.94
		있다	0.30	0.97	0.06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없다	84.84	69.35	90.55
		있다	15.16	30.65	9.45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없다	79.14	52.57	88.95	
	있다	20.86	47.43	11.05	
기타	없다	83.47	67.70	89.29	
	있다	16.53	32.30	10.71	
지방보조금 <sup>1)</sup>	없다	95.12	93.53	95.71	
	있다	4.88	6.47	4.29	
재난지원금 <sup>2)</sup>	없다	4.68	0.74	6.14	
	있다	95.32	99.26	93.86	
기타소득 <sup>3)</sup>	증여·상속	없다	98.72	99.27	98.52
		있다	1.28	0.73	1.48
	경조금	없다	96.81	97.54	96.54
		있다	3.19	2.46	3.46
	보상금	없다	98.15	98.34	98.07
		있다	1.85	1.66	1.93
	사고보험금	없다	83.19	92.23	79.85
		있다	16.81	7.77	20.15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없다	91.86	95.94	90.36
		있다	8.14	4.06	9.64
동산, 부동산 매매 차익	없다	97.46	98.52	97.07	
	있다	2.54	1.48	2.93	
기타(복권·경품 당첨금, 상품권 등)	없다	17.78	19.18	17.26	
	있다	82.22	80.82	82.74	

주: 1) 2019년 15차 조사부터 기존 '기타'에 포함되었던 지방보조금 항목을 분리하여 조사함.  
 2)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 항목을 신설하여 조사함.  
 3) 기타 소득의 경우 조사 답례품으로 인하여 보유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부표 2-1-6〉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전체	0	76	5.38
		저소득	0	21	1.34
		일반	0	97	8.36
	임대료	전체	0	159	8.23
		저소득	0	46	3.91
		일반	0	200	12.63
	기타	전체	0	1	0.29
		저소득	0	0	0.16
		일반	0	1	0.45
사회보험	공적연금	전체	0	287	8.53
		저소득	0	188	6.11
		일반	0	323	12.89
	고용보험	전체	0	47	2.88
		저소득	0	21	2.33
		일반	0	57	4.31
	산재보험	전체	0	18	3.50
		저소득	0	5	1.53
		일반	0	22	5.40
민간보험	개인연금	전체	0	23	1.81
		저소득	0	9	1.28
		일반	0	29	2.74
	퇴직연금	전체	0	2	0.52
		저소득	0	0	0.24
		일반	0	2	0.80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전체	90	221	4.78
		저소득	150	273	5.74
		일반	70	201	6.77
	민간보조금	전체	5	79	2.89
		저소득	1	52	2.67
		일반	8	89	4.27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맞춤형급여 (생계)	전체	0	35	1.82
		저소득	0	115	4.74
		일반	0	6	0.90
	맞춤형급여 (주거)	전체	0	12	0.57
		저소득	0	36	1.41
		일반	0	3	0.40
	맞춤형급여 (교육)	전체	0	0	0.05
		저소득	0	1	0.14
		일반	0	0	0.03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전체	0	10	0.69
		저소득	0	22	1.53
		일반	0	5	0.70

〈부표 2-1-6〉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평균(계속)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기타 정부보조금	기초연금	전체	0	107	2.10
		저소득	360	248	3.63
		일반	0	55	2.17
	한부모가족 지원	전체	0	1	0.17
		저소득	0	1	0.29
		일반	0	1	0.22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전체	0	0	0.03
		저소득	0	0	0.09
		일반	0	0	0.00
	양육수당	전체	0	4	0.33
		저소득	0	1	0.20
		일반	0	5	0.50
	보육료 지원	전체	0	30	1.36
		저소득	0	6	1.04
		일반	0	39	2.04
	아동수당	전체	0	13	0.53
		저소득	0	3	0.35
		일반	0	17	0.79
	학비 지원	전체	0	13	0.94
		저소득	0	8	1.03
일반		0	15	1.36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전체	0	5	0.63	
	저소득	0	8	1.06	
	일반	0	4	0.81	
농어업 정부보조금	전체	0	10	0.75	
	저소득	0	9	0.76	
	일반	0	10	1.10	
긴급 복지 지원금	전체	0	0	0.09	
	저소득	0	1	0.27	
	일반	0	0	0.02	
바우처 지원금	전체	0	17	2.29	
	저소득	0	8	1.10	
	일반	0	20	3.52	
근로장려세제	전체	0	10	0.41	
	저소득	0	15	0.69	
	일반	0	8	0.52	
자녀장려세제	전체	0	2	0.17	
	저소득	0	2	0.22	
	일반	0	2	0.24	
급식비 지원	전체	0	0	0.11	
	저소득	0	1	0.26	
	일반	0	0	0.10	

〈부표 2-1-6〉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평균(계속)

(단위: 만 원)

구분		종위값	평균	표준오차	
기타 정부보조금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전체	0	5	0.14
		저소득	0	11	0.31
		일반	0	2	0.13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전체	0	5	0.13
		저소득	0	12	0.29
		일반	0	2	0.12
	기타	전체	0	5	0.36
		저소득	0	5	0.35
		일반	0	5	0.52
	지방보조금	전체	0	3	0.22
		저소득	0	2	0.21
		일반	0	3	0.32
재난지원금	전체	70	111	2.02	
	저소득	50	69	1.42	
	일반	80	126	3.03	
기타소득	증여·상속	전체	0	241	37.55
		저소득	0	66	26.63
		일반	0	306	56.91
	경조금	전체	0	51	5.76
		저소득	0	26	3.17
		일반	0	60	8.83
	보상금	전체	0	6	0.95
		저소득	0	3	0.55
		일반	0	7	1.45
	사고보험금	전체	0	65	5.49
		저소득	0	32	5.50
		일반	0	77	8.05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전체	0	106	8.81
		저소득	0	35	5.85
		일반	0	132	13.39
동산·부동산 매매 차익	전체	0	273	40.46	
	저소득	0	330	67.56	
	일반	0	252	51.77	
기타	전체	7	9	1.07	
	저소득	7	6	0.33	
	일반	8	10	1.67	

주: 2006년 1차 기초 보고서에서는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007년 2차 조사 이후부터의 기초 보고서에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부표 2-1-7〉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50만 원 미만	69.84	83.25	64.89
	50만~100만 원 미만	5.89	4.19	6.52
	100만~150만 원 미만	3.46	2.31	3.89
	150만~200만 원 미만	2.03	0.96	2.43
	200만~250만 원 미만	2.09	1.62	2.26
	250만~300만 원 미만	1.14	0.61	1.33
	300만 원 이상	15.55	7.06	18.68
	계	100.00	100.00	100.00
사회보험	50만 원 미만	64.79	57.85	67.35
	50만~100만 원 미만	0.20	0.12	0.23
	100만~150만 원 미만	1.10	2.76	0.49
	150만~200만 원 미만	2.60	5.83	1.41
	200만~250만 원 미만	2.26	4.55	1.42
	250만~300만 원 미만	2.41	4.59	1.61
	300만 원 이상	26.63	24.30	27.49
	계	100.00	100.00	100.00
민간보험	50만 원 미만	95.70	97.65	94.98
	50만~100만 원 미만	0.09	0.11	0.08
	100만~150만 원 미만	0.50	0.48	0.51
	150만~200만 원 미만	0.56	0.12	0.72
	200만~250만 원 미만	0.29	0.42	0.24
	250만~300만 원 미만	0.21	0.12	0.25
	300만 원 이상	2.65	1.10	3.23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50만 원 미만	25.76	20.54	27.68
	50만~100만 원 미만	12.67	11.13	13.24
	100만~150만 원 미만	13.33	10.51	14.37
	150만~200만 원 미만	7.44	6.41	7.82
	200만~250만 원 미만	7.09	7.06	7.10
	250만~300만 원 미만	4.37	4.82	4.21
	300만 원 이상	29.34	39.53	25.58
	계	100.00	100.00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50만 원 미만	91.65	73.92	98.19
	50만~100만 원 미만	0.30	0.74	0.14
	100만~150만 원 미만	0.50	1.22	0.23
	150만~200만 원 미만	0.52	1.83	0.04
	200만~250만 원 미만	0.28	0.90	0.05
	250만~300만 원 미만	0.64	1.97	0.15
	300만 원 이상	6.11	19.42	1.2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1-7〉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 유형별 세부 항목 분포(계속)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타 정부보조금	50만 원 미만	16.08	8.17	18.99
	50만~100만 원 미만	15.17	7.49	18.01
	100만~150만 원 미만	11.28	5.73	13.33
	150만~200만 원 미만	5.97	4.52	6.50
	200만~250만 원 미만	4.17	3.18	4.54
	250만~300만 원 미만	2.17	2.22	2.16
	300만 원 이상	45.16	68.69	36.47
	계	100.00	100.00	100.00
기타소득	50만 원 미만	74.75	85.50	70.78
	50만~100만 원 미만	3.09	1.97	3.51
	100만~150만 원 미만	2.30	1.04	2.76
	150만~200만 원 미만	1.89	0.97	2.23
	200만~250만 원 미만	1.87	1.46	2.02
	250만~300만 원 미만	1.23	0.76	1.41
	300만 원 이상	14.87	8.30	17.30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6년 1차 기초 보고서에서는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차 조사 이후부터의 기초 보고서에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2. 지출

〈부표 2-2-1〉 월간 총가계지출 규모별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50만 원 미만	0.22	0.83	-
50만~100만 원 미만	8.25	30.23	0.14
100만~150만 원 미만	9.53	28.93	2.37
150만~200만 원 미만	8.78	16.60	5.89
200만~300만 원 미만	16.52	16.43	16.55
300만 원 이상	56.70	6.97	75.0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2〉 지출 항목별 생활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식료품비	합계	83	91	0.54
		가정 식비	50	54	0.32
		외식비	27	31	0.29
		주류·담배비	0.6	6	0.10
	주거비	합계	10	15	0.25
		월세	0	5	0.15
		주거관리비	6	10	0.21
	광열수도비	12	12	0.06	
	가구·가사용품비	합계	6	15	0.35
		가구집기·가사용품비	6	12	0.29
		보육료	0	3	0.19
	의류·신발비	8	12	0.28	
	보건의료비	13	23	0.36	
	교육비	합계	0	17	0.48
		공교육비	0	6	0.24
		사교육비	0	12	0.40
	교양오락비	5	13	0.28	
	교통·통신비	합계	37	54	0.92
		교통비	23	41	0.88
		통신비	12	13	0.10
	기타 소비 지출	58	84	11.95	
	송금보조 (사적 이전)	합계	8	22	0.52
		비동거 가구원	0	4	0.21
부모		0	10	0.30	
자녀		0	7	0.33	
기타(가구원이 아닌 친지)		0	2	0.12	
세금	0	28	0.93		
사회보장부담금	22	29	0.34		
자가소비액(농축산)	0	1	0.04		
자가소비액(어업)	0	0	0		
이자 지출	0	13	0.63		

〈부표 2-2-2〉 지출 항목별 생활비 평균(계속)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저소득	식료품비	합계	45	50	0.41
		가정 식비	35	39	0.29
		외식비	5	8	0.17
		주류·담배비	0	3	0.10
	주거비	합계	8	11	0.27
		월세	0	5	0.18
		주거관리비	3	6	0.22
	광열수도비		10	10	0.08
	가구·가사용품비	합계	2	5	0.17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	5	0.14
		보육료	0	0.5	0.10
	의류·신발비		2	3	0.08
	보건의료비		9	17	0.39
	교육비	합계	0	3	0.23
		공교육비	0	1	0.13
		사교육비	0	1	0.19
	교양오락비		1	3	0.11
	교통·통신비	합계	9	17	0.52
		교통비	4	11	0.48
		통신비	5	6	0.09
	기타 소비 지출		15	24	0.47
	송금보조 (사적 이전)	합계	0	7	0.64
		비동거 가구원	0	0.2	0.06
부모		0	1	0.12	
자녀		0	5	0.61	
기타(가구원이 아닌 친지)		0	1	0.07	
세금		0.6	5	0.98	
사회보장부담금		0	4	0.12	
자가소비액(농축산)		0	1	0.04	
자가소비액(어업)		-	-	-	
이자 지출		0	3	0.18	

〈부표 2-2-2〉 지출 항목별 생활비 평균(계속)

(단위: 만 원)

구분		종위값	평균	표준오차	
일반	식료품비	합계	99	106	0.68
		가정식비	57	60	0.45
		외식비	35	39	0.38
		주류·담배비	2	7	0.14
	주거비	합계	10	17	0.36
		월세	0	5	0.21
		주거관리비	8	11	0.31
	광열수도비		13	13	0.08
	가구·가사용품비	합계	8	19	0.54
		가구집기·가사용품비	7	14	0.44
		보육료	0	4	0.29
	의류·신발비		11	16	0.43
	보건의료비		15	26	0.51
	교육비	합계	0	23	0.72
		공교육비	0	7	0.36
		사교육비	0	15	0.60
	교양오락비		9	17	0.41
	교통·통신비	합계	47	68	1.35
		교통비	31	52	1.32
		통신비	14	16	0.13
	기타 소비 지출		79	106	18.67
	송금보조 (사적 이전)	합계	13	28	0.72
		비동거 가구원	0	5	0.32
부모		5	14	0.45	
자녀		0	7	0.39	
기타(가구원이 아닌 친지)		0	3	0.19	
세금		14	36	1.33	
사회보장부담금		33	38	0.45	
자가소비액(농축산)		0	1	0.06	
자가소비액(어업)		0	0	0	
이자 지출		0	16	0.97	

### 3. 재산

〈부표 2-3-1〉 소유 부동산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전체	0	6,183	279.67
	저소득	0	1,555	280.11
	일반	0	7,891	407.49
주택 외 건물	전체	0	3,232	246.32
	저소득	0	891	229.92
	일반	0	4,096	363.87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전체	0	5,836	890.06
	저소득	0	4,853	2,408.78
	일반	0	6,198	504.17

주: 주택 외 건물에는 가족 명의의 사업장(가게), 창고, 상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이 포함됨.

〈부표 2-3-2〉 점유 부동산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1,021	96.04
저소득	0	170	21.80
일반	0	1,336	149.44

〈부표 2-3-3〉 점유 부동산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세 보증금 준 것 (가게, 사업장 등)	전체	0	241	16.19
	저소득	0	49	9.72
	일반	0	312	24.68
기타	전체	0	780	90.48
	저소득	0	121	15.82
	일반	0	1,024	141.06

주: 기타에는 권리금, 사업 설비, 공장 기계, 가게 물건, 비닐하우스 시설, 양식장 등이 포함됨.

〈부표 2-3-4〉 금융재산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예금	전체	1,500	6,610	1,612.24
	저소득	400	2,255	92.22
	일반	2,000	8,218	2,520.18
적금 (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중신보험, 청약부금 등)	전체	120	3,950	1,487.49
	저소득	0	221	16.88
	일반	720	5,326	2,325.89
주식·채권	전체	0	1,151	57.06
	저소득	0	120	13.30
	일반	0	1,531	88.26
타기 전 부은 꺾돈	전체	0	4	0.81
	저소득	0	1	0.23
	일반	0	5	1.26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전체	0	2,536	1,609.46
	저소득	0	223	58.58
	일반	0	3,390	2,516.44

〈부표 2-3-5〉 농기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54	8.13
저소득	0	37	9.16
일반	0	61	11.72

〈부표 2-3-6〉 농기계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동력 탈곡기	전체	0	1	1.06
	저소득	0	0	0.04
	일반	0	2	1.66
경운기	전체	1	2	0.21
	저소득	0	2	0.40
	일반	0	2	0.25
콤바인	전체	0	7	2.40
	저소득	0	2	0.58
	일반	0	10	3.74
트랙터	전체	0	26	4.49
	저소득	0	13	3.64
	일반	0	31	6.75
기타 농기계	전체	0	17	2.59
	저소득	0	21	5.43
	일반	0	16	2.80

〈부표 2-3-7〉 농축산물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101	22.89
저소득	0	139	47.84
일반	0	87	24.84

〈부표 2-3-8〉 농축산물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소	전체	0	79	22.44
	저소득	0	127	47.53
	일반	0	61	23.99
돼지	전체	0	0	0.00
	저소득	0	0	0.00
	일반	0	0	0.00
닭	전체	0	1	0.46
	저소득	0	0	0.06
	일반	0	1	0.72
재고 농산물	전체	0	1	0.95
	저소득	0	0	0.09
	일반	0	2	1.48
기타 농축산물	전체	0	20	3.99
	저소득	0	12	4.82
	일반	0	23	5.67

〈부표 2-3-9〉 자동차 가액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1,000	1,568	28.80
저소득	400	794	41.82
일반	1,100	1,644	31.81

〈부표 2-3-10〉 기타 동산·부동산 재산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394	21.24
저소득	0	53	8.37
일반	0	520	32.70

〈부표 2-3-11〉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전체	0	7	2.43
	저소득	0	0	0.13
	일반	0	10	3.81
영업용 자동차·오토바이·선박, 굴착기, 포클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 수단	전체	0	280	18.76
	저소득	0	32	8.00
	일반	0	371	28.89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전체	0	102	8.22
	저소득	0	21	2.48
	일반	0	132	12.75
기타	전체	0	6	1.99
	저소득	0	0	0.06
	일반	0	8	3.12

#### 4. 부채

〈부표 2-4-1〉 부채 유형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금융기관 대출 (회사 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전체	0	4,388	114.91
	저소득	0	888	54.47
	일반	0	5,680	173.26
일반 사채	전체	0	57	11.85
	저소득	0	21	4.04
	일반	0	71	18.40
카드 빚	전체	0	67	5.35
	저소득	0	51	8.26
	일반	0	73	7.09
전세(임대) 보증금 (받은 돈)	전체	0	2,063	115.10
	저소득	0	606	113.23
	일반	0	2,601	168.61
외상, 미리 탄 깻돈	전체	0	6	1.55
	저소득	0	1	0.62
	일반	0	8	2.39
기타 부채	전체	0	146	16.62
	저소득	0	97	12.74
	일반	0	164	25.06

주: 미리 탄 깻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하도록 함.



## [부록 3] 주거 및 건강

### 1. 주거

〈부표 3-1-1〉 2021년 1년 동안의 이사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8.67	5.73	9.78
없다	91.33	94.27	90.22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 가구의 경우는 이사 경험을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가구는 제외하였음.

〈부표 3-1-2〉 주거 위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지하층	0.16	0.25	0.13
반지하층	1.77	3.63	1.08
지상	98.02	96.12	98.72
옥탑	0.05	0.01	0.0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3〉 방의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개	9.39	12.56	8.22
2개	25.75	40.78	20.21
3개	57.90	42.95	63.41
4개	6.32	3.50	7.36
5개 이상	0.64	0.22	0.80
계	100.00	100.00	100.00

## 〈부표 3-1-4〉 상하수도 사용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 사용	99.14	99.16	99.14
공동 사용	0.8	0.74	0.82
없음	0.06	0.1	0.05
계	100.00	100.00	100.00

## 〈부표 3-1-5〉 부엌 사용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 사용-입식	99.01	99.00	99.01
단독 사용-재래식	0.39	0.37	0.40
공동 사용-입식	0.56	0.58	0.55
공동 사용-재래식	0.00	0.00	0.00
없음	0.04	0.05	0.04
계	100.00	100.00	100.00

## 〈부표 3-1-6〉 화장실 사용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 사용-수세식	98.79	97.94	99.10
단독 사용-재래식	0.54	1.11	0.33
공동 사용-수세식	0.65	0.85	0.57
공동 사용-재래식	0.00	0.01	0.00
없음	0.03	0.09	0.00
계	100.00	100.00	100.00

## 〈부표 3-1-7〉 목욕시설 사용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 사용-온수시설 있음	98.73	97.80	99.07
단독 사용-온수시설 없음	0.57	1.05	0.39
공동 사용-온수시설 있음	0.51	0.59	0.48
공동 사용-온수시설 없음	0.00	0.00	0.00
없음	0.20	0.55	0.0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8〉 난방시설 사용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탄 또는 재래식(빨감) 아궁이	0.17	0.33	0.11
연탄보일러	0.21	0.43	0.13
나무·석탄 보일러	0.49	0.91	0.34
기름보일러	9.44	17.62	6.43
가스보일러	72.89	67.36	74.93
전기보일러	2.44	2.74	2.33
중앙난방(지역난방)	14.02	9.95	15.53
전기장판	0.27	0.62	0.14
기타	0.06	0.04	0.0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9〉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가격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00만 원 미만	0.38	1.13	0.17
1,000만~5,000만 원 미만	3.94	11.58	1.83
5,000만~1억 원 미만	10.45	19.42	7.97
1억~2억 원 미만	20.94	25.62	19.65
2억~3억 원 미만	15.38	14.72	15.57
3억 원 이상	48.91	27.52	54.8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0〉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00만 원 미만	2.50	2.82	1.04
1,000만~3,000만 원 미만	5.90	3.34	17.82
3,000만~5,000만 원 미만	9.29	6.32	23.11
5,000만 원~1억 원 미만	21.20	18.66	32.96
1억 원 이상	61.11	68.87	25.0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1〉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00만 원 미만	46.99	64.25	35.67
1,000만~3,000만 원 미만	28.11	23.56	31.09
3,000만~5,000만 원 미만	8.99	5.89	11.03
5,000만~1억 원 미만	10.39	5.56	13.56
1억 원 이상	5.52	0.74	8.6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2〉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30만 원 미만	64.54	79.12	54.81
30만~50만 원 미만	24.67	18.31	28.90
50만~100만 원 미만	9.99	2.56	14.93
100만 원 이상	0.81	0.00	1.3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3〉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지역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대도시	전체	35,000	51,781	1284.41
	저소득	25,000	35,644	1341.85
	일반	40,000	55,998	1702.78
중·소도시	전체	26,000	35,640	741.17
	저소득	12,000	18,942	709.63
	일반	30,000	39,897	954.11
농어촌	전체	10,000	14,646	539.89
	저소득	5,500	8,214	399.09
	일반	12,000	17,690	844.88

주: '대도시'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농복합군을 포함하며, '중·소도시'는 시 또는 구, '농어촌'은 각 시도의 군으로 구분함.

〈부표 3-1-14〉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평균(지역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대도시	전체	13,063	19,217	990.24
	저소득	5,500	7,802	623.36
	일반	16,500	21,752	1246.54
중·소도시	전체	11,500	13,542	569.75
	저소득	5,500	6,597	523.68
	일반	13,000	14,990	678.94
농어촌	전체	7,000	9,619	1586.76
	저소득	4,000	3,545	961.24
	일반	8,800	10,704	1840.23

주: '대도시'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농복합군을 포함하며, '중·소도시'는 시 또는 구, '농어촌'은 각 시도의 군으로 구분함.

〈부표 3-1-15〉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지역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대도시	전체	1000	3382.3	253.34
	저소득	500	1723	184.70
	일반	2000	4609	469.23
중·소도시	전체	800	1965.6	128.67
	저소득	500	944	84.02
	일반	1000	2556	206.74
농어촌	전체	1000	1117.3	122.86
	저소득	500	947	215.78
	일반	1200	1220	135.58

주: '대도시'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농복합군을 포함하며, '중·소도시'는 시 또는 구, '농어촌'은 각 시도의 군으로 구분함.

〈부표 3-1-16〉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평균(지역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대도시	전체	20	24	0.66
	저소득	12	16	0.60
	일반	25	30	1.09
중·소도시	전체	21	26	0.79
	저소득	17	19	0.76
	일반	26	30	1.23
농어촌	전체	16	20	1.51
	저소득	16	16	1.09
	일반	16	24	2.85

주: '대도시'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농복합군을 포함하며, '중·소도시'는 시 또는 구, '농어촌'은 각 시도의 군으로 구분함.

〈부표 3-1-17〉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자기 돈	83.14	27.89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2.77	4.72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1.55	4.76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12.52	62.54
사채	0.02	0.09
계	100.00	100.00

주: 주택의 구입 비용 및 보증금의 전액을 한 가지 비용으로만 지불한 경우 2순위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음.

〈부표 3-1-18〉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기 돈	83.14	88.14	81.48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2.77	3.78	2.44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1.55	2.41	1.26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12.52	5.67	14.79
사채	0.02	-	0.03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9〉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2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기 돈	27.89	25.37	28.37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4.72	11.16	3.49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4.76	10.79	3.61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62.54	52.38	64.47
사채	0.09	0.3	0.0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0〉 총원금 상환액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343	26.48
저소득	0	224	97.68
일반	0	363	23.79

주: 부채가 있는 사람은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을 1순위나 2순위에서 부모 등에게 빌린 경우나 금융기관, 사채로 빌린 2,43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부표 3-1-21〉 상환 후 남은 용자액 또는 부채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3,500	6,747	197.92
저소득	0	1,900	189.02
일반	5,000	7,593	235.73

주: 부채가 있는 사람은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을 1순위나 2순위에서 부모 등에게 빌린 경우나 금융기관, 사채로 빌린 2,43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부표 3-1-22〉 주거 관련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85	197	7.10
저소득	0	55	6.34
일반	120	222	8.54

주: 부채가 있는 사람은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을 1순위나 2순위에서 부모 등에게 빌린 경우나 금융기관, 사채로 빌린 2,43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부표 3-1-23〉 대출 상환액 연체 횟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체한 적이 없다	99.93	99.93	99.94
1회	-	-	-
2~3회	-	-	-
4회 이상	0.07	0.07	0.06
계	100.00	100.00	100.00

주: 부채가 있는 사람은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을 1순위나 2순위에서 부모 등에게 빌린 경우나 금융기관, 사채로 빌린 2,43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부표 3-1-24〉 (돈이 없어서)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0.2	0.6	0.05
아니요	35.54	39.86	33.94
비해당	64.26	59.54	66.01
계	100.00	100.00	100.00

주: 2021년 1년 내내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는 비해당에 속함.

〈부표 3-1-25〉 영구임대아파트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89	5.29	0.63
없다	98.11	94.71	99.3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6〉 공공(국민)임대아파트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83	6.67	4.15
없다	95.17	93.33	95.8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7〉 전세자금(용자) 지원의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15	0.04	1.55
없다	98.85	99.96	98.4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8〉 저소득층 월세 지원의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12	0.3	0.05
없다	99.88	99.7	99.9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9〉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의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5	0.06	0.33
없다	99.75	99.94	99.6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30〉 전세 임대 또는 매입 임대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15	5.24	1.01
없다	97.85	94.76	98.99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31〉 기타 주거복지 관련 사업의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49	0.38	0.52
없다	99.51	99.62	99.48
계	100.00	100.00	100.00

주: 기타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는 다가구 매입 임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긴급 가계 생활자금이 포함됨.

## 2. 건강

〈부표 3-2-1〉 병원에 입원한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92.03	87.65	92.88
지병·질병	5.61	9.71	4.82
사고	1.63	2.47	1.46
출산	0.58	0.00	0.70
건강검진	0.05	0.07	0.05
요양·휴식	0.01	0.00	0.01
성형·정형·교정	0.03	0.02	0.03
기타	0.05	0.07	0.0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2-2〉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3.67	2.58	3.89
종합, 대학병원	7.86	13.53	6.76
지역 내 병의원	84.63	81.06	85.32
한방 병의원	0.97	1.09	0.94
보건소	0.22	0.76	0.11
치과 병의원	0.02	0.00	0.02
요양병원	2.58	0.87	2.92
기타	0.05	0.11	0.0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2-3〉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가구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5.00	31.32	0.37
저소득	12.00	15.78	0.41
일반	29.00	34.38	0.44

주: 2021년 12월 기준 한 가구가 내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월평균 보험료의 합을 조사하였으며,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 [부록 4] 가족

### 1. 가족 관계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3년 주기 문항으로 2021년 16차에 조사되었으며 2024년 19차에 조사 예정임.

### 2. 가족 문제

〈부표 4-2-1〉 생애 동안 피운 담배의 총량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5갑(100개비) 미만	2.64	0.78	3.08
5갑(100개비) 이상	32.72	33.88	32.44
피운 적 없음	64.64	65.34	64.48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저소득 가구원의 응답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2〉 흡연 경험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46.30	43.17	47.03
20~30대(20~39세)	52.34	53.09	52.17
40~50대(40~59세)	1.30	3.62	0.76
60대 이상(60세~)	0.06	0.12	0.0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저소득 가구원의 응답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3〉 총흡연 기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 미만	2.35	0.32	2.82
1~5년 미만	8.54	7.99	8.67
5~10년 미만	9.17	6.17	9.87
10~15년 미만	12.96	6.28	14.52
15년 이상	66.98	79.24	64.1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 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저소득 가구원의 응답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4〉 하루 평균 흡연량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반 갑 이내(~10개비)	47.49	51.52	46.76
반 갑~한 갑 이내(11~20개비)	48.17	44.03	48.93
한 갑~두 갑 이내(21~40개비)	4.19	4.45	4.14
두 갑 초과(41개비~)	0.15	0.00	0.17
계	100.00	100.00	100.00

주: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5〉 향후 금연 계획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개월 안에 금연 계획 있음	1.77	1.36	1.84
6개월 안에 금연 계획 있음	2.47	1.79	2.59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 계획 있음	31.85	25.31	33.03
현재로서는 금연 계획 없음	63.91	71.54	62.54
계	100.00	100.00	100.00

주: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6〉 담배 연기에 노출된 시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시간	15.20	28.07	12.53
2시간	42.41	31.45	44.71
3시간	28.79	17.24	31.18
4시간	6.88	10.60	6.11
5시간 이상	6.70	12.64	5.47
계	100.00	100.00	100.00

주: 담배 연기를 맡았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7〉 음주량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2잔 정도	24.29	27.07	24.00
3~4잔 정도	23.44	24.84	23.29
5~6잔 정도	14.70	12.85	14.90
7~9잔 정도	21.58	22.25	21.51
10잔 이상	15.99	12.99	16.30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8〉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3.12	78.93	83.59
몇 달에 한 번 정도	5.23	2.94	5.49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0.88	0.92	0.87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0.18	0.44	0.16
거의 매일	0.04	0.41	0.00
모름/무응답	10.55	16.36	9.8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9〉 과음한 다음 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5.66	80.13	86.30
몇 달에 한 번 정도	2.92	1.71	3.06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0.56	0.59	0.55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0.18	0.51	0.14
거의 매일	0.13	0.70	0.06
모름/무응답	10.55	16.36	9.8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10〉 음주 후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78.31	73.60	78.86
몇 달에 한 번 정도	9.52	7.19	9.78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13	1.77	1.06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0.37	0.65	0.33
거의 매일	0.12	0.42	0.08
모름/무응답	10.55	16.37	9.8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11〉 음주 후 필름이 끊겼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79.28	76.25	79.62
몇 달에 한 번 정도	8.44	5.48	8.78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27	1.47	1.25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0.29	0.02	0.32
거의 매일	0.17	0.42	0.14
모름/무응답	10.55	16.36	9.8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12〉 음주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6.97	80.13	87.74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었다	1.84	2.84	1.73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다	0.64	0.67	0.64
모름/무응답	10.55	16.36	9.8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음.

〈부표 4-2-13〉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48.33	37.30	50.28
1~2번	5.76	5.42	5.82
3~5번	1.46	1.09	1.53
6번 이상	0.82	1.01	0.79
비해당(배우자 없음)	35.09	46.58	33.06
모름/무응답	8.54	8.60	8.5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4〉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55.45	43.86	57.50
1~2번	0.81	0.63	0.84
3~5번	0.02	0.02	0.03
6번 이상	0.09	0.31	0.05
비해당(배우자 없음)	35.09	46.58	33.06
모름/무응답	8.54	8.60	8.5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5〉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49.20	28.22	54.41
1~2번	5.94	3.03	6.67
3~5번	1.96	1.47	2.08
6번 이상	1.22	1.20	1.23
비해당(배우자 없음)	38.08	63.02	31.87
모름/무응답	3.60	3.06	3.7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6〉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57.15	32.82	63.20
1~2번	0.89	0.57	0.97
3~5번	0.11	0.07	0.12
6번 이상	0.17	0.45	0.10
비해당(배우자 없음)	38.08	63.03	31.87
모름/무응답	3.60	3.06	3.7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7〉 가족생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1.49	5.31	12.80
만족	54.21	44.35	56.31
약간 만족	10.71	13.67	10.08
보통	13.09	20.87	11.44
약간 불만족	1.80	2.84	1.57
불만족	1.03	2.49	0.72
매우 불만족	0.62	1.06	0.53
비해당(직계혈족 1촌 없음)	1.00	3.99	0.37
모름/무응답	6.05	5.42	6.1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8〉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7.95	2.78	9.04
만족	31.07	16.24	34.21
약간 만족	6.43	5.74	6.58
보통	9.04	9.96	8.85
약간 불만족	1.38	1.45	1.36
불만족	0.91	1.64	0.76
매우 불만족	0.51	0.65	0.48
비해당(배우자 없음)	36.66	56.12	32.54
모름/무응답	6.05	5.42	6.1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9〉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1.76	7.27	12.71
만족	39.70	37.12	40.25
약간 만족	6.09	9.85	5.29
보통	5.97	11.55	4.79
약간 불만족	1.11	2.29	0.86
불만족	0.66	2.05	0.36
매우 불만족	0.22	0.77	0.11
비해당(자녀 없음)	28.44	23.68	29.45
모름/무응답	6.05	5.42	6.1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20〉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6.70	5.93	6.86
만족	33.04	30.60	33.55
약간 만족	5.78	8.34	5.24
보통	6.88	12.16	5.76
약간 불만족	0.98	1.00	0.98
불만족	0.57	1.81	0.31
매우 불만족	0.16	0.32	0.13
비해당(자녀가 없거나 1명)	39.84	34.42	40.99
모름/무응답	6.05	5.42	6.18
계	100.00	100.00	100.00

## [부록 5] 생활실태 및 자원 활동

### 1. 가구 구성원의 생활만족도

〈부표 5-1-1〉 인터넷 사용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82.81	46.99	90.4
아니다	17.19	53.01	9.6
계	100.00	100.00	100.00

### 2. 가구의 생활 여건

〈부표 5-2-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주 그렇다	0.03	0.13	-
가끔 그렇다	0.87	2.65	0.21
전혀 그렇지 않다	99.10	97.23	99.79
모름/거부	-	-	-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5-2-2〉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주 그렇다	0.31	1.13	-
가끔 그렇다	2.71	8.75	0.48
전혀 그렇지 않다	96.99	90.12	99.52
모름/거부	-	-	-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5-2-3〉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12	0.28	0.06
없다	99.83	99.65	99.89
모름/거부	0.05	0.07	0.0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5-2-4〉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빈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거의 매일	54.92	26.80	100.00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42.12	68.38	-
1~2개월 동안	2.97	4.82	-
계	100.00	100.00	-

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경우만 분석하였으며, 해당 가구는 총 11 가구(저소득 10가구, 일반 가구 1가구)로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부표 5-2-5〉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0.23	0.69	0.06
아니다	99.74	99.30	99.90
모름/거부	0.03	0.01	0.0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5-2-6〉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데도 먹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0.16	0.57	0.01
아니다	99.81	99.42	99.95
모름/거부	0.03	0.01	0.03
계	100.00	100.00	100.00

## [부록 6] 사회보장

### 1.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표 6-1-1〉 국민연금 종별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업장 가입	62.39	27.54	65.28
지역 가입	31.73	70.40	28.52
임의 가입	3.78	0.79	4.03
임의계속 가입	2.10	1.28	2.17
계	100.00	100.01	100.00

〈부표 6-1-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납부하고 있다	80.49	43.20	83.59
납부하지 않고 있다	19.51	56.80	16.4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3〉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납부예외	97.65	99.34	97.17
실제 보험료 미납	2.35	0.66	2.83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4〉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실직, 휴직, 사업 중단	53.43	53.47	53.42
3개월 이상 입원	0.33	0.95	0.15
생활 곤란	38.74	42.03	37.77
학업(재학)	2.03	1.36	2.23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5.47	2.19	6.43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5〉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6.64	4.47	7.28
4~6개월	6.16	4.07	6.77
7~9개월	6.11	4.08	6.71
10~12개월	81.09	87.39	79.24
계	100.00	100.01	100.00

〈부표 6-1-6〉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미납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미납 경험 없음)	99.25	97.28	99.34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0.53	2.10	0.46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0.11	0.00	0.11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 걱정이 없어서	0.11	0.62	0.09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7〉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기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0개월(미납 경험 없음)	99.32	97.28	99.34
1~3개월	0.00	0.00	0.00
4~6개월	0.07	0.78	0.06
7~9개월	0.07	0.00	0.14
10~12개월	0.54	1.94	0.4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8〉 공적연금 미가입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12.19	22.81	10.94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1.78	0.00	1.98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8.39	3.64	20.13
기타	1.48	0.00	1.66
만 60세 경과	66.16	73.54	65.29
계	100.00	99.99	100.00

〈부표 6-1-9〉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령연금	86.15	79.92	89.78
장애연금	1.52	0.87	1.90
유족연금	12.01	19.00	7.93
분할연금	0.28	0.21	0.33
사망일시금	0.00	0.00	0.01
반환일시금	0.04	0.00	0.06
계	100.00	100.00	100.01

〈부표 6-1-10〉 국민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1.81	0.83	2.38
4~6개월	1.23	0.89	1.42
7~9개월	1.57	0.24	2.34
10~12개월	95.39	98.03	93.85
계	100.00	99.99	99.99

〈부표 6-1-11〉 국민연금 연간 평균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555	0 <sup>1)</sup>	555 <sup>2)</sup>
연금	503	361	586

주: 1) 해당 사례 없음.  
2) 해당 사례 7케이스.

〈부표 6-1-12〉 특수직역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sup>1)</sup>
퇴직급여	86.43	71.26	88.16
유족급여	11.96	28.74	10.05
퇴직급여, 퇴직수당	1.61	0.00	1.79
계	100.00	100.00	100.00

주: 1) 중복 수급은 2케이스.

〈부표 6-1-13〉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sup>1)</sup>	일반
1~3개월	0.00	0.00	0.00
4~6개월	0.27	0.00	0.30
7~9개월	0.00	0.00	0.00
10~12개월	99.73	100.00	99.70
계	100.01	100.00	100.00

주: 1) 해당 사례 26케이스.

〈부표 6-1-14〉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금액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1,250 <sup>1)</sup>	0 <sup>2)</sup>	1,250
연금	2,906	1,691	3,044

주: 1) 해당 사례 1케이스.  
2) 해당 사례 없음.

〈부표 6-1-15〉 보훈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0.00	0.00	0.00
4~6개월	0.23	0.90	0.00
7~9개월	0.00	0.00	0.00
10~12개월	99.77	99.10	10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16〉 보훈연금 연간 수금액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0 <sup>1)</sup>	0 <sup>1)</sup>	0 <sup>1)</sup>
연금	1,288	1,035 <sup>2)</sup>	1,377 <sup>3)</sup>

주: 1) 해당 사례 없음.  
2) 해당 사례 60케이스.  
3) 해당 사례 82케이스.



〈부표 6-1-17〉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미납 경험 있음	0.39	0.89	0.24
미납 경험 없음	99.61	99.11	99.7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18〉 건강보험료 미납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5.48	0.00	11.61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83.20	92.09	73.26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0.00	0.00	0.00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0.00	0.00	0.00
납기 기한을 잊어버려서	9.80	5.04	15.14
기타	1.52	2.87	0.00
계	100.00	100.00	100.01

〈부표 6-1-19〉 건강보험료 미납 기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11.50	16.00	6.46
4~6개월	25.17	13.82	37.86
7~9개월	17.28	0.00	36.61
10~12개월	46.05	70.18	19.0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20〉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특별한 문제점 없음	82.16	88.94	80.13
월 보험료 부담	14.08	8.17	15.85
보험의 적용 범위가 좁음	3.74	2.89	4.00
기타	0.02	0.00	0.0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21〉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88.95	88.65	92.87
혜택 범위가 좁다(본인부담이 많다)	6.96	7.18	4.07
적용 기간이 제한적이다	0.96	1.04	0.00
차별 대우를 받는다	3.13	3.14	3.0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22〉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실업급여(구직급여, 연장급여 등)	73.79	59.69	76.07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직급여	12.88	2.28	14.59
기타 현금급여(훈련장려금 등)	4.42	19.52	1.98
현물급여(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8.91	18.51	7.3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23〉 고용보험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34.41	27.55	35.52
4~6개월	46.66	61.53	44.26
7~9개월	13.59	8.64	14.38
10~12개월	5.34	2.28	5.8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24〉 고용보험 연간 수급액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간 총급여액(현금+현물)	654	569	668

주: 1) 수급액은 평균 금액임.

〈부표 6-1-25〉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sup>1)</sup>	일반 <sup>2)</sup>
요양급여	9.17	0.48	10.54
휴업급여	19.85	4.33	22.29
장해급여-연금	25.94	23.36	26.34
장해급여-일시금	0.4	2.92	0.00
유족연금	13.72	53.54	7.45
유족일시금	4.54	0.00	5.26
기타 현금급여	17.54	15.37	17.88
요양&휴업급여	8.74	0.00	10.11
장해급여-일시금&기타 현금급여	0.11	0.00	0.13
계	100.01	100.00	100.00

주: 1) 해당 사례 12케이스.

2) 해당 사례 39케이스.

〈부표 6-1-26〉 산재보험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sup>1)</sup>	일반 <sup>2)</sup>
1~3개월	9.91	4.46	10.99
4~6개월	3.24	0.00	3.88
7~9개월	7.37	0.00	8.84
10~12개월	79.48	95.54	76.29
계	100.00	100.00	100.00

주: 1) 해당 사례 11케이스.  
2) 해당 사례 33케이스.

〈부표 6-1-27〉 산재보험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3,607	1,200 <sup>1)</sup>	3,655 <sup>2)</sup>
연금	2,323	1,366 <sup>3)</sup>	2,513 <sup>4)</sup>

주: 1) 해당 사례 1케이스, 2) 해당 사례 7케이스, 3) 해당 사례 11케이스, 4) 해당 사례 33케이스.

〈부표 6-1-28〉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1,188	533 <sup>1)</sup>	1,263 <sup>2)</sup>
연금	957	816 <sup>3)</sup>	963 <sup>4)</sup>

주: 1) 해당 사례 38케이스, 2) 해당 사례 336케이스, 3) 해당 사례 1케이스, 4) 해당 사례 6케이스.

〈부표 6-1-29〉 개인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0.26	1.86	0.00
4~6개월	0.81	3.04	0.45
7~9개월	0.13	0.00	0.15
10~12개월	98.81	95.10	99.40
계	100.01	100.00	100.00

〈부표 6-1-30〉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금액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924	184 <sup>1)</sup>	988 <sup>2)</sup>
연금	453	330	473

주: 1) 해당 사례 3케이스, 2) 해당 사례 19케이스.

## 2. 공공부조

〈부표 6-2-1〉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개월 수

(단위: %)

급여	구분	비율
생계	3개월 미만	0.97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7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61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63
	12개월	91.72
	계	100.00
주거	3개월 미만	1.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3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61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10
	12개월	90.48
	계	100.00
교육	3개월 미만	0.0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00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23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0.00
	12개월	98.77
	계	100.00

주: 본 문항에 대한 분석은 기존 연도의 분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VIII. 소득 부분의 문항 1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급여별 연간 수급 개월 수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항 2)의 급여별 수급 비율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의료, 자활, 교육 등의 특례 가구와 가구원 중 일부 수급 가구를 포함해 더 포괄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가구의 경우 2021년 1년 동안의 수급 개월 수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부표 6-2-2〉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의료급여(1종)	80.39
의료급여(2종)	18.41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1.20
기타	0.00
계	100.00

〈부표 6-2-3〉 의료급여 수급 시 문제점

(단위: %)

구분	비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88.95
혜택 범위가 좁은 것(본인 부담이 많은 것)	6.96
적용 기간의 제한	0.96
차별 대우를 받음	3.13
기타	0.00
계	100.00

〈부표 6-2-4〉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사유

(단위: %)

급여	구분	비율
생계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11.91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53.91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11.12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6.82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4.97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0.10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10.2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0.65
	기타	0.28
	계	100.00

급여	구분	비율
의료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11.47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47.71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9.30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6.88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4.65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0.18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18.08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0.97
	기타	0.76
	계	100.00
주거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14.64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50.54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11.39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6.95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4.94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0.16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9.08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1.08
	기타	1.23
	계	100.00
교육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33.36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43.75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3.25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16.82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0.00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0.00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2.8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0.00
	기타	0.00
	계	100.00

〈부표 6-2-5〉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절성 평가

(단위: %)

급여	구분	비율
생계	매우 적절하다	2.14
	적절하다	16.86
	보통이다	28.38
	부족하다	44.79
	매우 부족하다	7.83
	계	100.00
의료	매우 적절하다	16.15
	적절하다	60.88
	보통이다	12.37
	부족하다	10.22
	매우 부족하다	0.39
	계	100.00
주거	매우 적절하다	5.35
	적절하다	44.51
	보통이다	30.57
	부족하다	17.56
	매우 부족하다	2.01
	계	100.00
교육	매우 적절하다	11.88
	적절하다	42.22
	보통이다	31.26
	부족하다	14.63
	매우 부족하다	0.00
	계	100.00



〈부표 6-2-6〉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예상 소요 기간

(단위: %)

급여	구분	비율
생계	6개월 이내	0.38
	6개월 후~1년 이내	0.69
	1년 후~3년 이내	0.81
	3년 후	2.53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91.56
	잘 모르겠다	4.03
	계	100.00
의료	6개월 이내	0.36
	6개월 후~1년 이내	1.15
	1년 후~3년 이내	1.26
	3년 후	3.84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90.47
	잘 모르겠다	2.92
	계	100.00
주거	6개월 이내	0.32
	6개월 후~1년 이내	0.87
	1년 후~3년 이내	1.96
	3년 후	3.28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88.05
	잘 모르겠다	5.52
	계	100.00
교육	6개월 이내	1.62
	6개월 후~1년 이내	0.00
	1년 후~3년 이내	20.53
	3년 후	23.59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45.21
	잘 모르겠다	9.05
	계	100.00

〈부표 6-2-7〉 탈수급의 주된 사유

(단위: %)

급여	구분	비율
생계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22.37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	42.92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0.00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12.75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0.00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서	0.00
	가족의 병이 나아서	0.0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0.00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달라져서	16.00
	기타	5.96
	계	100.00
의료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17.91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	35.44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0.00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9.19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0.00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서	11.14
	가족의 병이 나아서	0.0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0.00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달라져서	26.32
	기타	0.00
	계	100.00
주거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34.78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	34.16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0.00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11.15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0.00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서	0.00
	가족의 병이 나아서	0.0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0.00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달라져서	17.21
	기타	2.70
	계	100.00
교육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84.40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	0.00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0.00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0.00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0.00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서	0.00
	가족의 병이 나아서	0.0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15.60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 결과가 달라져서	0.00
	기타	0.00
	계	100.00

〈부표 6-2-8〉 탈수급하게 될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

(단위: %)

구분	비율
의료비 지원	62.64
교육비 지원	1.22
주거비 지원	31.60
자활 관련 지원	3.62
없다	0.87
기타	0.05
계	100.00

〈부표 6-2-9〉 근로(자녀)장려금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단위: %)

구분	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00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편이었다	2.97
그저 그렇다	10.49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63.80
매우 도움이 되었다	22.74
계	100.00

〈부표 6-2-10〉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이 근로 의욕 변화에 미친 영향

(단위: %)

구분	비율
일할 의욕이 매우 감소되었다	0.00
일할 의욕이 약간 감소되었다	0.69
일할 의욕에 변화가 없었다	21.94
일할 의욕이 약간 증가되었다	62.53
일할 의욕이 매우 증가되었다	14.84
계	100.00

〈부표 6-2-1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비율
둘 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79.39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10.24
자녀장려금 수급 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0.98
둘 다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6.27
잘 모르겠다	3.12
계	100.00

### 3. 사회복지 서비스

〈부표 6-3-1〉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주택 관련 서비스	0.24	0.64	0.09
상담 서비스	0.41	0.66	0.32
각종 대출, 용자	0.18	0.04	0.24
개인발달계좌(자산 형성 프로그램)	0.24	0.36	0.19
권익보장지원(공공후견 서비스 등)	0.02	0.02	0.02

〈부표 6-3-2〉 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8.45	28.52	14.74
없다	81.55	71.48	85.2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3-3〉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금액

(단위: 천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16	117.60	4.52
저소득	71	98.44	5.05
일반	151	159.84	8.65

주: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 단위)를 말함.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음. 2021년 1년간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를 경험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6-3-4〉 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별 이용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방문요양	79.94	81.30	76.95
방문목욕	13.17	13.11	13.28
방문간호	2.31	2.68	1.48
주야간보호	20.74	17.28	28.37
단기보호	0.00	0.00	0.00
기타 재가급여	13.32	13.73	12.42
시설급여	0.00	0.00	0.00
특별현금급여	0.41	0.00	1.30

주: 2021년 1년간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이용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6-3-5〉 노인 가구의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0.27	0.48	0.05
물품 지원(식료품, 의료, 가구 등)	14.08	23.78	3.93
가사 지원 서비스	11.84	18.09	5.30
식사 배달 서비스	2.59	4.80	0.27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1.99	2.76	1.19
주야간보호 서비스	1.74	1.95	1.52

주: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노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6-3-6〉 장애인 가구의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장애아동수당	0.65	0.82	0.51
가정 봉사 서비스	13.60	16.29	11.25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3.24	2.81	3.61
주택 관련 서비스	0.30	0.52	0.11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1.17	1.23	1.11
장애아동 및 장애인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0.57	0.00	1.07
장애아동 및 장애인 자녀 관련 프로그램	1.20	0.96	1.42
자동차 관련 지원	28.51	13.73	41.39
권익보장지원(공공후견 서비스 등)	0.14	0.03	0.22

주: 장애인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부표 6-3-7〉 아동 가구의 기타 아동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학비 지원	59.41	78.49	58.00
예체능 교실	2.38	16.20	1.36
문화활동	3.29	32.52	1.14
가정봉사, 아이돌봄 서비스	0.32	0.00	0.34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0.75	4.96	0.44

주: 만 1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아동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부표 6-3-8〉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8.04	38.92	27.24
없다	71.96	61.08	72.76
계	100.00	100.00	100.00

주: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새로 추가된 아동(만 17세 이하)이 있는지를 분석함.

## 〈부표 6-3-9〉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38.0	50.98	1.53
저소득	15.0	29.16	5.26
일반	40.0	52.37	1.59

주: 2021년 1년간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부표 6-3-10〉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

(단위: 만 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7.8	0.78
저소득	0	2.4	0.74
일반	0	8.1	0.83

주: 2021년 1년간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부록 7] 복지 인식 부가조사

### 1.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부표 7-1-1〉 현재의 사회 계층 구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11.42	13.70	11.03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27.55	31.58	26.87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27.82	22.12	28.79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25.36	24.22	25.55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7.85	8.38	7.77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 계층 구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0.94	0.34	1.04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2.48	3.41	2.33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8.01	6.23	8.31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68.02	64.90	68.55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20.55	25.12	19.77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의 평등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① 매우 평등하다	0.53	1.19	0.42
②	3.06	3.69	2.95
③	10.4	8.60	10.71
④	19.46	20.75	19.24
⑤	34.43	25.00	36.04
⑥	22.55	28.81	21.49
⑦ 매우 불평등하다	9.56	11.97	9.15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4〉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25.97	27.42	25.73
동의한다	60.12	58.65	60.37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10.69	11.32	10.58
반대한다	2.19	1.95	2.23
매우 반대한다	0.48	0.49	0.47
모르겠다	0.55	0.16	0.6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5〉 소득 격차 축소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11.98	11.21	12.10
동의한다	51.39	50.67	51.51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24.04	22.74	24.26
반대한다	10.44	12.42	10.10
매우 반대한다	1.58	2.53	1.42
모르겠다	0.58	0.43	0.6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6〉 정부가 실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7.90	7.61	7.95
동의한다	51.36	50.09	51.57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24.01	23.64	24.08
반대한다	14.51	15.44	14.35
매우 반대한다	1.77	2.91	1.57
모르겠다	0.45	0.31	0.48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7〉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2.42	3.92	2.16
동의한다	15.95	16.12	15.9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24.62	21.73	25.10
반대한다	43.47	41.56	43.79
매우 반대한다	12.89	15.74	12.41
모르겠다	0.65	0.92	0.61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8〉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 관리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37.4	28.35	38.93
약간 중요함	50.58	55.97	49.67
별로 중요하지 않음	9.92	12.49	9.49
전혀 중요하지 않음	2.10	3.20	1.9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9〉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37.02	27.46	38.65
약간 중요함	51.94	56.12	51.23
별로 중요하지 않음	10.07	15.06	9.22
전혀 중요하지 않음	0.97	1.36	0.9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0〉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14.07	11.19	14.56
약간 중요함	52.26	55.08	51.78
별로 중요하지 않음	28.12	29.75	27.84
전혀 중요하지 않음	5.55	3.98	5.8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1〉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 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49.3	43.50	50.29
약간 중요함	41.08	44.09	40.57
별로 중요하지 않음	7.95	10.85	7.46
전혀 중요하지 않음	1.67	1.57	1.6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2〉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39.57	41.34	39.27
약간 중요함	44.58	43.81	44.71
별로 중요하지 않음	13.65	11.82	13.96
전혀 중요하지 않음	2.20	3.04	2.06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3〉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학력 수준의 미흡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12.67	12.23	12.75
약간 중요함	47.61	49.70	47.26
별로 중요하지 않음	32.88	31.72	33.08
전혀 중요하지 않음	6.83	6.35	6.91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4〉 빈곤의 원인이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30.28	20.55	31.93
약간 중요함	52.09	55.62	51.50
별로 중요하지 않음	15.73	21.83	14.70
전혀 중요하지 않음	1.90	2.00	1.88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5〉 빈곤의 원인이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19.31	15.28	20.00
약간 중요함	47.95	52.35	47.21
별로 중요하지 않음	27.24	29.32	26.88
전혀 중요하지 않음	5.50	3.06	5.91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6〉 빈곤의 원인이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29.12	20.40	30.60
약간 중요함	48.55	51.36	48.08
별로 중요하지 않음	19.54	25.44	18.54
전혀 중요하지 않음	2.79	2.81	2.7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7〉 빈곤의 원인이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17.19	16.24	17.35
약간 중요함	50.22	48.84	50.45
별로 중요하지 않음	28.59	29.70	28.40
전혀 중요하지 않음	4.01	5.23	3.8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8〉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 배경 등)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20.00	18.63	20.23
약간 중요함	46.79	54.72	45.44
별로 중요하지 않음	27.21	23.02	27.92
전혀 중요하지 않음	6.00	3.62	6.4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9〉 환경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13.44	7.76	14.41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38.82	36.92	39.14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39.64	44.11	38.88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6.62	9.65	6.11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07	0.96	1.09
모르겠다	0.41	0.59	0.38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0〉 건강보험 및 보건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6.48	6.68	6.45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31.06	30.44	31.17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50.54	54.89	49.81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9.33	5.09	10.05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2.02	2.08	2.02
모르겠다	0.56	0.82	0.51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1〉 국민연금(기초연금)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5.84	7.28	5.59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28.16	35.35	26.94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52.26	49.39	52.75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9.93	5.16	10.74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3.12	1.54	3.39
모르겠다	0.69	1.29	0.5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2〉 교육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8.42	2.37	9.44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34.43	33.53	34.59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47.25	56.53	45.68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8.00	5.47	8.44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48	1.52	1.48
모르겠다	0.41	0.58	0.3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3〉 주거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8.48	6.77	8.77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36.78	39.11	36.39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42.28	44.96	41.82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9.83	6.04	10.47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94	1.57	2.01
모르겠다	0.70	1.56	0.55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4〉 국방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9.17	7.80	9.40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28.06	37.56	26.45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47.38	44.04	47.94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1.13	6.35	11.94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3.35	2.58	3.48
모르겠다	0.92	1.67	0.8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5〉 치안 및 사회 질서 유지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9.08	5.15	9.74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37.81	42.39	37.03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47.08	48.49	46.84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4.85	2.55	5.24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0.91	1.14	0.87
모르겠다	0.28	0.27	0.28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6〉 빈곤층 생활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7.17	6.22	7.33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40.9	49.90	39.37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39.27	32.14	40.47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9.74	10.00	9.70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2.38	0.27	2.74
모르겠다	0.55	1.46	0.3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7〉 노인 생활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7.89	6.37	8.14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40.08	43.01	39.58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41.28	44.96	40.65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8.42	4.01	9.16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74	0.56	1.94
모르겠다	0.61	1.09	0.5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8〉 장애인 생활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11.5	10.79	11.63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45.8	48.80	45.29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36.06	34.94	36.25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4.62	3.71	4.77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42	0.30	1.62
모르겠다	0.60	1.46	0.45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9〉 아이를 키우는 가족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14.46	7.11	15.71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43.75	47.19	43.17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33.38	39.20	32.39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5.83	4.28	6.09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2.06	0.84	2.27
모르겠다	0.52	1.39	0.38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0〉 청년 사회활동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7.04	4.51	7.47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37.29	39.54	36.90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39.44	44.53	38.58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1.87	8.08	12.51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3.92	2.04	4.24
모르겠다	0.44	1.30	0.2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1〉 외국인 주민의 권리보장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1.71	0.93	1.84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13.75	11.07	14.21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50.41	56.88	49.31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23.07	23.46	23.00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9.99	6.67	10.56
모르겠다	1.07	0.99	1.08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2〉 실업 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4.77	3.19	5.04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25.56	27.01	25.31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50.00	47.61	50.40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3.11	18.81	12.14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5.99	2.77	6.53
모르겠다	0.58	0.61	0.57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3〉 문화와 예술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2.74	0.50	3.12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16.34	10.19	17.38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59.58	63.88	58.85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5.69	21.28	14.74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4.57	2.66	4.89
모르겠다	1.08	1.49	1.0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4〉 정부 행정 업무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1.23	1.12	1.24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8.98	8.21	9.11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47.91	52.04	47.21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29.94	31.98	29.60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0.4	5.53	11.23
모르겠다	1.53	1.11	1.61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5〉 양성평등정책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2.20	0.30	2.52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13.05	11.36	13.34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57.8	64.88	56.60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6.89	17.25	16.82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8.31	4.70	8.92
모르겠다	1.76	1.51	1.8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6〉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19.83	17.93	20.15
잘 하고 있는 편이다	58.18	60.19	57.84
보통·그저 그렇다	19.01	20.20	18.80
잘 못하는 편이다	2.86	1.56	3.08
매우 잘못하고 있다	0.12	0.13	0.11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7〉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11.33	13.26	11.00
잘 하고 있는 편이다	50.35	56.26	49.35
보통·그저 그렇다	31.82	24.37	33.09
잘 못하는 편이다	6.00	5.71	6.05
매우 잘못하고 있다	0.49	0.41	0.5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8〉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5.52	5.34	5.55
잘 하고 있는 편이다	34.46	41.82	33.21
보통·그저 그렇다	40.55	35.10	41.47
잘 못하는 편이다	16.66	15.38	16.88
매우 잘못하고 있다	2.82	2.36	2.8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9〉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3.71	3.22	3.79
잘 하고 있는 편이다	27.7	29.69	27.36
보통·그저 그렇다	47.14	49.63	46.72
잘 못하는 편이다	19.73	16.85	20.22
매우 잘못하고 있다	1.72	0.61	1.9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40〉 질 높고 충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4.79	7.21	4.38
잘 하고 있는 편이다	40.12	52.66	37.99
보통·그저 그렇다	40.39	32.08	41.80
잘 못하는 편이다	12.92	7.16	13.90
매우 잘못하고 있다	1.78	0.89	1.93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	100.00	100.00

〈부표 7-1-41〉 빈곤 예방 및 감소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2.33	1.75	2.43
잘 하고 있는 편이다	21.93	34.04	19.88
보통·그저 그렇다	47.87	41.32	48.98
잘 못하는 편이다	25.64	21.14	26.40
매우 잘못하고 있다	2.23	1.74	2.31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42〉 실업에 대한 대응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1.96	0.57	2.20
잘 하고 있는 편이다	20.48	30.92	18.70
보통·그저 그렇다	44.76	40.55	45.48
잘 못하는 편이다	28.68	24.79	29.33
매우 잘못하고 있다	4.12	3.17	4.2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43〉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1.84	0.64	2.05
잘 하고 있는 편이다	21.16	23.88	20.70
보통·그저 그렇다	54.61	60.19	53.67
잘 못하는 편이다	18.35	13.12	19.24
매우 잘못하고 있다	4.03	2.17	4.3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44〉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1.64	1.54	1.65
잘 하고 있는 편이다	24.85	31.70	23.68
보통·그저 그렇다	48.66	46.96	48.95
잘 못하는 편이다	20.20	16.90	20.76
매우 잘못하고 있다	4.65	2.89	4.95
모름/무응답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45〉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교육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2.00	1.83	2.02
잘 하고 있는 편이다	30.66	38.12	29.39
보통·그저 그렇다	45.25	46.24	45.08
잘 못하는 편이다	17.93	11.77	18.98
매우 잘못하고 있다	4.17	2.03	4.53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46〉 외국인 주민의 노동권 및 시민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것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4.31	4.10	4.34
잘 하고 있는 편이다	26.33	33.78	25.06
보통·그저 그렇다	53.93	53.83	53.95
잘 못하는 편이다	13.17	6.51	14.30
매우 잘못하고 있다	2.26	1.75	2.34
모름/무응답	0.00	0.03	0.00
계	100.00	100.00	100.00

## 2. 복지 자원 부담에 대한 의견

〈부표 7-2-1〉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그렇다	22.80	19.97	23.28
그렇다	36.87	41.87	36.02
대체로 그렇다	18.88	16.36	19.31
보통이다	12.34	12.63	12.29
대체로 그렇지 않다	5.88	3.82	6.23
그렇지 않다	2.82	4.51	2.53
전혀 그렇지 않다	0.41	0.83	0.3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2-2〉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 문제 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후 생활 문제	30.14	34.24	29.45
건강 및 의료 문제	29.91	26.69	30.46
실업 문제	9.16	12.14	8.66
교육 문제	5.20	2.81	5.60
아동 양육 문제	11.07	5.91	11.94
장애인 문제	2.80	4.96	2.44
주거 문제	5.55	5.46	5.57
빈곤	5.97	7.80	5.66
기타	0.19	0.00	0.2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2-3〉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 문제 2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후 생활 문제	17.82	18.05	17.78
건강 및 의료 문제	26.17	34.36	24.78
실업 문제	9.36	9.11	9.41
교육 문제	7.99	3.23	8.79
아동 양육 문제	10.8	8.40	11.20
장애인 문제	7.31	11.37	6.63
주거 문제	12.38	7.91	13.14
빈곤	7.83	7.58	7.87
기타	0.35	0.00	0.41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3. 정치 참여와 성향

〈부표 7-3-1〉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관심이 있다	7.06	6.70	7.12
상당히 관심이 있다	13.16	8.19	14.00
다소 관심이 있다	35.35	33.69	35.64
별로 관심이 없다	35.53	40.30	34.72
전혀 관심이 없다	8.49	10.25	8.19
선택할 수 없다	0.40	0.88	0.3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3-2〉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한다	0.51	0.30	0.54
다소 만족한다	5.35	6.79	5.11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18.47	25.19	17.33
다소 불만족한다	40.36	38.38	40.70
매우 불만족한다	33.67	27.37	34.73
모르겠다	1.64	1.98	1.58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3-3〉 자신의 정치 성향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진보적	3.83	3.38	3.90
다소 진보적	25.53	13.60	27.56
중도	37.27	45.26	35.92
다소 보수적	23.20	24.95	22.91
매우 보수적	5.33	6.69	5.10
선택할 수 없다	4.64	5.57	4.48
모름/무응답	0.20	0.54	0.14
계	100.00	100.00	100.00



## [부록 8] 2022년 신규 표본 설계

### 1. 모집단 분석

〈부표 8-1-1〉 2020년 기준 모집단 가구 및 인구 분포

(단위 : 가구, 명)

구분	가구			인구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전국	16,896,701	4,030,009	20,926,710	40,834,701	9,298,792	50,133,493
서울	3,982,290	-	3,982,290	9,219,741	-	9,219,741
부산	1,338,453	66,584	1,405,037	3,127,155	166,947	3,294,102
대구	886,446	99,370	985,816	2,120,269	253,033	2,373,302
인천	1,110,623	36,577	1,147,200	2,762,385	83,857	2,846,242
광주	599,217	-	599,217	1,447,000	-	1,447,000
대전	631,208	-	631,208	1,465,507	-	1,465,507
울산	357,251	86,836	444,087	893,074	215,454	1,108,528
세종	92,950	46,156	139,106	251,025	95,664	346,689
경기	4,235,667	862,764	5,098,431	10,801,613	2,126,601	12,928,214
강원	394,450	266,589	661,039	901,311	595,798	1,497,109
충북	388,460	290,462	678,922	920,647	654,347	1,574,994
충남	410,692	481,530	892,222	984,622	1,092,848	2,077,470
전북	527,886	227,689	755,575	1,260,420	499,980	1,760,400
전남	319,852	441,666	761,518	766,559	977,012	1,743,571
경북	582,631	549,188	1,131,819	1,368,140	1,202,070	2,570,210
경남	850,609	499,546	1,350,155	2,078,416	1,157,971	3,236,387
제주	188,016	75,052	263,068	466,817	177,210	644,027

주: 가구는 일반 가구, 인구는 내국인 기준임.  
자료: 통계청 KOSIS

〈부표 8-1-2〉 2020년 기준 모집단 거처 분포

(단위 : 호)

구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전국	4,336,423	10,091,508	14,427,931	2,527,570	1,570,343	4,097,913
서울	1,242,701	1,772,670	3,015,371	-	-	-
부산	401,532	808,786	1,210,318	14,285	51,256	65,541
대구	197,723	514,484	712,207	16,687	80,908	97,595
인천	336,534	658,625	995,159	34,629	2,986	37,615
광주	105,980	432,295	538,275	-	-	-
대전	129,640	367,235	496,875	-	-	-
울산	75,945	235,509	311,454	29,257	53,923	83,180
세종	708	100,801	101,509	18,867	16,511	35,378
경기	925,924	2,751,502	3,677,426	422,524	395,165	817,689
강원	98,102	270,020	368,122	184,971	90,930	275,901
충북	84,536	260,368	344,904	172,590	122,762	295,352
충남	80,568	284,350	364,918	303,108	196,982	500,090
전북	125,852	372,731	498,583	198,508	44,130	242,638
전남	84,487	241,597	326,084	357,866	118,093	475,959
경북	162,047	364,701	526,748	391,013	176,545	567,558
경남	188,239	583,202	771,441	310,855	214,648	525,503
제주	95,905	72,632	168,537	72,410	5,504	77,914

주: 거처는 호 단위로 구분된 것이며, 가구와는 차이가 있음, 주택 외 거처는 제외.  
 자료: 통계청 KOSIS

〈부표 8-1-3〉 2020년 기준 지역별 연령별 인구 수

(단위: 천 명)

지역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계
전국	3,924	4,674	6,617	6,627	7,953	8,337	6,481	3,603	1,917	50,133
서울	607	716	1,422	1,404	1,437	1,446	1,187	674	294	9,187
부산	230	264	425	403	490	551	514	287	128	3,292
대구	177	217	316	287	374	418	319	173	85	2,366
인천	226	262	383	391	465	497	355	174	88	2,841
광주	120	149	210	184	239	234	164	94	47	1,441
대전	115	143	228	191	231	237	175	90	47	1,457
울산	99	112	137	150	183	205	141	59	26	1,112
세종	47	45	40	59	65	43	28	13	7	347
경기	1,129	1,282	1,713	1,832	2,202	2,153	1,469	749	396	12,925
강원	105	131	179	161	215	258	231	132	80	1,492
충북	123	148	207	190	233	266	214	118	73	1,572
충남	172	202	247	262	316	329	268	168	111	2,075
전북	128	167	213	184	259	290	246	166	103	1,756
전남	131	157	179	177	245	295	256	185	118	1,743
경북	188	223	282	283	370	444	393	236	150	2,569
경남	268	316	356	392	520	565	446	240	137	3,240
제주	60	68	75	79	107	106	76	44	27	642

주: 인구는 내국인 기준임.

자료: 통계청 KOSIS

〈부표 8-1-4〉 2020년 기준 지역별 연령별 1인 가구 분포

(단위: 가구)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계
전국	76,202	1,266,911	1,115,518	903,816	1,039,495	1,038,985	1,202,427	6,643,354
서울	14,185	362,507	310,058	181,704	167,680	171,881	182,686	1,390,701
부산	4,873	83,283	61,464	53,194	69,449	88,285	94,659	455,207
대구	2,757	53,388	43,692	40,017	51,966	53,757	58,966	304,543
인천	2,510	51,476	54,327	50,364	58,065	54,712	53,387	324,841
광주	2,761	41,273	33,517	28,325	30,168	27,521	30,383	193,948
대전	7,850	67,882	37,569	26,966	30,260	29,296	29,019	228,842
울산	611	17,635	20,870	20,185	23,400	22,213	17,934	122,848
세종	1,330	13,504	9,333	6,089	5,360	4,007	3,954	43,577
경기	8,910	237,026	272,089	229,483	239,508	211,918	207,076	1,406,010
강원	4,983	40,439	25,141	25,868	40,314	42,961	51,665	231,371
충북	4,594	48,830	33,106	28,261	38,251	37,432	45,734	236,208
충남	5,406	57,201	46,168	38,244	47,684	45,844	64,426	304,973
전북	3,798	42,882	28,941	29,597	40,124	42,429	67,498	255,269
전남	2,647	28,679	25,431	28,232	42,061	45,234	84,349	256,633
경북	5,844	59,901	46,001	44,667	62,868	68,983	100,527	388,791
경남	2,508	49,604	55,299	58,158	75,398	79,439	97,331	417,737
제주	635	11,401	12,512	14,462	16,939	13,073	12,833	81,855

자료 : 통계청 KOSIS

〈부표 8-1-5〉 2020년 기준 지역별 1인 가구의 거주 유형별 분포

(단위: 가구)

구분	1인 가구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전국	6,643,354	2,921,200	2,124,418	114,584	635,537	124,445	723,170
동부	5,300,490	2,079,029	1,818,445	89,242	583,762	104,847	625,165
읍면부	1,342,864	842,171	305,973	25,342	51,775	19,598	98,005
서울	1,390,701	536,654	311,112	21,613	250,810	43,501	227,011
부산	455,207	152,360	166,184	8,044	64,262	7,599	56,758
대구	304,543	154,841	113,508	2,290	12,191	4,644	17,069
인천	324,841	82,477	111,710	6,230	68,502	4,868	51,054
광주	193,948	80,427	92,954	2,774	3,690	2,639	11,464
대전	228,842	123,309	77,841	2,962	9,895	3,639	11,196
울산	122,848	58,222	44,955	1,835	6,401	2,321	9,114
세종	43,577	16,427	23,575	422	397	297	2,459
경기	1,406,010	483,489	506,053	26,303	165,750	21,726	202,689
강원	231,371	128,087	78,815	5,472	3,255	4,250	11,492
충북	236,208	130,128	81,138	3,855	5,021	3,505	12,561
충남	304,973	166,698	96,888	5,401	10,823	4,096	21,067
전북	255,269	145,160	87,848	4,440	4,356	3,254	10,211
전남	256,633	156,434	72,472	3,866	2,834	4,090	16,937
경북	388,791	241,062	102,562	7,565	11,029	5,809	20,764
경남	417,737	226,582	140,608	6,118	8,803	6,125	29,501
제주	81,855	38,843	16,195	5,394	7,518	2,082	11,823

자료: 통계청 KOSIS

## 2. 한국복지패널의 주요 차수별 비교

〈부표 8-2-1〉 주요 차수별 원패널 표본 가구 비교

(단위 : 가구)

구분	1차(2005)		7차(2011)		16차(2020)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서울	1,335	-	938	-	676	-
부산	488	40	374	34	302	25
대구	367	55	288	41	242	33
인천	369	68	269	58	221	40
광주	244	-	231	-	200	-
대전	208	-	183	-	134	-
울산	142	61	95	51	75	42
세종	-	-	-	-	21	35
경기	854	278	674	220	582	191
강원	135	101	113	91	95	81
충북	101	119	84	117	74	110
충남	49	272	58	258	50	169
전북	195	152	167	142	136	105
전남	96	281	89	243	74	213
경북	116	377	95	322	68	246
경남	163	325	139	282	140	210
제주	61	20	53	23	47	17
계	4,923	2,149	3,850	1,882	3,137	1,517

〈부표 8-2-2〉 주요 차수별 패널 가구 탈락률 비교(이주 가구 제외)

(단위 : 가구, %)

구분	1차 조사		7차 조사		16차 조사	
	표본 가구	표본 가구	탈락률	표본 가구	탈락률	
서울	1,335	959	28.2	746	44.1	
부산	528	431	18.4	362	31.4	
대구	422	337	20.1	276	34.6	
인천	437	328	24.9	257	41.2	
광주	244	223	8.6	193	20.9	
대전	208	179	13.9	139	33.2	
울산	203	149	26.6	126	37.9	
경기	1,132	831	26.6	660	41.7	
강원	236	216	8.5	186	21.2	
충북	220	196	10.9	175	20.5	
충남	321	311	3.1	239	25.5	
전북	347	315	9.2	261	24.8	
전남	377	343	9.0	293	22.3	
경북	493	419	15.0	333	32.5	
경남	488	423	13.3	346	29.1	
제주	81	72	11.1	62	23.5	
계	7,072	5,732	18.9	4,654	34.2	

〈부표 8-2-3〉 7차 조사 대비 16차 조사 가구의 탈락률

(단위 : 가구, %)

구분	7차 조사(2011)		16차 조사(2020)		탈락률(16차/7차)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서울	938	194	676	119	27.9	38.7
부산	408	133	327	103	19.9	22.6
대구	329	126	275	95	16.4	24.6
인천	327	109	261	73	20.2	33.0
광주	231	87	200	76	13.4	12.6
대전	183	89	134	63	26.8	29.2
울산	146	77	117	51	19.9	33.8
세종	-	-	56	5	-	-
경기	894	180	773	138	13.5	23.3
강원	204	95	176	77	13.7	18.9
충북	201	90	184	65	8.5	27.8
충남	316	106	219	94	30.7	11.3
전북	309	104	241	82	22.0	21.2
전남	332	102	287	72	13.6	29.4
경북	417	130	314	93	24.7	28.5
경남	421	127	350	93	16.9	26.8
제주	76	51	64	43	15.8	15.7
계	5,732	1,800	4,654	1,342	18.8	25.4

〈부표 8-2-4〉 조사 차수별 지역별 가구 구성 비율 비교(비가중)

(단위 :%)

구분	2005년		2011년		2020년	
	2005년 총조사	패널 1차 조사	2011년 추계 가구	패널 7차 조사	2020년 추계 가구	패널 16차 조사
서울	20.8	18.9	20.3	15.0	19.0	13.3
부산	7.5	7.5	7.2	7.2	6.7	7.2
대구	5.1	6.0	5.0	6.0	4.7	6.2
인천	5.2	6.2	5.4	5.8	5.5	5.6
광주	2.9	3.5	2.9	4.2	2.9	4.6
대전	3.0	2.9	3.0	3.6	3.0	3.3
울산	2.1	2.9	2.2	3.0	2.1	2.8
세종	-	-	-	-	0.7	1.0
경기	21.0	16.0	22.0	14.3	24.4	15.2
강원	3.3	3.3	3.2	4.0	3.2	4.2
충북	3.2	3.1	3.2	3.9	3.2	4.2
충남	4.2	4.5	4.2	5.6	4.3	5.2
전북	3.9	4.9	3.8	5.5	3.6	5.4
전남	4.2	5.3	3.9	5.8	3.6	6.0
경북	5.9	7.0	5.7	7.3	5.4	6.8
경남	6.7	6.9	6.6	7.3	6.5	7.4
제주	1.1	1.1	1.1	1.7	1.3	1.8

〈부표 8-2-5〉 조사 차수별 가구원 수 구성 비율 비교(비가중)

(단위 :%)

구분	2005년		2011년		2020년	
	2005년 총조사	패널 1차 조사	2011년 추계 가구	패널 7차 조사	2020년 추계 가구	패널 16차 조사
1인 가구	15.7	21.5	24.5	26.7	31.7	36.2
2인 가구	24.4	29.6	24.3	32.2	28.0	30.9
3인 가구	21.9	19.2	21.4	16.9	20.1	15.4
4인 가구	29.2	22.0	22.0	17.6	15.6	13.2
5인 가구	7.1	6.1	6.0	5.2	3.6	3.6
6인 이상	1.7	1.6	1.8	1.5	0.9	0.7



〈부표 8-2-6〉 조사 차수별 지역별 가구주 성별 구성 비율 비교(비가중)

(단위 :%)

구분	2005년				2011년				2020년			
	2005년 총조사		패널 1차 조사		2011년 추계 가구		패널 7차 조사		2020년 추계 가구		패널 16차 조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20.4	22.4	19.0	18.6	19.8	21.6	15.1	14.7	18.1	21.0	13.1	13.6
부산	7.3	8.0	7.2	8.4	7.1	7.5	6.9	7.8	6.5	7.1	6.6	8.2
대구	5.1	5.2	5.5	7.4	4.9	5.1	5.7	6.9	4.7	4.8	6.0	6.5
인천	5.3	4.7	6.6	4.8	5.5	5.1	6.0	5.2	5.6	5.3	5.9	4.9
광주	2.8	3.1	3.4	3.7	2.8	3.3	4.2	4.2	2.7	3.1	4.8	4.3
대전	3.0	3.1	3.1	2.5	3.0	3.1	3.8	3.3	2.9	3.2	3.4	3.1
울산	2.3	1.6	3.0	2.3	2.4	1.7	3.3	2.2	2.3	1.7	3.0	2.4
세종	-	-	-	-	-	-	-	-	0.7	0.7	1.4	0.3
경기	21.9	17.6	16.8	13.7	22.8	19.9	15.6	11.1	25.3	22.5	16.7	12.4
강원	3.2	3.4	3.5	2.8	3.2	3.3	4.2	3.4	3.2	3.1	4.2	4.3
충북	3.2	3.2	3.3	2.7	3.2	3.1	4.1	3.4	3.3	3.1	4.4	3.6
충남	4.2	4.1	4.8	3.6	4.2	4.1	5.9	5.0	4.4	4.0	5.3	5.0
전북	3.8	4.4	4.6	6.0	3.7	4.2	5.1	6.3	3.5	3.8	5.2	5.8
전남	4.0	4.9	4.5	7.8	3.8	4.4	5.0	7.7	3.6	3.8	5.1	7.5
경북	5.8	6.3	6.7	7.8	5.7	5.9	6.7	8.7	5.5	5.3	5.8	8.5
경남	6.6	6.8	6.9	6.9	6.6	6.5	6.8	8.4	6.6	6.1	7.1	8.0
제주	1.1	1.3	1.2	1.1	1.1	1.2	1.7	1.7	1.2	1.3	1.9	1.5

〈부표 8-2-7〉 조사 차수별 가구주 연령대별 구성 비율 비교(비가중)

(단위 :%)

구분	2005년		2011년		2020년	
	2005년 총조사	패널 1차 조사	2011년 추계 가구	패널 7차 조사	2020년 추계 가구	패널 16차 조사
20대 미만	8.7	4.8	8.0	2.3	8.5	3.0
30대	22.6	19.1	19.6	12.2	14.9	6.3
40대	27.5	20.7	25.5	17.7	20.4	13.9
50대	18.7	15.6	22.6	17.4	23.0	15.8
60대	13.3	21.2	13.3	18.8	18.1	18.2
70대 이상	9.1	18.6	11.0	31.6	15.2	42.6

<부표 8-2-8> 조사 차수별 지역별 인구의 성별 구성 비율 비교(비가중)

(단위 :%)

구분	2005년				2011년				2020년			
	2005년 인구총조사		패널 1차 조사		2011년 추계 인구		패널 7차 조사		2020년 추계 인구		패널 16차 조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20.6	20.9	19.2	19.7	19.9	20.5	15.6	15.8	17.9	19.1	13.4	13.6
부산	7.4	7.5	7.4	7.4	6.9	7.1	6.7	7.0	6.3	6.6	6.6	7.4
대구	5.2	5.2	5.9	5.9	4.9	5.0	5.8	5.9	4.6	4.7	5.9	6.0
인천	5.4	5.3	6.8	6.2	5.6	5.5	6.4	5.7	5.7	5.7	6.0	5.8
광주	3.0	3.0	3.7	3.7	3.0	3.0	4.6	4.3	2.8	2.9	4.9	4.4
대전	3.1	3.0	3.1	3.0	3.1	3.1	3.8	3.7	2.9	2.9	3.4	3.4
울산	2.3	2.1	3.1	3.0	2.3	2.1	3.4	3.2	2.3	2.1	3.2	2.9
세종	-	-	-	-	-	-	-	-	0.7	0.7	1.2	0.9
경기	22.2	21.9	17.1	16.3	23.9	23.5	16.2	15.2	26.3	25.8	17.9	16.4
강원	3.1	3.1	3.3	3.3	3.0	3.0	3.8	3.9	3.0	2.9	3.8	4.1
충북	3.1	3.1	3.4	3.1	3.1	3.1	3.9	3.6	3.2	3.1	4.0	3.7
충남	4.0	4.0	4.4	4.6	4.3	4.1	5.5	5.6	4.3	4.1	5.0	5.1
전북	3.7	3.8	4.0	4.5	3.6	3.7	4.6	5.1	3.5	3.5	4.8	5.2
전남	3.8	3.9	4.6	5.3	3.5	3.6	4.8	5.5	3.5	3.4	5.2	6.0
경북	5.5	5.5	6.1	6.4	5.3	5.3	6.3	6.9	5.2	5.0	5.4	6.2
경남	6.5	6.4	6.6	6.6	6.6	6.4	6.5	7.0	6.5	6.3	6.9	7.0
제주	1.1	1.1	1.2	1.0	1.1	1.1	1.9	1.7	1.3	1.3	2.3	1.9

<부표 8-2-9> 조사 차수별 인구 기준 연령대별 구성 비율 비교(비가중)

(단위 :%)

구분	2005년		2011년		2020년	
	2005년 총조사인구	패널 1차 조사	2011년 추계 인구	패널 7차 조사	2020년 추계 인구	패널 16차 조사
10대 이하	25.9	24.4	22.5	20.9	16.8	15.3
20대	15.7	10.2	13.7	8.1	13.6	9.2
30대	17.6	15.8	16.4	12.4	13.7	8.7
40대	17.2	13.7	17.2	13.6	15.9	13.1
50대	11.0	10.8	14.5	12.1	16.6	12.7
60대	7.7	13.7	8.3	13.4	12.8	13.4
70대 이상	4.8	11.3	7.3	19.5	10.7	27.7

〈부표 8-2-10〉 1차 표본 가구(7,000가구)의 가구주 성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164	66	270	70	-	-	-	-
부산	77	43	174	56	15	5	74	16
대구	49	31	157	53	9	11	67	23
인천	73	37	169	51	61	19	9	1
광주	35	15	122	58	-	-	-	-
대전	46	24	170	30	-	-	-	-
울산	36	14	139	21	26	14	71	9
세종	-	-	104	26	38	12	29	21
경기	92	38	288	102	90	50	105	35
강원	38	22	118	32	66	44	40	10
충북	22	28	122	38	74	26	55	15
충남	28	12	119	31	113	37	75	25
전북	42	18	138	42	94	46	23	7
전남	35	15	112	38	110	60	38	12
경북	62	18	150	30	126	44	70	10
경남	41	19	155	45	87	53	88	12
제주	64	26	36	24	69	31	9	1
합계	904	426	2543	747	978	452	753	197

〈부표 8-2-11〉 1차 표본 가구(7,000가구)의 가구원 수 분포

(단위: 가구)

구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합계
서울	145	185	118	102	20	570
부산	125	146	84	87	18	460
대구	110	133	68	67	22	400
인천	116	156	71	58	19	420
광주	70	90	39	25	6	230
대전	65	93	46	51	15	270
울산	61	103	80	67	19	330
세종	64	66	41	44	15	230
경기	204	261	172	121	42	800
강원	93	146	74	36	21	370
충북	108	159	63	41	9	380
충남	121	163	76	58	22	440
전북	136	158	55	40	21	410
전남	123	157	62	60	18	420
경북	123	185	87	94	21	510
경남	136	160	92	85	27	500
제주	62	92	63	30	13	260
합계	1,862	2,453	1,291	1,066	328	7,000

### 3. 2022년 신규 표본에 대한 가중치

〈부표 8-3-1〉 17차 신규 표본 가구의 가구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시도	표본 가구 수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Q1	Q3	최댓값	deff
전체	2,012	20,573,060	10,225	12,326	662	3,600	12,847	67,373	2.45
서울	128	3,861,911	30,171	16,463	10,791	13,464	50,823	58,502	1.30
부산	123	1,369,447	11,134	9,061	1,013	5,899	18,319	33,656	1.66
대구	117	967,369	8,268	6,811	1,647	4,429	13,907	25,550	1.68
인천	123	1,130,712	9,193	8,380	730	911	15,223	27,968	1.83
광주	57	594,494	10,430	6,585	4,314	5,382	13,633	25,046	1.40
대전	68	613,780	9,026	6,116	3,176	3,962	17,012	19,448	1.46
울산	78	436,348	5,594	4,685	1,126	2,695	8,834	16,230	1.70
세종	68	139,915	2,058	2,009	662	826	1,573	6,339	1.95
경기	205	5,050,655	24,637	22,179	4,713	8,536	41,554	67,373	1.81
강원	119	646,726	5,435	3,673	2,740	2,885	6,389	15,905	1.46
충북	112	668,814	5,972	4,947	2,331	3,497	5,883	21,988	1.69
충남	134	889,632	6,639	3,534	2,996	4,440	9,397	15,246	1.28
전북	142	739,413	5,207	4,847	2,052	2,308	5,100	22,997	1.87
전남	139	744,080	5,353	3,019	2,780	3,337	5,821	16,526	1.32
경북	152	1,114,140	7,330	4,866	3,713	3,823	9,150	22,913	1.44
경남	157	1,341,419	8,544	5,641	3,864	4,821	12,818	20,782	1.44
제주	90	264,207	2,936	2,319	1,173	1,463	4,976	9,142	1.62

## 〈부표 8-3-2〉 17차 신규 표본 가구의 개인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시도	표본 가구 수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Q1	Q3	최댓값	deff
전체	3,526	43,777,452	12,416	17,775	325	2,677	14,011	134,854	3.05
서울	230	8,261,846	35,921	26,347	6,102	10,420	55,820	112,677	1.54
부산	203	2,873,654	14,156	14,730	631	4,494	20,477	70,762	2.08
대구	193	2,023,954	10,487	12,070	957	2,875	12,187	50,581	2.32
인천	213	2,479,058	11,639	12,547	407	1,061	19,220	52,675	2.16
광주	92	1,217,919	13,238	13,312	2,602	3,246	22,421	58,300	2.01
대전	131	1,243,100	9,489	8,076	1,340	1,739	16,386	31,664	1.72
울산	140	930,923	6,650	6,740	577	1,679	8,752	28,294	2.03
세종	118	279,687	2,370	2,642	325	471	5,905	9,804	2.24
경기	372	11,334,273	30,469	32,583	2,444	7,461	58,003	134,854	2.14
강원	221	1,301,000	5,887	5,929	1,402	1,915	7,461	31,396	2.01
충북	204	1,381,993	6,775	7,250	1,328	2,404	7,914	36,650	2.14
충남	244	1,827,593	7,490	6,595	1,806	2,991	10,015	32,796	1.78
전북	222	1,521,323	6,853	8,534	1,539	2,093	6,526	40,464	2.55
전남	237	1,514,003	6,388	6,016	1,917	2,569	8,531	35,867	1.89
경북	284	2,260,489	7,960	7,435	2,020	2,660	11,207	38,355	1.87
경남	254	2,775,709	10,928	10,527	2,406	3,153	14,752	49,959	1.93
제주	168	550,926	3,279	3,167	636	1,072	3,775	14,370	1.93

## [부록 9]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표



# 202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유형1)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3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17, 8294, 8215, 8188,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 패널 ID	가구생성차수				가구분리일련번호				
	- 1차 가구: 01 - 3차 신규가구: 03 - 13차 신규가구: 13 - 15차 신규가구: 15	- 2차 신규가구: 02 - 4차 신규가구: 04 - 14차 신규가구: 14 - 16차 신규가구: 16			- 1차 가구: 01 - 첫 번째 분리가구: 01 - 두 번째 분리가구: 02 - 세 번째 분리가구: 03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주소지	행정코드	시·도		구·시·군		동·읍·면			
	상세주소	통·리		번지		호 ( 아파트 동 층 호 )		☎ ( ) -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분	총방문횟수	총	회				
1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안 ☞ 사유(번호기재):	※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안 ☞ 사유(번호기재):	⑥ 비해당(완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재중(원인미과약) ④ 일부문항 미완					
3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안 ☞ 사유(번호기재):	⑤ 조사거부 ⑥ 이사(주소추적불가) ⑦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실 ⑧ 기타 추적불가사유 ⑨ 기타					
4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안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안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안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I. 가구일반사항

본 조사의 조사시점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일반사항은 [인포시트]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단, 가구주가 바뀐 경우 바뀐 가구주를 가구원번호 1번에 기입.

문1) 귀댁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2021년 1년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진입 처수	개인 패널ID	가구원 번호	이름	문2) 가구주와의 관계		문3) 성별	문4) 태어난 연도 월		문5) 교육수준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		생년 (生年)	생월 (生月)	문5-1)	문5-2)
-17차 가구진입 가구원+17  -그 외는 인포시트상 의 순서를 그대로이기	*인포시트와 지침서를 참고하여 부여  *인포시트상의 개인패 널ID를 그대로 이기하 고, 16차 진입가구원의 경우 새로운 개인패널 ID를 부여	* 순서 대로 기입	가구원 이름	* 가구주와의 관계는 주관식 으로 기입후 아래 [가구주 와의 관계표]를 참고하여 코드번호 기입  * 가구주 정의: 호주 또는 세 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가 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 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① 남  ② 여	* 주민등록상의 생년, 생월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인포시트]와 비교하 여 확인)	① 미취학 (만 7세미만) ② 무학 (만 7세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⑩ 비해당 ⑪ 재학 ⑫ 휴학 ⑬ 중퇴 ⑭ 수료 ⑮ 졸업		
		1		0 1 0						
		2								
		3								
		4								
		5								
		6								
		7								
		8								
		9								

#### 문 2) 가구주와의 관계표

010. 가구주	020. 가구주의 배우자
001. 가구주의 아버지	003.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02. 가구주의 어머니	004.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005. 가구주의 조부	0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
006. 가구주의 조모	0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
0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0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0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0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0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 = 14, 다섯째 = 15, ...)	0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 = 24, 다섯째 = 25, ...)
031. 가구주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31, 두 번째 사람 = 32, ...)	0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41, 두 번째 사람 = 42, ...)
0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51, 두 번째 사람 = 52, ...)	0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61, 두 번째 사람 = 62, ...)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13, 넷째 = 114, ...)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13, 넷째 = 214, ...)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23, 넷째 = 134, ...)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23, 넷째 = 224, ...)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33, 넷째 = 134, ...)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33, 넷째 = 234, ...)
997.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가구원 번호	문6) 장애종류 및 정도		문7) 혼인상태	문8) 종교	문9) 동거여부
	문6-1) 장애종류	문6-2) 장애정도			
※순서대로 기입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지적장애 ⑧ 정신장애 ② 뇌병변장애 ⑨ 신경장애 ③ 시각장애 ⑩ 심장장애 ④ 청각장애 ⑪ 호흡기장애 ⑤ 언어장애 ⑫ 간장애 ⑥ 정신지체 ⑬ 안면장애 (지적장애) ⑭ 장루·오루장애 ⑦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⑮ 간질장애(뇌진동장애) ⑯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 1~3급)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 4~6급) ③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 포함)	① 비해당 (18세 미만)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18세 이상, 미혼모 포함) ⑥ 기타(사망등)	① 있음 ② 없음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돌보개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분가 ⑨ 사망 ⑩ 다른 곳에 맡겨진 미혼학 자녀 ⑪ 기타(군복무 등)
1					
2					
3					
4					
5					
6					
7					
8					
9					
문10)	가구형태	① 단독 ② 모자 ③ 부자 ④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문11) 맞춤형 급여 수급형태	급여종류	1)수급여부	2) 수급형태 1		3) 수급형태 2	
	① 생계급여			① 해당없음 ② 조건부수급가구	① 일반수급가구 ③ 특례가구	① 해당없음 ② 가구원 전부 수급
② 의료급여			① 해당없음 ② 의료급여 2종	① 의료급여 1종 ⑤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① 해당없음 ②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①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① 해당없음 ② 수선유지급여(특례포함)	① 임차급여(특례포함)	X	
④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수	명	X	

〈 용어 해설: 가구형태 〉

- 단독: 1인 가구
- 모자: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부자: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자)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가구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용어 해설: 의료급여 수급형태 〉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없음,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우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없음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유의사항: 맞춤형 급여 수급형태 〉

- ※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수급형태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수급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고, 교육급여는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 문의하여 수급여부 및 수급자 수를 기입합니다.
-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로 파악합니다.

## II. 건강 및 의료 A

※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2021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	문2) 2021년 1년 중 의료기관 이용			문3) 2021년 1년 중 병원에 입원한 이유	문4) 2021년 1년 중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문2-1) 외래진료횟수 (예) 3회 →003 없음 →000	문2-2) 입원횟수 (예) 3회 →03 없음 →00	문2-3) 입원일수 (예) 20일 →020 없음 →000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가구원 이름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⑩ 비해당 ① 지병/질병 ② 사고 ③ 출산 ④ 건강검진 ⑤ 요양/휴식 ⑥ 성·정형/교정 ⑦ 기타	⑩ 비해당 ① 종합, 대학병원 ② 병·의원(지역내/지역외) ③ 한방 병·의원 ④ 보건소 ⑤ 기타 ⑥ 치과병·의원 ⑦ 요양병원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 2-1) 외래진료횟수

-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합니다. 순회 진료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 ※ 건강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예방접종(국가 무료예방접종 및 유료예방접종)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합니다.

문 2-2) 입원횟수

- ※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재발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문 3) 병원에 입원한 이유

-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면 '⑩ 비해당' 으로 표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면 2021년 1년 중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⑤ 요양/휴식' 은 질병 치료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문 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노인복지관 내에 의사가 1인 이상 직원으로 상주할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⑤ 기타' 로 표시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5) 2021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문6) 만성질환	문7) 주요 병명	문8)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2021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예) 1회 → 1 없음 → 0	① 비해당 ① 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하고 있다 ③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예) 3개 → 03 없음 → 00	(예) 3개 → 03 없음 → 00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5) 건강검진 횟수  
 ※ 학교나 유치원에서 지정병원을 정하여 혈액, 소변, 엑스레이, 심전도 등 핵심 검진항목을 건강검진 받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받는 경우도 건강검진 횟수로 포함합니다.

문6) 만성질환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부터 산정합니다.

문7) 주요 병명  
 ※ 이력 (주요입원요인) 을 참조하여 민선호 기재합니다. 동등질환을 알고 있는 경우 우선 질환 한 개지만 표기합니다.  
 ※ 입가와 입원 기록상 질환 또는 질환 및 출산 또는 퇴원을 목적으로 하는 질환이 경우는 주요병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간용"으로 표기합니다.  
 ※ 만성질환의 경우 주요 병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간용"으로 표기하며 "중간용"으로 표기하며 "중간용"으로 표기합니다.  
 ※ 외과내과와 외과외과 경우 "중간용"으로 표기하며 "중간용"으로 표기하며 "중간용"으로 표기합니다.

문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민간의료보험 적용상품**(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보험, 일반질병보험, 특정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건수를 기록합니다. (예) ○○○ 의료, 질병, 암, 건강보험  
 ※ CI(Critical Illness)보험: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상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통 중신보험과 묶어서 판매되며, 질병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정부분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 **실손형 의료보험**: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입원비, 진료비, 수술비 등)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장하는 보험  
 ※ 가족의료보험(주계약자가 가구주, 종계약자가 배우자,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입한 경우 가입건수는 1건이 아니라 **가구원 각각의 가입건수를** 체크합니다.  
 ※ 납입기간이 끝났으나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0으로 간주합니다.  
 ※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 적용상품은 제외하고, **상해와 질병보험이 혼합된 형태의 보험(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여기에 해당됨)**은 포함시켜 건수를 계산합니다.

[주요병명코드]			
01	심장질환(심근경색, 협심증)	02	심부전
03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04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05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06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07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08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09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10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11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12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13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14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15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16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17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18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19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20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21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22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23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24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25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26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27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28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29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30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31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32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33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34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35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36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37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38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39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40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41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42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43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44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45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46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47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48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49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50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51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52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53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54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55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56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57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58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59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60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61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62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63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64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65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66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67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68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69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70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71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72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73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74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75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76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77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78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79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80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81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82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83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84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85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86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87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88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89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90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91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92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93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94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95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96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97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98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99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00	관상동맥질환(협착, 동맥경화)

### III. 경제활동상태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당시 만14세 이하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 당시 만15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문2) 근로무능력사유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 (12월 31일 기준)
※ 2명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① 만14세 이하 → [IV. 사회보험]으로 갈 것 ② 근로가능 → 문3)으로 갈 것 ③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 → 문3)으로 갈 것 ④ 단순근로미약자 (직안 일반 가능) → 문3)으로 갈 것 ⑤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집안일도 불가능) → 문2)으로 갈 것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모든 응답자는 문3)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문4)로 갈 것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문3-1)로 갈 것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문3-1)로 갈 것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 문3)로 갈 것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갈 것 ⑨ 비경제활동인구 → 문1)로 갈 것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⑨ 비경제활동인구
1					
2					
3					
4					
5					
6					
7					
8					
9					

< 용어해설 >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1.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재회사 내 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 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실업자	3.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4.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자	
비경제활동인구	5.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비경제활동인구	7.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8.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또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9.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 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 상용/임시/일용 구분은 근무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로 파악하며, 일시휴직자(병가, 산전후휴가, 육아 휴직 등)도 취업자로 파악한다.
-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농업,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등)의 경우는 조사업주 매뉴얼을 참조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12월 31일 기준)

- ※ 문3)에서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또는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 상황에 따라 12월 31일은 쉬고 있을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응답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4) 고용관계	문5) 근로시간형태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문7) 근로자속가능성	문7-1) 근로자속불가능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① 시간제 ② 전일제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아래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참조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전제지연 등)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문6]로 갈 것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문7-1]로 갈 것	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④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문4) 고용관계**

① 직접고용: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사용·종속관계가 긴밀하다.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본래 소속의 고용주-일하는 곳에 있는 사용자' 근로자 간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파견, 용역 근로가 이에 해당한다.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 용역회사 용역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 하에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지명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예: 학습지도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지인형태의 레미콘(화물, 덤프)기사, 택배원(퀵서비스 포함, 다단계판매원, 화장품의관원, 카드모집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학원차량 기사를 하는 경우(단, 본인의 차량이 아닌, 학원에 속한 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는 직접고용에 포함) 등).

**문5) 근로시간 형태**

①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월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또한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②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정한 사업(프로젝트)완료 기일에 한해 고용된 경우: 사업완료기일이 명백하면 계약기간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업완료 기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고용주(혹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문7) 근로자속가능성:**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전제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지 해고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번호	문8) 업종	문9) 직종		문10) 사업장 규모	문11) 비경제활동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도 해당 업종의 산업코드를 기입함.	※ [조사업무 매뉴얼] <부록2> 산업분류 코드에서 중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하시오.  ※ 직종 직업명은 주관식으로 기입, 우측 직업코드는 [조사업무 매뉴얼] <부록3> 직업분류코드에서 소분류 코드 4자리를 기입하시오.	직업명	직업코드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⑦ 100~299명 ⑧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상 ⑪ 잘 모르겠다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정규교육기관 학업 ④ 진학준비 ⑤ 취업준비 ⑥ 가사 ⑦ 양육 ⑧ 간병 ⑨ 구직활동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군복무 대기지도 ⑫ 군복무로 응답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8)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를 따른다(조사업무 매뉴얼 참조).

**문9)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개정)를 따른다(조사업무 매뉴얼 참조).

**문10) 사업장 규모**  
 ① 문3)에서 '①~⑥임금근로자(상용/임시/알용), ④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로 응답한 경우  
 ■ 종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00은행의 00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은행의 전체 종사자수다.  
 ■ 만약, 지점이 아닌,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로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 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예를 들면, 00햄버거의 00지역 체인점의 경우는 햄버거 업체 전체의 종사자가 아닌, 00지역 체인점의 종사자수만 기입한다.  
 ■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 차원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00그룹의 00자동차에 다니는 경우는 자동차 계열사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1000명 이상' 으로 기입한다.  
 ■ 하청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업체에서 근무하지만, 00업체의 소속으로 급여도 00업체에서 받을 경우는 00업체의 종사자수를 적는다.  
 ■ 또한,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수가 되지만,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송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1명' 으로 간주한다. 즉, 남의 집에서 혼자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일용임금근로자는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 '①1~4명' 로 응답한다.  
 ② 문3)에서 '⑤~⑦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로 응답한 경우  
 ■ 고용주: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내의 전체 종사자수(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수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아래의 모든 조사항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공적연금 가입		국민연금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문3) 가입종별	문4) 국민연금납부여부	문5) 미납유형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비해당 →문9)로 갈 것 ① 연금수급 →문9)로 갈 것 ② 연금가입 →문2)로 갈 것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문2)로 갈 것 ④ 미가입 →문8)로 갈 것  ※ 공적연금에는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이 포함됨. 보호연금은 제외 ※ 아래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참조	① 국민연금 →문3)으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모름 →문9)로 갈 것  ※ 아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보충설명] 참조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직장이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④ 임의계속가입자(60~65세인데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⑤ 모름 →문9)로 갈 것  ※ 실업상태로 납부예외자의 경우는 '2 지역가입자'로 응답.	① 납부하고 있음 →문7)로 갈 것 ② 납부하지 않고 있음 →문5)로 갈 것  ※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깜빡 잊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0'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	① 납부예외자 →문6)으로 갈 것 ② 보험료 미납 →문7)로 갈 것  ※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가입자이지만 실직, 사임중단, 휴직(출산, 육아 등), 군인대, 학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
1						
2						
3						
4						
5						
6						
7						
8						
9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질문시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합니다. 즉, ①, ②, ③을 먼저 질문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0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4 미가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용어해설>**  
 ①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  
 ② 연금가입: 국민연금(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가입자 (만18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 준 경우는 연금가입)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④ 미가입: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1961년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자인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수급 혹은 임의계속가입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가입자이었던 자가 만60세에 도달하였는데도 수급과 가입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으로 응답하고, 문8)미가입 이유에 6)만60세 경과로 가입)  
 ⑤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등) 중 ①연금수급~④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침서) 참조)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가구원 번호	이름	국민연금				
		문6) 납부예외 사유	문6-1) 납부예외 기간	문7) 미납 이유	문7-1) 미납 기간	문8) 미가입 이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실직, 휴직, 사업중단 ② 3개월 이상 입원 ③ 생활곤란 ④ 학업(재학) ⑤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2021년 1년간 납부예외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문9)로 같 것 ※ 2021년 1년간 기준임.	① 비해당(미납경험없음)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④ 모름 ⑤ 기타 ※ 2021년 1년 기준임. ※ 문4)에서 ①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2021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는 경우 ①비해당으로 기입하고, 미납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①-⑤ 중 응답.	2021년 1년간 보험료를 몇 개월이나 미납하셨습니다? →(문9)로 같 것 ※ 2021년 1년간 기준임. ※ 2021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가입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④ 모름 ⑤ 기타 ⑥ 만60세 경과
1						
2						
3						
4						
5						
6						
7						
8						
9						

가구원 번호	산재/고용보험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문9)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 퇴직금 적용여부	문12) 퇴직연금 가입여부	문13) 개인연금 가입여부	문14) 건강보험 가입여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의 경우 ①비해당에 해당.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는 별도이므로 가입여부를 응답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비해당임. ※ 다른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하는 자영업자는 ①비해당이며, 고용주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지에 따라 ①가입 또는 ②미가입으로 분류함.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①비해당에 해당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비해당임. ※ 2012.1.22 이후 자영업자 및 고용주(50인 미만 근로자 사용)도 고용인장·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모두 가입 가능	① 비해당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받을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③ 모름 ※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여부가 아니라, 응답자 본인 현재 직장에서의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문함. ※ 퇴직금중간장산 등으로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①로 응답 ※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외직립해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보철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①로 응답	① 비해당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와 공동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 위탁·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공적연금제도임. ※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① 개인연금만 가입 ② 중신보험만 가입 ③ 개인연금, 중신보험 둘 다 가입 ④ 미가입(수령 중인 경우 포함) ⑤ 모름 ※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강제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인 저축 수단임. ※ 중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① 직장가입자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 ④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⑤ 의료급여 1종 ⑥ 의료급여 2종 ⑦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⑧ 미가입 ※ 가구원별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혹은 그 각각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묻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⑤~⑧ 중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함.
1						
2						
3						
4						
5						
6						
7						
8						
9						



**V. 의로 B**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귀댁은 (공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1-2)로 갈 것**

〈유의사항〉  
 한 가구 내에서 1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① 그렇다'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유의사항〉  
 ※ 한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소득비례 부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소득자(직장가입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와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비임금소득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로 구분됩니다.

응답 후 문 2)로 가십시오.

문1-2) (문1)의 ②번 응답자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의료급여(1종)                      → **문1-3)으로 갈 것**  
 ② 의료급여(2종)                      → **문1-3)으로 갈 것**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 **문6)으로 갈 것**  
 ④ 미가입                                  → **문6)으로 갈 것**

〈유의사항〉  
 ※ 한 가구 내에서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가구주가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급여를 기록해 주십시오.  
 ※ 의료급여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혜택(진찰, 수술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정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택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란, 의료급여(1종, 2종)와는 달리 의료비를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비진료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말합니다(배우자와 유족은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는 건강보험 대상자입니다.

문1-3) (문1-2)의 ①, ②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③ 차별대우를 받음  
 ① 혜택범위가 좁은 것(본인부담이 많은 것)                      ④ 기타(적용 것 : \_\_\_\_\_)  
 ② 적용기간의 제한

응답 후 문4)로 가십시오.

문 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2021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④ 계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⑤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③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간  개월

문 3)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① 월 보험료 부담    ③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 5) 귀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 6) ("II. 건강 및 의료" 문 8)의 가구원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를 고려할 때) 2021년 12월 기준으로 귀댁이 가입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는 총 얼마나 됩니까?

12월 보험료 합계  만 원

VI. 주거

문 1) 귀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이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2)로 갈 것**

문 1-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이사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주택마련          ③ 내/외부요인          ⑤ 거주환경
② 재정문제          ④ 주택규모 및 시설설비      ⑥ 기타( )

< 유의사항 >
① 주택마련 - 결혼으로 인해 주택을 마련하려고
- 세대 독립을 위해 분가하려고
- 내 집(자가주택)마련을 위해
- 이미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신축 및 소유주택 포함)
② 재정문제 -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③ 내/외부요인 -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 계약 만기로 인해서
- 개개발로 인해서
④ 주택규모 및 시설설비 -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 주택규모를 더 늘리려고(주택규모 확장)
- 주택규모를 더 줄이려고(주택규모 축소)
⑤ 거주환경 -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
- 직주근접을 위해서 혹은 직장변동(취직·전근 등) 때문에(개인사업 등으로 인한 이사 포함)
-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 편의시설/위락시설이 부족해서
- 쾌적하고 양호한 지역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⑥ 기타 - 기타

문 2)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한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단독주택          ⑦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⑧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③ 다세대주택          ⑨ 오피스텔
④ 연립주택(빌라)      ⑩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⑤ 일반아파트          ⑪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체계별지역 기어주단지 포함)
⑥ 영구임대아파트      ⑫ 기타(적을 것 : )
⑬ 국민·공공임대아파트

< 유의사항 >
\* 반드시 건물전체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3)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 ① 지하층          ③ 지상
② 반지하층      ④ 옥탑

< 유의사항 >
\* 한 기구가 여러 층을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위치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4)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방은 모두 몇 개였습니까?(세준 경우 제외)

총   개

< 유의사항 >

- \* 사용하는 방의 수를 파악할 때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 \*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면 방수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5)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평(APT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입니까?(1평≒3.3㎡)

m<sup>2</sup>

< 유의사항 >

-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그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6)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 |         |   |            |              |   |            |
|---------|---|------------|--------------|---|------------|
| ① 자가    | → | 문7)로 갈 것   | ④ 월세(사글세)    | → | 문6-1)로 갈 것 |
| ② 전세    | → | 문6-1)로 갈 것 | ⑤ 비가구원 명의 주택 | → | 문10)으로 갈 것 |
| ③ 보증부월세 | → | 문6-1)로 갈 것 | ⑥ 기타         | → | 문10)으로 갈 것 |

< 유의사항 >

-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 가경, 할머니(가주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들(아구원이 아님) 명의로 해놓고 살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할머니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⑤ 비가구원 명의 주택' 에 해당됩니다.
- \* 점유형태 '⑥ 기타'에는 무상 관사, 사택 등이 포함됩니다.

문 6-1) (문6) ②전세 ③보증부월세 ④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입니까?

- |              |  |
|--------------|--|
| ① 민간임대주택     | ②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공민체 행복주택 장기전세 기준주택 매입·잔여세대 등) |
|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④ 기타 임대주택                                    |

문 7) (문6)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집의 가격(현시가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 유의사항 >

-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집의 가격은 반드시 명의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경, 집이 (가구원이 아닌)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집의 가격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 8) (문6)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구입비용, 보증금 혹은 중·개축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① 자기돈(상속인 경우 포함)
- ②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 ③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 ④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혹은 토기지원도 포함)으로부터 빌림
- ⑤ 사채



문 12) **2021년 1년간** 귀댁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 서비스에 체크해 주십시오.

주거복지 관련 사업	있다	없다
㉠ 영구임대주택	①	②
㉡ 국민·공공임대주택	①	②
㉢ 전세자금(용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지자체의 전세(용자)지원 포함)	①	②
㉣ 저소득층 월세지원 (*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①	②
㉤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근로자·서민)	①	②
㉥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	①	②
㉦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 유의사항 〉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 기타'에는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지원, 부모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직장 여성 아파트), **행복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 ㉤의 경우 2021년 이전부터 입주하여 2021년 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① 있다'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 ㉣의 경우는 2021년 당해 연도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① 있다'로 응답합니다.

VII. 생활비

문		문 1-1) 가정 식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가정식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제사비용, 음주비용 제외 * 자가산배(자가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민원
문 1)	식료품비	문 1-2) 외 식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외식비는? * 직장인의 중식비(무료 중식비 포함, 가족이구원이 아닌 비용은 사적이전 지출에 포함)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석식), 밖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복지관에서의 무료식사 등	월평균	천 <td>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td>	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	십 <td>원</td> <td>민원</td>	원	민원
		문 1-3) 주류·담배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주류·담배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류	월평균	천 <td>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td>	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	십 <td>원</td> <td>민원</td>	원	민원
		문 2) (주택 구입비 제외)	문 2-1) 월세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월세(사당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 을 기입 * 전세, 자기인 경우 '0' (단 자기이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임대료를 기입) * 보증금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월평균	천 <td>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td>	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	십 <td>원</td> <td>민원</td>	원
문 2-2) 주거관리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설비 및 수선비(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 포함,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월평균	천 <td>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td>	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	십 <td>원</td> <td>민원</td>	원	민원	
문 3)	광 열수도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 에너지 비우저 포함)	월평균	천 <td>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td>	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	십 <td>원</td> <td>민원</td>	원	민원	
		*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 에너지 비우저 포함)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td>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td>	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	십 <td>원</td> <td>민원</td>	원	민원
문 4)	가구·가사용품비	문 4-1)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 가구, 가정용기계(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 CCTV 카메라, 식기주방용품, 가사집기 및 소모품(조명기구, 화장지, 전구, 공기, 세탁용세탁용구 등), 침구 및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 비용(피클링, 청소비 등), 기타(거울, 경수기 대여료, 치료목욕이 아닌 비우저·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이용료 등	월평균	천 <td>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td>	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	십 <td>원</td> <td>민원</td>	원	민원
		문 4-2) 보육료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보육료는? * 보육료는 베이비시터, 놀이방을 포함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제외함.	월평균	천 <td>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td>	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	십 <td>원</td> <td>민원</td>	원	민원
문 5)	의류 신발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의류·신발비는? * 의의(스포츠웨어 포함),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스포츠용 포함)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	월평균	천 <td>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td>	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	십 <td>원</td> <td>민원</td>	원	민원	
문 6)	보건 의료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보건 의료비는?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입술판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인형,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마스크, 손소독제, 치료용비우저(비만/동맥비우저)이용료 등 보건 의료비는 본인어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월평균	천 <td>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td>	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	십 <td>원</td> <td>민원</td>	원	민원	
문 7)	교 육 비	문 7-1) 공 교 육 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공교육비는?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초·중·고 제외), 문방구비, 보충수업비(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경우), 유학비, 아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월평균	천 <td>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td>	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	십 <td>원</td> <td>민원</td>	원	민원
		문 7-2) 사 교 육 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사교육비는?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사비, 학생의 어학연수비, 학습비우저 등	월평균	천 <td>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td>	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	십 <td>원</td> <td>민원</td>	원	민원
문 8)	교 양 오락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PC, 유선방송, 피아노, 장난감, 동산용품, 낚시터,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약한인의 여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비디오(DVD) 대여료, 애견(강아지) 구입비, 화분 구입비, TV수선료, 이동통신요금 등	월평균	천 <td>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td>	백 <td>십 <td>원</td> <td>민원</td> </td>	십 <td>원</td> <td>민원</td>	원	민원	

문 9)	교통통신비	문 9-1)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교통비는? *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대리운전비, 성인용자전거, 전동휠체어, 전동킥보드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9-2)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통신비는? *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0)	기타소비지출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이대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목욕료 등, 장난감(원드럼, 시계, 귀금속 등), 경조사, 교체비용, 현목회비, 종교관람시설료(등) 비용, 보장성보험료(저축성보험 제외), 관혼상비(가구지출 기준), 용돈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L 경조비(축의금 부의금 등 타 가구 지출)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L 종교관련비용(실업조 등)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L 비영리단체(기부금, 직장노조비, 친목회비 등) 이전지출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1)	사이 직전 비 가 동 기 원	문 11-1) 거 원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따로 사는 가구원(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현물 포함 * 자취비용(월세 등), 학교 기숙사비, 생활잡비, 용돈 등 단, 등록금 등 교육비는 7,000원에 기한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1-2) 타 기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지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농사지어서 전액에서 보낸 것(현금으로 환산) 포함 * 자취 같은 등으로 집을 사온 경우(전세자금 포함)는 중(중)도 보아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부재에 대한 이재예컨대, 이들 명의의 집에 대한 이자 내는 경우 포함	부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자녀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기타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2)	세 금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세금은?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취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 (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L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L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L 자동차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L 종합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L 부동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3)	사회보장부담금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b>사건보험료(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b>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L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L 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L 고용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4)	총 생활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지출하신 총 생활비는? * <b>총생활비 = 1~13의 합계</b>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는 금액 등 재산 증기를 위한 저축과 주당부금상환 할부, 외상 빌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V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활동: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귀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⑥의 활동 분류 중 해당되는 경우 1로 표시)

상명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임시·일용 근로자		③교육주·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무급가족종사자, 가사 또는 육아·학생·기타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해당 개월수
	1												
	2												
	3												
	4												
	5												
	6												
	7												
	8												
	9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문항 2로 가시오		문항 3으로 가시오		문항 4로 가시오		문항 5로 가시오		문항 6으로 가시오		문항 7로 가시오	

**< 유의사항 >**  
 ※ 15세 미만인 경우 이름만 기입.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인사항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한 사람에게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여부에 모두 '1'로 표시(예,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모두 '1'로 표시하고 문항 2와 문항 5에서 소득파악).  
 ※ 개월수는 2021년 동안 일한(해당) 개월수 기입(예, 전년(2020)부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에 퇴직하여 3개월 동안 원 후 7월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개월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는 5개월임, 농업의 경우 12개월로 기입).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주원활동구분**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②임시·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③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어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④ 농 림 축 산 업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도 2021. 12. 31. 시점에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변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⑥ 무급 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 또는 육아: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수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원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타: 실업자,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등

<b>문 2)</b>	상용근로자: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b>연간 급여 총액</b> (원천징수전 총급여)은 얼마였습니까?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관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번호를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둘(이하 동일함). → 상용근로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급여액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b>문 3)</b>	임시·일용근로자									
-------------	----------	--	--	--	--	--	--	--	--	--

<b>[보조기입란 3-a]</b>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2021년 1년 동안 전체 일한 횟(일)수를 12개월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예) 2021년 가구원 A가 1~6월까지는 월 5회, 7~12월까지는 월 15회 일하였다면, 월 10회(30+90회)/12개월) 기재 ※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번호를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둘.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포함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 횟수	1회당(일당) 보수						
		1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2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4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5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6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7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8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9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b>3-1.</b>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b>연간 총급여</b> (원천징수전 총급여)는 얼마였습니까?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관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번호를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과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둘. → 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급여액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고용주 및 자영자											
<p><b>[보조기입란 4-a]</b>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총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p> <p>※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은 연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증서자로 분류함.</p> <p>※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번호순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매출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매출액 (A)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p><b>[보조기입란 4-b]</b>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p> <p>※ 경비에는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복리후생비, 공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번호순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비용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비용 (B)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p><b>4-1,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b></p> <p>※ 순소득은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간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p> <p>※ 순소득은 소득세, <b>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b></p> <p>※ 순소득에는 <b>자기소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도 포함됨.</b></p> <p>※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b>“-” 표(마이너스 표시)</b>를 하고 금액을 기입함.</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번호순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 <b>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기시오</b></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순소득 (A-B)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p><b>4-2.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전입소득은 얼마였습니까?</b></p> <p>※ 전입소득은 총수입중에서 가구로 가지고 오는 금액이다. 2021년 2,000만 원을 벌어서 1,300만 원을 재투자하고, 집으로 7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면 700만원 기입</p> <p>※ 그러므로 전입소득은 4-1의 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전입소득은 음수(-)가 없음.</p> <p>※ 순소득이 음수(-)인 경우도 전입소득은 있을 수 있음(즉, 0이 아닐 수 있음).</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번호순서를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전입소득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5)	농림축산업 경영주							
<p><b>5-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b>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작하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 (참고) 1평≈3.3 m<sup>2</sup></p>								
① 논	총							m <sup>2</sup>
② 밭	총							m <sup>2</sup>
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	총							m <sup>2</sup>
※ 없음 0	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총						m <sup>2</sup>

[보조기입란 5-a]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농림·축산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기입함.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판매량 = 판매량(재고의 판매량 포함)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량 + 임차료(소작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이전소비액은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축산업에서 총 수확량은 가축의 총보유량임.										
구분	예시	종류	총 수확량 (a+b+c)	판매량 (종자, 소작료 포함)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곡류	미곡 : 메벼, 멥쌀, 찰벼, 찰쌀									
	곡류 : 비곡을 제외한 맥류, 절곡, 콩류, 감자 고구마 등 서류 등									
채소 과일류	봄 채소 : 봄동, 미나리, 냉이, 달래, 오이, 쪽파, 파, 당근, 양파, 호박,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송이, 아욱, 등 과일 : 사과, 딸기, 토마토, 영두 등									
	여름 채소 : 셀러리, 양파, 부추, 감자, 풋고추, 마늘, 무, 오이, 가지, 호박, 배추, 양배추, 생강, 깻잎, 열무, 옥수수, 피망 등 과일 :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가을 채소 : 고구마, 붉은고추, 당근, 양파, 파, 무, 콩, 배추, 시금치, 호박 등 과일 : 배, 사과, 감, 대추, 유자, 키위, 은행 등									
	겨울 채소 : 우엉, 연근, 아욱, 양파, 봄동, 시금치 등 과일 : 사과, 귤 등									
기타 작물	특용작물 :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기타농작물 : 화훼, 봉일, 파수묘, 뽕묘, 묘목 등 임산물 : 밤, 잣, 호도, 도토리, 자연산 비섯이나 나물, 장작 등									
	총 계									
축산업	소, 젖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정식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기타 가축(번양 등)									
	총 계									

5-2.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수확한 농림축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농림축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연간 총	만원			연간 총	만원			연간 총	만원			연간 총	만원		
	십억	억	천		십억	억	천		십억	억	천		십억	억	천

※ 재고판매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보조기입란 5-a의 합계를 기입.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 문항 8의 재산소득에 기입  
 ※ 없으면 0

<b>5-3.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농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b>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벗질단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연간 잡수입 총액(D)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b>[보조기입란 5-b],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 지출(농업경영비)의 세부항목</b> * 농림축산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예 시	연간품목별 비용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경비	영농광열비(유류대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입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차비용, 감가상각비, 농기계 할부금, 영농잡지출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b>사용가능연한(내구연수)을 절문하여 그 연수(年數)만큼</b>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불 10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 100만원으로 기재 * 감가상각비는 농기계를 일시금으로 구입한 것의 감가상각비를 기재함. * 영농광열비는 바고추 등 농작을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성 및 난방 등.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b>5-4.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b>	연간 총비용(E)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b>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귀 가구의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b> → <u>농림 축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u>	연간 순소득 (A+B+C+D-E)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6) 어업 경영주**

<b>[보조기입란 6-a]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연간 판매 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b> * 용어 설명은 5-a와 동일함.									
분류	예 시	종류	판매량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어로 어업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 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b>6-1.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출하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b>																				
수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연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일	연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일	연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만원				만원											

※ 재고량은 판매수입에 포함되어 계산  
※ 없음 0

<b>6-2.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어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b>										연간 잡수입 총액(D)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피해보상금, 어업옹호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보조기입란 6-b]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지출의 세부항목**  
※ 가구에서 가구원이 어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함.

지출항목	예시	연간총지출금액													
어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양식지출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수산가공지출	자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산가공수수료, 기타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b>6-3.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총 비용은 얼마였습니까?</b>										연간 총비용(E)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b>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귀 가구의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b>										연간 순소득(A+B+C+D-E)							
→ 어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기시오.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7)** 기타 근로소득: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위에 응답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 문1) ~ 문6)에서 응답한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성명	가구원번호	연간 기타 근로소득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문	재 산 소 득	세부 항목	금 액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8)	재 산 소 득	2021년 1년 동안 얻은 재산소득의 유형별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 ×12를 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일시금 금액을 그대로 기입 예)매월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1년에 한번 배당금이 100만원 받는 경우 (10×12)+100=220만원으로 기입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기 타(자격증 대여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9)	사 회 보 험	2021년 1년 동안 받은 사회보험의 유형별 소득액은? ※ 일시들은 제외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L 국민연금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L 특수직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보훈, 별정직우체국)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10)	민 간 보 험	2021년 1년 동안 받은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총 개인연금액은?	① 개인연금(※ 일시들은 제외)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퇴직연금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11)	기 정 부 보 조 금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의 유형별 금액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문 14)번 문항에 기입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 ㉑, ㉒, ㉓의 경우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포함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외에 수련회비, 지활장려금, 육아돌봄비 지원, 직업훈련수당, 교통안전공단지원금,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소지원 물품, 보건소 의료비 지원(5대 암, 치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자동차세 감면,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비용, 쓰레기봉투 등이 있음. 이들은 기타에 포함.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① 장애수당(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기초연금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한부모가족지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④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⑤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⑥ 보육료 지원 (i-사랑 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⑦ 아동수당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⑧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⑩ 농이업 정부보조금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⑪ 긴급복지지원금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⑫ 기타 배우처 지원금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⑬ 근로장려세제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⑭ 자녀장려세제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⑮ 급식비 지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⑯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전화, 인터넷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⑱ 기타( )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⑲ 지방보조금(지역형 생계, 지역형 긴급복지지원, 지역형 청년수당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⑳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12)	기 타 소 득	이 외에 2021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소득의 유형별 금액은?  * 퇴직금의 경우 목돈으로 받은 경우 여기서 파악.	① 증여·상속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경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⑥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⑦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훈권, 켄돈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12-1	환급금	2021년 1년 동안 돌려받은 환급금 총액	세금환급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 없으면 0

※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금 액						
문 13)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2021년 1년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주택구입자금과 결혼자금 제외 * 일회성 보육대가 포함. 단, 월급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가입 * 부모 자녀의 경우 가구주 기준	부모	연간						만원
			자녀	연간						만원
	9개월 미만 동거 가구원의 소득	2021년 1년 동안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 하다가 분가한 가구원이 함께 살 때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연간							만원
		2021년 1년 동안 귀택의 가구원으로 새로 들어온지 9개월 미만된 가구원이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혼수용품이나 혼수비 등을 제외한 정기적인 소득만을 가입함.	연간							만원
	민간보조금(현금 및 현물)	2021년 1년 동안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총금액은?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연간							만원
문 1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및 출생급여)	① 생계급여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연간 수급 개월수	연간					만원
				개월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 장제급여 및 출생급여 포함							
	② 주거급여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연간 수급 개월수	연간					만원	
				개월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③ 교육급여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연간 수급 개월수	연간					만원	
				개월						
		*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서 파악하십시오.								

**IX. 부채, 이자**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 12. 31 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액								
문 1)	부채태	<p>2021.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p> <p>※ 명의기준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③카드빚'에 포함하고, 현금 할부구매는 '⑤외상 할부구입, 미리단 깃돈'에 포함                      ※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가 있으면 '②일반사채'에 기입하고, 이자가 없으면(무이자) '⑥기타부채'에 기입함.                      ※ 자동차 구매의 경우, 카드할부이면 '③카드빚'으로 기록하고 자동차 관련 대출은 '①금융기관대출'로 기록                      ※ 밀린 월세, 교통안전등년차권대류금, 사회보험 인체금 등은 '⑥기타부채'에 기입함.                      ※ 세부항목별로 부채가 없는 경우, '0'</p>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일반사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카드빚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미상환금, 구입한 자동차 카드 할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외상, 할부 구입, 미리단 깃돈 ※ 미리 단 깃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기타부채( )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이자	<p>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연간 얼마였습니까?</p> <p>※ 명의기준                      ※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고 있는 경우, 원금을 제외한 '순수이자'만 기입                      ※ 연체한 경우, '0'</p>	① 1년 동안 거주하였던 주거관련 부채의 연간이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주거이자 제외) 기타 연간이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부채용도	<p>2021.12.31. 기준으로 다음 각각의 항목별 부채 금액이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p> <p>※ 부채가 없는 경우 '0' 기재                      ※ 항목별 부채 비율의 합은 '100' 이어야 함.                      (단, 부채가 없는 경우, 합은 '0')</p>	① 생활비(생계비)							%	
			② 주택관련 자금 (전월세보증금 포함)								%
			③ 교육(학자금마련 포함)								%
			④ 의료비								%
			⑤ 빚 갚음								%
			⑥ 기타 ( )								%
			<b>총 부채</b>	1	0	0					%

\* 없음 0

### X.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부항목	금액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1)	소부동산	2021.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현시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② 주택의 건물(가족명의의 사업장(가게)·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③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부동산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2)	접부동산	2021.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가게,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②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계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3)	금융자산	2021.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별 가격은? ※ 가구원 전부 파악	① 예금(적축예금, 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②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④ 불입한(타기 전) 켄돈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받은 것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4)	농기계	2021.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형별 가격은? ※ 기타에는 살포기, 이앙기, 미증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타리 등이 포함됨.	① 동력탈곡기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② 경운기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③ 콤바인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④ 트랙터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⑤ 기타( )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5)	농축산물	2021.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여관용 및 식용 가축 제외	① 소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② 돼지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③ 닭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④ 계고농산물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⑤ 기타( ) ※ 유실수 포함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6)	자동차	2021.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영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로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별책을 참조하여 환산해 주십시오.	보유대수	단위					만원
			대						
문 7)	기타재산	2021.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유형별 가격은?	①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② 영업용 자동차·자동차 번호 값, 오토바이·선박, 골삭기(프로펠러인), 트랙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③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④ 기타( )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없음 0

## XI. 생활여건

문 1) 2021년 1년 동안 귀택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 2021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i>* 2021년 1년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 인 경우 '㉢ 비해당' 에 응답</i>	①	②	③
㉡ 2021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 2021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
㉣ 2021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i>*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민회학', '대학원생(석·박사)' 인 경우 '㉢ 비해당' 에 응답</i>	①	②	③
㉤ 2021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 2021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
㉦ 2021년 1년 동안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i>* 2021년 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2021년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① 있다' 에 응답</i>	①	②	/
㉧ 2021년 1년 동안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 당한 경험이 있다. <i>* 2021년 1년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만을 받는 가구는 '㉢ 비해당' 에 응답</i>	①	②	③

문 2) 2021년 1년 동안에 귀택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 2021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b>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b>	①	②	③	④
㉡ 2021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b>균형 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b> 를 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부
㉢ 2021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가구 내 성인들이 <b>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b> 있습니까? <i>→ ① 매우 그렇다 → ② 매우 그렇다 → ③ 매우 그렇다</i>	①	②	③
㉣ (㉢에서 ①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③ 1-2개월 동안			
㉤ 2021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b>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적이</b> 있습니까?	①	②	③
㉥ 2021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b>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한 적이</b> 있습니까?	①	②	③

##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그 밖에 의료급여 특례, 자활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합니다.

문 1) 귀댁은 2021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2)로 갈 것**                      ② 없다 → **문2)로 갈 것**

< 유의사항 >

-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21년에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②없다' 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다 → **문2)로 갈 것**
- 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 → **문1-3)으로 갈 것**
- ③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문1-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 2021년 1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단, 급여신청을 2021년 12월에 하였고 선정은 2022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 2021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21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속 수급을 받다가 중간에 탈락한 후, 재신청하여 다시 수급한 경우에는 재신청 결과에 대해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4개 급여를 모두 신청해서 수급하였다가 탈락하고, 5월에는 의료, 주거급여만 신청해서 수급 받게 되었다면 ②로 응답합니다.

문 1-3) (문1-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3-1)     문 1-3-2)     문 1-3-3)     문 1-3-4)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② 자동차가 있어서
-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⑦ 잘 모르겠다.

문 1-4) (문1-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다?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4-1) 생계급여  문 1-4-2) 의료급여  문 1-4-3) 주거급여  문 1-4-4) 교육급여

- 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 ② 빚을 내어서 생활
- ③ 민간단체의 도움
- ④ 이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 ⑤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 ⑥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 ⑦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 ⑧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 귀댁은 2021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받은 적이 있다 → **문2-1)로 갈 것**
- ② 받은 적이 없다 → **XII-1.근로장려세제'로 갈 것**

< 유의사항 >  
 \* 2021년 1년 동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개라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 동안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1) 생계급여

첫 번째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두 번째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세 번째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문 2-1-2) 의료급여

첫 번째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두 번째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세 번째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문 2-1-3) 주거급여

첫 번째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두 번째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세 번째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문 2-1-4) 교육급여

첫 번째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두 번째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세 번째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2	0	2	1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 유의사항 >  
 \* 수급과 탈피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2021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하나라도 받은 급여가 있다면**,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2-2-1)  생계급여    문 2-2-2)  의료급여    문 2-2-3)  주거급여    문 2-2-4)  교육급여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④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중간에 탈피가 되었다라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수급한 **최초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 2-3)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문 2-3-1) 생계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2) 의료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3) 주거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4) 교육급여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응답해주시고**,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2021년에 받은 모든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12월 말까지 받은 급여가 있다면**, 앞으로 얼마 후에 각 급여별로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3-1)  생계급여    문 3-2)  의료급여    문 3-3)  주거급여    문 3-4)  교육급여

- ① 6개월 이내
- ② 6개월 후 ~ 1년 이내
- ③ 1년 후 ~ 3년 이내
- ④ 3년 후
- 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⑥ 잘 모르겠다.

문 4) (문2)의 ⑩번 응답자만 귀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12월 말까지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각 급여별로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4-1)  생계급여    문 4-2)  의료급여    문 4-3)  주거급여    문 4-4)  교육급여

- ①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 ②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
- ③ 상속, 증여, 제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 ④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 ⑤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 ⑥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 ⑦ 가족의 병이 나아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 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 5) (문2)의 ⑩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여러 지원 중, 귀택이 **수급기구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는 무엇입니까?** (생계비를 제외하고 하나만 응답)

- ① 의료비 지원    ④ 자활관련 지원
- ② 교육비 지원    ⑤ 없다
- ③ 주거비 지원    ⑥ 기타(적을 것 : \_\_\_\_\_)



**XII-1. 근로(자녀)장려세제**

※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 자녀장려세제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인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문 1)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문 1-1)  근로장려세제      문 1-2)  자녀장려세제

- ①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 ③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④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문 2) 귀댁은 2021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둘 다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 ② 근로장려금만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 ③ 자녀장려금만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 ④ 둘 다 신청한 적 없다 → 문 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5월에 신청을 못한 경우, 6-11월 동안 기간 후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 후 신청한 경우도 신청한 것으로 응답합니다.

문 2-1) 귀댁은 2021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둘 다 받았다 → 문2-2)로 갈 것
- ② 근로장려금만 받았다 → 문2-2)로 갈 것
- ③ 자녀장려금만 받았다 → 문2-2)로 갈 것
- ④ 둘 다 받지 못했다 →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타 정부보조금란의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란에 정확한 급여액을 기입함.  
 ※ 5월에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급여가 지급되며, 기간 후 신청을 한 경우는 지급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됩니다. 이 경우도 지급받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문 2-2) 수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① 아이 교육비    ② 일상생활비    ③ 의료비    ④ 문화오락비    ⑤ 저축    ⑥ 기타

문 2-3) 귀댁의 근로(자녀)장려금 급여(수준)가 생활에 주는 도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편이었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 2-4) 귀댁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는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일할 의욕이 매우 감소되었다    ② 일할 의욕이 약간 감소되었다    ③ 일할 의욕에 변화가 없었다  
④ 일할 의욕이 약간 증가되었다    ⑤ 일할 의욕이 매우 증가되었다

문 3) 귀댁은 **금년(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를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둘 다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②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장려세제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④ 둘 다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⑤ 잘 모르겠다

###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㉔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①	②
㉕ 의료비 지원	①	②
㉖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㉗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서비스 등)	①	②
㉘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㉙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㉚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①	②
㉛ 상담서비스	①	②
㉜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①	②
㉝ 개인발달계획(자신형성프로그램)	①	②
㉞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①	②

#### 〈 유의사항 〉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 ※ ㉔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이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급여),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근로장려세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말한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소득은 포함 안 됨.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통비, 학비지원, 바우처 지원금 등 용도가 한정된 지원은 포함 안 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㉖의 물품지원에 체크하도록 한다.
- ※ ㉕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향서비스 모두 포함).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하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㉙ 주택 관련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㉚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자활 공공근로를 포함한다.
- ※ ㉛ 상담서비스: 고인 및 갈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말한다.
- ※ ㉜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대출해주거나 국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융자,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저소득층 창업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있다. 단,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 관련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 ※ ㉝ 개인발달계획: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하여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가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건의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다담씨앗통장,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이 포함된다.
- ※ ㉞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공공후견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은 바우처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점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문 2) **2021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①	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①	②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①	②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①	②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①	②
㉥ 아이돌봄지원	①	②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①	②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①	②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①	②
㉩ 에너지바우처	①	②
㉪ 기타 바우처서비스(적을 것: _____)	①	②

< 유의사항 >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한다.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액만 커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아이돌봄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원 등 돌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기관 및 유치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 \*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기존 항목이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과 '언어발달지원' 을 통합하여 '장애아동가족지원' 문항 신설하였다.
- \*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는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 ㉩ 에너지 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 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임신부가 있을 경우 난방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함.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대상 바우처이다.
- \* ㉪ 기타 바우처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경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내서비스, 경실질환자 토털케어 서비스,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등의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있다.

다음은 바우처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문 2) 2021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①	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①	②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①	②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①	②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①	②
㉥ 아이돌봄지원	①	②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①	②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①	②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①	②
㉩ 에너지바우처	①	②
㉪ 기타 바우처서비스(적을 것: _____)	①	②

< 유의사항 >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한다.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액암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아이돌봄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원 등 돌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기관 및 유치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 \*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기존 항목이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과 '언어발달지원' 을 통합하여 '장애아동가족지원' 운항 신설하였다.
- \*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는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 ㉩ 에너지 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 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임신부가 있을 경우 난방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함.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대상 바우처이다.
- \* ㉪ 기타 바우처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내서비스, 경실질환자 토털케어 서비스,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등의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있다.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㉞ 기초연금 지원	①	②
㉟ 의료비 지원	①	②
㊱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①	②
㊲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㊳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 서비스 등)	①	②
㊴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㊵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㊶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㊷ 주·야간보호 서비스(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①	②
㊸ 노인일자리사업	①	②
㊹ 사회참여 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나들이, 자조모임 등)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㉞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사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할서비스 모두 포함). 노인 인건진 및 개인 수술,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이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㉟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지자체 노인결식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무료로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노인이 일부 자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㊱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 서비스 등): 방문, 전화, IC를 통한 안전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예' 라고 응답한다.  
 \* ㊲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생활관리사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㊳ 노인일자리사업: 만60세~64세의 예외적 참여를 허용하나,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자체를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하므로 만60~64세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응답하지 않는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청소년수련관 등이다.  
 \* ㊹ 사회참여 서비스: 문화여가활동(노래교실 등)과 평생교육활동(한글 교실 등) 뿐만 아니라, 체험여행활동(나들이, 공연 관람 등),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는 자조모임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은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㉗ 아동수당	①	②
㉘ 공공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①	②
㉙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①	②
㉚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①	②
㉛ 방과후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등)	①	②
㉜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①	②
㉝ 학비 지원	①	②
㉞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①	②
㉟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①	②
㊱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①	②
㊲ 영유아보충식품지원(영양플러스사업 포함)	①	②

### 〈 유의사항 〉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서비스의 유형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응답한다.

### 〈 유의사항 〉

- \* ㉗ 공공어린이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협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서울형/부산형 어린이집은 모두 공공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어린이집에 해당한다.
- \* ㉙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가구의 소득 혹은 아동의 출생순위 등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를 말한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료 할인 (직장어린이집에서의 보육료 할인이 직장어린이집 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것이라면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의해 할인을 받는 것이라면 포함된다.
- \* ㉚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취약아동뿐만 아니라 미취학아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므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지원도 포함된다.
- \* ㉝ 학비 지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경정고시 학습비, 방과후교실 등록비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비 지원과 장애영유아 무상교육은 '㉙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에 해당한다.
- \* ㉞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교실은 미술, 음악, 체육 교육 및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바우처서비스인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 포함된다.
- \* ㉟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을 통해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에 해당한다.

다음 문2)~문6)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 각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아래 응답지에 개별 아동(자녀)별로 아동의 가구원 번호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 귀댁에 가구원으로 2020. 4. 1. ~ 2021. 3. 31. 동안에 새로 가구원으로 진입(출산, 입양 등)한 아동(자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아동(자녀)은 누구입니까?

(※ 2쪽의 가구원현황과 16차년도에 추가된 가구원 중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재해주시시오.)

- ① 있다 → 문 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의 아동(자녀) □□□은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이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의 아동(자녀) □□□은 아기 때부터 앓아온 선천성 기형이나 선천성 질환(심장질환 등)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small>(※ 2쪽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하시오)</small>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2-1) 체중	문2-2) 선천성 기형 및 질환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아동(자녀) □□□은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은 이용여부에 '㉔'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문 4) 귀댁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5)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없음 = 0000

문 6)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없음 = 0000

구 분	< 보 기 >	
어린이집 및 유치원	㉑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어린이집 ㉒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㉓ 민간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포함) ㉔ 가정어린이집(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㉕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㉖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㉗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㉘ 학원	㉙ 개인·그룹과의 ㉚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㉛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만6세 이상이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 및 특기 지도 등을 하는 경우) ㉜ 방과후 교실(만6세 이상이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기타	㉝ 친·인척(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㉞ 이웃(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㉟ 공적지원 아이 돌보미(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㊱ 민간 아이 돌보미 ㊲ 기타(적을 것 : _____) ㊳ 그 외 보육시설(방과후 학교 초등보육프로그램,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의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선교원, 문화센터 등)	

문3)~문6) 응답지

아래 응답지에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3) 이용여부		문4) 이용기관		문5)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문6) 한 달 평균 보육비 (부대비용 포함)
		한다	안한다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B			
				C			

##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VII.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장애인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①	②
㉡ 장애수당(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①	②
㉢ 장애아동수당	①	②
㉣ 의료재활서비스	①	②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등)	①	②
㉥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①	②
㉩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①	②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①	②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	①	②
㉬ 자동차 관련 지원	①	②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①	②

### 〈 유의사항 〉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 \* ㉠ 장애아동수당: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매달 일정 지원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과는 별개의 제도임에 주의한다.
- \* ㉢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보장구 지원 및 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이 포함된다.
-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장애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 주택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바우처)도 포함된다.
- \* ㉦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서비스: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이용,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회복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자판기·매점 등 사업권 제공 등을 말한다.
- \*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공공후견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복지금어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XVII. 가족

문 1) **2021년 1년간**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 포함합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li> <li>①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li> <li>②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li> <li>③ 자녀교육 혹은 행동</li> <li>④ 가구원의 건강</li> <li>⑤ 가구원의 알코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가족 내 폭력</li> <li>⑦ 가구원간 관계</li> <li>⑧ 가구원의 가출</li> <li>⑨ 주거관련 문제</li> <li>⑩ 기타(적을 것 : _____)</li> <li>⑪ 자녀의 결혼문제</li> </ul> |
|---|--|

문 2) 다음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021년 1년간** 귀댁은 어떠하였습니까?  
 (\* **독신가구**이면서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비가구원인 직계혈족 1촌이 있는 1인 가구(독신가구)**이지만 **지난 1년간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 202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17차 신규가구용(유형2)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3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17, 8294, 8215, 8188,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 패널 ID <small>*인포시스템의 숫자별 그대로 이기</small>	가구생성차수 <small>-17차 신규가구: 17</small>	가구분리일련번호 <small>-첫번째 17차 신규가구: 01 -두번째 17차 신규가구: 02 -세번째 17차 신규가구: 03</small>	*분가사유			
	1	7	① 결혼 ② 직장 ③ 학업 ④ 이혼 ⑤ 별거 ⑥ 위탁 ⑦ 기타(*기타내용은 가구정보란에 기록)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동·리 _____번지 _____호 (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 _____ )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번호	성명	가구원번호	성명	가구원번호
	휴대폰		휴대폰			
조사표원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미완사유코드 ① 비해당(원료) ② 낮은 귀가 ③ 부재중(원인비파악) ④ 일부분항 미완 ⑤ 조사거부 ⑥ 이사(주소추적불가) ⑦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멸 ⑧ 기타 추적불가사유 ⑨ 기타		
2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1. 완료 2.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I. 가구일반사항

※ 본 조사의 조사시점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신규가구는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생성된 가구만 해당됩니다 (10월 1일 이후 생성 가구는 신규가구가 아니라 원가구의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조사).

※ 신규가구 생성 시기 (인포시트 내용 이기) 년 월

문1) 귀댁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가구 생성 시점~ 2021년 12월 31일까지 3/4 이상 생계를 같이 하였던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명

가구원 집입 치수	개인 패널ID	가구원 번호	이름	문2) 가구주와의 관계		문3) 성별	문4) 태어난 연도, 월		문5) 교육수준	
				문2) 가구주와의 관계	문2)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		문4) 생년 (生年)	문4) 생월 (生月)	문5-1)	문5-2)
-17차 가구집입 가구원: 17  -제외된 가구원: 최초 집입치수  - 그 외는 인포시트상 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인포시트와 지침서를 참고하여 부여	※ 순서 대로 기입	가구원 이름	※ 가구주와의 관계는 주관식 으로 기입후 아래 [가구주 와의 관계표]를 참고하여 코드번호 기입	※ 가구주 정의: 호주 또는 세 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 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시 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① 남 ② 여	※ 주민등록상의 생년, 생월을 기재하여 주실 시오. (반드시 [인포시트]와 비교하여 확인)	① 미취학 (만 7세미만) ② 무학 (만 7세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① 비해당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인포시트상의 개인패널ID 를 그대로 이기하고, 16차 집입가구원의 경우 새로 운 개인패널ID를 부여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				
			1			0 1 0				
			2							
			3							
			4							
			5							
			6							
			7							
		8								
		9								

#### 문 2) 가구주와의 관계표

010. 가구주	020. 가구주의 배우자
001. 가구주의 아버지	003.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02. 가구주의 어머니	004.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005. 가구주의 조부	0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
006. 가구주의 조모	0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
0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0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0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0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0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 = 14, 다섯째 = 15, ...)	0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 = 24, 다섯째 = 25, ...)
031. 가구주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31, 두 번째 사람 = 32, ...)	0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41, 두 번째 사람 = 42, ...)
0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51, 두 번째 사람 = 52, ...)	0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61, 두 번째 사람 = 62, ...)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13, 넷째 = 114, ...)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13, 넷째 = 214, ...)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23, 넷째 = 134, ...)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23, 넷째 = 224, ...)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33, 넷째 = 134, ...)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33, 넷째 = 234, ...)
997.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가구원 번호	문6) 장애종류 및 정도		문7) 혼인상태	문8) 종교	문9) 동거여부
	문6-1) 장애종류	문6-2) 장애정도			
※순서대로 기입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지체장애 ⑧ 정신장애 ② 뇌병변장애 ⑨ 신경장애 ③ 시각장애 ⑩ 심장장애 ④ 청각장애 ⑪ 호흡기장애 ⑤ 언어장애 ⑫ 간장애 ⑥ 정신지체 ⑬ 인명장애 (지적장애) ⑭ 장루·오루장애 ⑦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⑮ 간질장애(뇌진동장애) ⑯ 비등락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 1~3급)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 4~6급) ③ 비등락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 포함)	① 비해당 (18세 미만)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18세 이상, 미혼모 포함) ⑥ 기타(사망등)	① 있음 ② 없음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돌봄으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분가 ⑨ 사망 ⑩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⑪ 기타(군복무 등)
1					
2					
3					
4					
5					
6					
7					
8					
9					

문10) 가구형태      ① 단독    ② 모자    ③ 부자    ④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문11) 맞춤형 급여 수급형태	급여종류	1) 수급여부		2) 수급형태 1		3) 수급형태 2	
		① 생계급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해당없음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건부수급가구    ③ 특례가구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부 수급 ② 가구원 중 일부 수급	
② 의료급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해당없음    ① 의료급여 1종 ② 의료급여 2종    ②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②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해당없음    ① 임차급여(특례포함) ③ 수선유지급여(특례포함)				
④ 교육급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급여 수급자 수	명			

〈 용어 해설: 가구형태 〉

- 단독: 1인 가구
- 모자: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부자: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1956년 이전)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가구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용어 해설: 의료급여 수급형태 〉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저하,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저하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유의사항: 기초보장 수급형태 / 의료급여 수급형태 / 맞춤형 급여 〉

- ※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수급형태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수급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고, 교육급여는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 문의하여 수급여부 및 수급자 수를 기입합니다.
-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로 파악합니다.

## II. 건강 및 의료 A

※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문2) 2021년 1년 중 의료기관 이용			문3)	문4)
		2021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	2021년 1년 중 의료기관 이용			2021년 1년 중 병원에 입원한 이유	2021년 1년 중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문2-1) 외래진료횟수 (예) 3회 →003 없음 →000	문2-2) 입원횟수 (예) 3회 →03 없음 →00	문2-3) 입원일수 (예) 20일 →020 없음 →000	① 비해당 ② 지병/질병 ③ 사고 ④ 출산 ⑤ 건강검진 ⑥ 요양/휴식 ⑦ 성·정형/교정 ⑧ 기타	① 비해당 ② 종합, 대학병원 ③ 병·의원(지역내/지역외) ④ 한방 병·의원 ⑤ 보건소 ⑥ 기타 ⑦ 치과병·의원 ⑧ 요양병원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 2-1) 외래진료횟수

-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합니다. 순회 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 ※ 건강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예방접종(국가 무료예방접종 및 유료예방접종)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합니다.

문 2-2) 입원횟수

- ※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저혈저로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문 3) 병원에 입원한 이유

-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면 '⑩ 비해당' 으로 표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면 2021년 1년 중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⑥ 요양/휴식' 은 질병 치료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문 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천을 오거나 노인복지관 내에 의사가 1인 이상 직원으로 상주할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⑧ 기타' 로 표시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5) 2021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문6) 만성질환	문7) 주요 병명	문8)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2021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예) 1회 → 1 없음 → 0	① 비해당 ② 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③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하고 있다 ④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예) 1회 → 03 없음 → 00	(예) 3개 → 03 없음 → 00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5) 건강검진 횟수  
 ※ 학교나 유치원에서 지정병원을 경하여 혈액, 소변, 엑스레이, 심전도 등 핵심 검진항목을 건강검진 받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받는 경우도 건강검진 횟수로 포함합니다.

문6) 만성질환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부터 산정합니다.

문7) 주요 병명  
 ※ 이력 [주요병명코드]를 참조하여 병명으로 기재합니다. 중복질환을 알고 있는 경우 주된 질환 한 가지만 기재합니다.  
 ※ 절기의 모든 제1차원 질환 또는 절단 및 흉터 또는 치주을 목적으로 하는 질환의 경우는 주노명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⑥"임을 소문으로 기재한다.  
 ※ 만성질환의 경우 주요 병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⑥" 기타 질환"으로 기재(예:우발성 포도막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기재한다. 또한 만성질환(당뇨병 등)의 경우에는 "⑥" 기타 질환"으로 기재한다.  
 ※ 질환(당뇨병)의 경우 "⑥" 기타 질환(당뇨병)으로 기재(예:당뇨병)에서 제외(예:당뇨병)로 기재하는 경우(당뇨병)는 "⑥" 기타 질환(당뇨병)으로 기재(당뇨병)로 포함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문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민간의료보험 전용상품**(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보험, 일반질병보험, 특정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건수를 기록합니다. (예) 000 의료, 질병, 암, 건강보험  
 ※ **CI(Critical Illness)보험**: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상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통 중신보험과 묶어서 판매되며, 질병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정부분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 **실손형 의료보험**: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입원비, 진료비, 수술비 등)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장하는 보험  
 ※ 가족의료보험(주계약자가 가구주, 종계약자가 배우자,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입한 경우 가입건수는 1건이 아니라 **가구원 각각의 가입건수를** 체크합니다.  
 ※ 납입기간이 끝났으나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0으로 간주합니다.  
 ※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 전용상품은 제외하고, **상해와 질병보험이 혼합된 형태의 보험(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여기에 해당됨)**은 포함시켜 건수를 계산합니다.

[주요병명코드]			
① 암(위, 대, 췌, 폐, 췌장암)	② 폐암, 흉부	③ 고지혈증	④ 기타(우지증(우지))
⑤ 간암, 수막, 뇌종양, 뇌수막	⑥ 당뇨병(당뇨)	⑦ 뇌졸중(기타)	⑧ 기타(우지증(우지))
⑨ 위암, 위궤양, 소화기내과질환 등	⑩ 천식	⑪ 심장병(심장질환)	⑫ 기타(우지증(우지))
⑬ 위장질환, 간염	⑭ 백내장, 녹내장	⑯ 기타(우지증(우지))	⑰ 기타(우지증(우지))
⑱ 당뇨병	⑲ 만성염증(만성염증)	⑳ 기타(우지증(우지))	㉑ 기타(우지증(우지))
㉒ 만성신장질환	㉓ 만성신부전증(만성신부전증)	㉔ 기타(우지증(우지))	㉕ 기타(우지증(우지))
㉖ 고혈압	㉗ 폐렴, 흉골 및 척추관 질환, 흉부질환	㉘ 기타(우지증(우지))	㉙ 기타(우지증(우지))
㉚ 동맥, 뇌동맥 질환	㉛ 고지혈증	㉜ 기타(우지증(우지))	㉝ 기타(우지증(우지))
㉞ 기타(우지증(우지))	㉟ 기타(우지증(우지))	㊱ 기타(우지증(우지))	㊲ 기타(우지증(우지))

### III. 경제활동상태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당시 만14세 이하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 당시 만15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문2) 근로무능력사유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 (12월 31일 기준)
※ 2개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① 만14세 이하 → [IV. 사회보험]으로 갈 것 ② 근로가능 → 문3)으로 갈 것 ③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 → 문4)으로 갈 것 ④ 단순근로미약자 (직안 일반 가능) → 문5)으로 갈 것 ⑤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집안일도 불가능) → 문2)으로 갈 것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모든 응답자는 문3)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로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문4)로 갈 것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문3-1)로 갈 것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문3-1)로 갈 것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 문3)로 갈 것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갈 것 ⑨ 비경제활동인구 → 문1)로 갈 것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⑨ 비경제활동인구
1					
2					
3					
4					
5					
6					
7					
8					
9					

< 용어해설 >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1.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재회사 내 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재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 하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3.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4.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7.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8.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또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9.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 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 상용/임시/일용 구분은 근속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로 파악하며, 일시휴직자(경가, 산전후휴가, 육아 휴직 등)도 취업자로 파악한다.
-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농업,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등)의 경우는 조사업무 매뉴얼을 참조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12월 31일 기준)

- ※ 문3)에서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또는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 상황에 따라 12월 31일은 쉬고 있을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응답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4) 고용관계	문5) 근로시간형태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문7) 근로자속가능성	문7-1) 근로자속불가능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① 시간제 ② 전일제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아래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참조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전제지연 등)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문6]로 갈 것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문7-1]로 갈 것	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목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④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문4) 고용관계**

① 직접고용: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사용·종속관계가 긴밀하다.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본래 소속의 고용주-일하는 곳에 있는 사용자-근로자' 간의 삼각관계가 성립한다. 파견, 용역 근로가 이에 해당한다.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 용역회사 용역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하에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지명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예: 학습지도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지인형태의 레미콘(화물, 덤프)기사, 택배원(퀵서비스 포함, 다단계판매원, 화장품의관원, 카드모집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학원차량 기사를 하는 경우(단, 본인의 차량이 아닌, 학원에 속한 차량으로 운전) 하는 경우는 직접고용에 포함) 등).

**문5) 근로시간 형태**

①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월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또한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②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정한 사업(프로젝트)완료 기일에 한해 고용된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명백하면 계약기간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업완료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고용주(혹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문7) 근로자속가능성:**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전제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지 해고가능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번호	문8) 업종	문9) 직종		문10) 사업장 규모	문11) 비경제활동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 [조사업무 매뉴얼] <부록2> 산업분류 코드에서 중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하시오.  ※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도 해당 업종의 산업코드를 기입함.	※ 좌측 직업명은 주관식으로 기입, 우측 직업코드는 [조사업무 매뉴얼] <부록3> 직업분류코드에서 소분류 코드 4자리를 기입하시오.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⑦ 100~299명 ⑧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상 ⑪ 잘 모르겠다	① 근로능력 ② 군복무 ③ 정규교육기관 학업 ④ 진학준비 ⑤ 취업준비 ⑥ 가사 ⑦ 양육 ⑧ 간병 ⑨ 구직활동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군복무 대기지도 ② 군복무로 응답
		직업명	직업코드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8)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를 따른다(조사업무 매뉴얼 참조).

**문9)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개정)를 따른다(조사업무 매뉴얼 참조).

**문10) 사업장 규모**  
 ① 문3)에서 '①~③임금근로자(상용/임시/알용), ④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로 응답한 경우  
 ▪ 종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00은행의 00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은행의 전체 종사자수다.  
 ▪ 만약, 지점이 아닌,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로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 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예를 들면, 00햄버거의 00지역 체인점의 경우는 햄버거 업체 전체의 종사자가 아닌, 00지역 체인점의 종사자수만 기입한다.  
 ▪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 차원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00그룹의 00자동차에 다니는 경우는 자동차 계열사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1000명 이상' 으로 기입한다.  
 ▪ 하청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만, 00업체의 소속으로 급여도 00업체에서 받을 경우는 00업체의 종사자수를 적는다.  
 ▪ 또한,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수가 되지만,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승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1명' 으로 간주한다. 즉, 남의 집에서 혼자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일용임금근로자는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 '①1~4명' 로 응답한다.  
 ② 문3)에서 '⑤~⑦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로 응답한 경우  
 ▪ 고용주: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내의 전체 종사자수(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수

###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아래의 모든 조사항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공적연금 가입		국민연금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문3) 가입종별	문4) 국민연금납부여부	문5) 미납유형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비해당 →문9)로 갈 것 ① 연금수급 →문9)로 갈 것 ② 연금가입 →문2)로 갈 것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문2)로 갈 것 ④ 미가입 →문8)로 갈 것  ※ 공적연금에는 국민,공 무원,사학,군인,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이 포 함됨. 보훈연금은 제외 ※ 아래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참조	① 국민연금 →문9)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모름 →문9)로 갈 것  ※ 아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보충설명] 참조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직장이 나 지역가입자는 아 니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④ 임의계속가입자(60~ 65세연)에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⑤ 모름 →문9)로 갈 것  ※ 실질상태로 납부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② 지역가입자로 응답.	① 납부하고 있음 →문7)로 갈 것 ② 납부하지 않고 있음 →문5)로 갈 것  ※ 12월 31일 기준으 로 납부기한을 깬 박 및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①납부하고 있음' 으로 응답.	① 납부예외자 →문6)로 갈 것 ② 보험료 미납 →문7)로 갈 것  ※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가입자 이지만 실직, 사 업중단, 휴직(출산, 육아 등),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 지 않는 사람
1						
2						
3						
4						
5						
6						
7						
8						
9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질문시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합니다. 즉, ①, ②, ③, ④를 먼저 질문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①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④ 미  
 가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용어해설>**  
 ①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  
 ② 연금가입: 국민연금(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가입자  
 (만18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 준 경우는 연금가입)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④ 미가입: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1961년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자인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수급 혹은 임의계속가입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즉 가입자였던 자가 만60세에 도달하였는데도 수급과 가입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으로 응답  
 하고, 문8)미가입 이유에 ⑥만60세 경과로 가입)  
 ⑤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등) 중 ①연금수급~④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침서) 참조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가구원 번호	이름	국민연금				
		문6) 납부예외 사유	문6-1) 납부예외 기간	문7) 미납 이유	문7-1) 미납 기간	문8) 미가입 이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실직, 휴직, 사업중단 ② 3개월 이상 입원 ③ 생활곤란 ④ 학업(재학) ⑤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2021년 1년간 납부예외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문9)로 같 것 ※ 2021년 1년간 기준임.	① 비해당(미납경험없음)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④ 모름 ⑤ 기타 ※ 2021년 1년 기준임. ※ 문4)에서 ①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2021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는 경우 ①비해당으로 기입하고, 미납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①-⑤ 중 응답.	2021년 1년간 보험료를 몇 개월이나 미납 하셨습니까? →문9)로 같 것 ※ 2021년 1년간 기준임. ※ 2021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끼서 ④ 모름 ⑤ 기타 ⑥ 만60세 경과
1						
2						
3						
4						
5						
6						
7						
8						
9						

가구원 번호	산재/고용보험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문9)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 퇴직금 적용여부	문12) 퇴직연금 가입여부	문13) 개인연금 가입여부	문14) 건강보험 가입여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의 경우 ①비해당에 해당.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는 별도이므로 가입여부를 응답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비해당임. ※ 다른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하는 자영업자는 ①비해당이며, 고용주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지에 따라 ①가입 또는 ②미가입으로 분류함.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①비해당에 해당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비해당임. ※ 2012.1.22 이후 자영업자 및 고용주(50인 미만 근로자 사용)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모두 가입 가능	① 비해당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받을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③ 모름 ※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 여부가 아니라, 응답자 본인 이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문함. ※ 퇴직금중간장산 등으로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①로 응답 ※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외직립해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①로 응답	① 비해당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와 공동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 위탁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공적연금제도임. ※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① 개인연금만 가입 ② 중신보험만 가입 ③ 개인연금, 중신보험 둘 다 가입 ④ 미가입(수령 중인 경우 포함) ⑤ 모름 ※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강제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인 저축 수단임. ※ 중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① 직장가입자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 ④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⑤ 의료급여 1종 ⑥ 의료급여 2종 ⑦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⑧ 미가입 ※ 가구원별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혹은 그 각각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묻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⑤-⑧ 중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함.
1						
2						
3						
4						
5						
6						
7						
8						
9						

**V. 의로 B**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귀댁은 (공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1-2)로 갈 것**

< 유의사항 >  
 \* 한 가구 내에서 1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① 그렇다'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 유의사항 >  
 \* 한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소득비례 부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소득자(직장가입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와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비임금소득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로 구분됩니다.

응답 후 문 2)로 가십시오.

문1-2) (문1)의 ②번 응답자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의료급여(1종) → **문1-3)으로 갈 것**  
 ② 의료급여(2종) → **문1-3)으로 갈 것**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 **문6)으로 갈 것**  
 ④ 미가입 → **문6)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한 가구 내에서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가구주가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급여를 기록해 주십시오.  
 \* 의료급여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혜택(진찰, 수술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 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택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란, 의료급여(1종, 2종)와는 달리 의료비를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비진료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말합니다(배우자와 유족은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는 건강보험 대상자입니다.

문1-3) (문1-2)의 ①, ②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③ 차별대우를 받음  
 ① 혜택범위가 좁은 것(본인부담이 많은 것)                      ④ 기타(적용 것 : \_\_\_\_\_)  
 ② 적용기간의 제한

응답 후 문4)로 가십시오.

문 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2021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④ 계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⑤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③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간  개월

문 3)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① 월 보험료 부담    ③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 5) 귀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 6) ("II. 건강 및 의료" 문 8)의 가구원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를 고려할 때) 2021년 12월 기준으로 귀댁이 가입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는 총 얼마나 됩니까?

12월 보험료 합계  백  십  원 만원



## VI. 주거

문 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한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일반단독주택<br>② 다가구용 단독주택<br>③ 다세대주택<br>④ 연립주택(빌라)<br>⑤ 일반아파트<br>⑥ 영구임대아파트 | ⑦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br>⑧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br>⑨ 오피스텔<br>⑩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br>⑪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제계밭지역 가이주단지 포함)<br>⑫ 기타(적용 것 : _____)<br>⑬ 국민·공공임대아파트 |
|--|--|

〈유의사항〉  
 ※ 반드시 건물전체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2)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 |                 |              |
|-----------------|--------------|
| ① 지하층<br>② 반지하층 | ③ 지상<br>④ 옥탑 |
|-----------------|--------------|

〈유의사항〉  
 ※ 한 가구가 여러 층을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위치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3)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방은 **모두** 몇 개였습니까?(세준 경우 제외)

총  개

〈유의사항〉  
 ※ 사용하는 방의 수를 파악할 때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면 방수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4)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평(APT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입니까?(1평 ≒ 3.3㎡)

m<sup>2</sup>

〈유의사항〉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그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5)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 |  |   |
|--|---|
| ① 자가 → <b>문6)으로 같 것</b><br>② 전세 → <b>문5-1)로 같 것</b><br>③ 보증부월세 → <b>문5-1)로 같 것</b> | ④ 월세(사글세) → <b>문5-1)로 같 것</b><br>⑤ 비가구원 명의 주택 → <b>문9)로 같 것</b><br>⑥ 기타 → <b>문9)로 같 것</b> |
|--|---|

〈유의사항〉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가령, 할머니(가구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들(가구원이 아님) 명의로 해놓고 살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할머니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⑥ 비가구원 명의 주택' 에 해당됩니다.  
 ※ 점유형태 '⑥ 기타' 에는 무상 관사, 사택 등이 포함됩니다.

문 5-1) (문5) ②전세 ③보증부월세 ④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입니까?

- ① 민간임대주택                      ② 공공임대주택(양안대 국민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기준주택 매입·전세대 등)
-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④ 기타 임대주택

문 6) (문5)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집의 가격(현시가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	---	---	---	----

< 유의사항 >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집의 가격은 반드시 명목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령, 집이 (가구원이 아닌)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집의 가격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 7) (문5)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구입비용, 보증금 혹은 증·개축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자기돈(상속인 경우 포함)
- ②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 ③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 ④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혹은 모기지론도 포함)으로부터 빌림
- ⑤ 사채

문 8) (문5)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살았던 귀댁의 주택관련 부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㉞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관련 부채를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 원금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㉟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택관련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 단, 이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갚지 못한 이지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 :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비용만 포함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 없음 = '0' 으로 표시합니다.

문 8-1) (문5)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출상환액(이자포함)의 연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연체한 적이 없다                      ③ 2~3회
- ② 1회    ④ 4회 이상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가 없거나 2021년 이전에 주택관련 부채를 다 갚은 경우 '① 연체한 적이 없다' 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 9)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②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문 10)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택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시설종류	사용형태
㉠ 상·하수도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수세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 난방시설	① 연탄 또는 재래식(땀감) 아궁이    ④ 기름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② 연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⑧ 전기장판 ③ 나무·석탄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⑨ 기타(적을 것: _____)

문 1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귀택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 서비스에 체크해 주십시오.

주거복지 관련 사업	있다	없다
㉠ 영구임대주택	①	②
㉡ 국민·공공임대주택	①	②
㉢ 전세자금(용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지자체의 전세(용자)지원 포함)	①	②
㉣ 저소득층 월세지원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①	②
㉤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근로자·서민)	①	②
㉥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	①	②
㉦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 유의사항 >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기타'에는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지원, 부모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직장 여성 아파트), 행복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 ㉢의 경우 2021년 이전부터 입주하여 2021년 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① 있다'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 ㉣의 경우는 2021년 당해 연도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① 있다'로 응답합니다.

### VII. 생활비

문		항목	설명	월평균	전	백	십	억	단위
<p>&lt; 유의사항 &gt;                      ※ 생활비 : <b>신규가구 생성이후</b>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b>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b>                      ※ <b>전인세,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정하급,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복지 할인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비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b>                      ※ 할부 구매의 경우 <b>구입시점기준(2021년 구입)이며, 그 품목의 가격+12를 기입합니다.</b> 예) 2021년 10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총가격을 12개월로 나눈 금액(100만원)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2020년 중 24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하여 2021년에도 월 50만원씩 할부금을 내는 경우라도 2021년의 지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b>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총생활비에서 제외합니다.</b> 그 이유는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p>									
문 1)	식료품비	문 1-1) 가정 식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가정식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제사비용, 음주비용 제외 ※ 자간비(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월평균	전	백	십	억	만원
		문 1-2) 외 식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외식비는? ※ 직장인의 중식비(우로 중식비 포함), 가족(가구원이 아닌 비용은 사적이전 지출에 포함)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석식), 부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특자관에서의 무료식사 등	월평균	전	백	십	억	만원
		문 1-3) 주류·담배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주류·담배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류	월평균	전	백	십	억	만원
문 2)	주거비(주택구입비 제외)	문 2-1) 월세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 을 기입 ※ 전세, 자입인 경우 '0' (단, 자기이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액 기입	월평균	전	백	십	억	만원
		문 2-2) 주거관리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설비 및 수선비(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 포함),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전좌조비 등	월평균	전	백	십	억	만원
문 3)	광열수도비	문 3-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 에너지 비용처 포함)	월평균	전	백	십	억	만원
		문 3-2)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 에너지 파우처 포함)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전	백	십	억	만원
문 4)	가구·가사용품비	문 4-1) 가구·가사용품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가구·가사용품비는? ※ 가구, 가정용가전(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 CCTV 카메라, 식기주방용품, 가사청소 및 소모품(조리기, 화장지, 건구, 공기, 세탁خش용구 등), 침구 및 실내장식물, 가사서비스 비용(파출부, 청소비 등), 가전기 감, 정수기 대여료, 치료목적 아닌 비우체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이)용료 등	월평균	전	백	십	억	만원
		문 4-2) 교육료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교육료는? ※ 교육료는 베이비시터, 놀이방을 포함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제외함	월평균	전	백	십	억	만원
문 5)	의류 신발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의류·신발비는? ※ 의의(스포츠웨어 포함),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스포츠용 포함)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	월평균	전	백	십	억	만원	
문 6)	보건 의료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보건 의료비는? ※ 입원비, 외래진료비, 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인형, 콘택트렌즈 등, 보경구, 마스크, 손소독제, 치료용비우체(비)노인돌보미우체(이)용료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외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월평균	전	백	십	억	만원	
문 7)	교육비	문 7-1) 공교육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공교육비는? ※ (일학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초·중·고 제외), 문방구비, 보충수업비(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경우), 유학비, 아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월평균	전	백	십	억	만원
		문 7-2) 사교육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가정교사비, 학생의 어학연수비, 학습비우체 등	월평균	전	백	십	억	만원
문 8)	교양 오락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PC, 유선방송, 피아노, 장난감, 등산용품, 낚시터,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일반인의 여학학습비, 단체관람비 등), 비디오(DVD) 대여료, 액션강(지) 구입비, 회는 구입비, TV수신료, 아동용자전거 등	월평균	전	백	십	억	만원	

문 9)	교통 통신비	문 9-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교통비는? ※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대리운전비, 성인용자전거, 전동휠체어, 전동킥보드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9-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통신비는? ※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0)	기타소비지출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목욕료 등), 장난감(엔드믹, 시계, 귀금속 등), 경조사, 고체비행, 친목회비, 종교관련(선심일주 등) 비용, 보경정보원료(지속성보험 제외), 관혼상제(가구지출 기준), 용돈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경조비(축의금 부의금 등 타 가구 지출)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종교관련비용(선심일주 등)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비영리단체(기부금, 직장노조비, 친목회비 등) 이전지출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1)	사이 적전	문 11-1) 비 등 거 구 원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따로 사는 가구원(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현물 포함 ※ 자취비(월세 등), 학교 기숙사비, 생활장비, 용돈 등 단, 등록금 등 교육비는 7.교육비에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1-2) 기 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지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농사지어서 친인척에서 보낸 것(현금으로 환산) 포함 ※ 자취 결속 등으로 집을 사준 경우(전세금 포함)는 중·문 보아 제외 ※ 본인 명의가 아닌 부채에 대한 이자예컨대, 이틀 명의의 집에 대한 이자 내는 경우 포함	부모 월평균	천	백	십	원
				자녀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기타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2)	세 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세금? ※ (중·소·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취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 (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자동차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종합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부동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3)	사회보장부담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사보험료(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고용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4)	총 생 활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총 생활비는? ※ 총생활비 = 1~13의 합계 ※ 자금, 지속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기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말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독의 경우 이하 동일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V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활동: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2006.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⑥의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로** 표시)  
 ※ 단, 2020. 10. 1 ~ 2020. 12. 31 사이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면 됩니다.

성명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임시,일용 근로자		③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무급가족종사자·가사 또는 육아·환양 기타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해당 개월수
	1												
	2												
	3												
	4												
	5												
	6												
	7												
	8												
	9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문항 2로 가시오		문항 3으로 가시오		문항 4로 가시오		문항 5로 가시오		문항 6으로 가시오		문항7로 가시오	

< 유의사항 >  
 ※ **15세 미만의 경우 이틀만 기입**,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번호순서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여부에 모두 '1'로 표시(예,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모두 '1'로 표시하고 문항 2와 문항 5에서 소득파악).  
 ※ **개월수는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일한(해당) 개월수 기입**(예, 전년(2020)부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에 퇴직하여 3개월 동안 천 후 7월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개월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는 5개월임, 농업의 경우 12개월로 기입.)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 **주원활동구분**
-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 ②임시·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 ③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어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 ④ 농 림 축 산 업 10(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도 2021. 12. 31. 시점에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변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 또는 육아: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수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원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타: 실업자,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등

문 2)	상용근로자: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b> 각각이 벌어들인 <b>월평균 급여(원천징수전 총급여의 월평균)</b> 는 얼마였습니까? ※ 신규가구는 원가구와 달리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기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급여액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관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 ※ 순서는 <b>반드시</b>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이하 동일함). → <b>상용근로소득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b>		1	월평균	소득	임의	천	백	십	원	
		2	월평균	소득	임의	천	백	십	원		
		3	월평균	소득	임의	천	백	십	원		
		4	월평균	소득	임의	천	백	십	원		
		5	월평균	소득	임의	천	백	십	원		
		6	월평균	소득	임의	천	백	십	원		
		7	월평균	소득	임의	천	백	십	원		
		8	월평균	소득	임의	천	백	십	원		
		9	월평균	소득	임의	천	백	십	원		

문 3)	임시·일용근로자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기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보조기입란 3-a]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0년 12월까지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b> ※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전체 일한 횟(일)수를 생성 개월수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예) 2021년 5월 생성가구의 가구원 A가 5~10월까지는 월 20회, 11~12월까지는 월 10회 일하였던, 17.5회(140회/8개월)가 되어 반올림하여 18회로 기재 ※ 순서는 <b>반드시</b>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포함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A)	1회당(일당) 보수 (B)			
			1		백만	십만	일만	원	
			2		백만	십만	일만	원	
			3		백만	십만	일만	원	
			4		백만	십만	일만	원	
			5		백만	십만	일만	원	
			6		백만	십만	일만	원	
			7		백만	십만	일만	원	
			8		백만	십만	일만	원	
			9		백만	십만	일만	원	

3-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벌어들인 월평균 급여는 얼마였습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급여액 (A×B)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관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신규가구는 원가구와 달리 총급여의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순서는 <b>반드시</b>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 → <b>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b>		1	월평균	임의	천	백	십	원	
		2	월평균	임의	천	백	십	원		
		3	월평균	임의	천	백	십	원		
		4	월평균	임의	천	백	십	원		
		5	월평균	임의	천	백	십	원		
		6	월평균	임의	천	백	십	원		
		7	월평균	임의	천	백	십	원		
		8	월평균	임의	천	백	십	원		
		9	월평균	임의	천	백	십	원		

<p><b>문 4)</b> 고용주 및 자영자</p>	<p>※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p>																																																																																								
<p><b>[보조기입란 4-a]</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p> <p>※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은면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함.</p> <p>※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번호를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들과 총 매출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성명</p> <p>가구원 번호</p>	<p>월평균 매출액 (A)</p> <table border="1"> <tr><td>1</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2</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3</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4</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5</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6</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7</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8</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9</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able>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p><b>[보조기입란 4-b]</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p> <p>※ 경비에는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복리후생비, 공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번호를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들과 총 비용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성명</p> <p>가구원 번호</p>	<p>월평균 총비용 (B)</p> <table border="1"> <tr><td>1</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2</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3</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4</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5</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6</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7</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8</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9</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able>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p><b>4-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b></p> <p>※ 순소득은 월평균 총매출액에서 월평균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                  ※ 순소득은 소득세, <b>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b>                  ※ 순소득에는 <b>자기소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도 포함됨.</b>                  ※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 표(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금액을 기입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번호를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들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p>성명</p> <p>가구원 번호</p>	<p>월평균 순소득 (A-B)</p> <table border="1"> <tr><td>1</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2</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3</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4</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5</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6</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7</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8</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r><td>9</td><td>월평균</td><td>십억</td><td>억</td><td>천</td><td>백</td><td>십</td><td>원</td><td>만원</td></tr> </table>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원	만원																																																																																	



<p><b>4-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전입소득은 얼마였습니까?</b></p> <p>※ 전입소득은 총수입증에서 가구로 가지고 오는 금액이다. 신규가구 생성이후 1,500만원을 벌어 1,000만원을 재투자하고, 집으로 500만원을 가지고 왔다면 500만원을 신규가구 생성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값을 기입</p> <p>※ 그러므로 전입소득은 4-1의 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전입소득은 음수(-)가 없음.</p> <p>※ 순소득이 음수(-)인 경우도 전입소득은 있을 수 있음(즉, 0이 아닐 수 있음).</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반사향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전입소득							
		1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5)	<p>농림축산업 경영주</p> <p>※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p> <p>※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0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p>
------	--

<p><b>5-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b>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작하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p> <p>① 논</p> <p>② 밭</p> <p>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p> <p>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p> <p>※ 없음 0</p>	(참고) 1평≒3.3 m <sup>2</sup>						
총							m <sup>2</sup>
총							m <sup>2</sup>
총							m <sup>2</sup>
총							m <sup>2</sup>

[보조기입란 5-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농림·축산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평균 판매수입, 월평균 자가소비액, 월평균 이전 소비액을 기입함.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판매량 = 판매량(재고의 판매량 포함)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 량 + 입차료(소작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이전소비액은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축산업에서 총 수확량은 가축의 총보유량임.										
구분	에 시	종류	총 수확량 (a+b+c)	판매량 (종자, 소작료 포함)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 ÷ 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 ÷ 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 ÷ 10)
곡류	미곡: 메벼, 멥쌀, 찰벼, 찰쌀 곡류: 미곡을 제외한 맥류, 잡곡, 콩류, 감자고구마등 서류 등									
채소 과일류	봄 채소: 봄동, 미나리, 냉이, 달래, 오이, 쪽파, 파, 당근, 양파, 호박,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송이, 아욱, 등 과일: 사과, 딸기, 토마토, 영두 등									
	여름 채소: 셀러리, 양파, 부추, 감자, 풋고추, 마늘, 무, 오이, 가지, 호박, 배추, 양배추, 생강, 깻잎, 밀부, 유수수, 피망 등 과일: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가을 채소: 고구마, 붉은고추, 당근, 양파, 파, 무, 콩, 배추, 시금치, 호박 등 과일: 배, 사과, 감, 대추, 유자, 키위, 은행 등									
	겨울 채소: 우엉, 인근, 아욱, 양파, 봄동, 시금치 등 과일: 사과, 귤 등									
기타 작물	특용작물: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달래,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기타농작물: 화훼, 봉일, 파수프, 봉모, 묘목 등 임산물: 밤, 잣, 호도, 도토리, 자연산 버섯이나 나물, 장작 등									
총 계										
축산업	소, 젓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청신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기타 가축(면양 등)									
총 계										

5-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월평균 자가소비액, 월평균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A)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자가소비액 (B)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단	만	원	천	백	십	원	천	백	십	원	천	백	십	원	천	백	십	원	천	백	십	원
단	만	원	천	백	십	원	천	백	십	원	천	백	십	원	천	백	십	원	천	백	십	원

- ※ 재고판매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 보조기입란 5-a의 합계를 기입.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 문항 8의 재산소득에 기입
- ※ 없음 0

<b>5-3.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농업관련 월평균 기타접수입은 얼마였습니까?</b> ※ 농업접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벗짚단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b>월평균 접수입 (D)</b>						
	<b>월평균</b>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b>[보조기입란 5-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농·임산물 생산, 가족사육에 소요된(농업경영비) 세부항목의 월평균 지출</b> ※ 농림축산업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예 시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b>월평균 품목별 비용</b>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돌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b>월평균</b>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b>월평균</b>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경비	영농광열비(유류대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입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업부분 조세부담금, 농업부분 이차비용, 감가상각비, 농기계 할부금, 영농접지출	<b>월평균</b>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b>월평균</b>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사용가능 개월수(내구 개월수)을 직분**하여 그 사용가능 개월수로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를 **12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 **10만원(=1200만원÷120개월)으로 기재**
- ※ 감가상각비는 농기계를 일시금으로 구입한 것의 감가상각비를 기재함.
- ※ 영농광열비는 벼·고추 등 농작물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명 및 난방 등.
-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b>5-4.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농·임산물 생산과 가족사육에 소요된 월평균비용은 얼마였습니까?</b>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b>월평균 비용 (E)</b>						
	<b>월평균</b>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b>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접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구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귀 가구의 월평균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b> → <b>농림 축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기시오</b>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b>월평균 순소득 (A+B+C+D-E)</b>						
	<b>월평균</b>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b>문 6)</b>	어업 경영주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

<b>[보조기입란 6-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 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b> ※ 용어 설명은 5-a와 동일함.									
분류	예 시	종류	월평균 판매량 (a)	월평균 자가소비량 (b)	월평균 이전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월평균 판매수입 (만원) (A=a*p÷10)	월평균 자가소비액 (만원) (B=b*p÷10)	월평균 이전소비액 (만원) (C=c*p÷10)
어로 어업	이천,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 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b>6-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b> 출하한 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의 월평균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A)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자가소비액 (B)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이전소비액 (C)							합계 (A+B+C)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 없음 0

<b>6-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b> 사업관련 월평균 잡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잡수입 (D)						
* 사업잡수입에는 사업소득과해보상금, 사업용폐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월	평	간	단	원	십	억

<b>[보조기입란 6-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b> 사업활동에 소요된 세부항목의 월평균 지출																											
* 가구에서 가구원이 사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함.																											
지출항목		예 시										생성시점부터 2020년 12월까지 월평균 지출액															
여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양식지출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수산가공지출		자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인가공수수료, 기타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b>6-3.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b> 사업활동에 소요된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비용 (E)						
* 없음 0												월	평	간	단	원	십	억

<b>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사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b> 귀 가구의 월평균 사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순소득 (A+B+C+D-E)						
→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기시오.												월	평	간	단	원	십	억

<b>문 7) 기타 근로소득: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b> 위에 응답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기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문1) ~ 문6)에서 응답한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비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기타 근로 소득																							
		1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2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3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4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5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6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7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8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9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월	평	간	단	원	십	억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다음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기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세부 항목	금 액							
문 8)	재 산 소 득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얻은 재산소득의 형태와 월평균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을 기입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일시금 금액을 신규생성기간으로 나눔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기 타(자격증 대여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9)	사 회 보 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받은 사회보험의 형태와 월평균 소득액은? ※ 일시불은 제외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국민연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특수직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보훈, 별정직우체국)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애연금, 유족급여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0)	민 간 보 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받은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월평균 개인연금액은?	①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퇴직연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1)	기 정 부 보 조 금 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정부(동 사무소)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의 형태와 월평균 금액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문14, 문15번 문항에 기입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 ⑦, ⑧, ⑩의 경우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포함.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외에 수련회비, 자활장려금, 육아돌봄비 지원, 직업훈련수당, 교통안전공단 지원금,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소지원 물품, 보건소의료비 지원(5대 암, 치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자동차세 감면, 교통비 지원, 수학여행 비용, 쓰레기봉투 등이 있음. 이들은 기타에 포함.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① 장애수당(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기초연금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한부모가족지원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보육료 지원 (i-사랑 카드, 아이즐거움 카드)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⑦ 아동수당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⑧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⑩ 농어업 정부보조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⑪ 긴급복지지원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⑫ 기타 바우처 지원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⑬ 근로장려세제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⑭ 자녀장려세제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⑮ 급식비 지원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⑯ 에너지 감면 또는 보좌전기료, 가스비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좌전화, 인터넷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⑱ 기타( )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⑳ 지방보조금(지역형 생계, 지역형 긴급복지지원, 지역형 청년수당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㉑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2)	기타소득	이 외에 신규가구생성 이후 2021년 12월까지 발생한 기타소득의 유형별 금액은?  ※ 퇴직금의 경우 목돈으로 받은 경우 여기서 파악.	① 중여·상속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② 경조금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⑥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⑦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쉐eton 등)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문12-1	현금	신규가구생성 이후 2021년 12월까지 돌려받은 현금금 총액은?	세금환급금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 없음 0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다음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이전(2020.10.1~12.31)에 분기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금 액									

문 13)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월평균액은?  ※ 분가이후 주택구입용과 결혼자금 제외 ※ 일회성 보육대가 포함. 단, 월금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기입 ※ 부모 자녀의 경우 가구주 기준 ※ 신규가구에서 분리되었거나 새로 들어온 가구원 중, 신규가구 '생성시점~2021.12.31' 기간 중 3/4 미만 동안 생계를 같이한 사람의 소득은 기타에 기입	부모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자녀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기타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민간보조금(현금 및 현물)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월평균 금액은?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문 1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및 출생급여)	① 생계급여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년 동안 정 부로부터 받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연간 수급 개월수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② 주거급여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년 동안 정 부로부터 받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연간 수급 개월수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③ 교육급여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년 동안 정 부로부터 받은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연간 수급 개월수	월평균	없음	일액	천	백	십	원

※ 없음 0

**IX. 부채, 이자**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 12. 31 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액							
문 1)	부채태	<p>2021.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p> <p>※ 명의기준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포함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⑤카드빚'에 포함하고, 현금 할부구매는 '⑥이자 할부구입 미리판 깃돈에 포함 ※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가 있으면 '②일반사채'에 기입하고, 이자가 없으면(무이자) '⑥기타부채'에 기입함. ※ 자동차 구매의 경우, 카드할부이면 '⑤카드빚'으로 기록하고, 자동차 관련 대출은 '①금융기관대출'로 기록 ※ 밀린 월세, 교통신용카드(주민등록금, 시·도·군청 연체금 등은 '⑥기타부채'에 기입함. ※ 세부항목별로 부채가 없는 경우, '0'</p>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일반사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카드빚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미상환금, 구입한 자동차 카드 할부)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⑤ 외상, 할부 구입, 미리판 깃돈 ※ 미리 판 깃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⑥ 기타부채( )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2)	이자	<p>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월평균 얼마였습니까?</p> <p>※ 명의기준 ※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고 있는 경우, 원금을 제외한 '순수이자'만 기입 ※ 연체한 경우, '0'</p>	① 신규가구 생성이후 거주하였던 주거관련 부채의 연간이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주거이자 제외) 기타 연간이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3)	부채용도	<p>2021.12.31. 기준으로 다음 각각의 항목별 부채 금액이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p> <p>※ 부채가 없는 경우 '0' 기재 ※ 항목별 부채 비율의 합은 '100' 이어야 함. (단, 부채가 없는 경우, 합은 '0')</p>	① 생활비(생계비)						%	
			② 주택관련 자금 (전월세보증금 포함)						%	
			③ 교육(학자금마련 포함)						%	
			④ 의료비						%	
			⑤ 빚 갚음						%	
			⑥ 기타 ( )						%	
			총 부채	1	0	0			%	

※ 없음 0

**X.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12.31 기준, 명의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의 사업장(가계)도 포함된다.)

		세부항목	금액						
문 1)	소부동산	2021.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현시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② 주택의 건물(가족명의의 사업장(가계)·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③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부동산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2)	점부동산	2021.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가계,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중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② 기타(원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계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3)	금융자산	2021.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별 가격은? ※ 가구원 전부 파악	① 예금(적축예금, 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② 적금(장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④ 불입한(타기 전) 갯돈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받은 것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4)	농기계	2021.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형별 가격은? ※ 기타에는 살포기, 이앙기, 미중기(도청기), 보행관리기, 로타리 등이 포함됨.	① 트랙터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② 경운기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③ 콤팩트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④ 트랙터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⑤ 기타( )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5)	농축산물	2021.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애원음 및 식용 가죽 제외	① 소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② 돼지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③ 닭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④ 제고농산물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⑤ 기타( ) ※ 유실수 포함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6)	자동차	2021.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영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로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별책을 참조하여 환산해 주십시오.	보유대수	단위					만원
			대	대	십억	억	천	백	
문 7)	기타재산	2021.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유형별 가격은?	①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② 영업용 자동차·자동차 번호 값, 오토바이·짐막, 굴삭기(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③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④ 기타( )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없음 0



### XI. 생활여건

문 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귀댁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b>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small>*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차임' 혹은 '무상 인거'인 경우 ③ '비해당'에 응답</small>	①	②	③
㉡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b>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b>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b>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small>*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 ③ '비해당'에 응답</small>	①	②	③
㉤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b>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b>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b>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small>* 신규가구 생성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① '있다'에 응답</small>	①	②	
㉧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b>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지급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small>*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급으로 인을 받는 가구는 ③ '비해당'에 응답</small>	①	②	③

문 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귀댁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경험을 파악하면 됩니다.)

구 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b>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b>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b>균형 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b> 를 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부	
㉢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b>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가구 내 성인들이 <b>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b> 적이 있습니까? (㉠에서 ①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③ 1-2개월 동안	① → ㉠로 갈라라	② → ㉠로 갈라라	③ → ㉠로 갈라라	
㉣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b>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b>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b>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b>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b>배가 고파데도 먹지 못한</b>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그 밖에 의료급여 특례, 자활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합니다.

문 1) 귀댁은 신규가구 생성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2)로 갈 것**                      ② 없다 → **문2)로 갈 것**

**< 유의사항 >**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21년에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②없다' 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다 → **문2)로 갈 것**
- 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 → **문1-3)으로 갈 것**
- ③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문1-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2021년 1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단, 급여신청을 2021년 12월에 하였고 선정은 2022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서 2021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21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속 수급을 받다가 중간에 탈락한 후, 재신청하여 다시 수급한 경우에는 재신청 결과에 대해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4개 급여를 모두 신청해서 수급하였다가 탈락하고, 5월에는 의료, 주거급여만 신청해서 수급 받게 되었다면 ②로 응답합니다.

문 1-3) (문1-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3-1)     문 1-3-2)     문 1-3-3)     문 1-3-4)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② 자동차가 있어서
-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⑦ 잘 모르겠다.

문 1-4) (문1-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다가?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4-1) 생계급여  문 1-4-2) 의료급여  문 1-4-3) 주거급여  문 1-4-4) 교육급여

- 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 ② 빚을 내어서 생활
- ③ 민간단체의 도움
- ④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 ⑤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 ⑥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 ⑦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 ⑧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 귀댁은 신규가구 생성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받은 적이 있다 → 문2-1)로 갈 것
- ② 받은 적이 없다 → XII-1.근로장려제에 로 갈 것

< 유의사항 >  
 \* 신규가구 생성 이후 2021년 1년 동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개라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신규가구 생성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1) 생계급여

첫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두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세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문 2-1-2) 의료급여

첫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두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세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문 2-1-3) 주거급여

첫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두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세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문 2-1-4) 교육급여

첫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두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세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유의사항 >  
 \* 수급과 탈피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신규가구 생성 이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하나라도 받은 급여가 있다면**,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2-2-1)  생계급여      문 2-2-2)  의료급여      문 2-2-3)  주거급여      문 2-2-4)  교육급여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④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 ⑨ 기타(적용 것 : \_\_\_\_\_)

< 유의사항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중간에 탈피가 되었다더라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수급한 **최초 기준으로 판단** 해서 그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 2-3)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문 2-3-1) 생계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2) 의료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3) 주거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4) 교육급여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응답해주시고**,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2021년에 받은 모든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2021년 **12월 말까지 받은 급여가 있다면**, 앞으로 얼마 후에 각 급여별로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3-1)  생계급여      문 3-2)  의료급여      문 3-3)  주거급여      문 3-4)  교육급여

- ① 6개월 이내
- ② 6개월 후 ~ 1년 이내
- ③ 1년 후 ~ 3년 이내
- ④ 3년 후
- 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⑥ 잘 모르겠다.

문 4) (문2)의 ⑩번 응답자만 귀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12월 말까지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각 급여별로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4-1) <input type="checkbox"/>	문 4-2) <input type="checkbox"/>	문 4-3) <input type="checkbox"/>	문 4-4)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①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 ②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
- ③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 ④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 ⑤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 ⑥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 ⑦ 가족의 병이 나아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 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 5) (문2)의 ⑩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여러 지원 중, 귀택이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는 무엇입니까? (생계비를 제외하고 하나만 응답)

- |          |                    |
|----------|--------------------|
| ① 의료비 지원 | ④ 자활관련 지원          |
| ② 교육비 지원 | ⑤ 없다               |
| ③ 주거비 지원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 XII-1. 근로(자녀)장려세제

※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 자녀장려세제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문 1)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문 1-1)       문 1-2)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①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 ③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④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문 2) 귀댁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둘 다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 ② 근로장려금만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 ③ 자녀장려금만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 ④ 둘 다 신청한 적 없다      → **문 3)으로 갈 것**

〈유의사항〉

※ 5월에 신청을 못한 경우, 6-11월 동안 기간 후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 후에 신청한 경우도 신청한 것으로 응답합니다.

문 2-1) 귀댁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둘 다 받았다      → **문2-2)로 갈 것**
- ② 근로장려금만 받았다      → **문2-2)로 갈 것**
- ③ 자녀장려금만 받았다      → **문2-2)로 갈 것**
- ④ 둘 다 받지 못했다      →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유의사항〉

※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타 정부보조금란의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란에 정확한 급여액을 기입함.  
 ※ 5월에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급여가 지급되며, 기간 후 신청을 한 경우는 지급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됩니다. 이 경우도 지급받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문 2-2) 수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① 아이들 교육비    ② 일상생활비    ③ 의료비    ④ 문화오락비    ⑤ 저축    ⑥ 기타

문 2-3) 귀댁의 근로(자녀)장려금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주는 도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편이었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 2-4) 귀댁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는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일할 의욕이 매우 감소되었다
- ② 일할 의욕이 약간 감소되었다
- ③ 일할 의욕에 변화가 없었다
- ④ 일할 의욕이 약간 증가되었다
- ⑤ 일할 의욕이 매우 증가되었다

문 3) 귀댁은 **금년(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를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둘 다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②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 ③ 자녀장려세제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 ④ 둘 다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 ⑤ 잘 모르겠다

###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㉞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①	②
㉟ 의료비 지원	①	②
㊱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㊲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 서비스 등)	①	②
㊳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㊴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㊵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①	②
㊶ 상담서비스	①	②
㊷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①	②
㊸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	①	②
㊹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㉞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급여),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근로장려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말한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소득은 포함 안 됨.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통비, 학비지원, 바우처 지원금 등 용도가 한정된 지원은 포함 안 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㉟의 물품지원에 체크하도록 한다.
- \* ㉟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인)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천공, 천물, 재활서비스 모두 포함). 기증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하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㊲ 주택 관련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㊵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자활 공공근로를 포함한다.
- \* ㊶ 상담서비스: 고민 및 갈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말한다.
- \* ㊷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대출해주거나 국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융자,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저소득층 창업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있다. 단,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 관련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 \* ㊸ 개인발달계좌: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가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다담이웃통장,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이 포함된다.
- \* ㊹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공공후견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은 바우처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문 2) 2021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갈 것**
- ② 아니요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①	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①	②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①	②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①	②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①	②
㉥ 아이돌봄지원	①	②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①	②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①	②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①	②
㉩ 에너지바우처	①	②
㉪ 기타 바우처서비스(적을 것: _____)	①	②

〈 유의사항 〉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한다.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여된 진료비용 고우와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아이돌봄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원 등 돌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기관 및 유치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 ※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기존 항목이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과 '언어발달지원' 을 통합하여 '장애아동가족지원' 로향 신설하였다.
- ※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는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 ㉩ 에너지 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 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임신부가 있을 경우 난방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함.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대상 바우처이다.
- ※ ㉪ 기타 바우처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내서비스, 정실질환자 토달케어 서비스,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등의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자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목욕, 배설 등) 또는 가사지원(세탁, 청소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문 3) 2021년 1년간 가구원 중에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단, 5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① 예 → 문3-1), 문3-2) 응답 후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으로 갈 것  
 ② 아니요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으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귀댁이 지불하신 금액은 월단위 얼마였습니까?

월단위 

백만	십만	일만	천
----	----	----	---

 천원

< 유의사항 >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단위)를 말함.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 동안 급여(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급여(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방문요양(목욕, 옷입히기, 취사, 주변정돈 등)	①	②
㉡ 방문목욕(차량 이용 목욕 제공)	①	②
㉢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①	②
㉣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①	②
㉤ 단기보호(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보호)	①	②
㉥ 기타재가급여(휠체어,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복지용구)	①	②
㉦ 시설급여(장기요양보호시설 이용)	①	②
㉧ 특별현금급여(특별한 사유로 가족이 보살피는 경우)	①	②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㉗ 기초연금 지원	①	②
㉘ 의료비 지원	①	②
㉙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①	②
㉚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㉛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 서비스 등)	①	②
㉜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㉝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㉞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㉟ 주·야간보호 서비스(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①	②
㊱ 노인일자리사업	①	②
㊲ 사회참여 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나들이, 자조모임 등)	①	②

### < 유의사항 >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 \* ㉘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사인)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금, 재향서비스 모두 포함). 노인 안경진 및 개인 수술,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㉙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지자체 노인결식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무료로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노인이 일부 자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 ㉚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방문, 전화, ICI를 통한 안전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예' 라고 응답한다.
- \* ㉞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생활관리사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㉟ 노인일자리사업: 만60세~64세의 예외적 참여를 허용하나,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자체를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하므로 만60~64세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응답하지 않는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생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청소년수련관 등이다.
- \* ㊲ 사회참여 서비스: 문화여가활동(노래교실 등)과 평생교육활동(한글 교실 등) 뿐만 아니라, 체험여행활동(나들이, 공연 관람 등),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는 자조모임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은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아동수당	①	②
㉡ 공공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①	②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①	②
㉣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①	②
㉤ 방과후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등)	①	②
㉥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①	②
㉦ 학비 지원	①	②
㉧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①	②
㉨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①	②
㉩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①	②
㉪ 영유아보충식품지원(영양플러스사업 포함)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의 유형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응답한다.

< 유의사항 >  
 \* ㉡ 공공어린이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서울형/부산형 어린이집은 모두 공공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어린이집에 해당한다.  
 \*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가구의 소득 혹은 아동의 출생순위 등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를 말한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료 할인 (직장어린이집에서의 보육료 할인이 직장어린이집 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것이라면 공공부문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의해 할인을 받는 것이라면 포함된다.  
 \* ㉣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취약아동뿐만 아니라 미취학아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므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지원도 포함된다.  
 \* ㉦ 학비 지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학습비, 방과후교실 등록비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비 지원과 장애영유아 무상교육은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에 해당한다.  
 \* ㉧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교실은 미술, 음악, 체육 교육 및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비우체서비스인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 포함된다.  
 \* ㉩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을 통해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에 해당한다.

다음 문2)~문6)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 각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아래 응답지에 개별 아동(자녀)별로 아동의 가구원 번호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1) 귀댁의 아동(자녀) □□□은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이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2-2) 귀댁의 아동(자녀) □□□은 아기 때부터 앓아온 선천성 기형이나 선천성 질환(심장질환 등)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 2쪽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하십시오)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2-1) 체중	문2-2) 선천성 기형 및 질환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아동(자녀) □□□은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은 이용여부에 '㉔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문 4) 귀댁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5)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 0000

문 6)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 0000

구 분	< 보 기 >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민간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포함) ④ 가정어린이집(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⑤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⑥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⑦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⑧ 학원	⑨ 개인·그룹과외 ⑩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⑪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만6세 이상이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 및 특기 지도 등을 하는 경우) ⑫ 방과후 교실(만6세 이상이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기타	⑬ 친·인척(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⑭ 이웃(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⑮ 공적 지원 아이 돌보미(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⑯ 민간 아이 돌보미 ⑰ 기타(적을 것 : _____) ⑱ 그 외 보육시설(방과후 학교 초등보육프로그램,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만일세 이상의 학원, 영아유치원, 놀이학교, 선교원, 문화센터 등)	

문3)~문6) 응답지

아래 응답지에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3) 이용여부		문4) 이용기관		문5)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문6) 한 달 평균 보육비 (부대비용 포함)
		한다	안한다				
		①	②	A		월평균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만원	월평균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만원
				B			
				C			

##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VII.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㉞ 장애인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①	②
㉟ 장애수당(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①	②
㊱ 장애아동수당	①	②
㊲ 의료재활서비스	①	②
㊳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등)	①	②
㊴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㊵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㊶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㊷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①	②
㊸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①	②
㊹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①	②
㊺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	①	②
㊻ 자동차 관련 지원	①	②
㊼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㉞ 장애아동수당: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매달 일정 지원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㉟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와는 별개의 제도임에 주의한다.
- \* ㊲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진단비 검사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보장구 지원 및 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이 포함된다.
- \* ㊵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장애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㊶ 주택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㊷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바우처)도 포함된다.
- \* ㊸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서비스: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이용,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회복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자판기·매점 등 사업권 제공 등을 말한다.
- \* ㊼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공공후견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XVII. 가족

- 문 1) **2021년 1년간**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 포함합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br>①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br>②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br>③ 자녀교육 혹은 행동<br>④ 가구원의 건강<br>⑤ 가구원의 알코올 | ⑥ 가족 내 폭력<br>⑦ 가구원간 관계<br>⑧ 가구원의 가출<br>⑨ 주거관련 문제<br>⑩ 기타(적을 것 : _____)<br>⑪ 자녀의 결혼문제 |
|---|--|

- 문 2) 다음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021년 1년간** 귀댁은 어떠하였습니까?  
 (※ **독신가구**이면서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비가구원인 직계혈족 1촌이 있는 1인 가구(독신가구)이지만 지난 1년간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 202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원용(유형3)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3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17, 8294, 8215, 8188,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원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 패널 ID	가구 생성자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자수	개인패널ID (인포시트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 사유 (번호기재)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⑩ 기타	가구주성명		대리응답자 성명      가구원번호
	② 아니오			① 비헤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⑦ 군대 혹은 전부경찰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부경찰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분화)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입소			
				③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3급    ⑩ 기타			
주소지	행정코드				시·도	구·시·군	동·읍·면
* 비응답가구원은 거주하는 원주소로 기재함		상세주소					
통·리    번지    호 (    아파트    동    층    호 ) ☎ (    )    -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분	총방문횟수	총    회	※ 미완사유코드			
1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① 비헤당(완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계중(원인미약) ④ 일부방향 미완 ⑤ 조사거부 ⑥ 뇌병변장애 ⑦ 심한 지적, 자폐성장애 (기타1,2급) ⑧ 사망 ⑨ 기타			
2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문 1) 귀하는 2021년 1년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보훈연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2)로 갈 것**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공적연금 종류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국민연금 → **문1-2)로 갈 것**
- ② 공무원연금
- ③ 사립학교교원연금
- ④ 군인연금
-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 ⑥ 보훈연금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4)로 갈 것**

< 유의사항 >  
\* 중복응답일 경우, 아래 문1-2)~문1-6)에서 해당하는 모든 공적연금의 급여종류와 금액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 1-2) (문1-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령연금
- ② 장애연금
- ③ 유족연금
- ④ 분할연금
- ⑤ 사망일시금
- ⑥ 반환일시금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3)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국민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억	천	백	십	일	

 만원

연금 연간 

십	일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일	

 만원

문 1-4) (문1-1)의 ②~⑤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b>1순위</b>	<b>2순위</b>
------------	------------

- ①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 ④ 퇴직수당
- ②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등)
- ⑤ 부조급여(제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③ 체해보상급여(장해연금,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사망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공무원요양비 등)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5) 그렇다면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문1-4)에서 응답한 특수직역연금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	--	--	--	--	--	--	--	--	--

 만원

연금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	--

 만원

문 1-6) (문1-1)의 ⑥, ⑦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보훈연금 및 기타 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	--	--	--	--	--	--	--	--	--

 만원

연금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	--

 만원

**고 용 보 험**

문 2)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실업급여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 ②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 ③ 기타 현금급여 (훈련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 현금지원)
- ④ 현물급여 (근로자복지금대부 등 비현금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문 2-2) 그렇다면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고용보험의 총 급여액(현금+현물)은 얼마입니까?

(※ 현금급여액은 본인이 직접 받은 현금을 말합니다.)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	--

 만원

**산 재 보 험**

문 3)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B. 근로**

문 1) 귀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임금근로자 → **문2)~문6)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② 자영업, 고용주 → **문2)~문5)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③ 무급가족종사자 → **문7)으로 갈 것**
- ④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 **문7)으로 갈 것**
- ⑤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 **C.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문항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가구용 III.경제활동상태의 '문1)근로능력정도' 및 '문3)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임금근로자' 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월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포함) 지할,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도 임금근로자로 응답
2. 자영업, 고용주: 혼자 혹은 유급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무급가족과 함께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3.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나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4.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실업자(2021.12.31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한 자), 근로무능력의 사유가 아닌 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를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5.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근로의사와 무관하게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 다음 문2) ~ 문6)까지는 취업자용(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질문입니다.**

문 2) (문1)의 ①~③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사업)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 휴직한 경우는 일자리(직장)나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등 불규칙한 일자리 구분방식  
 ① 일하는 장소(00건설현장, 00식당 등에서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② 일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더라도 중간에 1달 이상의 공백기간 없이 같은 일(건설현장인부, 식당일, 파출부 등을 계속 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③ 같은 일을 했다더라도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월에 일하고 5월에 일할 경우, 1월에 했던 일과 5월에 했던 일을 다른 일자리로 취급함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사업)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①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 ⑩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
| ② 정리해고로                       | ⑪ 자기(가족)사업을 새로 하려고       |
| ③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 ⑫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
| ④ 정년퇴직                        | ⑬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 ⑤ 계약기간이 끝나서                   | ⑭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떨어져서 |
| ⑥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 ⑮ 학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
| ⑦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 ⑯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
| ⑧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⑰ 출산, 육아 때문에             |
| ⑨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⑱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3) (모든 취업 응답자) 2021년 12월 31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문 4) (모든 취업 응답자) 2021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연간 총   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일

< 유의사항 >  
 ※ 불규칙적으로 일을 한 경우, 하루라도 일한 달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3월에 2일, 4월에 15일, 7월에 20일, 8월에 20일 일 한 경우 '4개월' 로,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57(2+15+20+20) \div 4$ 개월=14.25일이므로 반올림 적용하여 '14일' 로 기입합니다.  
 ※ 직장에 계속 있기는 하였지만 몇 개월간 휴직을 한 경우(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7개월 휴직을 하였다면 연간 총 근로 개월은 5개월로 적어주고, 평균근로일수도 실제 일한 달의 평균을 적어주면 됩니다.  
 ※ 1년간 농사를 지은 경우는 12개월로 간주합니다.

문 5) (모든 취업 응답자) 2021년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 주당 평균    시간  
 일한달의 월 평균 임금 : 월 평균     만원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  
 일한날의 시간당 임금 : 시간당     만원

< 유의사항 >  
 ※ 1년 동안 직장(사업)의 변동이 있었다면 가장 최근의 직장(사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 예를 들어 농사나 일용 건설 노동자의 경우라면 1년 중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6)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노동조합이 없음
- ②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 ③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 ④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 다음 문7) ~ 문8)까지는 미취업자용 (근로능력있음) 질문입니다.

문 7) (문1)의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를 구해보셨습니까?

① 그렇다 → 문7-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8)로 갈 것

〈 유의사항 〉

- ※ 구직활동이란 원서접수, 취직시험 응시부터 친구, 친지에게 소개부탁,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 일이 주어졌다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근로의사가 없는 사람은 '②아니다' 로 응답합니다.

문 7-1) (문7)의 ①번 응답자만 마지막으로 직장(사업)을 그만둔 후 총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구직 기간    

--	--

 년    

--	--

 개월

문 7-2)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나이 때문에</li> <li>② 성차별 때문에</li> <li>③ 외모 때문에</li> <li>④ 학력이 낮기 때문에</li> <li>⑤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li> <li>⑥ 경력이 부족해서</li> <li>⑦ 건강문제로</li> <li>⑧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li> <li>⑨ 신용불량자라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⑩ 가사일 때문에</li> <li>⑪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li> <li>⑫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li> <li>⑬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li> <li>⑭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li> <li>⑮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li> <li>⑯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li> <li>⑰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li> <li>⑱ 기타(적을 것 : _____)</li> </ul> |
|---|--|

문 7-3) (문7)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취업 혹은 사업을 한다면, 한 달 벌이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월    

--	--	--	--	--

 만원 정도

〈 유의사항 〉

- ※ 자영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 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문 10) 귀하는 2021년 1년 동안에 어떤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하셨습니다?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기술사  | ⑤ 기능사                          |
| ② 기능장  | ⑥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
| ③ 기사   | ⑦ 자격증 없는 기능자                   |
| ④ 산업기사 | ⑧ 없다 → C.생략실례 만족 및 인식 문항으로 갈 것 |

문 10-1) (문 10)의 ① ~⑧번 응답자만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하셨다면, 다음 중 어떤 직종에 해당합니까?

1순위		2순위	
-----	--	-----	--

- |          |         |                |
|----------|---------|----------------|
| ① 기계·금속  | ⑪ 국토개발  | ⑳ 공예           |
| ② 화공·세라믹 | ⑫ 농업    | ㉑ 사무관리         |
| ③ 전기·전자  | ⑬ 해양    | ㉒ 음료품·식료품      |
| ④ 통신     | ⑭ 산업디자인 | ㉓ 위생           |
| ⑤ 조선     | ⑮ 에너지   | ㉔ 보건·의료·사회     |
| ⑥ 항공     | ⑯ 환경    | ㉕ 금융·무역·유통     |
| ⑦ 섬유     | ⑰ 안전관리  | ㉖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
| ⑧ 토목·건축  | ⑱ 산업응용  | ㉗ 외국어·관광       |
| ⑨ 광업자원   | ⑲ 교통    | ㉘ 기타           |
| ⑩ 정보처리   |         |                |

< 유의사항 >  
※ 문10)에서 응답한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1년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음직하다
- ② 매우 조심해야 한다
- ③ 잘 모르겠다

문 2) 귀하는 만약 지역사회 내에서 누군가 위급하게 도움을 필요(예: 헌혈 등)로 하는 경우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 3) 귀하의 지역사회 내에 새롭게 화장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 같은 비선호시설이 입지한다면 받아들여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 4) 귀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 유의사항 >

※ 정기적인 기부, 기부금 교회사 절에 내는 십일조, 시주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2021년 1년간 얼마 정도 기부하십니까?

연간 총액 

십	천	백	십	원

문 4-2)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2021년 1년간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연간 

--	--	--

 회

문 5)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① 있다 → 문5-1)로 갈 것      ② 없다

< 유의사항 >  
 ※ 계부, 계모도 포함하여,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응답합니다.  
 ※ 이 문항에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란 생기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왕래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왕래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문 5-2) (문5)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전화통화 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전화통화 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 전화통화 외 카톡, 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포함합니다.

문 6)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㉔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㉕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㉖ 장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㉗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㉘ 남성과 여성 모두 기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㉙ 가정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㉚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㉛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 유의사항 >  
 ※ 문1), 문2), 문3)은 신규가구원만 응답하는 문항으로, 신규가구원용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피움 → 문 4-1), 문4-2), 문4-3) 응답 후 문 5)로 갈 것
- ② 피우지 않음 → 문 5)로 갈 것

문 4-1)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비
--	--	--	----

문 4-2)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문 4-3)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②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③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④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계획이 없다.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입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0시간(없음)
- ② 1시간 미만
- ③ 1시간 이상 → 문5-1)로 갈 것

문 5-1) (문 5)의 ③번 응답자만) 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으셨습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간
--	--	----

문 6) (모든 응답자)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월 1회 이하
  - ② 월 2~4회
  - ③ 주 2~3회
  - ④ 주 4회 이상
  - ⑤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 7)로 갈 것
- } → 문6-1)로 갈 것



문 8) (모든 응답자)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조사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㉞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㉞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㉞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㉞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㉞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㉞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㉞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㉞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㉞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㉞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㉞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 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㉞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㉞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0) 살다보면 부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다름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1년 1년간(2021. 1. 1 ~ 2021. 12. 31) 당신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례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없음	1~2번	3~5번	6번이상	비례당
㉞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①
㉞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①
㉞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④	①



문 11) 귀하는 귀하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독신가구이면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 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2)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 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3)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는 경우(비가구원 포함)에만 '비해당' 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4)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만(비가구원 포함) '비해당' 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문 15)~문 17)은 신규가구원만 응답하는 문항으로, 신규가구원용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인번호  
제 331009 호



## 202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17차 신규가구원용(유형4)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3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17, 8294, 8215, 8188,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원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 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스템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응답 여부	① 예 ② 아니요	☐ 사유 (번호기재)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① 비해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② 해외거주(기려기부도)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부경찰 ⑤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분화)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입양 ⑥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3급    ⑩ 기타	가구주성명	대리응답자		성명	가구원번호				
주소지	행정코드				시·도	구·시·군	동·읍·면						
* 비동거가구원은 거주하는 원주소로 기재함		상세주소	통·리 _____ 번지 _____ 호 ( _____ 아파트 _____ 동 _____ 층 _____ 호) ☎ ( _____ ) _____ - _____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 분	분	총방문횟수	총 _____ 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 미완사유코드 ① 비해당(완료) ② 늦은 귀가 ③ 장기출타 ④ 부계중(원인미파악) ⑤ 일부문항 미완 ⑥ 조사거부 ⑦ 너빙변장애 ⑧ 심한 지적, 자폐성장애 (기준1,2급) ⑨ 사망 ⑩ 기타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문 1) 귀하는 2021년 1년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보훈연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2)로 갈 것**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공적연금 종류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국민연금 → **문1-2)로 갈 것**
  - ② 공무원연금
  - ③ 사립학교교원연금
  - ④ 군인연금
  -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 ⑥ 보훈연금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4)로 갈 것**
- **문1-6)로 갈 것**

< 유의사항 >  
 ※ 중복응답일 경우, 아래 문1-2)~문1-6)에서 해당하는 모든 공적연금의 급여종류와 금액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 1-2) (문1-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령연금
- ⑤ 사망일시금
- ② 장애연금
- ⑥ 반환일시금
- ③ 유족연금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④ 분할연금

문 1-3)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국민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교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5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억</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일</td> </tr> </table>	억	천	백	십	일	만원				
억	천	백	십	일								
연금	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5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일</td> </tr> </table>	십	일	개월	연간 총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5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일</td> </tr> </table>	천	백	십	일	만원
십	일											
천	백	십	일									

문 1-4) (문1-1)의 ②~⑤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 ④ 퇴직수당
- ②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등)
- ⑤ 부조급여(재해보조금, 사망조위금)
- ③ 재해보상급여(장해연금, 장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사망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공무원요양비 등)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5) 그렇다면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문1-4)에서 응답한 특수직역연금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	--	--	--	--	--	--	--

 만원

연금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만원

문 1-6) (문1-1)의 ⑥, ⑦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보훈연금 및 기타 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	--	--	--	--	--	--	--

 만원

연금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만원

**고 용 보 험**

문 2)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실업급여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 ②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 ③ 기타 현금급여 (훈련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 현금지원)
- ④ 현물급여 (근로자학자금대부 등 비현금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문 2-2) 그렇다면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고용보험의 총 급여액(현금+현물)은 얼마입니까?

(※ 현금급여액은 본인이 직접 받은 현금을 말합니다.)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만원

**산 재 보 험**

문 3)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요양급여     | ⑤ 유족급여-연금                                 |
| ② 휴업급여     | ⑥ 유족급여-일시금                                |
| ③ 장해급여-연금  | ⑦ 기타 현금급여(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장해·유족특별급여 등) |
| ④ 장해급여-일시금 | ⑧ 잘 모르겠다                                  |

문 3-2) 귀하가 2021년 1년간 본인이 직접 받은 산재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만원	천	백	십	원	원

 만원

연금 연간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만원	천	백	십	원	원

 만원

**개 인 연 금**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가 2021년 1년 동안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1년 1년 동안 받은 개인연금 급여액은 총 얼마입니까?

일시금 총액 

만원	천	백	십	원	원

 만원

연금 연간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만원	천	백	십	원	원

 만원

**퇴직금 및 퇴직보험**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가 2021년 1년 동안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을 받으셨습니까?

(※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보험일시금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 **문5-1)로 갈 것**      ② 아니다 → **B. 근로로 갈 것**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1년 1년 동안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은 얼마입니까?

(※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을 동시에 받으셨을 경우는 **합계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만원	천	백	십	원	원

 만원

연금 연간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만원	천	백	십	원	원

 만원

**B. 근로**

문 1) 귀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임금근로자 → **문2)~문6)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② 자영업, 고용주 → **문2)~문5)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③ 무급가족종사자 → **문7)으로 갈 것**
- ④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 **문7)으로 갈 것**
- ⑤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 **C.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문항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가구용 III.경제활동상태의 '문1)근로능력정도' 및 '문3)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임금근로자' 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알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포함) 지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도 임금근로자로 응답
2. 자영업, 고용주: 혼자 혹은 유급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무급가족과 함께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3.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4.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실업자(2021.12.31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한 자), 근로능력의 사유가 아닌 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를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5.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근로의사와 무관하게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 다음 문2) ~ 문6)까지는 취업자용(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질문입니다.

문 2) (문1)의 ①~③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사업)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 휴직한 경우는 일자리(직장)나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일용직 등 불규칙한 일자리 구분방식
- ① 일하는 장소(00건설현장, 00식당 등)에서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 ② 일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더라도 중간에 1달 이상의 공백기간 없이 같은 일건설현장인부, 식당일, 파출부 등을 계속 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 ③ 같은 일을 했다더라도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월에 일하고 5월에 일할 경우, 1월에 했던 일과 5월에 했던 일을 다른 일자리로 취급함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사업)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 ② 정리해고로
- ③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 ④ 정년퇴직
- ⑤ 계약기간이 끝나서
- ⑥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 ⑦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 ⑧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⑨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⑩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 ⑪ 자기(가족)사업을 새로 하려고
- ⑫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 ⑬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⑭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 ⑮ 학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 ⑯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 ⑰ 출산, 육아 때문에
- ⑱ 기타(적을 것 : \_\_\_\_\_)

문 3) (모든 취업 응답자) 2021년 12월 31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문 4) (모든 취업 응답자) 2021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연간 총   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일

< 유의사항 >  
 ※ 불규칙적으로 일을 한 경우, 하루라도 일한 달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3월에 2일, 4월에 15일, 7월에 20일, 8월에 20일 일 한 경우 '4개월'로,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57(2+15+20+20) \div 4(개월) = 14.25$ 일이므로 반올림 적용하여 '14일'로 기입합니다.  
 ※ 직장에 계속 있기는 하였지만 몇 개월간 휴직을 한 경우(유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7개월 휴직을 하였다면 연간 총 근로 개월은 5개월로 적어주고, 평균근로일수도 실제 일한 달의 평균을 적어주면 됩니다.  
 ※ 1년간 농사를 지은 경우는 12개월로 간주합니다.

문 5) (모든 취업 응답자) 2021년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      주당 평균    시간  
 일한달의 월 평균 임금 :      월 평균     만원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  
 일한날의 시간당 임금 :      시간당     만원

< 유의사항 >  
 ※ 1년 동안 직장(사업)의 변동이 있었다면 가장 최근의 직장(사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 예를 들어 농사나 일용 건설 노동자의 경우라면 1년 중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6)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노동조합이 없음
- ②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 ③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 ④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 다음 문7) ~ 문8)까지는 미취업자용 (근로능력있음) 질문입니다.

문 7) (문1)의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를 구해보셨습니까?

① 그렇다 → 문7-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8)로 갈 것

< 유의사항 >  
 ※ 구직활동이란 원서접수, 취직시험 응시부터 친구, 친지에게 소개부탁, 직업양선기관에 등록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근로의사가 없는 사람은 '②아니다' 로 응답합니다.

문 7-1) (문7)의 ①번 응답자만 마지막으로 직장(사업)을 그만둔 후 총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구직 기간      년        개월

문 7-2)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나이 때문에<br>② 성차별 때문에<br>③ 외모 때문에<br>④ 학력이 낮기 때문에<br>⑤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br>⑥ 경력이 부족해서<br>⑦ 건강문제로<br>⑧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br>⑨ 신용불량자라서 | ⑩ 가사일 때문에<br>⑪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br>⑫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br>⑬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br>⑭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br>⑮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br>⑯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br>⑰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어서)<br>⑱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7-3) (문7)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취업 혹은 사업을 한다면, 한 달 벌이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월          만원 정도

< 유의사항 >  
 ※ 자영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 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1년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음직하다
- ② 매우 조심해야 한다
- ③ 잘 모르겠다

문 2) 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 3) 귀하의 지역사회 내에 새롭게 화장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 같은 비선호시설이 입지한다면 받아들일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 4) 귀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 유의사항 >

※ 정기적인 기부인 경우 교회나 절에 내는 십일조, 시주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2021년 1년간 얼마 정도 기부하십니까?

연간 총액 

억	천	백	십	원

 만원

문 4-2)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2021년 1년간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연간 

--	--	--

 회

문 5)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 ① 있다 → **문5-1)로 갈 것**                      ② 없다

< 유의사항 >  
 ※ 계부, 계모도 포함하며,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응답합니다.  
 ※ 이 문항에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란 **생가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왕래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왕래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문 5-2) (문5)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전화통화 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전화통화 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 전화통화 외 카톡, 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포함합니다.

문 6)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 전일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나.	①	②	③	④	⑤
㉣ 남성의 일부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일부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과 여성 모두 커리어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가정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문 1) (모든 응답자) 귀하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입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5갑(100개비) 미만 → 문 2)로 갈 것
- ② 5갑(100개비) 이상 → 문 2)로 갈 것
- ③ 피운 적 없음 → 문 4)로 갈 것

문 2)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만   세

문 3)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의 총 흡연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담배를 주기적으로 피우던 시기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금연하였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총 흡연기간   년   개월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피움 → 문 4-1), 문4-2), 문4-3) 응답 후 문 5)로 갈 것
- ② 피우지 않음 → 문 5)로 갈 것

문 4-1)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비

문 4-2)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문 4-3)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②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③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④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계획이 없다.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입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0시간(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문5-1)로 갈 것

문 5-1) (문 5)의 ③번 응답자만) 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으셨습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간

문 6) (모든 응답자)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월 1회 이하                      } → 문6-1)로 갈 것  
 ② 월 2~4회  
 ③ 주 2~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 7)로 갈 것

문 6-1)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보통 술을 마실 때 몇 잔 정도 마십니까?

- ① 1~2잔 정도                      ④ 7~9잔 정도  
 ② 3~4잔 정도                      ⑤ 10잔 이상  
 ③ 5~6잔 정도

문 6-2)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한 번에 술좌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됩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몇 달에 한번정도    ③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④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⑤ 거의 매일

문 6-3)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2022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은 몇 번입니까?

항목	전혀 없음	몇달에 한번	한달에 1~2번	주에 1~2번	거의 매일
㉠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없음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음	지난 1년 동안 있었음		
㉥ 술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 친척, 친구나 의사와 같은 주변사람들이 귀하의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문 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㉞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㉟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㊱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㊲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㊳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㊴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㊵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㊶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㊷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㊸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0) 살다보면 부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1년 1년간(2021. 1. 1 ~ 2021. 12. 31) 당신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없음	1~2번	3~5번	6번이상	비해당
㉞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㉟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㊱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 귀하는 귀하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독신가구이면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2)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3)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는 경우(비가구원 포함)에만 '비해당' 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4)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만(비가구원 포함) '비해당' 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② 아니오

문 15-1) (문 1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마지막으로 생각한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나이 만  세      마지막 나이 만  세

문 16)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인근까지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 조사 시점(2021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 16-1)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 17)로 갈 것

문 16-1) (문 16)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마지막으로 계획을 세운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나이 만  세      마지막 나이 만  세

문 17)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인근까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조사 시점(2021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 17-1)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 17)로 갈 것

문 17-1) (문 17)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살을 처음/마지막으로 시도한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나이 만  세      마지막 나이 만  세

< 유의사항 >  
 ※ 문18), 문18-1), 문19), 문19-1), 문20), 문20-1))은 기존가구원만 응답하는 문항으로, 가구원용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 21)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 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2022년 조사일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최선의 상태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최악의 상태	①

< 유의사항 >  
 ※ 0-10 사이 숫자 중 하나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 교육**

문 1)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G.개인사로 갈 것**
- ② 고등학교 중퇴, 졸업 -----
- ③ 전문대학 재학, 중퇴, 졸업 ----- → **문 2)로 갈 것**
- ④ 대학교(4년제) 재학, 중퇴, 졸업 -----
- ⑤ 대학원 이상 -----

문 2) (②~⑤ 응답자만) 귀하가 다니신 고등학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1) 고등학교 유형			2-2) 소재지
① 일반계(일반)	⑦ 실업계(농업)	⑬ 특성화고	고등학교외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② 일반계(특목: 과학고)	⑧ 실업계(공업)	⑭ 대안학교	
③ 일반계(특목: 외국어고)	⑨ 실업계(상업)	⑮ 검정고시	
④ 일반계(자립형사립고, 국제고)	⑩ 실업계(수산 및 해양)	⑯ 기타	
⑤ 일반계(특목: 예술고)	⑪ 실업계(가사 및 실업)	⑰ 자율고(자율형고, 기숙형고)	
⑥ 일반계(특목: 체육고)	⑫ 실업계(종합)		

< 유의사항 >

\* 고등학교 유형이 “⑮검정고시인 경우 소재지(metro)는 “40:검정고시”로 응답합니다.

\* 2007년부터는 “실업계”의 명칭이 “전문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응답자가 “전문계”라 할 경우 해당 “실업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일반계(자립형사립고, 국제고)

- 자립형사립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학교, 전주삼신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 국제고: 서울국제고, 부산국제고, 인천국제고, 청삼국제고 등

⑦ 실업계(농업)에는 다음의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2010년부터 추가됨). 마이스터고등학교란, 2010년 첫 개교를 하였으며,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학교임.

-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한국경마축산고, 전남생명과학교 등

⑧ 실업계(공고) 중에서 일반 공업고등학교 이외에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

- 경기계림마이스터고, 수도전기공고, 부산자동차고, 부산기계공고, 경북기계공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광주마이스터고, 광주지동화설비공고, 동아마이스터고, 울산마이스터고, 울산에너지고, 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고, 원주의료고, 충북반도체고, 충북에너지고, 한덕제철고,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한국환경인물류고, 구미전자공고, 금오공고, 거제공고, 삼천포공고, 삼천마이스터고,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안동기계공고, 대구마이스터고, 포항제철공고, 공군항공과학고, 서울로봇고, 여수석유화학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현대공고,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대구소프트웨어고,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밀양전자고, 영월공고 등

⑨ 실업계(상업)에는 “경보고등학교”가 포함됩니다. 이외에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2010년부터 추가됨).

-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⑩ 실업계(수산 및 해양)에는 다음의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

- 인천해사고, 부산해사고, 완도수산고 등

⑪ 실업계(가사 및 실업)에는 다음의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

- 한국식품마이스터고,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

⑬ 특성화고등학교

- 디지털고등학교: 대전디지털고, 서울디지털고, 세그루레전디디지털고, 예림디지털고, 에일디지털고, 흥익디지털고, 부일전자디지털고, 인천디지털고, 대전전자디지털고, 안산디지털문화고, 한림디지털고, 경주디지털고 등
- 에니메이션고등학교: 울산에니메이션고, 한국에니메이션고, 강원에니메이션고 등
- 관광고등학교: 대일관광고, 서울관광고, 선경국제관광고, 송곡관광고, 부산관광고, 부산정보관광고, 해운대관광고, 대구관광고, 영화관광고, 영고, 경기관광고, 경원관광경영고, 한국관광고, 한국호텔관광고, 경남관광고 등
- 미용고등학교: 울산미용예술고, 전남미용고 등
- 자동차고등학교: 인평자동차고, 경기자동차과학고, 홀포자동차고, 청송자동차고, 경남자동차고 등
- 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고, 국립전통예술고, 남원국악예술고 등
- 골프고등학교: 부산골프고, 함평골프고 등

⑭ 대안학교

- 지구촌고, 달구벌고, 신마을고, 동명고, 양암고, 한마을고, 공동체비전고, 전인고, 팔걸고, 현천고, 영산성지고, 한빛고, 한울고, 현천고, 세인고, 푸른꿈고, 지평선고, 고산고, 경주화랑고, 간디고, 원경고, 지리산고, 태봉고, 두레자연고, 경기대명고, 이우고, 한겨레고 등

⑰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 자율형 사립고: 동성고, 우신고,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동래여고, 계성고, 승원고, 안산 동산고, 북일고, 김천고 등 (2019년 8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 대부고, 경문고,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 자율형 공립고: 등촌고, 당곡고, 구현고, 수락고, 성동고, 원목고, 미양고, 고척고, 금천고, 청량고, 상일고, 경일고, 경동고, 대영고, 중경고, 면목고, 광양고, 서울여고, 강남여고, 낙동고, 사상고, 부산남고, 부산중앙고, 금천고, 부산진고, 주례여고, 영도여고, 부산여고, 연세고, 개성고, 경남고, 강동고, 경복여고, 대구고, 호신고, 상인고, 학남고, 구암고, 달성고, 대진고, 결성고, 대구서부고, 수성고, 포산고, 신현고, 인천예일고, 동인천고, 인천공영고, 인천상경고, 강하고, 상일여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대전송촌고, 대전고, 예천여고, 충남고, 대전노은고, 문현고, 약사고, 한솔고, 외부고, 세마고, 한현고, 양주고, 충현고, 지현고, 고색고, 의왕고, 청학고, 군포중앙고, 운천고, 청원고, 충주예성여고, 청주고, 오송고, 충주고, 단양고, 대산고, 용남고, 강경고, 덕산고, 천안염성고, 서천여고, 논산고, 목포고, 순천고, 여수고, 나주고, 남양고, 광안고, 해남고, 인동고, 상주여고, 영주제일고, 북성고, 경산고, 인동고, 울진고, 점촌고, 봉화고, 울곡고, 거제제일고, 양산고, 진양고, 울진고, 김해고, 김해제일고, 미산고, 진주고, 창원중앙고, 김해경일고

문 3) ㉓~㉕ 응답자만 귀하가 다니신 대학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1) 대학 전공 계열			3-2) 소재지
①인문계열	⑤교육계열	⑨의약계열(약학)	대학교외 소재지
②사회계열(경상계열)	⑥공학계열	⑩의약계열(간호, 치료보건)	*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③사회계열(법학계열)	⑦자연계열	⑪체능계열	
④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⑧의약계열(의학)	⑫기타	

< 유의사항 >

\* 응답자가 다닌(혹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이 사회과학계열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㉔사회계열(경상계열)”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 개인사

- 문 1) 아동기(만 0~17세)에 귀하가 가장 오랜 기간 성장한 곳은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기타 시도)    ③ 농어촌(읍면지역)    ④ 외국
- 문 2) 귀하가 아동기(만 0~17세)에 가구의 경제적 생활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가난    ② 가난    ③ 보통    ④ 부유    ⑤ 매우 부유
- 문 3) 귀하는 만 15세 이후 한 번이라도 직장(사업)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유의사항〉  
 ※ 일주일에 평균 18시간 이상씩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 혹은 사업만 응답하십시오.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만 15세 이후 첫 직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고용형태였습니까?

구 분	기 간								고용형태	
첫 직장				년	~				년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첫 직장 이후의 취업 기간과 고용형태를 최근 것부터 연차적으로 주요 한 직업 경력을 6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기 간								고용형태	
가장 최근 (2021년 12월 31일로 부터)				년	~				년	
주된 일자리 A				년	~				년	
주된 일자리 B				년	~				년	
주된 일자리 C				년	~				년	
주된 일자리 D				년	~				년	
주된 일자리 E				년	~				년	

〈보기〉 고용 형태
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받는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제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2.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아닌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3.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4.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농업의 경우 자영업에 포함) 5.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유의사항 >  
 ※ 일주일에 평균 18시간 이상씩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 혹은 사업장 응답하십시오.  
 ※ 동일직종에 근무하면서 고용형태만 바뀐 경우는 근무기간은 구분하지 말고 고용형태는 마지막 형태를 기입합니다. 고용형태는 바뀌지 않았지만 직종을 바꾼 경우에는 바뀐 직종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인 경우는 3-1)과 3-2) 최근일자리에 동시에 기입합니다.  
 ※ 첫 직장 이후 다른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3-1)에만 기입하고, 3-2)에는 최근 일자리부터 순차적으로 적되, 마지막에 첫 직장은 적지 않습니다.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어떤 직업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기술사
- ② 기능장
- ③ 기사
- ④ 산업기사
- ⑤ 기능사
- ⑥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 ⑦ 자격증 없는 기능자
- ⑧ 잘 모르겠다 → 문5)로 갈 것
- ⑨ 없다 → 문5)로 갈 것

문 4-1) (문 4)의 ①~⑦번 응답자만) 직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직종에 해당합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기계·금속
- ② 화공·세라믹
- ③ 전기·전자
- ④ 통신
- ⑤ 조선
- ⑥ 항공
- ⑦ 섬유
- ⑧ 도목·건축
- ⑨ 광업·자원
- ⑩ 정보처리
- ⑪ 국토개발
- ⑫ 농림
- ⑬ 해양
- ⑭ 산업디자인
- ⑮ 에너지
- ⑯ 환경
- ⑰ 안전관리
- ⑱ 산업응용
- ⑲ 교통
- ⑳ 공예
- ㉑ 사무관리
- ㉒ 음료품·식품
- ㉓ 위생
- ㉔ 보건·의료·사회
- ㉕ 금융·무역·유통
- ㉖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 ㉗ 외국어·관광
- ㉘ 기타

< 유의사항 >  
 ※ 문4)에서 응답한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아동기(만 0~17세)에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살이었습니까?

항 목	경 험 여 부				당시 나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	모름		
㉑ 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일찍 돌아가셨다.	①	②	③	☞	만    세
㉒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①	②	③	☞	만    세
㉓ 생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중단(진학포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	만    세
㉔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자란 적이 있다.	①	②	③	☞	만    세

< 유의사항 >  
 ※ '무응답'의 경우에도 '모름'으로 표기하십시오.  
 ※ 생계곤란으로 처음부터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로 응답한 후 당시 나이는 취학연령인 만 7세로 기재합니다.

문 6) 귀하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부 [            ]      모 [            ]

- ① 무학
- ② 서당수학
- ③ 초등학교졸
- ④ 중학교졸
- ⑤ 고등학교졸
- ⑥ 대학(전문대)졸
- ⑦ 대학교졸
- ⑧ 대학원졸
- ⑨ 모름

< 유의사항 >  
 ※ 중퇴 수료는 이전 학교 졸업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중학교 중퇴(수료)인 경우는 '초등학교 졸'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 '무응답'의 경우에도 '모름'으로 표기하십시오.

문 7) 귀하 부모님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이었습니다)?

부	모
---	---

- |                      |                     |
|----------------------|---------------------|
| ① 비 해당               | ⑨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②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⑩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③ 전문가                | ⑪ 단순 노무 종사자         |
| ④ 기술공 및 준전문가         | ⑫ 직업군인              |
| ⑤ 사무종사자              | ⑬ 주부                |
| ⑥ 서비스 종사자            | ⑭ 무직                |
| ⑦ 판매 종사자             | ⑮ 기타(적용 것 : _____)  |
| ⑧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 ⑯ 모름                |

< 유의사항 >  
 ※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무응답'의 경우에도 '모름'으로 표기하십시오.

문 8) 귀하는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결혼 시 받은 물질적 도움 등)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8-1**로 갈 것      ② 없다 → **문9**로 갈 것

< 유의사항 >  
 ※ 부모로부터의 증여에는 결혼할 때 받은 부동산(주택·미련자금 또는 전세자금), 자동차, 사업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 본인의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정도의 비정기적 증여를 말하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예를 들어,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월, 대학등록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 8-1) (문8)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이나 증여 (결혼 시 받은 물질적 도움 등)가 현재 경제상황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전혀 도움 안 됨 | ④ 약간 도움이 됨   |
| ② 별로 도움 안 됨 | ⑤ 매우 큰 도움이 됨 |
| ③ 보통        |              |

문 9) 귀하는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유의사항 >  
 ※ 본 질문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정 등 다문화가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해외에 거주하였다가 귀국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조사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조사원의 평가
문)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
②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⑤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 202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유형5)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3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17, 8294, 8215, 8188,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 가구원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 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스템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 사유 (번호기재)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⑥ 비해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 가구주성명	대리응답자		성명	가구원번호	성명	가구원번호
	② 아니오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부경찰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	⑩ 기타				
주소지	행정코드												
* 비응답가구원은 거주하는 영주소로 기재함													
상세주소		동·리	번지	호	(	아파트	동	층	호)	☎	(	)	-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분	총방문횟수	총 회								
1차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⑥ 비해당(완료) ① 낮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계중(원인비과약) ④ 일부무항 미완 ⑤ 조사거부								
3차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⑥ 뇌병변장애 ⑦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2급 ⑧ 사망 ⑨ 기타								
4차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I.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다음은 우리 사회의 사회계층과 소득분배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문 1) 귀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어떤 종류의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어떤 그림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로축이 사람 수, 세로축이 계층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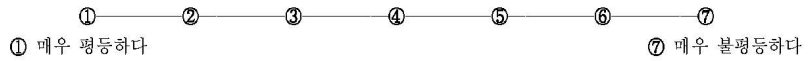
- ①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 ②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 ③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 ④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 ⑤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문 2) 귀하는 아래의 그림 중에서 한국 사회가 어떠한 사회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로축이 사람 수, 세로축이 계층을 의미합니다.)



- ①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 ②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 ③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 ④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 ⑤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문 3)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득이나 재산이 평등할수록 ①로, 불평등할수록 ⑦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 4)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선택할 수 없음
㉠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5)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들이 우리사회의 빈곤 원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①	②	③	④
㉦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①	②	③	④
㉧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①	②	③	④
㉨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①	②	③	④
㉩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①	②	③	④

다음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6) 다음에 열거된 각 영역의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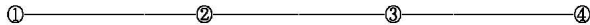
항목	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선택할 수 없음
㉠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 건강보험 및 보건	①	②	③	④	⑤	⑥
㉢ 국민연금(기초연금)	①	②	③	④	⑤	⑥
㉣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 주거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국방	①	②	③	④	⑤	⑥
㉦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①	②	③	④	⑤	⑥
㉧ 빈곤층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노인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장애인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청년 사회활동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외국인주민의 권리보장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①	②	③	④	⑤	⑥
㉮ 문화와 예술	①	②	③	④	⑤	⑥
㉯ 정부행정업무	①	②	③	④	⑤	⑥
㉺ 양성평등정책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7)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대체로 그렇다
- ④ 보통이다
- ⑤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⑥ 그렇지 않다
-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문 8)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①로,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④로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성장만이 중요하다
- ② 분배도 중요하나, 성장이 보다 중요하다
- ③ 성장도 중요하나, 분배가 보다 중요하다
- ④ 분배만이 중요하다

문 9)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①~⑤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를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①	②	③	④	⑤
㉤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복지를 제공하는 여러 부문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 10)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⑤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정부의 사회정책	매우 잘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 편이다	보통/ 그저 그렇다	잘 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㉞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㉟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㊱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㊲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㊳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㊴ 빈곤 예방 및 감소	①	②	③	④	⑤
㊵ 실업에 대한 대응	①	②	③	④	⑤
㊶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①	②	③	④	⑤
㊷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㊸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①	②	③	④	⑤
㊹ 외국인주민의 노동권 및 시민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II. 복지자원 및 대상범위

다음은 세금부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오늘날 한국의 세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세금은 소득세, 소비세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단, 사회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문 11) 귀하는 다음 각 소득계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소득계층	지나치게 높다	꽤 높다	적절한 편이다	꽤 낮다	너무 지나치게 낮다	선택할 수 없음
㉠ 고소득층	①	②	③	④	⑤	⑥
㉡ 중간층	①	②	③	④	⑤	⑥
㉢ 저소득층	①	②	③	④	⑤	⑥

문 12)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⑤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② 그렇다     | ⑥ 그렇지 않다     |
| ③ 대체로 그렇다 | ⑦ 전혀 그렇지 않다  |
| ④ 보통이다    |              |

문 13)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찬성한다  | ⑤ 대체로 반대한다 |
| ② 찬성한다     | ⑥ 반대한다     |
| ③ 대체로 찬성한다 | ⑦ 매우 반대한다  |
| ④ 보통이다     |            |

문 14) 귀하는 국가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내서  
 ②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③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④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⑤ 종교단체 등이 기부금 등을 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다음은 국가가 징수한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 문 15)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험이나 육아나 양로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느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①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⑤로 기입해 주십시오.)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모든 국민대상  
② 소득하위 70%의 국민 대상  
③ 소득하위 50%의 국민 대상  
④ 소득하위 30%의 국민 대상  
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

- 문 16) 국민이 낸 세금을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쓰려고 할 때, 어디에 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노후생활문제  
② 건강 및 의료문제  
③ 실업문제  
④ 교육문제  
⑤ 아동양육문제  
⑥ 장애인 문제  
⑦ 주거문제  
⑧ 빈곤  
⑨ 기타(적을 것: \_\_\_\_\_)

### III. 정치참여와 성향

다음은 정치참여와 성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 17) 귀하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상당히 관심이 있다  
③ 다소 관심이 있다  
④ 별로 관심이 없다  
⑤ 전혀 관심이 없다  
⑥ 선택할 수 없음

- 문 18) 귀하는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선택할 수 없음

- 문 19)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진보적  
② 다소 진보적  
③ 중도  
④ 다소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  
⑥ 선택할 수 없음